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9호 2008. 3

차례

특집 동아시아사 교육

- 정 연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7
- 니타니 사다오[二谷貞夫] | 일본 세계사 교육의 동아시아사 35
- 오병수 | 中·西에 가린 동아시아 -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 인식 55
- 최병욱 | 베트남의 동북아 역사인식 - 베트남 역사교과서를 통해 살펴봄 95
- 김장구 | 몽골 역사교육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
- 중등 『몽골사』 교과서의 대외관계 서술의 분석을 중심으로 117

논문

- 김감동 | ‘王建의 중국 출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3
- 한철호 |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 일본의 ‘공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89
- 최철영 | 강계동원 관련 한인(조선인) 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233

Contents

Special Issue East Asian History Education

- Jeong, Yeon | <East Asian History> Its Characteristics, Purpose and System of Contents 7
- Nitani Sadao | East-Asia History teaching in the World History Education in Japan 35
- Oh, Byungsoo | East Asia overshadowed by China and the West : Perceptions of East Asia in History Education at Middle School in Modern China 55
- Choi, Byungwook |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History Textbooks of the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95
- Kim, Janggoo | An Analysis of understanding to East Asia in historical education of Mongolia – Focusing the description of foreign relations through the textbook *History of Mongolia* 117

Articles

- Kim, Gapdong | The comment on the insistence that the birthplace of WangGun is China 153
- Han, Cheolho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fficial Tanabe Taichi's Conception of Ulungdo and Dokdo in the early Meiji Period 189
- Choi, Cheolyoung | Legal Analysis of the Korean Court Actions concerning Forced Mobilization –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Rights of Reparation Claim 233

특집

동아시아사 교육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정 연 | 영락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¹⁾로 우리나라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등 <역사>가 사회과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과목이 된²⁾ 덕분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그 어느 때보다 ‘역사 교육적 고려’가 많이

1) 2007년 2월 28일자. 초기에는 이 교육과정을 ‘제8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이도 일부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원칙’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관련 자료」, 2쪽)이라는 점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개정 교육과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2) 역사는 교수요목기 이후 ‘사회과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중 한국사 영역은 제3차 교육과정 때 잠깐 ‘국사과’로 독립하였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사회과’로 환원되었다. 광복 이후 7차까지의 역사 교육과정은 교육부, 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참조. 한편, 중등 <역사>가 독립 과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교과로는 사회교과에 속하며, 초등 ‘역사’는 통합 사회에 포함된 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3, 위의 자료, 2~10쪽 참조.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먼저 한국사와 세계사의 단절 문제, 중·고 간 학습내용의 중복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과목 편제가 만들어졌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을 시도하되, 통합의 수준을 교과서 통합, 단원 통합의 순으로 점차 높여 나감과 동시에 각 과목의 공간적·시간적 범주와 내용 구성 방식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학년 간의 계열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과목을 재배치한 것이다.³⁾ 또 각 과목의 단원 조직 방식이나 내용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모든 과목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폐쇄적 민족주의와 서구 중심주의, 잡다한 사실의 망라, 정치·제도사 위주, 근현대사의 상대적 소홀 등’을 지양하고 ‘동양사-서양사’의 이분법적 단원 구성 탈피, 서구적 관점과 서양사 분량의 상대적 축소, 문화권별 접근, 문화사와 교류사의 강조, 비교사적 지식 중시 등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는 역사 교육계에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새로운 과목 체제와 교육과정은 마련되었지만 <역사>,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⁴⁾ <세계 역사의 이해>가 모두 형식상·내용상으로 지금까지의

3)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과목 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	과목	학년	공간 범위	시간 범위	한국사·세계사의 통합 수준	내용 구성 방식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역사	8	한국사, 세계사	전근대	교과서 통합 (별도 대단원)	통사
		9	한국사, 세계사	근현대	교과서 통합 (별도 대단원)	통사
		10	한국사, 세계사	근현대	단원 통합	통사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한국문화사	11, 12	한국사	전 시기		주제별 구성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전 시기		주제별 구성
	세계역사의 이해		세계사	전 시기		주제별 구성

4) ‘동아시아사’가 과목명으로 사용될 때는 <동아시아사>로 표기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용례에서도 < >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국사>, <사회>, <세계사>와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과목들이니만큼, 그 틀에 걸맞은 내용을 여하히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작업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⁵⁾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과서 체제와 내용 수준, 서술 방식,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학계 차원의 방향 제시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신설 과목인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넉넉하지 못했던 개발 기간으로 말미암아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도 없었던데다⁶⁾ 학습내용 선정의 기준이나 내용 범위, 단원 체계 등이 크게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의 <국사>, <세계사> 과목의 '내용 조정'이라 할 수 있는 나머지 세 과목들에 비해,⁷⁾ <동아시아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낯선 과목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유독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만은 과목의 성격과 공간적 범위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⁸⁾ 바로 그런 <동아시아사>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사>를 둘러싼 논의의 수준이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에

-
- 5) 새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순간부터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 작업은 시작된다. 집필진 결정과 개인 연구기간 등을 제외한다 해도, 늦어도 교육과정 적용 3년 전에는 실제 집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볼 때 2011년 3월에 첫 적용되는 8학년 <역사>와 10학년 <역사>는 2008년 초까지, 2012년 3월에 첫 적용되는 9학년 <역사>와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는 2009년 초까지는 교과서 집필이 시작될 것이다. 또, 집필을 위한 개인 연구는 그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시작된다. 개정 교육과정의 자세한 시행 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ii 쪽 참조.
 - 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개발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확정·발표된 2006년 11월 26일 이후부터였으며 그때부터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까지는 불과 3개월의 여유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 7)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3, 앞의 자료, 19쪽; 양원택, 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4쪽.
 - 8) 이와 관련해서는 안병우 외,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2006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보고서), 16~51쪽, 85~104쪽을 참고할 수 있다.

도 여전히 그 이전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교육과정 이 그간의 논의를 일정하게 정리한 결과물인데도 그것을 다 드러내기에는 고 시된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소략하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¹⁰⁾

이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사>의 신설 과정과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하였던 바, 이 글에서 밝히게 될 개발자 수준에서의 제 반 견해는 <동아시아사> 개설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일단락짓고, <동아시아 사>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사> 교과서 개발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글을 바탕으로 <동아 시아사> 교과서 연구, <동아시아사> 교육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¹¹⁾ 신 설과목인 <동아시아사>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한다.

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열린 역사학 대회에서도 참석자들의 논의는 여전히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공간 범위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대회의 <동아시아사> 관련 발제문과 토론문은 역사교육연구회,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세 계사 교육』(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교육부 자료집), 49~65쪽에 실려 있다.

10)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저작의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 구성 대강화'의 원칙을 세우고, 최저 필수 요소만으로 내용 요소를 정선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정호 외, 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2005년도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iv쪽과 45~48쪽).

1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김정인, 2007, 「'동아시아사'의 도전과 모색」, 앞의 책, 역사교육연구회; 신성근, 2007,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 과 그 특징』(동북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 워크숍 자료집); 백영서, 2007, 「자국사 와 지역사의 소통 :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제196집 정도가 있다.

II. <동아시아사>의 성격

1_ <동아시아사> 신설의 배경과 경과

역사과 선택과목의 하나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 과정의 공식석상에서 처음 발표된 것은 2006년 12월에 열린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의 종합토론 자리에서였다.¹²⁾ 방청석에서는 즉각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슨 의도로’ 그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과목을 ‘갑작스럽게’ 사회과 교육과정에 끼워 넣느냐는 것이었다. 방청객의 대부분이 다른 과목 교사여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내막을 알기 힘들었던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항변에 전혀 일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토론회가 열린 시점은 이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때였지만 그동안 새로운 사회과 과목의 개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과목은 아니다. 사실 <동아시아사>는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초기에 이미 교육과정 연구진들이 세계사 과목의 하나로 구상했던 과목이다. 기존의 세계사 교육이 지역사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인과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취약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전근대 시기의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는 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사의 개설을 제안했던 것이다.¹³⁾ 이렇게 될 경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편성될 역사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

12) 당시까지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1~10쪽과 49~66쪽 참조.

13) 신성근, 2005, 「역사교과서의 국사와 세계사 편제-다양한 통합 방안의 모색」(역사교과서 체제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 1~2쪽. 연구진들은 그 후의 논의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항’을 <동아시아사> 개설의 필요성으로 추가하였다(김정호 외, 2005, 앞의 책, 45쪽, 주30).

사), 〈세계사〉, 〈근현대사〉의 4개 과목이 될 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과 선택과목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될 이 안은 사회과 내의 다른 영역 연구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역사과 선택과목은 기존의 〈한국근현대사〉와 자리를 바꾼 〈한국문화사〉와 기존의 〈세계사〉를 명칭 변경한 〈세계문명사〉로 결정되었다.¹⁴⁾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교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교육과정 총론의 원칙 또는 다른 과목과의 관계라는 교과 외적인 조건에 따라 거부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세계사 교육 개선 차원에서 제안된 〈동아시아사〉의 신설 문제는 그대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런데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교육계의 자기검열에 따라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동아시아사〉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막바지에 ‘전격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역사 학습 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조선사 및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으로 역사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다.¹⁵⁾

그리하여 2006년 11월 26일, ‘중등 〈역사〉의 과목 독립과 고교 선택과목으로서 〈(가칭)동아시아사〉 신설,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발표되었다.¹⁶⁾ 2005년 5월, 교육부총리가 기자 회견을 통해 ‘근현대사 교육 강화 및 〈역사〉 과목 독립’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지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었다.¹⁷⁾ 이 중, 중등 〈역사〉 독

14) 김정호 외, 2005, 앞의 책, 45쪽.

15)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26, 「역사과목독립과 수업시수 확대 등을 담은 역사교육강화 방안 발표」, 4~5쪽. 붙임 1.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16)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26, 위의 자료, 1~3쪽 참조.

17) 이때 발표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2005. 5, 「역사교육 강화 방안」,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양원택, 2006, 앞의 글, 6~7쪽 참조.

립과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수 확대는 이미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반영된 사항들이었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신설은 이때에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사> 신설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막바지에 다시 등장한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 초기에 거론되던 <동아시아사>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달랐다. 후자가 세계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사보다 역사 공간이 확대된 지역권·문명권으로서의 <동아시아사>를 구상한 것이라고 한다¹⁸⁾ 전자는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상대로라면 신설되는 <동아시아사>는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들이 초기에 구상했던 바, '대외관계와 교류 및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와의 통합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하나의 '지역권 (혹은) 문명권'이라는¹⁹⁾ 유연한 개념이 아닌, '한·중·일의 삼국사'로 고정될 것이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1차 회의에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던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

-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 역사인식을 만들어 갈 필요성에 부합하는 내용
-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 동아시아사가 다루는 영역은
 - 공간적으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고,
 - 시간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전 시기를 포괄하며,
 - 내용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통해 한·중·일 역사 갈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²⁰⁾

18) 신성근, 2005, 앞의 글, 3~4쪽.

19) 신성근, 2005, 앞의 글, 2쪽.

20) 내부자료, 2006. 12. 22,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과목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즉, <동아시아사>가 ‘한·중·일 3국’을 공간적 범주로 해서, ‘한·중·일 3국의 역사 갈등 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는 과목으로 개발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상된 <동아시아사>의 성격은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연구진이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된다. 연구진들은 위의 자료에 나타난 <동아시아사> 신설의 기본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다룰 공간적 범주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연구진은 <동아시아사>가 신설된 배경이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분쟁 당사국이 한·중·일 삼국이라고 해서 역사교육을 통해 그 분쟁에 대처하려는 <동아시아사>까지 ‘삼국사’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동아시아 역사를 이끈 주요 집단이 한·중·일 삼국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삼국 이외의 많은 정치체들을 동아시아 역사에서 배제해서도 안 되며 특히 완충지역으로서의 다른 정치체가 없이 한·중·일 삼국의 역사만을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삼국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동아시아사>가 명실상부하게 ‘역사교육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에서 한 발 벗어난 외부에서 삼국이 포함된 세계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동아시아사>를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베트남까지를 포함하되, 주제에 따라 범주의 변화가 가능한 과목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²¹⁾

<동아시아사>에 대한 연구진의 이런 구상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국사>와 <세계사>의 이원적 체제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사>를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역사

계획(안)』, 1쪽.

21) 이에 관해서는 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105~123쪽, 부록 4. 동아시아 교육과정 시안 개발팀 회의록 참조.

에 대한 긍지를 배양하며 자주적인 태도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하는'²²⁾ 과목으로 여겨 <세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국사와 세계사 교육 양쪽 모두에서 문제점을 낳았다. 국사 교육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의 문제와 세계사 교육에서의 지나친 서구중심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국사의 강조는, 그것이 세계사와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우월의식과 편견, 대결의식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부작용을 낳았고, '세계사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한 세계사는 그것이 자국사와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서구적 가치만 주입하는 방향성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래에 들어 학생들의 역사과목 외면이 역사 교육계의 큰 근심이 되고 있지만, '민족', '국가'에 가려 '나'가 소외된 <국사>,²³⁾ '세계', '서구'에 가려 '한국, 한국인'이 소외된 <세계사>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역사교육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역사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관시켜 서술하려는 시도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사>와 <세계사>의 이분법적 과목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세계사>의 아시아사 단원에 중국사 다음으로 한국사를 일본사와 함께 배치한다든가 <국사>의 대단원 첫머리 부분에 세계사를 배치하여 한국사 전개의 배경을 살피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것인데,²⁴⁾ 그러한 방식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

22) 1981. 12. 31일에 개정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의 국사과 교과 목표이다(교육부, 2000, 앞의 책, 441쪽).

23) 김기봉은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우리 민족을 선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한국사를 서술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와 관련되지 않은 '우리', '민족', '국가'의 남발이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지금 나의 삶과는 유리된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기게 하는 원인이 됨을 지적하였다(김기봉, 2005a, 『동북아 시대에서 한국사 서술과 역사교육 - '국사'를 넘어서』, 『역사교육』 95, 30~47쪽).

24) 전자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후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생들의 심리적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균형 있는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²⁵⁾ 국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²⁶⁾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²⁷⁾ 등 몇 가지 방면에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필요와 가능성 혹은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²⁸⁾ 반면, 동아시아 세계를 범주로 하는 새로운 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는 〈국사〉와 〈세계사〉의 단절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대결 의식을 지양하게 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설 〈동아시아사〉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 갈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역사교육이 갖고 있던 고질적 문제의 해결까지도 도모하는 과목으로서 윤곽을 잡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국가-지역 세계-세계로 점차 역사 인식의 범주를 동심원적으로 확대해 갈 때, 자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세계사, 중간 범주의 세계사였다.²⁹⁾

25) 황지숙, 2006,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 인식과 교육 방안」,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책과 함께); 송상헌, 2002,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동아시아사 담론의 문제-중국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역사교육』 84 등.

26) 김기봉, 2005a, 앞의 글; 김기봉, 2005b, 「동아시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역사학보』 제186집; 김기봉, 2005c, 「기억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이화사학연구』 제32집 등.

27) 신주백, 2007, 「'한일 교류의 역사' 발간의 의미와 동아시아 교과서 대화」, 『역사교육연구』 제5호; 백영서, 2005, 「제도의 안과 밖을 넘어서-동아시아 역사교과서와 교육의 재구성」,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등.

28)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 개설의 필요성은 2003년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적이 있지만(임화영, 2003, 「바람직한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체제에 대한 토론 요지」, 『역사과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의 진로』(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27쪽), 이후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김기봉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사에서 동아시아사로 한국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과 「한국사교육과 세계사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것이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김기봉, 2005c, 앞의 글, 70쪽).

29) 김정인은 이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징검다리」라고 표현하였다(김정인, 2007, 앞의

정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사>의 신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기존의 <국사>가 '국책 과목'으로서 한때 감당해야 했던 역할을 기억하면서 <동아시아사>도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있었다.³⁰⁾ 그러나 <동아시아사>가 단순히 '한·중·일 삼국의 역사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과목'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사>에 대한 위와 같은 연구진들의 구상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 갈등이 <동아시아사> 신설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기존의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사교육계의 구상이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일정하게 규정하였다면,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불행한 과거를 공유한 국가들 사이에 시도되고 있는 역사 대화와 이의 실천으로서의 공동 교재 개발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폴란드 간 교과서 대화와 60여 년의 대화 끝에 결실을 맺은 독일·프랑스 간의 공동 역사교과서 개발,³¹⁾ 한·중·일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 역사교재 개발과 한·일 간 공동 역사 수업 및 공동 교재 개발³²⁾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와 교사들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추진된 공동 역사수업과 공동 교재 개발의 경험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³³⁾ 그러한 경험이 한편으로는 개별국가를 넘어 '지

글, 49쪽).

30) 유원적,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토론문, 안병우 외, 앞의 책, 102쪽.

31) 이와 관련해서는 김승렬, 2007, 「유럽의 사례 : 독일-폴란드 권고안/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미간행 원고); 김승렬, 2003,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49; 한운석, 200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위험스런 동향과 해결방안 모색 : 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협력이 주는 시사점」, 『내일을 여는 역사』 14; 한운석, 2002,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 간의 화해 노력」, 『서양사론』 75 등을 참조.

32)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2007, 『한일 교류의 역사』; 전국역사교사모임, 2006, 『마주보는 한일사 I·II』;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 2005, 『조선통신사』;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등이 그 결과물이다.

33)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연구진에는 한·일 공동 역사수업과 공동 교재 개발, 한·

역세계'를 하나의 역사 서술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역사 경험에 대한 국가별 인식의 격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역사 대화를 통한 과거 갈등의 치유가 얼마나 지난한 일이 될 것인지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의 공존과 평화의 미래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갈등 치유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게 되었다.

2_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신설 <동아시아사>의 성격은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성격' 부분을 보자.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된 선택과목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중략)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과거부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자, 사상, 제도 등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역사 및 지역 단위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한다.³⁴⁾

중·일 공동 역사교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한 교사와 연구자가 모두 5명이었고 독일·폴란드,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었다. 연구진 명단은 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71쪽 참조.

34)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이하 「교육과정」으로 약칭), 82쪽.

<동아시아사>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교육'을 위해 마련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개설되었다.³⁵⁾ 따라서 <동아시아사>의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될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동아시아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 위 인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것'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사>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방식'으로 접근하여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목인 것이다. 역사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울러 앞의 인용문은 이런 역사적 접근이 동아시아 역사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근거를 보여준다. 동아시아 세계는 '과거부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자, 사상, 제도 등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사 및 지역 단위'이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야 할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재적 문제가 아무리 그것을 요청한다 해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단위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인 행위는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대책도 없다고 할 때, 과거부터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미래에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의 경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갈등을 역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한 방안인 것이다.

35)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3, 앞의 자료, 7쪽.

이와 같이 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는 당면한 국가·사회의 문제를 현재적 상황 속에서만 보려 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하며, 주변국과의 갈등적인 문제 상황을 대결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운데 문제 상황 자체를 완화시킴으로써 극복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앞에서 인용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성격'이 〈동아시아사〉의 목적 및 설정 근거와 관련된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음에 인용할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목표'는 〈동아시아사〉의 학습방법 및 학습목표와 관련된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³⁶⁾

36) 「교육과정」, 82~83쪽.

<동아시아사>는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주제별'로 '비교, 분석, 비판, 종합,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과목인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는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던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및 세계사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사〉가 한국사의 연장인가 세계사의 일부인가'라는 물음³⁷⁾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이란 한국인의 주체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배타적이지 않은 관점, '동아시아'란 '우리가 속한 가까운 세계, 민족사의 범주는 넘어서지만 세계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와는 구별되는 작은 세계'를 의미한다.³⁸⁾ 즉,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역사 범주로 삼아 구성한 지역세계사로서, '한국인이 쓰는 지역세계사',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사'인 것이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런 성격 규정은 동아시아사를 한국사의 단순한 외연 확대로 보아, '한국사 중심의 동아시아사'나 '한국사의 배경으로서의 동아시아사'로³⁹⁾ 서술하는 것을 경계하게 한다. 또 동아시아사를 동아시아 각국사

37) <동아시아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및 세계사의 관계가 깊게 연관되어 거론되었던 것은 한국사-세계사라는 이원적인 역사교육 체제와 한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분절적인 역사 연구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역사교육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범주를 벗어난 범위의 역사 교과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데다 각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교육 실천 경험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동아시아사>상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사 교육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불신이 <동아시아사>의 신설과 성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역측을 낳기도 했다.

38) 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7쪽.

39) 백영서는 동아시아사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자아확충의 동아시아사'와 '자아충실의 동아시아사'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분류,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사

의 단순한 합으로 보아 각국 단위의 역사를 병렬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사>가 조직되는 것도 반대한다.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는 단순한 한국사의 배경이나 각국의 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단위로서 역사 이해의 대상이자 실천의 대상이 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사>의 '목표'에 나타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도 있다. 지역세계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 지역 외부를 향해서는 오히려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흐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과 갈등을 낳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세계사에 포괄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범주로서 지역세계를 설정하되 그것이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Ⅲ.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말 그대로 '열린'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 집필자와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정도만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중심의 동아시아사', '한국사의 배경으로서의 동아시아사'는 그가 말하는 '차아화층의 동아시아사'에 해당된다. 두 개념과 관련해서는 백영서, 2007, 앞의 글 참조.

40) 동아시아사가 지역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함동주, 2007, 「'동아시아사' 시안 토론문」, 안병우 외, 앞의 책, 98쪽; 황지숙, 2006, 앞의 글, 28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_ 공간적·시간적 범위

<동아시아사>는 현재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영역에서⁴¹⁾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범주는 시대와 주제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이 공간 범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여러 민족들이 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겠지만 시대에 따라 지역을 넘나드는 민족이 있을 수 있고, 주제에 따라 이 범주 바깥에 있는 지역과 민족이 동아시아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벵농사와 관련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동서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이슬람인이, 근현대사에서는 러시아(소련)와 미국 등이 서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공간 범주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어떤 주제에서 어떤 지역과 민족을 덧붙여야 할지, 한·중·일 삼국사와 베트남사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서술 범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2_ 단원 조직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동아시아사>에서 다룰 내용 영역을 크게 6개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4~5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⁴²⁾

<표 1>은 <동아시아사>의 각 영역별 명칭과 성취 기준 수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사>의 단원 구성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교육과정 개발 초기에는 동남아시아를 <동아시아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나치게 지역 범위를 넓힐 경우, 기존의 <세계사>가 가졌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결국 제외되었다. 대신 동남아시아는 벵농사 등과 관련지어 특정 단원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10쪽과 106~107쪽).

42) '성취 기준'은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목표 진술을 통합한 것으로, 이전 교육과정의 중단원에 해당된다.

〈표 1〉 〈동아시아사〉의 내용 구성

영역(대단원)	영역 명(대단원 명)	성취 기준 수	해당 시기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4	선사~기원 전후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4	기원 전후~10세기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4	10~16세기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4	16~19세기
5	국민국가의 모색	5	19세기 중반~1945년
6	오늘날의 동아시아	5	1945년 이후

첫째, 〈동아시아사〉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원칙적으로 주제별 구성을 지향한다. 기본 교육과정인 〈역사〉에서 배운 통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각종 쟁점 사항들에 대한 역사적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과목의 특성상 시간적 흐름을 경시할 수 없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시간적 범위가 넓은 주제를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단원을 나누고 각 단원에 주제별 서술이 가능하도록 4~5개의 성취 기준을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단, 특정 단원에 배치된 주제라 할지라도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그 기원이라든가 전개과정, 변화, 결과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시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둘째, 탐구학습, 비교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대단원 6개, 성취 기준 26개라는 비교적 적은 내용 분량을 제시하였다.⁴³⁾

43)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될 역사과목의 대단원과 성취기준 수는 다음과 같다.

과목	주당 시수	대단원 수	성취 기준 수
역사(8학년)	3	9	50
역사(9학년)	2	6	32
역사(10학년)	3	9	45(+약간)
한국문화사	3	7	45
세계역사의 이해	3	8	27
동아시아사	3	6	26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문화적·학문적 전통이 다르고 역사 인식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동아시아사>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는 각국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사안들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수업은 일정한 시각에 따라 내용 지식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려는⁴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국의 서로 다른 자료와 관점을 조사, 수집, 비교, 토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탐구학습 등이 적극 권장된다. 성취기준 당 약 3차시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때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 분량을 소화하는 데에는 약 78차시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여분의 시간은 심화 학습, 관련 학습, 견학 등 개별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⁴⁵⁾

셋째, 대단원은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 구분법을 탈피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커다란 사회변화를 기준으로 크게 시기를 구분하였다. 단, 현대사 중시 원칙에 따라 현대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시기를 나누었고, 지역마다 사회변화의 시기가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라는 표현으로 시기에 융통성을 두고자 했다. 각국사에 나타나는 여러 왕조들을 어떤 대단원에 배치할 것인지도 집필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예를 들어 <표 2>와 같은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대단원명은 '고대, 중세' 혹은 '형성, 발전' 등 시대 구분의 성격이 강한 용어 대신, 해당 시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단원에서 다룰 내용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가령, 대단원 1의 단원명

44) 「교육과정」, 82~83쪽.

45) <동아시아사>의 기준 시수는 102이지만 학교 현장의 여건상 실제 수업에 배정될 수 있는 시간은 2학년에게 개설될 경우 약 90, 3학년에게 개설될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표 2〉 영역(대단원) 별 시대 하한(예)

영역 (대단원)	영역명(대단원명)	시기	하한(주요 왕조 혹은 사건)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대체로 선사~기원 전후	고조선, 진·한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대체로 기원 전후 ~ 10세기	신라, 당, 베트남 독립, 일본(나라 시대)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대체로 10~16세기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대체로 16~19세기	개항
5	국민국가의 모색	대체로 19세기 중반 ~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6	오늘날의 동아시아	대체로 1945년 이후	현재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은 이 단원에서 주로 동아시아사의 배경과 시원을 다룰 것임을 알려주고, 대단원 3의 단원명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는 이 단원에서 경제 발전과 지배층의 문제를 주로 다룰 것임을 알려주는 식이다. 한편 이러한 단원명의 설정에 대해서 해당 시대의 성격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명칭이라는 즉, 인구 이동, 문화 교류, 생산력 발전, 지배층의 교체, 국제질서 변화 등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 가능한 제목이고 꼭 그 시대만의 특징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학계의 동아시아사 연구 수준으로 보아 특정 시대를 포괄하는 용어를 찾아내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대단원명은 해당 시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시대 구분 용어로서가 아니라 해당 시기의 역사를 이 주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라는 중심 주제어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용이한 중단원 혹은 소단원 수준에서 시대별, 지역별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단원명을 사용하여 작은 범위에서의 시기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_ 내용 체계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각 영역별로 성취기준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요소가 해당 단원에서 다룰 주제들이다. 각 영역별 내용 요소는 <표 3>과 같다.

<표 3> <동아시아사>의 내용 체계

영역 (대단원)	영역 명 (대단원 명)	내용 요소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동아시아 국제 관계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인, 성리학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서민 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5	국민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6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이 내용 요소들은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 지역적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⁴⁶⁾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 관계’나 ‘유교’처럼 특정한 시기를 획정하기 어려운 주제들은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학습목표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배치하였다.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을 가

46) 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13쪽.

장 잘 볼 수 있는 시대는 당 이전이라고 보아, 기원 전후에서 10세기까지를 주로 다루는 대단원 2에 '동아시아 국제 관계'라는 내용 요소를 배치하여 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가 '유교'의 경우 대단원 2의 시기가 통치 질서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각국에 확산된 때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던 때이므로, 대단원 2에서는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라는 내용 요소를 두어 율령 체제의 측면을 강조하고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주로 다루는 대단원 3에 '성리학'이란 내용 요소를 배치하여 철학과 통치 이념으로서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또, 각 대단원별 내용 요소의 선정과 배치에는 동일한 분야의 주제가 가급적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도 적용되었다. 동아시아 역사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구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단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단원 4를 예로 들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이 정치·국제 관계, '은 유통과 교역망'이 경제·교류,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서민 문화'가 사회·경제·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이 정치·국제 관계·문화 분야로 분류되어 경제, 사회, 문화 및 국제 관계와 교류 등의 각 분야에서 골고루 주제를 선정한 것과 같은 식이다.

각 단원별 주요 내용 요소 선정의 의미와 주제 서술시의 유의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단원 1에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개론적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역사>와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⁴⁷⁾ 또, 학교 현장에서 그런 유의 개론이 역사 학습의 방향 설정이나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흥미 유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되었다. 대신 대단원 1에는 동아시아사의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배치하여 <동아시아사> 학습의 시작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

47) <<8학년>>역사)는 첫 번째 대단원에는 '역사의 뜻을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다(『교육과정』, 35~36쪽).

록 하였다.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등이 그런 주제들이다. 한편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각 정치·문화 집단 간의 우열을 나누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다.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등을 기술할 때에는 황하 문명 혹은 중국 문명 중심의 단선적인 문명 발전론과 농경문화 우위론을 지양하고 그 모든 지역적 다양성이 동아시아 문명의 바탕이 되었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대단원 2에서는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핀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이라는 주제는 현재의 국민국가, 민족 개념의 원형이 형성되기 이전의 동아시아 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대 불교'와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라는 주제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살피고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는 조공·책봉 관계라는 국제 관계의 외연을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동아시아사> 전통사회 전체의 서술에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이 단원에서는 현재의 국민국가적 관점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을 포함하여 대단원 3까지 정도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국명이나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의 민족명 대신 고조선, 진, 한 등의 왕조명과 가능한 수준에서의 종족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단원의 전반기는 북방민족의 등장과 몽골제국의 성립, 후반기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주요 내용 요소로 뽑았다. '북방민족'이라는 주제에서는 몽골제국의 성립이 세계사의 전개에 미친 영향을 교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살피되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와의 소통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세계가 다른 지역들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범주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 농경민족과 비교되는 북방민족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살피되 자칫 그들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미화하거나 전쟁의 참상을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의 철학 체계에 천착하기보다는 그것이 지배질서로 기능하는 측면을 강

조하는 것이 좋겠다. ‘성리학’, ‘문신과 무인’ 등은 동아시아 각국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내용 요소가 될 것이다.

4단원에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이라는 것은 소위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전쟁을 지칭한다.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명칭이라는 점에 주목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명칭으로는 그 전쟁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갖는 국제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⁴⁸⁾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혀 동아시아 세계의 세력 질서가 개편되어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은 유통과 교역망’에서는 동아시아 교역망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국의 독자적 전통’에서는 각국의 정치적 안정, 문화적 성숙과 함께 각국이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모습도 드러내야 할 것이다.

5단원에서 다룰 개항 전후의 시기는 동아시아 각국의 현대사를 결정짓는 시기이면서 현대 동아시아 각국 간 갈등의 핵심 요소가 배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각국이 개항 과정에서 보인 서구 문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이 시기 지역세계에서 일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다루되 그것에 저항하면서 국민국가, 민족주의를 성취해 나가는 동아시아인의 의지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이 개항의 충격 속에 곧바로 체제 개혁에 착수하여 단기간에 근대국가를 수립한 것과 달리 한국, 중국, 베트남은 장기간의 근대국가 수립 운동을 거쳤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지나친 일본 편향의 서술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으로 점철되는 이 시기는 그동안 정치와 전쟁, 운동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를 통해 동아시아

48) 실제로 교육과정 연구진에서는 이를 ‘동아시아 대전’이라고 표현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으나, 예상했던 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지적들을 받았다(안병우 외, 2007, 앞의 책, 85~104쪽). 이 외에 연구진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동아시아 대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건으로 주목한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둘러싼 전쟁, 몽골제국의 확대 과정 등이었다.

인의 의식적·문화적 변화상을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현대사 단원에 해당되는 5단원과 6단원에서는 베트남의 서술 분량이 이전 단원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냉전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베트남의 민족 운동과 통일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6단원에서 다루는 전후 동아시아 세계의 여러 문제들은 특히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 주제이고 그만큼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한 단원이다. '전후 처리 문제'와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에서 현대 동아시아 각국 간 갈등의 원인을 다루되 반드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미국과 소련 등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고 냉전이 아시아에서는 '열전'으로 전개되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IV. 맺음말

<동아시아사>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 갈등을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을 기름'으로써 해결하고자 개설된 역사과 선택과목이다. 당면한 역사적 쟁점을 역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인과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미래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실천적이며, 그 방안으로 '상호 이해'라는 가장 초보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세계사'로서의 <동아시아사>는 일국사 중심의 역사 이해가 가지는 폐쇄성과 망라적 세계사가 가지는 몰가치성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나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열린 세계사', '나의 미래와 관련된 유용한 세계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가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실재하는 지역 공동체라 할 때,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 또한 '동아시아인'의 미래와 긴밀하게 관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쓰는 세계사'가 어떠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인이 쓰는 동아시아사'가 어떠해야 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그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동아시아사>의 개설은 '역사교육이 역사학을 선도하는 한 사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사교육이 역사 연구 성과를 앞질러 나간 측면이 있고, 따라서 <동아시아사>의 정체성 및 내용에 대한 우리 역사학계의 일정한 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칫 전통적인 중국 중심 시각이나 196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온 일본의 연구 성과를 차용하게 됨으로써 또 한번 우리 역사를 '주변부 역사'로 몰아내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이도 있다. 게다가 중등학교에서 동아시아를 범주로 하는 역사과목을 개설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니만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동아시아사>가 제대로 된 역사과목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갈등 해소라는 현실적인 필요 외에,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사>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고, 교과서의 서술 방향과 서술시 유의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수렴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될 교과서 집필 작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도 시급하다. <동아시아사> 내용 연구와 교사 연수,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글이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East Asian History〉 Its Characteristics,
Purpose and System of Contents

Jeong, Yeon

〈East Asian History〉 has been newly selected as an optional history subject i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East Asian History〉 is going to be included in 2nd/3rd year high school syllabus from 2012 after four years' development process.

〈East Asian History〉 is intended to help resolve historic conflicts among Korea/China/Japan by cultivating 'objective and balanced understanding of regional past and present' and 'a perspective toward mutual prosperity and regional peace'. Such an effort of solving the current controversy through history education is a forward thinking and practical initiative in that it is intended to 'build peaceful future that ensures the co-existence of East Asians' and it is pragmatic as the proposal is underlining a very basic approach that is 'mutual understanding.' 〈East Asian History〉 as a regional history will, also, hopefully promote historical interest in students by helping them overcome the chauvinistic nature of 'one-nation history' and the value-free tendency of 'all-inclusive world history' and by opening their eyes to 'world history expanding from myself and providing solution for ourselves.'

〈East Asian History〉 covers mainly four countries'(Korea, China, Japan, and Vietnam) historic facts from prehistoric times to present

ones ; Larger chapters are organised on historic periods and each one proposes 4-5 target points for thematic presentations. Bigger soci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East Asia are the main criteria for larger chapters. And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mainly cover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each period and major contrasts among different locales.

〈East Asian History〉 should focus on, rather than region- or culture-specific superiority, those points ; regional diversity as the basis for East Asian civilization, historic facts(moments) not skewed to the current national interests, the nature of the East Asia which is open to not only the region but the world, the fact that the people in the East Asia have stood against external momentum, and future-oriented perspectives which is useful dealing with various conflicts in the region.

〈East Asian History〉 is still unclear about its true identity although it has been announced as a formal subject. The answer does not seem to appear as an easy one either. For one, it is a totally new approach : this attempt has been deemed 'a case of history studies being driven by history education.' For another, no countries in the entire region has opened this kind of history subject at middle or high school. That is why teachers and researchers are absolutely required to dedicate their enthusiasm in finding the right place of 〈East Asian History〉 in school. This article, as a general scheme of its purpose and contents from a developer, can contribute to prompting a series of such participation.

Keywords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optional history subject, East Asian history, East Asian history curriculum, East Asian history textbook, world history

일본 세계사 교육의 동아시아사

니타니 사다오[二谷貞夫] | 일본 조에츠[上越]교육대학 명예교수

I. 머리말 - 21세기의 아시아와 일본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로 일컬어진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네 마리 용'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면함과 신분 상승 욕구, 교육의 보급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12억 인구의 중국이 엄청난 기세로 '고도소비 사회'의 길로 치닫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나아가 베트남, 필리핀이 그 뒤를 쫓고 있다. '고도경제성장' 정책을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도소비사회'의 추구는 환경 문제와 국내의 경제 격차에서 발생하는 생활 격차의 확대 등 필연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선진공업지대인 일본이나 구미를 대신해 이들 아시아의 나라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충실하게 선진공업지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본은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인한 '격차 사회'에 빠져들었지만, 이러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 무역액의 3분의 1 이상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일본의 대중국

무역액은 미국-중국 간 무역액을 웃돌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가 이처럼 긴밀한 데 반해 정치나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마찰과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때로는 외교 문제로 번져 반일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아시아인들이 일본인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일본 내에서 ‘嫌中’, ‘嫌韓’ 과 같이 아시아에 대해 차별하는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1982년에는 일본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 내용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에서 비판이 일어났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점령 정책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아시아 사람들은 전후 보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 전쟁의 침략성을 둘러싼 일본 장관의 발언이 국내외에서 격렬한 비난을 받아 결국 사임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南京大虐殺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근현대사를 재검토하려는 역사교육 실천 운동이 일어나, 역사교과서의 日本軍慰安婦 서술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전후 50주년을 맞은 1995년 전후에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긍정하는 내셔널리즘이 대두하였다. 東京재판을 ‘승자의 논리로 행한 부당한 재판’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총리가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靖國神社에 참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을 확실히 청산하지 않은 결과,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여, 과거의 전쟁이 잘못됐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관을 ‘自虐史觀’으로 보고,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전쟁을 긍정하고,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다시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정부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그 후 21세기에 들어와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도 인도양에 자위대 함

대를 파견하였다. 2005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다른 7종의 교과서와 함께 다시 검정을 통과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교과서는 결코 채택률이 높지 않지만 이와 같은 내셔널리즘의 대두는 교육 현장에 영향을 끼쳐 역사교육 실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原點으로 되돌아가,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시아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자신의 문제로써 파악하고, 과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 상처에 대해 명확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고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아시아에서 이질적인 他者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호혜평등적 관계를 새로 만들어, 함께 아시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사 교육을 통해 이러한 아시아 시민을 육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II. 일본 역사교육의 세계사 기피 현상

1994년부터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의 '新國際化'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등학교의 歷史地理 과목 중에서 世界史를 필수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실제로는 '세계사'를 이수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텔레비전의 와이드 쇼에서 연일 이를 다루기도 했다. 고등학교의 세계사 未履修 문제는 일본 세계사 교육의 현상을 말해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 미이수 문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선 '대학센터입시'(한국의 수학능력평가시험과 같은 일본의 대학입학시험제도)와 관련이 있다. 세계사는 대학센터입학시험의 선택과목 중의 하나이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대학센터입학시험에서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대학센터입학시험에서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사' 교육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의 '세계사 기피'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 문제의 본질은 교육 그 자체에 있으며 특히 교과교육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세계사 기피'가 언론에서 문제가 됐을 때 지적한 바 있다.¹⁾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까지 역사를 기피하고 사회과를 기피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 기피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역사교육의 내용이 지식이나 단순한 용어를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역사 지식은 단지 수업 전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과서나 참고서에 써 있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단지 지식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나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예로써 받아들여 스스로 역사상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자신의 역사 인식·역사 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교사는 이 문제에 관해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역사 인식이라든가 세계사 인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 단순히 지식을 집적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세계사 학습을 시작하면서 학습자에게 질문하였다. 자신에게 세계사는 무엇인가? 어떤 세계사 구성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사의 이미지에 가까운가?

- ① 다음 설명 중에서 세계사의 정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선택하시오.
1. 정해진 형태의 세계사가 있기 때문에 배우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2. 정해진 형태의 세계사는 없고, 교과서는 世界史像의 한 예에 불과하다.

1) 二谷貞夫, 1988, 「新世界史學習の視點」, 『世界史教育研究』, 弘生書林, 195~208쪽.

과하다.

3. 각국에 자국의 역사가 있듯이, 세계사는 국가 수만큼 있다고 할 수 있다.
 4. 세계와 마주하여 역사를 총괄했을 때 비로소 세계사는 성립한다.
- ② 다음 설명 중에서 세계사의 구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인류의 탄생에서 시작된 인류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되돌아보는 세계사
 2. 현대세계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세계를 밝히는 세계사
 3. 세계 여러 지역과 여러 민족의 역사적 전개를 묘사한 모자이크 형태의 세계사
 4. 민중과 민족의 공존과 연대의 역사를 밝히는 세계사

이 두 가지 설문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사의 정의가 다양하며, 세계사를 구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역사 그 자체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역사를 배우는 학생 모두 일본과 세계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적 과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역사의 격변에 예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사적 감각을 키울 수 없다면 역사의 여신 뮤즈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III. 방법으로서는 동아시아 세계사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을 일깨우는 세계사 교육을 위해서는 ‘세계사를 다루

는 방법'으로서 세계사 구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종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세계사 구성은 종래의 유럽 중심주의 世界史觀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들은 明治시대 이후 이어져온 '脫亞入歐'적 세계사 인식²⁾을 가지게 되었다. 즉 세계사 교과서는 서양사와 동양사를 모자이크 형태로 짜맞추었으므로, 일본 국민은 선진=서양=구미, 후진=동양=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라는 구조로 세계사를 인식하였다. 그 결과 통일적이고 균형감 있는 세계사 인식 대신에 분열적인 세계사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현행 교과서에서도 세계사 학습은 인류의 탄생이나 이집트문명과 메소포타미아문명 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서구인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구조다. 明治시대 이후 일본인은 '따라잡자, 추월하자!'라는 구호하에 서구사회를 목표로 근대화=공업화를 추진하면서 19세기 구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사 인식과 같은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구미인들의 세계 인식과 '극동'에 위치한 일본열도에 사는 주민, 또는 민족으로서 일본인의 세계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이 독자적인 근대화를 모색하여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려면 일본열도를 포함한 세계사적 환경을 다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사를 유럽과 아시아라는 '왜곡된 이분법'으로 보는 역사 인식³⁾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세계사는 이질적인 여러 지역의 민중과 민족이 공존하며 연대하는 복합적 動態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의 세계사는 지역세계로 존재하는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세계라는 개념은 上原專祿이 1960년대에 제창하였다. 그는 지역세계를 국가를 초월하여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곳, 구체적으로 서로 매개하고 있는 곳, 그리고 서로 반발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세계를 형성하고

2) 三木瓦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사 인식은 현대 일본인을 뿌리 깊게 지배하고 있는 너절한 세계사 인식이다(三木瓦, 1984, 『世界史のなかのイスラム世界』, 『イスラム世界の人びと』1 總論, 東洋經濟新聞社, 2~9쪽).

3) 小谷汪之, 1985, 『歴史の方法について』, 東京大學出版會.

있는 곳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上原專祿은 세계에 13개 지역세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13개 지역세계 중의 하나로 동아시아 세계가 들어 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세계에는 중국·조선·베트남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세계는 북방유라시아 세계, 동남아시아 세계, 태평양 세계와 접해 있다.⁴⁾

그러나 이 '동아시아 세계'는 고정적이며 靜態的인 지역세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동아시아 세계'에는 해상교통을 통해 성립된 광역적인 海上世界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슬림 상인과 다우(dhow)선 활동을 중심으로 성립된 '인도양 세계'가 남아시아 세계와 동남아시아 세계, 아프리카 세계와 중첩되듯이 무장 상인집단, '倭寇'의 활약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해상세계'는 동남아시아 세계와 중첩되고 있다.⁵⁾

또한 W. 윌리엄스의 『콜럼버스에서 카스트로까지(From Columbus to Castro)』에 묘사된 카리브 海域史처럼 그 지역 사람들의 주체 형성의 장으로서의 지역세계도 설정될 수 있다.⁶⁾ '倭寇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海上民 세계를 포함하였던 '동아시아 海上世界'에서는 14~16세기에 봉건체제에 의한 華夷관계를 매개로 하여 琉球王國이 활발히 교역 활동을 전개하였다.⁷⁾

필자는 일본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당연히 동아시아 세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이 지역이 일본과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은 아니다. 일본인 개개인이 자립한 주체적인 일본인으로서 世界史를 인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자주적인 世界史像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는 '中央 중심의 일

4) 上原專祿은 수정을 시도하면서 1963~1973년에 13개 지역세계를 가설적으로 제기 했는데, 1973년에 다음의 13개 지역으로 정리했다.

1. Antarctica, 2. Oceania, 3. Black Africa, 4. Ibero America, 5. North America : U.S.A. Canada, 6. North Eurasia : Soviet, Mongolia, 7. Nourth Europa, 8. East Europa, 9. West Europa, 10. North Africa - South West Asia, 11. South Asia, 12. South East Asia, 13. East Asia

5) 二谷貞夫, 1985, 「インド洋世界の展開」, 앞의 책, 138쪽.

6) 二谷貞夫, 1985, 「十九世紀ヨーロッパ的世界史像の批判」, 앞의 책, 82~83쪽.

7) 琉球王國은 술루[蘇祿]와 같은 필리핀제도의 한 왕국과도 교류가 있었다.

본사, '國史 중심의 일본사'로 인한 종속적인 역사 의식과 역사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일본사 인식의 과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필자가 '地域'으로부터 파악하는 일본사나 '지역'으로부터 생각하는 세계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근대 역사는 일본열도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주민이 각각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 및 민족의 형성 과정을 가졌다고 하는 가설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本州 중서부, 本州 동북부, 北海道, 沖繩諸島 등 4개 정도의 지역세계를 설정해 본다면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열도사도 역동적인 歴史像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⁸⁾ 즉 일본사와 세계사의 통일적 파악을 과제로 삼는다는 것은 일본열도의 여러 지역이 각각 독자적인 동아시아 세계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⁹⁾

IV. 일본사와 세계사의 통일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 세계사의 구성

일본에서 세계사로서 동아시아사를 구성할 때에는 '國境을 벗어나 생각하는 일본사'라는 발상과 관점이 필요하다.¹⁰⁾ 왜 國境을 벗어나서 동아시아 세계에

8) 2003년에 간행된 吉川弘文館의 『日本の時代史』(全30卷)는 제18권을 '琉球·沖繩史の世界', 제19권을 '蝦夷島と北方世界'로 하여 지역사 중심의 일본사를 구성했다.

9) 文化圈에 따라 설정된 지역세계도 있다. 西嶋定生은 文化圈으로 '동아시아 세계'를 설정하였는데,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있는 조선·일본·베트남 및 몽골고원과 티베트고원 중간에 위치한 서북회랑지대 동부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지만, 이 영역은 유동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역사적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지표로 한자문화·유교·율령정치·불교를 들었다(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と日本史』,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0) 최근 국경을 초월한 역사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加藤章 編著, 2004, 『越境する歴史教育-國境を越えて, 世代を越えて』, 教育史料出版會; 劉傑·三谷博·楊大慶 編著, 2006, 『國境を越える歴史認識-中日對話の試み』, 東京大學出版會 등 참조.

서 일본사를 구성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일본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원래 인간이 살아온 역사는 세계사에 집약되며 인류사와 일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단지 근대국가의 국경 개념을 투영한 국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근대국가의 王朝와 帝國 등 영토 관념의 境界를 고려한다는 것이며, 전근대의 국가 개념까지도 고려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경을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세계를 설정할 경우에 어떠한 역사적 무대를 설정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필자가 집필자로 참여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예를 들어보겠다.¹¹⁾ 이 교과서는 上原專祿이 제창한 13세기 몽골의 등장을 세계사의 기점으로 놓는 13세기 세계사 기점론¹²⁾을 토대로 시대를 구분해 동아시아 세계사를 구성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동아시아 세계’, ‘북방유라시아 세계’, ‘유럽 세계’, ‘동남아시아 세계’, ‘남아시아 세계’, ‘태평양 세계’, ‘중동세계’, ‘아프리카 세계’, ‘아메리카 세계’ 등 9개 지역세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조선·베트남·일본을 포함하며, ‘동남아시아 세계’, ‘태평양 세계’, ‘북방유라시아 세계’와 접한 지역세계로 보았는데, 동아시아 세계에 관한 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동아시아 세계사의 무대, 황하문명의 탄생, 춘추전국시대의 사회, 동아시아 각국의 변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 秦의 통일, 漢과 동아시아, 호족의 대두, 漢대의 문화와 문화교류)
2. 동아시아 세계의 전개(기마민족의 활동, 문벌귀족의 형성, 불교와 도교, 조선, 일본, 베트남, 율령국가의 형성, 隋·唐대의 문화와 문

11) 二谷貞夫(外), 1978, 『高等學校世界史』, 實教出版, 제1판.

12) 上原專祿은 岩波市民講座에서 1965년 10월 ‘日蓮とその時代—世界史認識の意味と方法の問題によせて’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연하였고, 1966년 5월부터 7월에는 3회에 걸쳐 「モンゴル人の『世界征服』と十三世紀ユーラシア世界—日蓮認識の意味と方法によせて」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여 13세기 세계사 기점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1968년에는 「世界史の起點—世界史概念の明確化のために」(上原專祿著作集 25 『世界史認識の新しい課題』, 評論社, 1987)를 발표하였다.

화교류, 동아시아 각국의 동향)

3.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울령국가의 동요, 당말 5대, 遼, 일본, 고려, 베트남, 宋朝의 성립과 화폐의 대두, 경제·문화의 발전, 유·불·도 삼교의 발전)
4. 몽골 민족의 활동과 동아시아(몽골제국의 출현, 元朝의 성립과 동아시아, 元의 사회, 동서의 교류)
5. 14~16세기의 동아시아(변화하는 동아시아, 왜구의 활동, 明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 조선, 베트남, 琉球, 15~16세기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정세의 전환)
6. 淸과 서방세계(만주족의 발전, 淸과 러시아, 淸의 사회와 문화, 동아시아와 유럽)

원래 이 교과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거쳐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부성이 제시한 이 세계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조건은 19세기 이후는 횡적 구성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문부성의 검정 의견은 지역 세계사로 서술할 경우, 여러 지역세계의 경합으로 말미암아 역사 서술이 중복되고 또한 페이지 지시(관련된 내용이 어느 페이지에서 또 나오는지 표기한 것)가 많아져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복잡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 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교과서의 19세기 이후는 기존의 구미 주도의 세계사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기존의 유럽 중심사관적인 세계사 구성, 즉 인류의 탄생 → 4대 문명(이집트·메소포타미아·인도·중국 문명 등) → 그리스·로마 문명 → 중세 유럽의 형성이라는 유럽인의 세계사관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부터 서술하기 시작한 세계사'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동아시아 세계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세계사'를 창조하고자 하였다.¹³⁾ 동시에 이 교과서는 '서양 안경'을 벗고 여러 지역세계

13) 上原專祿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上原專祿監修高校世界史』(實教出版社)를 완성하여 개정 작업을 거쳐 문부성에 제출하였으나 1957년 검정에 불합격하고 다시

를 대등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아시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등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 이유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사 학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과제¹⁴⁾ 중에서 특히 차별과 압제를 없애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교과서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구명하기 위해서였다. 그 방법으로 동아시아사는 일본사와 세계사의 동시 구명을 매개하는 場이며, 일본사의 對象化·相對化를 시도하는 場으로 설정되었다. 일본사와 세계사의 모순이 두드러졌던 시기를 동아시아 세계사에서 구명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였다. 전근대의 경우에는 기마민족이 활발히 이동한 4~5세기, 唐末 五代 변혁기인 9~10세기, 몽골이 일본을 來襲한 13세기,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과 대항해시대 등을 들 수 있다.

개정된 원고도 1958년의 검정에도 불합격하였다. 이후 이 교과서는 다시 개정 작업을 거쳐 上原專祿 編, 『日本國民の世界史』(岩波書店, 1960)로 간행되어 이후 일본 세계사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동양 문명권부터 서술하였으며, 동양 문명권 중에서는 중국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명권에 주목하여, 일본 문명이 동아시아 세계의 동향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적고 있다.

- 14) 上原專祿은 오늘날의 문제를 세계사-일본사 속에 서술해야 한다고 하였다(上原專祿, 1958, 『歴史學の概念』, 『歴史學序說』, 大明堂, 87쪽). 그리고 오늘날 일본 대중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문제로 생존의 문제(평화와 안전의 문제), 생활 문제, 자유와 평등 문제, 진보와 번영 문제, 독립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上原專祿, 1963, 『アジア・アフリカ 研究の問題點』, 『思想』, 1963年 6月號, 39~41쪽). 이들 문제는 현재 세계사 교육에서도 역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V. 전근대 동아시아사의 구성

그렇다면 ‘日本’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기 전에 동아시아 세계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4~5세기 동아시아 세계사를 예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일본은 자연적인 국경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본인들은 처음부터 ‘일본’, ‘일본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7세기 후반 또는 8세기 초기까지는 ‘日本’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본열도에 통일권력을 세우려고 한 ‘大和政權’은 있었어도, 하나의 ‘일본’, ‘일본인’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¹⁵⁾ 즉, 8세기 이전에는 ‘일본’, ‘일본인’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일본열도 중심부에 고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도 그 지배 지역은 일본열도 전체에 미치지 않았다. 沖繩의 경우에는 琉球 왕국 이전까지 역사가 독자적으로 전개되었고, 北海道·千島 등 蝦夷 세계에서는 아이누[우타리]의 역사가 전개되어 북방유라시아 세계가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 동아시아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일본열도는 균질한 역사를 전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明治 이후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日本大和單一民族國家’觀에 물들어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중앙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바라보는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일본 야마토단일민족국가관을 불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본 전근대의 역사는 동아시아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교류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바다를 매개로한 交流圈·生活圈이 존재하였다.

15) 일본 사학자 網野善彦은 ‘처음부터 일본과 일본인이 있었다’는 역사관을 극복하고자 제창하면서, 8세기 초 왜국에서 일본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일본인’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網野善彦, 2000, 『日本の歴史-‘日本’とは何か』, 講談社, 20~21쪽).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일본열도의 역사 인물은 邪馬臺國의 여왕 卑彌呼이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이 라는 관점에서 邪馬臺國과 卑彌呼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동아시아 세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邪馬臺國의 여왕 卑彌呼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에 등장하기 때문에 邪馬臺國이 魏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한반도에 설치된 帶方郡이 없었다면 卑彌呼는 魏에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 이 무렵에 한반도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삼한의 辰王이다. 진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진왕은 비미호 여왕과 동시대 사람이다.¹⁶⁾ 비미호 여왕 시절에 네 번에 걸쳐 魏에 사신이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은 비미호 여왕이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와 帶方郡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삼한의 움직임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고 있어, 삼한의 진왕과 비미호 여왕은 직접 회견한 적은 없지만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 ‘광개토왕비’나 ‘왜의 5왕’을 언급할 때도 고구려나 왜왕을 동아시아 세계 속에 포함시켜 서술해야 할 것이다.¹⁷⁾

고대 한일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日本大和單一民族國家’觀을 뒷받침하는 ‘記紀史觀’의 극복이다. ‘日本大和單一民族國家’觀이나 ‘記紀史觀’은 근대 역사에서 일본인의 사상을 형성하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任那日本府’ 문제가 포함된 4·5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사에서 ‘記紀史觀’을 극복해야 한다.¹⁸⁾

일본의 임나 지배를 주장한 任那日本府說은 한국 병합이나 조선총독부 통치와 같은 일본 근대의 대륙침략과 맞물려 있다. 근대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民族으로서 日本人이 압박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이나 의식을 반영

16) 武田幸男, 「三韓と辰王」, 世界の歴史 6 『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289~294쪽.

17) 武田幸男, 「高句麗と東アジア」, 앞의 책, 304~332쪽 참조.

18) 나아가 일본의 교과서나 사전 등에 보이는 「일본사 연표」에서 ‘663년 白村江 전투, 일본, 한반도를 포기’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내용은 ‘記紀史觀’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하여 고대를 파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武田幸男 교수가 ‘임나 일본부의 존재 여부 문제’와 같은 논점은 이미 거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듯이, 현재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¹⁹⁾ 또한 鈴木靖民 교수는 임나는 원래 金海港이라는 지명이 지역 일대의 명칭, 즉 國名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任那加羅를 金官加羅로 보고 같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鈴木靖民 교수의 해석대로, 『日本書紀』의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후세에 만들어낸 것이며, 임나는 지역의 명칭이거나 이 명칭을 확대해 여러 나라의 총칭처럼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4·5세기 일본열도의 나라는 왜 또는 왜국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 연구에서는 가라나 임나 대신에 『삼국사기』 등에 기재된 가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야사는 서기 562년에 끝나는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신라·백제·고구려 등과 함께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313년에 고구려 등의 공격으로 樂浪郡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을 무렵에는 이미 존재했고, 왜의 小國과 왕래도 있었다.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가야 여러 나라들의 실상이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지역의 발굴로 밝혀지고 있다.²¹⁾

4·5세기 동아시아 세계사는 ‘가야와 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열도, 한반도, 중국, 베트남으로 그 서술을 확대하고, 나아가 다른 여러 지역세계와의 관련에 대해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나가야 또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首長들이 연합하여 군사 활동이나 외교 활동을 하였을 때에 왜의 정권과도 일찍이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왜의 정권은 점차 일본열도에서 통일적인 군사권·외교권을 발휘하는 왜의 왕권으로 발전하여 대화정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왜왕권이 성립한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친 시기이다. 5세

19) 武田幸男, 1992, 『文獻よりみた伽耶』, 『よみがえる古代王國-伽耶文化展』, 東京國立博物館, 14~20쪽.

20) 鈴木靖民, 1993, 『伽耶史の展開と倭』, 『巨大古墳と伽耶文化』, 角川選書.

21) 武田幸男, 『百濟·新羅と加羅諸國』, 『世界の歴史 6 『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333~361쪽.

기에 이른바 ‘왜의 5왕’이 官制的 질서라는 형태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 양쪽의 군사적·외교적 지배를 宋 왕조에 요구한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통해 일본열도 내에서 권력을 확립하고, 한반도에서는 삼국과 경합하면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상 4~5세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구성해 보았는데, 그 밖에 전근대 동아시아사도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근현대 동아시아사의 구성

전근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근현대 동아시아사에서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중시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일 역사교육자들의 교류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난 1995년에 자신이 그동안 느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에스노센트리즘(ethnocentrism, 자민족중심주의) 문제
일본인의 자기인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이 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이질적인 타자’를 배제하는 의식을 明治 이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화·균질화·동질화 교육 속에서 대국주의·패권주의가 ‘국제화’에 편승해 고개를 들고 있다.
2. 일본인은 침략·가해·식민지 지배 등 타민족을 지배한 구체적 사실을 너무 모른다.
한일 양국에서 역사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예로는 豊臣秀吉·이순신·김충선(일본명 사야카), 안중근과 伊藤博文, 유관순, 윤봉길과 重光葵 등이 있다.
3. 냉전체제 속에서 38도선(휴전선)이 일본열도에 그어지지 않았다는 점

강화도에서 총을 든 병사를 보았을 때, 북한 측을 쌍안경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철조망과 감시대를 보았을 때, 38도선(휴전선)이 일본 열도에 그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4.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표현인가! 또한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이 납세의 의무는 있지만 주권자로서 선거권, 被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재일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일외국인의 근원인 이른바 올드커머(Old Comer,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들)와 자유롭고 대등하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인 개개인의 자각을 일깨우는 교육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5. 왜 한국사는 민족적 관점, 내셔널리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지배는 말을 빼앗고 창씨개명으로 족보를 부정했다. 역사도 빼앗았다. 역사학 연구가 독자적으로 시작된 지도 이제 50년이 되었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실은 애국심이라는 숭고한 윤리와 경박한 내셔널리즘은 다른 것이다. 왜 한국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를 내걸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戰後 역사학 연구에서는 皇國史觀이 부정되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주류를 이루어 계급적 분석이나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민족적 관점은 역사학 연구에서도 역사교육에서도 금기시했다. 전후 학습지도요령에서 시작된 社會科 歷史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를 탄생시킨 것은 좋았지만, 역사교육에서 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3分科 체제와 왜곡된 일본사 인식, 세계사 인식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6.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북한을 '정말 가까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식 있는 양질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7. 일본인은 왜 가해 행위나 전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도록 해온 구조에 문제가 있다. 우리들 일본인에게는 침략전쟁의 패전과 식민지를 포기한 50주년, 재일한국인과 한국 친구에게는 항일독립투쟁 승리와 식민지 해방 50주년인 올해, 역사교육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역사교육자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 역사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연구할 때에 加害와 피해,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려면 한층 더 친밀한 양질의 학술교류와 우호적인 친선교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역사교육학자 자신들이 상호 교류해야 할 것이다.²²⁾

필자는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 세계사 교과서 구성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미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대응
베트남과 프랑스, 아편전쟁, 태평천국 혁명, 메이지유신, 조선의 정세
2.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메이지유신 후의 일본, 중국의 양무운동, 청프전쟁과 베트남, 개국 후의 조선,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중국 침략의 격화, 의화단 봉기와 제국주의
3.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러일전쟁, 아시아의 민족운동, 신해혁명과 몽골,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4. 동아시아 민족운동의 발전
하르하전투와 쌀 소동, 3·1독립운동, 5·4운동, 베트남의 민족운동
5. 1920년대의 일본과 중국, 조선
관동대지진, 중국 국민혁명, 중국 동북부와 일본, 몽골과 조선, 세계 공황과 동아시아
6. 아시아 태평양전쟁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일본의 파시즘, 중국과 조선의 항일운동, 중

22) 1995년 7월 31일, 『新瀋日報』에 보낸 글.

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종결의 움직임, 일본의 패배와 조선과 베트남의 광복

7. 신중국의 탄생과 동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한국전쟁, 점령하의 일본, 대일강화조약, 동아시아의 새로운 움직임

8. 1960년대의 동아시아

1960년 안보투쟁, 한일조약의 성립, 중소대립, 베트남전쟁

9. 글로벌 시대의 현대 동아시아

문화대혁명에서 개혁·개방으로, 고성장의 한국, 고립되는 북한, '경제대국'에서 '군사화'하는 일본, 동아시아 세계의 상생을 위하여

이상 일본의 세계사 교육에서 동아시아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고 동아시아사를 구성해 보았다. 필자는 일본의 세계사나 일본사는 모두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세계사 속에서 서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사 속에서 세계사와 일본사가 통일됨으로써 학생들은 통일적이고 균형 있는 세계사 인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East-Asia History teaching in the World
History Education in Japan

Nitani Sadao

The world history teaching in Japan is now oriented to help a learner to make images of the world history by himself, by means of teaching him to escape from the images inforced by the western world-centered viewpoint.

In the world history teaching, therefore, the East-Asia history is now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student, as a citizen of the worl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rea(East-Asia) surrounding his country(Japan), including the histories and the various ways of life(cultures) of the East-Asian countries. The aim of the East-Asia history teaching is to make a student a world citizen to cherish the liberty and peace of his country and the world in relation with it.

How should be constituted the program of the East-Asia History teaching?

For periodization, I suggest that it may be divided into two parts :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pre-modern history, that is, from the Ancient history to the history just before the modern world.

And I think that the following themes are applicable to that periodization :

1. Interrelationship of the East-Asia of the 4th and the 5th

centuries

2. Transition period, the 9th and the 10th centuries, of the East-Asia

3. “Pax Mongolia”(“Peace of Mongols”) in the 13th century

4. The Great Navigation Age of the 15th and the 16th centuries

5. The age of the Envoys from the Chosun Kingdom(the 17th and the 18th centuries)

6. The Age of the western impact

7. Aggres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reactions of the Asian countries

8. Toward the peace and the coexistence of the East-Asia

Keywords

East-Asia History, world history teaching, western world-centered viewpoint, East-Asia history teaching, images of the world history

中·西에 가린 동아시아

-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 인식 -

오병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지구화 현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국가 간·지역 간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동시적인 정보 이동으로 각 국가와 지역들은 전례 없이 긴밀하게 통합되었다. 국가·지방 차원의 문제가 곧바로 국제문제로 비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스스로의 제도·관습과 언어·사유 방식을 송두리째 異國式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횡행하게 될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지구적 차원의 식량, 환경,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각종 분규, 그리고 ‘주변부’ 소시민들의 가속적인 생활 붕괴, 특히 ‘테러와의 전쟁’ 이후 만성화된 각종 국제전과 민간인에 대한 납치·학살 등은 두드러진 예들이다.

‘인류라는 種의 운명이 신 ‘제국’의 首長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위협천만한 시대라는 평화주의자들의 경고, 역시 지구화 현상의 일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¹⁾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 유산을 안고, 곧장 세계체제에 편입된 꼴이어서, 그 폐해도 전면적이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사회에 만연된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도 그러하지만, 극단적 개방을 지향하는 FTA 체제의 출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를 등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 효과의 극복 없이는 향후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안전·행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서를 모색하면서 이웃과의 소통과 공생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최근 논의이다. 논의의 배경과 발상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천하질서의 근대적 전환 이래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동아시아 근대의 경험을 반성하면서 경제, 안보, 환경 등 지역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질서를 모색함으로써 지구화가 초래하는 위험성들을 다소나마 완화시켜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역내 개별 주체들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논의를 추동할 수 있는 현실적 기초이자 가능성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이래 일반화되어온 일국적 사고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 역내 민간인들의 지역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는 우선 중국인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은 우리의 인접국이자, 지역적인 강국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역사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중국 내에서 풍미한 강대국 의식이 팽창주의적 국가주의로 발전할 가능

1) 정현백, 2001,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역사교육』 80, 90~94쪽.

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국인들이 근대 이래의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문명사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계와 동아시아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자 관건이다.²⁾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근대적 자아형성 등의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차분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의 중등학교 역사교육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역사교육은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추구하는 국민교육의 핵심 기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시·공간과 주체를 달리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인식·해석함으로써 비판적인 세계 인식을 추구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교육은 그 국가주의적 경향성과 함께 그 극복 가능성을 함께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교육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논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분석이 진행되었다.³⁾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중등학교 역사교육이 추구하는 중국 국가권력의 현실노선을 해명하고, 한국 관련 서술과 한국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심 주제였다. 또한 최근 교육과정 개혁과 맞물려, 그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⁴⁾ 그러나 역사교육의 고유 기능 중의 하

2) 이와 관련하여 왕휘는 새로운 동아시아 인식을 위해 사회주의적 연대의 전통 복원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식인 담론 중심이고 간헐적인 것이어서 국민 일반의 인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汪暉, 2003, 「아시아 상상의 계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3) 오병수, 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 ; 박장배 등,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 김지훈,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23 ; 박장배,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중화민국인민공화국 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 ; 김유리, 2005,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 개혁」, 『역사교육』 96.

4) 필자 역시 현행 교육과정이 획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오병수, 2003, 「중국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과 자국사 교육의 편제 : 『교육과정표준』 체제의 수용을 중심으로」, 박장배 등,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

나인 국제 이해, 특히 일국을 넘어선 사유공간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탐구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근대 이래 중등 역사 교육과정을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학교수업의 지침을 넘어 국가 사회의 상식을 반영하며, 특히 역사 교육과정은 인류 전체 경험을 특별한 시각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단위로 구별하여 내용을 편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근대 이래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편제 방식을 계통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근대세계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 인식 체계가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中西論, 중화민족주의, 국제주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방식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중국이 국민적 정체성 창안 과정에서 타자화해 온 세계 인식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중국 역사교육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인식과 시민교육의 실재를 이해하는 한편 우리의 동아시아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의 전제 : 중서 이원론의 기원과 계보

수년 전 한국의 한 지식인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중국에 아시아는 있는가?”라

과서』, 고구려연구재단.

5) 물론 이처럼 작업 대상을 근대 이래 역사 교육과정을 두루 포괄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구체적인 국가들이 아닌 지역이자, 인식 틀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계통적인 성찰이 필수적이다.

는 도발적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⁶⁾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이 질문의 전제였다. 특히 域內 다른 국가를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他者化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유효한 듯하다. 최근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한국과 일본의 무성한 논의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 중국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중국인들이 한국·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無心한 것은 아니었다. 지정학적 위상과 관련되는 것이겠지만, 東北을 포함하여 한국·일본 등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은 지대하였다.⁷⁾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를 인식하고, 표상하는 주체의 조건과 방식이 한국·일본의 경우와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지역단위 또는 타자화의 대상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표상은 상당히 부진하였던 것이다.⁸⁾ 이런 까닭에 서구적 근대에 대한 성찰 차원이든, 또는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그에 기초한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 차원이든, 동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의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동아시아 인식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아시아란 개념의 탄생과정을 반추하면서, 근대 이래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과 그 표상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 사고와 활동을 통해 규정되는 사회적·역사적 산물이고, 또 '동아시아', 또는 '동양'이라는 개념 역시 서양에서 창안된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동아시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인식 주체의 세계

6) 백영서, 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

7) 유용태, 2006, 「중화민족론과 동북의 지정학: 동북공정의 논리근거」,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오병수, 2006, 「중국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강역문제: 양계초·장병린의 만주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

8) 孫歌, 2003,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작과비평사; 왕휘, 이욱연 등 옮김, 2003, 「아시아 상상의 계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작과비평사; 葛兆光, 2006, 「誰的思想史?爲誰寫的思想史」, 『西潮又東風』, 上海古籍出版社.

인식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변용·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⁹⁾

사실 동아시아, 동양 개념의 등장은 서구의 침략에 따른 천하질서의 해체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근대적 국제질서 형성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각국은 나름의 국민국가 건설방략과 그에 기초한 국민적 정체성 창안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정책을 투영하여 ‘동아시아’를 모색하고 창안하였다. 일찌감치 ‘脫亞入歐’를 국가건설 노선으로 채택하고, 서양·일본과 구별되는 ‘동양’을 창출한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¹⁰⁾ 일본이 발명한 동양은 자국을 제외한 기왕의 천하세계이자, 自國보다 未開한 문명화의 대상을 의미하였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서구의 침략 논리를 내면화하여, 지속적으로 ‘야만’을 창출함으로써, 스스로를 문명세계의 일원으로서 규정짓고자 했던 일본식 국가 건설과정의 산물이었다.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 역시 유사하게 천하체제에서 근대 국제질서체제로, 제국에서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동양을 창출하고, 세계를 서양·동양·일본으로 삼분하여 표상한 것과 달리, 중국은 중·서라는 이항 대립적 구조로서 세계를 이해하고 표상하였던 점이 다를 뿐이었다. 보편으로서 서구 근대를 전제하면서도, 스스로를 그와 대등한 또 하나의 보편으로 상정함으로써, 천하 해체 이후 위축된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¹¹⁾

이러한 발상은 만청 시기, 중화질서의 동요와 함께 등장하였으니, 이른바 ‘중체서용’론이나, ‘서학’·‘중학’ 논쟁이 그것이었다. 특히 중국 문명을 서구

9) 아리프 딜릭, 1995,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43~44쪽; 孫歌, 2003, 앞의 책, 61쪽; 정용화, 2006, 『한국의 지역인식과 구상: 동양평화구상』,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38쪽.

10) 오병수, 2001, 앞의 논문.

11) 물론 일시적으로 ‘동아’나 ‘동방’의 틀 속에서 중국을 논의한 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청일전쟁 이후 ‘瓜分の 위기’ 국면에서 등장한 동아시아 연대론이나,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설정한 논의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본은 서양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적 차원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중서 논의의 보조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오병수, 2004, 『청말 중국 지식계의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 『아시아문화』 21.

문명과 대립시키고, 그것을 體用, 本末의 논리로 전화시켜 개혁 이데올로기로 만든 것이 바로 양무변법의 논리였다. 상업문명인 서구와 농업문명인 亞洲=중국을 대비시킨 鄭觀應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무술변법 이후였고, 오사기 ‘東西文化論戰’이나, 1930년대의 ‘中國文化本位論’ 등의 논전을 거치면서 확산·심화되었다.¹³⁾ 문혁 이후 중국에서 유행한 이른바 ‘문화열’ 현상이나, 최근의 보수주의 사조와 국학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현상이다. 서구의 침략에 따른 중화제국 질서의 동요와 대응과정이 논의의 출발이었고, 따라서 서구가 선취한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어떻게 중화질서를 재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근대 국가 건설과 그와 연관한 중국의 정체성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중과 서의 합의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은 시기와 논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것은 器物, 制度, 사유방식 등 제국통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문명론적 차원으로 포괄하면서, 관련 논의와 방책을 ‘中體西用’ 또는 ‘西體中用’, ‘中西互補’, ‘全般西化’ 등으로 표상해 온 것이다. 따라서 ‘중과 서’라는 용어 역시 일종의 지역적 개념이자 가치, 그리고 특정한 방식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개념이었다.¹⁴⁾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등과 같은 세계사적인 변동기일수록 더욱 활발하였다. 그것은 보편으로서 서구=세계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중서 상호 보완이나, 절충 차원이 아니라 서구=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또는 중국 문명론이 일찍부터 모색되고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大同의 논리와 그 연장에서 수용된 초기 사회주의 인식도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2) 鄭觀應, 1982, 「盛世危言·商務三」, 『鄭觀應集』上, 上海人民出版社, 614~616쪽.

13) 羅榮渠, 1990, 「中國近百年來現代化思潮演變的反思」, 『從“西化到現代化”:五四以來中國的文化趨向和發展道路論爭文選』, 北京大學出版社;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전사분과, 1992, 『현대중국의 모색』, 동녘.

14) 羅榮渠, 1990, 앞의 논문.

梁啓超·梁澗源 등 이른바 ‘東方文化派’의 논리에서 현대의 新儒學에 이르는 保守主義의 논리 역시 그러하다. 서구 근대를 상대화하면서 중국 문명을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긍정하는 점은 한 가지였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東西文化論戰, 科玄論戰에서 알 수 있듯이 西化派 등 문화 급진주의자들의 비판이 뒤따랐다.¹⁵⁾

이 같은 中西文化의 異同, 優劣을 비교하는 형식의 다양한 논의는, 결국 서구적 근대의 변화에 비추어 자기 전통의 재구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화[西化]가 강조될수록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보수적 논의 역시 선명하였다. 혁명의 논리(마르크스주의)와 全般 西化에 맞선 1930년대의 중국 문화 본위론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한편에서 유행한 국학과 보수주의 역시 같은 맥락이다. 애초 박래품으로 비판받던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결국 반서구(제국주의·자본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자본주의=서구적 근대에 저항적인 농민의 지지를 받아 혁명에 성공하게 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당연하지만 이처럼 중과 서의 비교 차원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사유 단위로서 동아시아를 표상할 여유는 없었다. 이 점은 중국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문혁 이후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 모색과정으로 나타난 文化熱 현상이, 儒教資本主義論 등 지역 단위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1990년대 이후 중국 사회 차원의 國學熱로 환원되어버린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다.¹⁶⁾ 특히 이 같은 보수주의는 최근 중국의 대형 문화정책의 경우처럼, 대국의식[盛世意識]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중화민족주의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⁷⁾

15) 梁啓超, 1960, 『歐遊心影錄』, 『飲冰室專集』 23, 臺灣中華書局; 鄭師渠, 2001, 『歐戰後中國社會文化思潮研究』, 『在歐化與國粹之間: 學衡派文化思想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6)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사조에 대해서는 鄭大華·賈小葉, 2005, 『20世紀90年代以來中國近代史上的激進與保守研究述評』, 『近代史研究』 2005年 4期.

17) 전인갑, 2007, 『현대중국의 ‘지식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동북공정 이후, 우리가

그런데 중국인들은 왜 이 같은 중·서 이원론적 표상 방식에 집착하였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정학적 위상이다. 중국은 광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아시아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서, 지역 인식 자체가 여러 나라와 상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은 실제 현재 중국의 공간 인식에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표상 방식에 내장된 천하관의 문제이다. 알다시피 천하관은 자신과 주변을 화와 이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표상하는 전통적인 공간 인식체계였다. 특히 중화의 정치적·문화적 우월성을 기초로 四夷를 차별화하는 것이 기본이었다.¹⁸⁾ 또 천하관은 화와 이를 일원적인 원리 속에서 포괄하고, 모든 정치·도덕적 정당성을 황제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대등한 상대 문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리적으로 평등한 국가로서 구성되는 근대 국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인식체계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천하관은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내밀하게 작동하였다.²⁰⁾ 이는 내적으로는 중화민국의 건국과정에서 건국 주체인 중화민족을 창안·형성하고 강역을 위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에서 이미 드러났다. 즉 청조의 강역과 인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건국된 중화민국은 국가건설의 주체로서 오직 공화에 기초한 중화민족을 창안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漢族에게만 전유된 것이었고, 만주·티베트·몽골·위구르 등 제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하나의 '支族'이자 국민화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 거주 공간은 본

계의 과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18) 물론 화와 이로 표상되는 천하의 범주는 가변적이었고, 그에 기초한 정치질서의 작동 시스템은 역시 매우 복잡적이었다. 이성규, 2005,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역사학보』 186; 王柯, 2001, 『中華帝國システムにおける‘華’と‘夷』, 『中國研究月報』.
- 19) 화이론에 기초한 천하체계를 현재의 국제질서체계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같은 차별성은 간과하고 있다. 趙汀陽, 2003, 『“天下體系”: 帝國與世界制度』, 『沒有世界觀的世界』, 中國人民大學出版社; 汪暉, 2004, 『現代中國思想的興起』, 北京: 三聯書店.
- 20) 유용태, 2006, 앞의 논문, 203~213, 216~217쪽; 오병수, 2001, 앞의 논문, 47~49쪽.

부와 차별되는 羈縻 또는 植民의 공간으로 포섭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多民族統一國家의 논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邊疆·邊地, 그리고 변강민의 예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국가 건설과정은 곧 이 같은 支族의 漢化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일본의 국가 건설과정이 지속적인 ‘야만’의 창출과정이었다면, 중국 역시 비한족=변강민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화=同化의 대상’을 창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²¹⁾ 특히 국민정신 총동원체제의 구축과 국민적 단결의 논리가 앞선 항전 시기, 또는 문혁시기에는 이러한 ‘支族의 漢化政策’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매개로서 민족 융합을 주제로 한 역사화가 진행되었으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역사공정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변용된 화이론은 당연히 근대 동아시아 인식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그것은 공간을 표상하는 용어인 ‘중국’의 다층적 함의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단순한 국호가 아니라 인종과 강역, 문화 등의 함의가 다양한 용어였기 때문이다. ‘중’의 범주 자체가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경, 또는 경계로서 포착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 만큼, 중국 너머 동아시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만주를 夷狄으로 부정하는 대신, 朝鮮을 諸夏의 정통으로 긍정하고, 중국화를 주장했던 章炳麟의 논리에서 바로 근대로 연결되는 화이론을 엿볼 수 있지만,²²⁾ 이를 당대의 국민국가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주의로 발전시킨 것은 梁啓超였다. 양계초는 특히 중국과 아시아 각 민족 간의 交涉으로 구성되는 지나 문명권을 설정하고, 인도와 시베리아를 제외한 전 아시아를 중국사의 판도에 포함시켰다. 또 ‘중국의 중국’에서 ‘아시아의 중국’, ‘세계의 중국’으로 비약할 것을 희구하고,

21)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의 성격을 근대 민족주의보다는 중화주의와 관련하여 이해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齊藤道彦, 1999,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世界」,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の變動』, 中央大學出版部.

22) 章炳麟, 1907, 「帝韓」, 『疇書』(初刻本), 北京: 三聯書店, 83쪽; 1907, 「中華民國解」, 『民報』 15.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화이론과 진화론을 결합시킨 결과였다.²³⁾ 특히 그가 굳이 일본식 동양사, 또는 泰西에 비견되는 泰東史라는 용어 대신 중국사라는 명칭을 고집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²⁴⁾ 중국의 학과체제와 보통 교육과정은 일본과 같은 국사, 동양사, 서양사가 아니라 중국사와 외국사라는 이원구조로 발전하였던 단서도 여기에 있다.²⁵⁾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강국'으로서 중국이라는 양계초의 희망은 當代까지 실현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내부의 국민화 문제 해결에 골몰해 왔을 뿐이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용어로서 동아시아를 代稱하는 논리는 익숙하게 통용되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중국 문화를 인도, 이슬람을 제외한 동방의 대표 문화라고 전제하고, 서구 문화와 비교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특히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東亞文化, 또는 中國文化라는 용어가 그러한데, 바로 근대 이전 한자를 비롯한 중국의 制度와 철학, 종교,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중국 문화가 주변 제 민족으로 확산·발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공간을 지칭하는 바와 같다. 중국 문화의 파급 지역, 곧 과거 중국 중심의 천하를 중국 문화권으로 바꿔 부르고, 그것을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명과 근대 서구 문명에 비견되는 중세 시기, 세계를 대표하는 중심 문화로서 강조하는

23) 梁啓超는 중국에서 민족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1960, 『國家思想變遷異同論』, 『飲水室文集』, 第三冊, 臺灣中華書局). 그런데 그 의미는 혁명파의 한족주의와 달리 제 종족이 합쳐진 대민족(다민족)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역설적으로 국민당 시기 '支族의 국민화'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다.

24) 梁啓超, 1960, 『中國史敍論』, 『國家思想變遷異同論』, 第三冊, 臺灣中華書局.

25) 중국은 일본을 통해 자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형식으로 근대역사학을 수용하였지만 곧바로 자국사와 타국사의 양분체제로 전환하였다. 예컨대 1913년 교육부의 대학교령은 문과대학의 사학 과목으로 '중국사 및 동양사(중국사, 塞外民族史, 東方各國史, 남양제도사 등) 와 '서양사(서양각국사)'로 양분하였다. 중서 이원론적 세계 인식의 표시였다. 그러나 북경대학교 1920년에 가서야 서양사 과정이 개설될 만큼 中國史가 압도적이었고, 동양사는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教育部令匯編, 2002, 『(民國二年分) 第一號 大學規程』, 『民國教育部文牘政令匯編』, 6,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3039~3040쪽, 3045~2046쪽; 劉龍心, 2000, 『學科體制與近代中國史學的建立』, 『20世紀的中國：學術與社會』, 史學卷, 山東人民出版社, 526~529쪽.

것이다.²⁶⁾

이러한 인식 논리에서 세계는 中과 西로서만 표상되며, 동아시아는 문화=문명의 종주국인 중국에 포함된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한 동아시아는 독립적인 사고의 수평적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 중화 문명의 확산과 발전을 나타내는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또 그러한 의미에서만 편면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이러한 변용된 중화주의는 고스란히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었다.²⁷⁾

물론 중국이 이 같은 인식을 지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지만, 몇 가지 상황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예컨대 근대 이래의 열강을 상대해 온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중국 스스로 동양학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정치·학술 상황이 그러하다. 중국은 근대 이래 일본을 포함하는 열강의 침탈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미소 외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맞물려 정상적인 동아시아 인식을 제약하였다.²⁸⁾ 특히 일제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시 동원체제와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건설되었으니, 중국의 인문학은 자기 전통으로서 국학 또는 反資本主義的 근대화 노선을 정당화하는 방향에서 구성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진한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적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결여 역시 정당한 동아시아 인식을 제약하였다. 이는 대학의 중국사 중심의 학과 체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특

26) 이러한 논의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에 유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듯이 중국의 전통이 현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 형식으로 수도 없이 재생산되었다. 丁偉志·陳崧, 1997, 『中西體用之間』,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쪽; 張岱年·程宜山, 1990, 『中國文化與文化爭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36~237쪽; 祝開, 1995, 『中華文明和宋明思想』, 學林出版社.

27)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28) 조영남, 2006, 「중국의 지역인식과 전략」,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히 제국정책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현지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그를 토대로 성립한 일본의 동양학, 또는 미국의 지역학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측면이 있다.²⁹⁾ 중국의 근대학문은 청말부터 일본을 통해 수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오사 이후에 가서야 대학 등 학술 제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었고, 특히 자국의 전통 역사와 문학을 정리하는 국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의 기초는 매우 취약하며, 전통적인 중화주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축적한 성과를 비판 없이 차용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³⁰⁾

물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내에서 대국 의식이 확산되고, 외교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역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유학 생도 증파하고 있다.³¹⁾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자유로운 시민계급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처럼 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은 곧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적 강국을 의미하며, 아시아에 대한 지역외교 역시 여전히 미·소 외교의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세계 전략과 인식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이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9) 山室信一, 2007, 「공간 아시아를 둘러싼 인식의 확장과 변용」, 『아시아를 묻는다: 공간』, 한울.

30) 王高鑫 等, 2006, 『東亞古代關係史』, 北京工業大學出版社.

31) 조영남, 2006, 앞의 논문, 167, 185쪽; 王雪萍, 2007, 「改革·開放後の中國國家公費派遣留學生派遣政策の變遷」, 『中國研究月報』, 2007년 8호.

Ⅲ. 중국의 역사 교육과정과 중서론적 세계 인식

천하관을 대신한 세계 인식 논리로서 중서 이항적 논리는 근대 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되었다. 공교육 자체가 사회와 고립될 수 없고, 국가권력의 현실 인식과 사회의 지식체계 및 상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자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운영해 온 역사 교육과정은 대표적인 예였다. 공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자국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세계라는 보편성 속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이 자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편제하는 이유이다. 물론 이러한 편제과정에는 나중의 현실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근대 이래 중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³²⁾ 특히 자국의 역사 문화를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세계 인식과 함께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1_ 근대 역사 교육과정의 수용과 중·서론의 정착

일반적으로 중국의 근대적 교육과정은 이른바 壬寅·癸卯學制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국가권력이 근대 학교 교육과정 수용을 정식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지만, 근대국가 체제에 부응하는 一元的인 教育行政體制와 三級制를 핵심으로 하는 학제 개혁을 배경으로, 전면적인 국민 교육과정으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전통적인 經史一體를 대신하여 과학, 외국어 등 分科學問에 기초한 教科體制의 시작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歷史는 經學과 함께 국민의 정체성 함양의 근간으로서 중시되었다.

32) 중국의 근대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한 정리가 있다. 김유리, 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 오병수, 2002,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역사교육』 84.

교육과정은 중서를 검해야 한다는 中西並重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다.³³⁾ 특히 역사 교육과정은 本國史(中國史), 亞洲各國史, 歐洲美國史로 구성하고, 차례로 학습하도록 계열화하였다. 물론 淸朝에 대한 충성심과 自矜心을 함양하기 위해 中國史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歷代帝王의 大事와 本朝 列聖의 善政 및 德澤, 古今 忠良賢哲의 史蹟 및 學術技藝의 興衰, 政治沿革, 農工商產業 및 風俗의 變遷이 중심 교수 내용이었다. 반면 亞洲各國史는 일본·조선·베트남·타이·버마 등의 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되, 일본과 조선, 베트남 등을 자세히 하고, 근대사를 중심으로 편제하여 서구 침략을 받아 危局에 이르게 된 원인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歐洲·美國史는 구미 제국의 古今의 重要 事象을 개설하되, 강대국을 중심으로 역시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³⁴⁾ 국민 형성의 핵심 기제로서 자국사를 상세히 하고, 동양 각국사와 구미 제국사를 보조적으로 편제한 것이다. 특히 열강의 침략에 따른 동아시아의 현실 이해를 강조한 것은 같은 처지의 중국을 유비시킴으로써 국민적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데 일차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처럼 ‘大國’과 근현대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야 각국사를 독립적인 교수·학습 단위로 설정한 것은 일본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학제 개혁 자체가 일본을 모델로 한 만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물론 그 운용 주체인 교사도 일본 유학 출신이 많았다.³⁵⁾ 특히 유학생 출신들이 번역한 那阿通世의 『支那通史』나 桑原隲藏의 『東洋史要』 등이 교재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내용 역시 조선과 일본의 사정이 자세할 수밖에 없었다.³⁶⁾ 물론 이는 일본식 식민사관에

33) 김유리, 2007, 『서원에서 학당으로 :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한국학술정보(주).

34) 呂達, 1994, 『中國近代課程史論』, 人民教育出版社, 159~162쪽.

35) 1911년 이전 중국에 번역된 일본 서적 중 史地類는 240종 정도이다. 특히 현대 학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901~1903년경에 120여 종이 번역되었다. 胡逢祥, 1984, 『20世紀初日本近代史學在中國的傳播與影響』, 『學術月刊』, 1984年 9期, 58쪽.

36) 呂順長, 2001, 『清末浙江與日本』, 上海古籍出版社, 116~128쪽; 熊秉真, 2001, 『自轉與公轉 : 近代中文世界史教科書之演變』, 中國近代史學會 主辦, 『歷史教科書與歷史教育』, 學術研討會, 5쪽.

입각한 동아시아 인식이 중국에 수용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식 학제를 개혁의 모델로 차용한 데에는 당시 서양의 침략에 맞서 同種·同文으로서 일본 인식이 상당히 작용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적어도 청일 전쟁을 계기로 중화의 자만을 반성한 이래,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로 등장한 러일전쟁 이후까지, 동아시아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한 일본식 근대가 추구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셈이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신해혁명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1912년 정식 성립한 중화민국은 이른바 공화국민 형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서둘렀다. 그 해 9월부터 이듬해 3월에 걸쳐 「教育宗旨」와 「教育課程」 및 關係法令을 선포하고, 후속 조치로 「中學校令」, 「中學校令施行規則」 그리고 「教育課程」을 정식 제정하였다.³⁷⁾ 교육개혁을 주도한 蔡元培는 인류의 이상을 창조할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을 제창하면서 智德體를 포함한 德育, 美育, 實利教育과 軍國民教育을 共和教育의 목표로 내세웠다.³⁸⁾ 이에 따라 宗教의 자유에 어긋나고, 청조의 사적과 관련된 「讀經」, 「中文」을 폐지·축소하고, 「修身」의 내용을 대폭 개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經學과 달리 歷史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역사는 다섯 가지 공화교육의 목표와 두루 관련될 뿐 아니라, 공화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교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³⁹⁾ 이에 따라 역사는 “역사상 주요 사적을 통해 民族의 進化, 社會의 變遷, 邦國의 盛衰를 이해하고, 특히 정체의 연혁 및 民國 建立의 근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특별히 중시되었다. 물론 채원배는 中外를 겸하는 보편적인 세계 인식을 公民의 덕목으로 추구하였으므로 역사교육의 목표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주체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과는 “歷代政治文化的 變化 現象”을 教授하는 「本國歷史」와 “世界變遷의 大勢와 주요한 各國의 興亡, 人文

37) 呂達, 1994, 앞의 책, 247쪽.

38) 「民國元年 教育部令」, 第2號, 「1912年 9月 教育部 公布 中學校令」, 朱有躡 編, 1990, 『中國近代學制史料』, 華東師範大學出版社, 351쪽.

39) 蔡元培, 1997, 「對於新教育之意見」, 『蔡元培全集』 2, 浙江教育出版社, 15쪽.

40) 教育部, 1912, 「中學校令施行規則」, 朱有躡, 앞의 책, 353쪽.

의 發達 및 本國과의 關係”를 교수하는 「外國歷史」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중·외론의 시발이었다. 당연히 동양사는 서양사와 함께 외국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위상은 크게 축소되었다.

1922년 채택된 ‘신학제’는 매우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체제였다.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원리와 6·3·3·4학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중등교육과정을 初級中學과 高級中學을 구분하였다. 아동 중심, 흥미 위주, 사회적 수요를 중시하는 당시 미국식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제하였다.

역사교과는 高級中學에서 「文化史」라는 이름의 공공필수과로, 초급중학에서는 「역사」가 「地理」, 「公民」과 함께 社會科라는 통합 교과와 일부로서 설치되었다. 文化史는 세계 문화를 이해한다는 목표에 따라 종교, 지식, 경제, 사회, 정치의 제 요소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융합한 것이다. 특히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현대사를 강조하였다.⁴¹⁾ 특히 보편적 세계 인식과 시민적 소양이 과정 편제의 원리로 제시되면서, 동아시아는 거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총 116개의 주제로 구성된 문화사 과정은 중국사와 서양사, 그리고 문명 교류사로 구성하였다.⁴²⁾ 특히 교류사에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였다. 또 공민과의 등장으로 위상이 약화된 초급중학 과정의 역사과 역시 이와 유사하였다.⁴³⁾ 중국사를 중심으로 서구, 서아시아, 인도, 동아시아 등을 배치하여 자국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구상하였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미국 유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新文化運動을 배경으로 한 反傳統主義와 西化論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른바 ‘道德教

41) 課程教材研究所 編, 『20世紀中國中小學課程標準·教學大綱匯編·歷史卷』, 人民教育出版社, 16쪽.

42) 교류사의 내용은, ‘그리스 문화와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그리스 문화와 인도’ 등도 있지만 ‘중세 胡族, 게르만족 아랍민족의 이동’, ‘몽골의 西征’, ‘가톨릭과 西學의 중국전래’, ‘17, 8세기 중국문화의 서양문화에 대한 영향’ 등 중서문명교류가 압도적이었다. 「高級中學公共必修科文化史學綱要」,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16~20쪽.

43) 물론 이 같은 신교육과정은 당시 중국에서 잘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국사와 세계사의 통합과 선택교과의 확대, 주제 학습의 강화 등 현행 교육목표와 과정편제의 원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育’, ‘民族立國精神’ 보존을 구실삼아 자행된 원세개의 제제운동과 복벽을 부정하고⁴⁴⁾ 오사기에 고양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니, 새로운 서구 사조를 수용하며, 중국의 낙후한 정치·문화를 혁신하고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여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은 결국 서양사, 문명사의 틀에 입각한 보편사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더욱 상대화되었다. 「문화사」의 경우 ‘隋唐時代 日本의 中國化’, ‘日本의 西歐化’, ‘일본 유신 후의 경제발전’만을 독립단원으로 다루었고, 30개의 대 주제로서 편제한 「역사」 역시 中古와 近世 시기의 中日關係 차원의 2단원을 설정했을 뿐이다. 사실상 중국과 서양으로서 세계를 인식하되 서양사의 틀 속에서 중국사를 이해하려는 논리체계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사로 대체될 뿐이었고 한국, 일본 등은 중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체로서 他者化되었다.

2_ 화이론의 변용과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 국민정부 시기의 역사 교육과정

국민정부는 北伐과 함께 三民主義에 기초한 당치 체제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제도적으로 ‘교육행정위원회(1926)’, ‘대학원(1927)’에 이어 ‘교육부(1928)’를 통한 집권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政教一致의 원칙에 따른 黨化教育을 실행하였다. 黨義와 童子軍을 정규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訓育과 사상 통제는 그 일환이었다.⁴⁵⁾

44) 원세개는 자신의 제제운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민초 교육 정신을 부정하고, 이미 폐기된 청말의 교육목표와 讀經과를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소학교정에서 修身의 보조과목으로서 『孟子』와 『論語』를, 그리고 중학교에서 『禮記』, 『左傳』의 선문을 편성하였다. 「袁世凱頒定教育宗旨令」(1915. 1. 1), 「袁世凱特定教育綱要」(1915. 2), 中國第二歷史檔案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3輯 教育』, 江蘇古籍出版社, 1991, 40~41쪽.

45) ‘民族主義 發揚’, ‘民權 思想的 提高’, ‘民生 幸福의 증진’과 ‘세계 대동의 추구’ 등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初級中學歷史潛行課程標準」, 「高級中學普通科本國史潛行課程標準」(1929)과 「高級中學普通科外國史潛行課程標準」(1929) 등은 국민정부 시기의 역사교육의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 당연히 국민혁명의 논리에 따라 반제 민족혁명과 그 주체인 국민당의 이념을 정당화하고 혁명에 국민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초급중학의 경우 '중국 민족'이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된 과정을 통해 학생의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민족 운동 상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中外 각 시대의 정치 상황, 현대 민권 발전의 유래 등을 통해 학생의 정치 훈련과 민권 운용의 기초를 수립하고", "현대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생 문제를 이해한다"는 등을 목표로 하였다.⁴⁶⁾

고급중학의 경우 自國史와 外國史로 나누어 운용하였는데, 自國史 교육은 역시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목표로 하였다. "本國 民族의 分合, 정치 제도의 沿革, 민생경제의 利病을 陳述하여 오늘날의 민족 형성의 유래와 각종 정치 사회문제 발생의 源流를 설명함으로써 三民主義 정신을 宣揚한다", "帝國主義의 중국 침략 경과 및 현대 중국 정치 경제의 변천에 주의하여 중국 혁명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 학생의 분발정신을 환기한다",⁴⁷⁾ "중국 문화의 演進 과정을 설명하여 先哲의 위대한 工夫와 造詣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참으로 본국 문화를 학습하게 하고, 先業을 계승하여 빛나는 정신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 등을 목표로 하였다. 제 민족의 연합에 의한 중화 민족의 형성을 전제로 三民主義와 문화적 정체성을 민족주의의 바탕으로서 강조하고 있

삼민주의가 교육 중지였다. 「教育宗旨及其實施方針案」(1929. 3. 25), 「中國國民黨歷次重要會議與決議案」; 「中華民國學校系統原則, 系統表及說明」(1928. 5),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91,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教育(1)』, 江蘇古籍出版社, 15쪽; 동시에 국민정부는 국정제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과서와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시도한 것이다. 高田幸男, 2004, 「重慶國民政府の教科書政策: そくに審定制と戰時教育課程をめぐって」, 石島紀之 編, 『重慶國民政府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46) 「初級中學歷史潛行課程標準」(1929),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21쪽.

47) 「高級中學普通科本國史潛行課程標準」(1929), 위의 책, 30쪽.

음을 알 수 있다.⁴⁸⁾ 특히 삼민주의를 유가적 논리로 府會하고 있던 국민당의 입장에 따라 유교가 곧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선양되었다.

물론 민족주의를 강조하기는 외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외국사는 '민족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형성이라는 공리적인 목표가 우선하였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국제 형세하 중국의 지위에 주목하여 …… 중국 민족의 自振, 自衛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⁴⁹⁾ 또는 ‘제국주의’와 ‘약소민족과 노동자’가 대립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중국이 반제 민족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제국주의 체제의 속박을 해제하고, 해방을 완성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을 고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 미국, 일본 민족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민족의 奮起를 고양시킬 수 있다. …… 전후 세계도 여전히 強力 競爭의 시대가 될 것이므로, 중국은 …… 자존 자위 능력 양성의 필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반제 민족운동의 정당성과 함께 서구적 현대화 학습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⁵⁰⁾ 서구는 제국주의로서 민족운동의 대상이자, 학습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였으니, 민족주의와 현대화 노선을 공리적으로 타협시킨 결과였다. 물론 학습할 대상은 현대화를 선취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열강에 제한되었으며, 기타 국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연합의 대상으로 이해하였다.

교과 내용은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조직되었다. 자국사, 외국사를 나누어 각각 上古, 中古, 近世, 現代로 分期하여 통사 체제를 구성하였다. 自國史는 ‘中華民族’의 建國에서 ‘新中國’의 事명까지를 上古(고사의 전설~춘추전국, 진의 육국통일), 中古(진시황의 정책~명말), 近世(명말 16세기~20세기), 現代(러일

48) 국민정부가 이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은 물론 보편교육에 대한 역작용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전의 교육목표는 너무 空疎해서 중국의 현실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 주도세력의 논리였다. 「國民黨中央秘書處錄送訓練部擬定的教育目標案致丁惟汾函」(1928. 7. 5), 「教育部次長馬敘倫播講教育宗旨稿」(1929. 5), 中國第二歷史檔案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教育(1)』, 江蘇古籍出版社, 1991, 1~8쪽.

49) 「高級中學普通科 本國史 潛行課程標準」(1929),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30쪽.

50) 「高級中學普通科外國史潛行課程標準」(1929), 課程教材研究所 編, 위의 책, 37쪽.

전쟁~국민혁명)로서 분기하고 주제별로 서술하였다. 상고 시기부터 ‘중화민족’을 주제로 하여 역대의 강역 개척과 확대, 근대 이후 열강의 침략과 대응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근세는 “신항로의 발견과 유럽인이 東來”한 명 말부터 시작하였으며, 현대는 “원동이 열강의 경쟁 대상”으로 편입되고, ‘러일전쟁’이 전개된 20세기를 기점으로 편제하였다. 특히 현대사는 청말 신정과 입헌운동, 신해혁명과 함께 손문의 혁명운동, 국민혁명 등을 근대국가 건설 과정의 주류로 다루면서 ‘일본의 유신과 중일전쟁’, ‘중아밀약과 만주문제’(근세), ‘러일전쟁의 중국에 대한 관계’, ‘몽골문제와 서장문제’, ‘일본의 침략-21개조요구에서 파리회담까지’(현대사) 등 열강의 영토적 침략과 관계된 사실들을 주제로 포괄하였다.⁵¹⁾ 반제 민족주의로서 국가 건설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다른 한편 ‘外國史’ 과정은 서구 편중주의가 두드러졌다. 우선 외국사 전 과정을 유럽사를 기준으로 分期하여, 그리스·로마 중심의 고대사회, 십자군 전쟁, 몽골, 티무르제국까지,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서구 사회를 각각 상고, 중고, 근세로 조직하였다. 현대는 19세기, 20세기를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서구 중심의 서양사를 중심으로 골격을 짠 것이지만, 특히 현대사는 서구 편중이 두드러졌다.⁵³⁾ ‘러시아혁명과 소련의 개국’, ‘터키의 부흥과 세계 약소민족의 민족운동’⁵⁴⁾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서유럽 중심으로 내용을 편제하였다. 이는 고대문명을 중심 주제로 배열한上古나, 동로마제국, 서아시아, 기독교 문화, 회교 국가 및 문화,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를 차례로 배열한中古 시기의 내용 구성과 확연히 대조되는 것으로, 서구 열강이 주도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역관계

51) 「高級中學普通科 本國史 潛行課程標準」(1929),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34~35쪽.

52)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러한 민족주의에서 드러나는 漢族主義이다. 고급중학의 자국사 과정은 ‘漢族의 유래의 연구’에서 시작하고 있거니와, ‘북방민족의 침입과 풀王室의 南遷’, ‘거란족의 침입’, ‘원말의 민족혁명’ 등의 단원 명칭은 두드러진 예이다. 국민정부가 내세운 민족주의의 한계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53)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41쪽.

54)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26쪽.

를 앞의 이중적 공리성에 따라 인식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구조에서 동아시아의 위상은 미미하고 어정쩡하였다. 기본적으로 서양사의 인식 틀에 동양을 끼워 넣는 정도였으니, ‘조선과 일본의 개화’를 중고 시기에 편제하였고, ‘일본의 유신과 확장’을 근세사에, ‘전후의 민족 운동’, ‘전후의 미국과 일본’ 등을 현대사에 편제했을 뿐이다. 외국사의 전체 84개 주제 중 동아시아 관련 주제는 3~4개에 불과하고,⁵⁵⁾ 그나마 두 단원은 근현대 일본 관련 주제였다.

이러한 과정 편제의 틀은 이후 일본의 동북침략과 항일전쟁을 거치면서 약간씩 변모하였다. 대공황과 파시즘의 출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사적인 변동도 반영되었다. 1932년, 1936년, 1940년, 그리고 1948년 네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이 그것이다. 그 변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부문에 있었다. 우선 간단하게는 자국사의 현대사 과정을 손중산의 혁명운동과 국민혁명, 즉 혁명사로 정형화하였다는 점이다. ‘청조의 변법과 예비입헌’ 등은 삭제하고, 입헌운동이나 러일전쟁은 청대(근세)의 일로 치부하였다. 현대사는 손중산의 혁명운동과 함께 시작되었고, 반제·반군벌의 국민혁명에 의한 국가 건설로서 진행되었으며, 항일전쟁은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두드러진 것은 중화 민족주의를 강화한 것이다. 예컨대 자국사를 ‘중화민족의 건국’(上古), ‘중화민족의 新融合’, ‘중국 문화의 西漸’, ‘中華民族의 拓植’(中古), ‘中華民族의 확대’(近世) 등으로 편제하여 중화민족의 통합과 확대로서 열개를 구성하고, ‘민족의 융합’과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였다.⁵⁶⁾ 다민족 통일국가의 이념으로서 중화민족주의를 이론화한 것이다.⁵⁷⁾ 이후의 신중국의 역사 인식 체계

55)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37~41쪽.

56) 1932년 개편된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러하였다. 「初級中學 歷史課程標準」(1932), 앞의 책, 44~45쪽.

57) 이러한 중화민족주의는 1932년 제정된 「初級中學課程標準」의 목표로서 구체화되었다. (1) 중국 민족의 演進을 연구한다. ; 특히 **역사상의 光榮** 및 근대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된 과정 및 그 원인을 설명하여 …… (2) 중국 문화 演進의 개황을 敘述한다. ; 특히 **세계문화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우리 조상의 위대한 사적을**

의 열개가 이미 등장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제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사회의 이념적 통합을 제고함으로써 항일전에 국민을 동원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같은 동방 국가인 일본에 대한 정신적·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항전을 촉구하려는 뜻이 뚜렷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국민정부는 민족 고유의 문화 부흥을 내세우면서, 禮義 廉恥와 忠孝 등 유가적 덕목을 적극 선전·보급하였다.⁵⁸⁾ ‘중국본위선언’과 같은 맥락이지만, 민족 영웅과 전통을 찬양하는 문예창작을 적극 권장하고,⁵⁹⁾ 그 상징으로 孔子 宣揚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⁶⁰⁾ 이러한 작업은 대일전이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전시 동원체제가 작동되면서 파시즘과 결합하여 더욱 치밀하게 추진되었다.

역사교육은 물론 학교의 훈육 기제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에 잘 호응하였다. 특히 1940년대 이후 국가 총동원체제⁶¹⁾가 가동되면서 역사교육은 장개석

알게 하고, 고상한 旨趣를 기르며, 自強不息의 정신을 기른다.

- 58) 蔣介石, 1991, 「在長沙各界代表會上作關於教育重要性的講演」(1932), 中國第二歷史檔案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教育(1)』, 江蘇古籍出版社, 141~145쪽. 물론 이미 국민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항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제창하고 유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손문주의에 대한 우파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는 특별 완수에 따른 국민적 성취감과, 대공황에 따른 서구 열강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나름의 사회적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은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 59) 「文藝創作獎勵條例」(1933, 4. 3),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文化』, 江蘇古籍出版社, 1991, 327쪽.
- 60) 국민당은 1934년부터 공자 탄신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曲阜에서 거행된 제공의식에 정부 요인이 대거 참가하였다. 이러한 유교에 대한 강조는 당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추진했던 신생활운동과 함께 대표적인 이념화 작업이었다. 「尊孔讀經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文化(2)』, 江蘇古籍出版社, 1991.
- 61) 국가 총동원체제는 전면적인 항일전쟁에 대응하여 조성된 일종의 전시 동원체제를 말한다. 1942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이미 盧溝橋 事件 직후인 1937년 8월부터 당과, 국방최고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국민에 대한 인적·물적·정신적 총동원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장개석은 전면항전을 명분으로 ‘국가지상, 민족지상주의’ 원칙에 따른 ‘국민의 정신개조’를 강조하였다. 인의예지신과 충효에 입각한 유교적 덕목을 국민정신으로 선전하면서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 「蔣介石爲實施國民精神總動員告全國同胞書」(1939. 3. 12), 「國民

의 이념에 따라 國家와 民族至上主義를 고취하고, '지족 간의 융합'을 통한 민족 대단결을 강조하는 이념교육으로 기능하였다. 예컨대 20세기 초반 종족 혁명의 상징으로 발명했던 황제를 재등장시키는 한편 支族의 융합체로서 중화민족 개념을 강조하였다.⁶²⁾ 이를 위해 지족에 대한 적극적인 한화정책이 추진되었으니, 역사교육은 이를 목표로서 구현하였다.

1. 중화민족의 演進을 서술하고, 특히 각 지족 간의 융합과 그 상호의 존관계에 주의하여 민족 단결의 역사적 근거를 밝히고, 역사상의 光榮과 근대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의 민족 부흥의 의지와 결심을 激發한다.⁶³⁾

1. 중화민족의 기원, 형성 및 그 疆土의 개척(拓展)과정을 서술하고, 각 支族의 혈통상, 문화상 混和의 情形은 물론 상호 의존관계를 자세히 서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愛護를 갖게 한다.⁶⁴⁾

이러한 목표는 자국사 과정 편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전근대사의 전 영역에서 강역 개척과 민족 융합을 강조하였다. '삼국시대 강역의 개발',

精神總動員綱領, 「國民精神總動員實施辦法」(1939. 3. 12), 章伯鋒 主編, 『抗日戰爭·政治(上)』, 四川大學出版社, 144~154쪽; 姬田光義, 2005, 「抗日戰爭期における中國の國家總動員體制」,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 『民國後期中國國民黨政權の研究』, 東京: 中央大學出版社; 「戰事發生前後教育部對各級學校之措置總說明」(1937. 9. 29) 等 中國第二歷史檔案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1編 教育(1)』, 江蘇古籍出版社, 1991, 4~38쪽.

62) 종전과 달리 교육과정에 '黃帝의 武功과 制作', '黃帝建國 및 그 制作'을 '堯舜의 政教', '唐虞(堯舜)의 禪讓 및 그 政法' 앞에 배치한 것이다. 황제는 문명과 禪讓의 상징인 堯舜이나, 문화적 상징인 孔子와 달리 종족적 의미로서 성격이 강했다. 특히 이민족인 치우와 싸워 승리하였다는 전설 때문에 20세기 초 배만혁명의 상징 자원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 같은 한족의 상징인 황제를 민족의 상징=國祖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였다.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見」, 『歷史研究』, 2000년 3기.

63) 「修正中學歷史課程標準」(1940), 앞의 책, 77쪽.

64) 「六年制中學歷史課程標準草案」(1940), 위의 책, 88쪽.

‘중화민족의 海外拓植’, ‘康, 乾時代의 邊疆開發’ 등이나⁶⁵⁾ 또는 ‘중원문화의 전파와 강토의 개척(上古), ‘秦漢의 武功과 강토의 개척’, ‘중화민족의 신융합’, ‘수당의 武功과 강토의 개척(中古), ‘遼夏金の 漢化와 민족의 융합’, ‘元代 강토의 개척과 민족의 융합’, ‘명대의 식민사업(近古), ‘청대 강토의 拓展과 민족의 융합’(近代) 등으로 단원을 편제하였다.⁶⁶⁾ 이렇게 해서 중국사를 황제에서 시작해서, 제 종족의 융합과 강토의 개척에 따라 중국사가 전개되어 왔음을 일관된 논리로서 편제한 것이다. 특히 이민족 왕조와 관련하여 한화와 민족 융합을 강조하고 있듯이, 융합의 대상은 주로 夷族=支族이었다. 새로운 중화민족은 곧 이 같은 지족을 종족으로 융합하는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은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변강정책과 더불어 추진된 것이다.⁶⁷⁾ 전면적인 항일전쟁에 따라 內遷한 정부는 이른바 변강의 위기에 대응하여 민국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蒙藏 등 邊區에 대한 동화정책을 더욱 확대 심화시켰다. 그것은 초등학교 보급 등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國族意識 심어주기’라는 목표에 따라 言語, 習慣, 歷史認識과 種族的 整體性 개조를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의미하였다.⁶⁸⁾

65) 『修正高級中學歷史課程標準』(1940), 앞의 책, 84~85쪽.

66) 『六年制中學歷史課程標準草案』(1940), 앞의 책, 88~91쪽.

67) 변강의 위기에 대해서는 박장배, 2004, 「중국 소수민족 정책과 지역구조」,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168쪽.

68) 특히 漢語 보급과 교육을 강제하고, 邊地語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며, 생산 기술 훈련을 통한 공민화 유도과 사회풍습 개량, 한족식으로의 姓氏 改良, 내지 우수 청년과 토씨 여성의 혼인 장려 등 제국주의 정책에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정부의 항전에 협조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한 각종 선무사업도 전개되었다. “邊地와 內地 각 민족 간의 연계를 증진하여 항전 건국 대업의 완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그 목표였다. 또 이러한 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간부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중앙에 변강학원을 세우고, 동시에 각종 문화기구를 조직하여 변강의 역사와 고고, 지리와 지질조사, 민족문제, 언어 등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教育部西南邊疆教育考察團關於改進西南各省邊疆教育總建議書』,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2編 教育(2)』, 江蘇古籍出版社, 1991, 4~38쪽; 『中國邊疆文化促進會章程及有關組織史資料』(1939. 3),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5輯 第2編 文化(2)』, 江蘇古籍出版社, 1991, 396~397쪽.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족적 정체성의 근거인 역사 인식의 문제였다. “각 종족 간 갈등의 기억을 해소하여 소통시킴”으로써 國族意識을 갖게 하는 ‘心理建設’을 핵심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당연히 「역사」 교육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⁶⁹⁾

실제로 이후 창안된 역사는 중화 문명의 상징인 황제와 중원 문명과 제 민족의 직접적인 관계를 언어, 문자, 전설 등을 들어 밝힘으로써 同源說을 강조하고, 또 청대의 수많은 소수민족의 반란 등은 교과서에 삭제하였다. 민족 동원설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당은 조직적으로 종족, 언어, 각종 신화를 수집하였다. 특히 彝族, 苗族, 遙族은 中原과 관계되는 전설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황제를 상징으로 하는 제 종족의 연합으로서 중화민족을 창안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당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한편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기도 하였다. 즉 민족은 혈연이나 문화가 아니라 오래 한곳에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면 민족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지리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당시 동유럽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강행했던 독일, 또는 스탈린식의 민족 이론을 借用한 것으로, 서구에서 유행한 파시즘 체제를 개인 독재와 사상 통제만이 아니라 국가 체제 이론으로 수용하여 교육제도화한 것이다.

이렇게 편제된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관련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사실상 유럽사를 중심으로 편제하면서 조선과 일본, 인도 등을 역지로 끼워 넣은 구조가 지속되었고,⁷⁰⁾ 특히 문명 고국인 중국에 비하여 뒤늦게 개화한 지역으로서 中古 시기에 조선과 일본의 開化, 근세에서 일본의 명치유신을 단원으로 편제할 뿐이었다.

69) 예컨대 국민당의 정책 방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同源說을 제창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 ② 교과서에서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삭제할 것, ③ 중국 역사에 맞추어 민족형성 요인으로서 지리적 요소를 강조할 것, ④ 상호 융합을 강화할 수 있는 고사를 수집할 것 등이다. 「教育部西南邊疆教育考察團關於改進西南各省邊疆教育總建議書」, 앞의 책, 教育(2).

70) 課程教材研究所 編, 앞의 책, 43~46쪽.

IV.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화이론의 변용

새로운 세계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1949년 수립된 中華人民共和國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특히 신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맞는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중국에서 역사교육은 유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육의 수단으로서 중시되었다.⁷¹⁾ 또한 2001년 「전일제 의무학교 역사과정표준」과 2003년 「보통고중 역사과정 표준」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교학대강체제로서 운영되었다. 교육과정과 교재 편찬 및 보급을 당이 전담하는 체제였다. 형식적으로는 자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근현대사를 중시하면서 중화민족의 발전과정과 당의 노선을 세계사적인 필연성을 빌려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편제하였다.

건국 직후에는 전시교육체제로서 역사교육은 1956년 정식으로 교육과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63년, 1978년, 1986년, 1990년, 1996년, 2001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였다. 물론 필자는 이미 전고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획기적 특색을 지적한 바 있다.⁷²⁾ 그것은 새 교육과정이 21세기 시민 형성을 목표로, 학생 중심의 소질 교육,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명사적 편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탈이념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보편적인 국

71) 『共同綱領』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人民日報』, 1949. 9. 30 ; 오병수, 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歷史教育』, 80 ; 김유리, 2005,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72) 새교육과정의 획기성은 세 가지 측면에 있다. 첫째, 근대 이래 관상적으로 통용해 온 통사 체제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점 둘째, 「教學大綱」으로 상징되는 국가 주도의 정치교육으로서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셋째, 기왕의 지식 체계를 비판하고 학습자의 잠재적 소질 개발을 내용 편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오병수, 2006, 앞의 논문.

제주의에 대신하여 대국중심주의,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인식 역시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독자적으로 근대를 선취했다고 하는 일본이나, 문명으로서 인도를 제외하면 기타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서술은 크게 축소하였다.⁷³⁾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지속적인 세계 인식의 논리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중국 성립 이후 교학대강 체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학대강」은 애초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성립한 신중국의 건국 이념과 냉전을 거치면서 변화된 나뉠의 세계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1963년 제정된 「全日制中學歷史教學大綱」⁷⁴⁾이다.

이를 잠깐 살펴보면, 「대강」은 서두에 “역사학과는 인류 역사의 구체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여, 인류 역사 발전 규율을 闡明”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 중국과 세계의 중요 역사 사건과 인물을 이해하고, 중국 역사와 세계 역사가 원시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각 단계의 중요 사항(階級鬭爭, 生産鬭爭, 民族關係, 文化發展 등)을 掌握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규율을 인식”하는 것,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熱愛하고, 조국을 熱愛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사업에 분투할 신심과 결심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였다. 세계사 교육 역시 인류 역사를 5단계설에 따라 편제하되 현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마침내 자본주의 제도를 대체할 것이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필연적인 패망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적 승리를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73) 다만,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上海의 경우, 『세계역사』 중 “아시아지 역문명의 발전”이라는 단속에서 동아와 남아(조선, 일본, 인도), 아랍, 몽골을 다루는 한편, 심화형 주제로서 “고대 삼대 문명의 형성” 속에 중국의 유가 문명의 확산의 결과로 이루어진 “동아문화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일본은 현대 발달국가로서 독자적 단위로 다루고 있다. 上海市教育委員會, 2004,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試行稿)』, 54, 64쪽.

74) 上海市教育委員會, 2004, 위의 책, 256~258쪽.

교육과정은 이러한 정치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편제되었다.⁷⁵⁾ 물론 학습목표는 각 단계에서 계급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⁷⁶⁾ 중국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각각 원시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사회와 근현대사로 구별하였다.⁷⁷⁾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대별하여, 전국시기에서 청대까지 긴 시간을 각각 (1)~(5)까지 봉건사회로 나누고, 근현대사는 아편전쟁 이래 열강의 침략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하였다.

중국 역사 단원 편제	
원시사회	中國猿人, 氏族公社
노예제사회	1. 노예제 사회의 형성과 발전, 2. 노예제사회 붕괴 시기 : 春秋
봉건사회(1) : 戰國秦漢	1. 봉건사회의 형성 : 戰國, 2. 통일의 秦朝, 3. 제일차 농민전쟁, 4. 西漢의 强盛, 5. 王莽의 改制와 綠林 赤眉의 起義, 6. 東漢의 정치와 경제, 7. 黃巾起義, 8. 진한의 문화
봉건사회(2) : 三國, 兩晉, 南北朝	1. 위촉오 삼국의 정립, 2. 서진과 동진 3. 남조와 북조
봉건사회(수, 당)	1. 수조, 2. 당조 전기의 강성 3. 당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문화 교류 4. 突厥, 吐蕃, 回紇, 南詔, 靺鞨(말갈; 말갈인의 생활, 발해국의 건립, 발해와 당의 관계) 5. 당의 쇠락, 6. 당말의 농민전쟁, 7. 수당의 문화
봉건사회(4) : 오대, 요, 송, 하, 금, 원	1. 오대십국, 2. 북송, 송, 요, 하, 금의 관계 3. 남송과 금의 대치, 4. 원조 5. 원말의 농민전쟁, 6. 송원의 문화

75) 물론 이러한 편제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고대사 분기 문제에 토론이 완료되지 않은 1956년도 교육대강의 경우, 사회 발전 단계를 표제로 뽑지 않고, 왕조명을 표제로 배치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역사유물론을 관찰시켰다. 또 1978년 대강은 중국사를 기준으로 고대, 근대, 현대로 재배치하였다. 물론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오단계설은 더욱 비중이 약화되었다.

76) 上海市教育委員會, 2004, 앞의 책, 258쪽.

77) 근현대사는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1840~1864), 중일전쟁, 의화단운동(1864~1901), 신해혁명(1901~1919), 중국공산당의 창립(1919~1923), 제일차 국내혁명전쟁(1924~1927), 제이차 국내혁명전쟁(1927~1937), 항일전쟁(1937~1945), 제삼차 국내혁명전쟁(1945~1949)으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봉건사회(6) 명칭	1. 명조 전기의 경제와 정치 2. 명의 대외관계(유럽 식민자의 중국에서 죄악 활동) 3. 명조 후기 경제와 정치(명조 후기 상품경제의 발전) 4. 명말의 농민반란, 5. 청조 입관과 인민의 반청투쟁 6. 청조 전기의 경제와 정치, 7. 청조의 강역과 민족관계
근현대사	

이렇게 5단계설에 따라 자국사 교육과정을 편제한 의도는 물론 자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데 상당한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핵심 기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측면에 있었다.

첫째는 계급투쟁의 역사 인식이었다. 특히 계급투쟁의 주체로서 인민 상을 설정함으로써 당과 인민 대중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당의 통치를 정당화하였다. 이 점은 서주 시기 ‘國人之麗王 逐出’, 진말의 陳勝·吳廣의 亂에서부터 매 왕조 말기마다 농민 기의를 배치한 것도 그렇지만, 반제 민족혁명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시종 공산당이 영도하는 농민들의 대중투쟁과 혁명전쟁으로 편제한 근현대사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은 특히 청조와 국민당을 포함한 역대 지배집단과 달리 모택동의 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과학적 원리로서 대중의 반제 민족혁명 의지를 승리로 체현하고 영도한 집단으로서 묘사되었다.

둘째는 인류 역사를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사회주의로 발전한다는 이른바 단계론적 인식이었다. 인간의 역사를 소유를 둘러싼 계급 갈등의 형식이라는 단일한 원리에 따른 선후관계로서 체계화하고, 그로부터 자국의 선진성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화를 시도하였다.⁷⁸⁾ 중국은 봉건사회 단계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초월하여 사회주의 단계로 발전·진화하고

78) 「初級中學世界歷史教學大綱」(1956), 앞의 책, 168쪽;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 앞의 책, 719, 728쪽.

있는 현재 단계 역시 선진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선진성은 도덕적 정당성을 의미하였다. 중국을 미국 등 서구보다 앞선 사회로 이해함으로써 근대 이래의 중·서 관계를 역전시킨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계급주의와 단계론적 역사 인식은 보편주의를 표방한 만큼, 기왕의 역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건국 초기부터 근대사를 강조하고, 大漢族主義의 타파와 아시아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⁷⁹⁾ 특히 국내의 소수민족의 역사적 역할을 다민족 통일국가 형성이란 점에서 긍정할 수 있었으니, 예컨대 청대 소수민족의 반란이나, 요·원의 입관에 대한 악비·문천상의 저항은 모두 지배계급의 압제에 대한 인민의 저항으로 미화한 것은 그러한 예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족과 소수민족은 억압적인 이민족 전제정권에 대한 동맹자로 관계지은 것은 물론이다. 또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 역시 같은 계급적인 입장에서 비판하였으며,⁸⁰⁾ 모든 종족 문제를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라는 계급적인 입장에서 긍정하였다.

또 주목할 것은 교육과정이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주의는 애국주의, 노동교육과 함께 공산주의적 인생관을 배양하는 필수 요소로서 설정되었다.⁸¹⁾ 물론 그 함의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대략 “중국은 시종 다른 나라와 화평관계 속에서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 주변 국가의 인민 사이에 우의가 깊다”, “각국 노동 인민들은 세계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음을 인식하고, …… 자산계급의 민족주의적 편견을 배격한

79) 季羨林, 1951, 「史學界的另一個的新任務」, 『歷史教學』, 第1卷 6期; 이개석, 2004, 「현대중국역사학 연구의 추이와 동북공정의 역사학」,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31~32쪽.

80)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은 인민들에게 엄청난 災難을 가져왔고, 결국 농민전쟁의 상황 속에서 수의 멸망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농민에 대한 통치계급의 양보를 강제하였다. 위의 책, 139쪽.

81) 과정보재연구소 편, 「初級中學世界歷史教學大綱」, 앞의 책, 166~167쪽; 「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1988), 앞의 책, 510쪽; 「歷史教學大綱; 世界歷史的幾點說明」(1992), 앞의 책, 678쪽.

다”, “세계사에서 각 시기마다 계급관계를 파악하여, 세계 각국 역사에 출현한 반동 압박 계급은 본국사의 반동 계급을 대하듯이 미워하며, 계급투쟁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 인민과 공동의 운명이며, 10월혁명 이후에는 중국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였으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세계 인민과 함께 하는 …… 인류 화평을 파괴하는 공동의 적,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연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세계사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세계 역사	
원시사회	
노예사회	1. 고대 이집트, 2. 두강 유역의 고대국가, 3. 고대 인도 4. 고대 페르시아, 5. 고대 그리스, 6. 고대 로마
봉건사회	1. 서구 봉건제도의 형성, 2. 동로마제국, 3. 아랍제국 4. 아시아의 봉건국가(인도, 일본, 조선과 베트남), 5. 몽골제국 6. 유럽 봉건사회의 발전, 7. 유럽 봉건제도의 해체와 자본주의 발전의 시작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 :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반대투쟁	1. 17세기 영국 자산계급혁명, 2. 17~8세기의 러시아 3. 서구 국가의 식민 쟁탈, 4. 영국 공업혁명의 개시, 5. 18세기 프랑스 자산계급혁명, 6. 1794~1815 프랑스, 7. 라틴아메리카 독립투쟁, 8. 과학 공산주의의 탄생, 9. 1848년 유럽혁명, 10. 19세기 중기 자산계급과 개혁, 11. 아시아 인민의 외국 침략에 대한 반대투쟁, 12. 第一國際, 13. 사회 물질 방면의 큰 변화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의 진입 : 무산계급혁명의 전야	1. 파리로빈, 2.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단계로의 진입 3. 러시아 볼셰비키의 성립과 1905년혁명, 4. 아시아·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반제투쟁, 5. 第二國際, 6. 제1차 세계대전
사회주의의 旭日東昇 : 자본주의 총위기의 개시와 심화	1.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 2. 파리로빈과 워싱턴 회의 3. 10월혁명 영향과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 고조 4. 10월혁명 : 민족해방운동의 신시대를 열다 5. 공산국제, 6. 소련의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7.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 8.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9. 제2차세계대전

사회주의 원출 : 일국 범위에서 세 체체계로	1.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장대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족해방운동 3. 제국주의 진영의 쇠퇴
--------------------------------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사 교육과정은 서구의 역사 경험에 기초한 5단 계설을 기초로 하면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선, 베트남은 물론이고, 인도, 터키, 몽골 등의 역사를 일정하게 안배한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고래부터 중국과 문화교류가 빈번하였고, 외래 침략자에 대해 공동으로 저항하였으며, 반제 민족운동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 베트남의 프랑스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많이 서술한 것도 이 같은 국제주의의 반영이다.

물론 이를 위해 주로 편제하고 있는 내용은 당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임진왜란 시기 조·명 연합군의 대일전쟁, 그리고 청불전쟁과 청일전쟁 등이다. 물론 근현대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항미원조운동, 베트남전쟁 역시 충실하게 편제하였다.⁸²⁾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관점으로서 전통적인 천하관을 재생시킨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 일본, 베트남의 봉건국가 형성을 중국의 唐朝와 함께 편제하고, 각 국가에 대한 당 문화의 일방적 전파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그러한 예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에 비하여 후진적일 뿐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학대강은 이에 대해 “당은 당시 세계에서 경제문화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당 제국은 당시 아시아 각국 인민 경제문화의 중심이었다. …… 우리 인민은 아시아 각국 인민과

82)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 표준 체계가 수용되기 이전까지, 한국 관련 중요 내용이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당 시기부터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지속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김지훈,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23.

유구한 우의를 갖고 있으며, 경제상 문화상 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 인민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은 모두 풍부해졌다”⁸³⁾고 서술할 정도였다. 게다가 교학 대강은 자국사 교육과정에서 역대 왕조의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변강의 소수민족과의 관계와 연계하여 편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⁸⁴⁾ 동화, 융합의 대상인 변강의 소수민족과 동아시아 각국을 거의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대사의 경우 청불전쟁, 청일전쟁과 관련 내용의 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는 서구 자본주의 침략에 대한 아시아 민족의 각성과 중국과의 공동투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변강의 위기, 瓜分의 위기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일제중학역사교학대강」(1990)의 경우 근대사 부분에 제2장 ‘중국변강지구의 신위기와 증법전쟁’이라는 장 아래에 1절 ‘중국 변강지구의 신위기(1. 미일의 대만 침략, 2. 러시아·영국의 신강 침략, 3. 영국의 운남의 티베트 침략)’에 이어 2절에 ‘증법전쟁(1.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2. 청불전쟁)’으로 편제하고 이어서 제3장 ‘갑오중일전쟁과 제국주의의 瓜分中國의 狂潮’라는 단원에 1절 ‘중일전쟁(1. 일본의 조선 침략, 2. 중일전쟁)’, 2절 ‘제국주의의 중국 과분 광조’를 배열하였다.⁸⁵⁾

일본과 프랑스의 침략에 맞서 조선과 베트남 인민의 투쟁을, 중국 인민들이 바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도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두 전쟁을 열강의 티베트, 대만 침략과 같은 자국의 변강 문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전쟁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를 중국의 변강이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음은 지적인 바와 같지만, 이처럼 조선과 베트남을 자국의 변강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셈이다. 물론 이러한 변강론은 곧

83) 「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1956), 앞의 책, 139쪽.

84) 예컨대 「全日制十年制中學歷史教學大綱」(1978), 「全日制十年制中學歷史教學大綱」(1980), 「全日制中學歷史教學大綱」(1986) 등의 장절 편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위의 책, 337~379, 396~397, 458~459쪽).

85) 과정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60쪽.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함께, 중국이 두 나라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이 같은 양국 관련 사항은 항미원조전쟁, 베트남전쟁을 통한 북한과 베트남의 건국으로 이어진다. 청조의 타협정책에 따라서 상실한 이웃나라를 사회주의 중국의 원조에 의해 되찾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두 나라의 국가 건설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사실상 과거의 전통적인 천하관과 유사한 형태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국제주의 역시 시기에 따라 함의를 달리해 왔다. 중소분쟁 이후 소련의 주도성을 제거하면서, 중화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문화권 간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국제주의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사회주의적 연대를 폐기하는 대신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한 역사 발전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역시 세계 차원에서 자국의 위상을 강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논리에 따라 편제되었다. 물론 세계와 중국의 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선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상을 추구하였다.⁸⁶⁾

그러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중화민족주의 문제이다.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국민당 시기에 형성된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틀은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진의 육국 통일을 봉건적 집권국가의 출현임과 동시에 최초의 다민족 통일국가로 평가한 이래 남북조시대, 당대, 오대십국, 원·명·청 왕조를 모두 민족의 융합이란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국민당 시기에 형성된 중국사의 틀을 그대로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대만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말갈이 세운 왕조로써 발해를 당대 지방정권에 편입시킨 것은 두드러진 예이다. 결국 소수민족을 한족과의 교류, 또는 지배계급에

86) 최근에는 한국전쟁도 변강의 위기로 다루고 있는 점은 이미 별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오병수, 2006, 「중국 중등학교 교육과정개혁과 자국사교육의 편제 : 교육과정 편제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저항의 측면에서 편입함으로써 화이로 이루어진 천하의 범주를 중국사로 통합하였다. 물론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는 내지와 변강의 관계와 사회발전단계의 차이로 치환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중화사관의 재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중화민족주의는 현재의 교육과정에도 여전히 반영되었다. 교육과정은 표면상 반제 사회주의혁명의 입장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문명사 중심의 인식 틀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서구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중심의 인식 체계에 기초한 것이니, 실제 동아시아 관련 내용은 독자적인 문명단위로 편제한 일본을 제외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물론 일본을 구미 자본주의 문명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국만을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대국으로 설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같은 입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규모 역사공정과 아울러 증서론의 또 다른 연장인 셈이다.

V. 맺음말

지구화에 따른 위험성이 심각할수록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방안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검토하였다. 특히 근대 이래 중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편제 방식을 통해 중국인들의 근대적 세계 인식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 세계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적 정체성 창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中과 西로 근대세계를 이해하고 표상해 온 만큼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빈약하였다. 이렇게 中·西라는 표상체계에 집착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적 공간 인식체계인 화이론적 세계 인식의 근대적 변용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화이론은 국내적으로

는 非漢族=支族에 대한 한화정책을 전제로 한 일련의 국민국가 건설과정으로 발현되었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화주의적 인식체계로서 표출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수평적 연대의 대상이나 타자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 틀은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되고 재생산되었다. 특히 근대 교육제도의 수용 이래 역사 교육과정은 자국사와 외국사 또는 세계사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왔지만, 자국사의 체계화와 서구적 보편사라는 편제 원리 사이에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인식은 어정쩡하게 편제되었다. 물론 신중국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시된 적도 있었지만, 그 역시 전통적 공간 인식체계와 유사한 화이론적 인식 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행 역사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탈정치화와 다원적 세계 인식이라는 원칙 아래 문명 간 교류를 중심으로 과정을 편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국가주의적 경향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을 뿐,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은 대폭 축소하였다. 상호 소통의 확대를 위한 심각한 방안이 요망된다.

[ABSTRACT]

East Asia overshadowed by China and the West :
Perceptions of East Asia in History Education at Middle
School in Modern China

Oh, Byungsoo

By focusing on Chinese perceptions of East Asia,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scourse of the regional system of East Asia. A close analysis of history curriculum in Chinese secondary school during the period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o the present reveals the ways in which Chinese intellectuals have observed the East Asian region and also developed their modern world-view.

Chinese intellectuals have developed a world view in which China and the West were located at the center, and East Asia was just marginal. This perception of East Asia shows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theory of *Huayi*,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civilized China and its negative counterparts. Assuming a natural transformation of the non-Han people to the Han people, this theory reveals the traditional Sino-centricism embedded within Chinese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East Asia. In this theory, East Asia is not considered as the object of equal solidarity or the existence of the otherness by the Chinese.

Such perceptions of East Asia based on the traditional Sino-centricism have been constantly reproduced through history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in Modern China. Especially, the

history curriculum composed of the two parts, Chi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has seriously contributed to marginalize teaching East Asian history at school. There is no doubt that East Asia has claimed its significance in the political rhetoric of socialistic internationalism. Nonetheless, its status, at least in the history curriculum, has been overshadowed under the theory of *Huayi*.

Even though the current history curriculum tries to take the multi-cultural aspects of modern world into a serious consideration, it is still built on strong nationalis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critical reflection of the status of East Asia in their intellectual perceptions as well as in the history curriculum.

Keywords

Chinese modern world-view, Chinese view on East Asia, History curriculum, theory of *Huayi*

베트남의 동북아 역사 인식

- 베트남 역사교과서를 통해 살펴봄 -

최병욱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베트남의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전제

베트남의 지역 정체성은 다소 모호하다. 인도차이나반도 내에 공존하는 캄보디아·라오스와 더불어 베트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구성국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ASEAN)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자·유교 문화권에 속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니 문화적 정체성은 아무래도 동북아시아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남북 2,000여 km가 되는 긴 나라를 대략 양분해서 북은 동북아적, 남은 동남아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궁색하다. 한자·유교·대승불교를 지역 정체성의 주 요소로 하자면 남쪽 사이공·메콩 주변 역시 동북아적이다. 반대로 여성의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적극적 역할이나 비교적 평등한 인간관계, 벼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산업, 베텔 씹기나 문신을 비롯한 제 풍속 등의 요소를 고려하자면 북부 홍하 델타까지 동남아적이다.

베트남의 '동북아적 요소'를 주목하는 학자들, 특히 요즘 일부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을 '동아시아'라는 다소 탄력적인 개념의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동안은 한·중·일 3국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동아시아'가 유행되다가 '동북아시아'와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의식 앞에 '동아시아'라는 개념과 용어는 베트남을 포괄하는 방법을 통해 '동북아시아'와의 차별성을 획득하려는 듯하다. 이런 용어·개념에 대한 신념은 한·중·일·월 4국 역사를 담아 '동아시아(East Asia)' (Fairbank et al., 1989,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ition*, Houghton Mifflin, Boston)라는 이름을 붙였던 하버드대학 역사가들의 작업이 중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4개국을 구성하는 역사를 '동아시아사'라 함은 중국사나 중국사·일본사를 '동양사'라고 책 제목으로 뽑는 동양사 학자들 사이의 보편적 과정의 또 다른 사례이다.¹⁾ 'East Asia'는 한·중·일·월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이 아니라 인디아 이동으로부터 태평양 서안까지의 지역, 즉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하버드 역사가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Fairbank et al., 1989 : 1-7). 다만, 당시 '한자'에 강했던 집필자들이 4개국의 역사만을 소개했던 것일 뿐이다. 만약 '동아시아'를 과거 '한자문화권'이라고만 한정한다면 베트남이 '동아시아'의 일부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자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 관념이 현재를 살아가는 베트남인의 궁극적인 지역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필자의 오랜 관찰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인은 자신들을 동북아(또는 한자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약하다.

베트남은 한자·유교·대승불교 문화권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동남아시아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동북아적 정체성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과도 관련된다.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제국 공히 한·중·일은 동북아권이 라기보다는 'ASEAN+3' 중에서 '3' 즉 세 개의 개별 국가라는 인식이 더 설득

1) 참고로 말하자면,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ition* 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동양문화사』(을유문화사, 1994)이다.

력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은 베트남의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지리적 요소이고 둘째는 역사적 배경이며 세 번째는 심리·실리적 요인이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라오스, 캄보디아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베트남이 멸망시킬 때까지(1471) 약 15세기 동안 존속했던 참파는 늘 베트남 남쪽에 접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베트남이 북으로 중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 지역적 정체성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라오스, 버마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런 사실이 그들의 동남아시아적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은 역사적 배경인데, 베트남은 역사 속에서의 교류 대상이 라오스, 캄보디아, 참파, 산지 소수민족들이었다. 중국과의 교류도 빈번했으나 캄보디아, 참파 등과의 접촉 빈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특히 베트남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천하 질서는 인도차이나 세계 국가 관계의 근간이었다.²⁾ 나머지 심리적 요인이란 주도권의 문제이다. 중국과 한 그룹에 속하면 중국과 대비되는 속국에다가 한자문화권 그룹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뒤쳐진 국가가 된다.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큰 나라(big country)이자 주도적 위치에 선 국가이다. 더구나 인도차이나 삼국 중에서는 누구도 의심치 않는 만형(big brother)인데 왜 그 위치를 버리고 한자문화권의 막내가 되려 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듬어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일원인 베트남은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아시아’이다. 베트남에게 한·중·일을 의

2) 베트남인들에게 황제를 중심축으로 한 국제 질서 속에서 소위 ‘외국’이란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이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응우옌 왕조가 남긴 실록 중 「외국열전」을 보도록 하자. 이곳에서는 외국의 범주를 친소에 따라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高蠻[캄보디아]’이고 두 번째 외국은 ‘暹羅[태국]’와 ‘水舍火舍(베트남 서부 고원지대의 소국)’이며 세 번째 외국에는 ‘緬甸[버마],’ ‘南掌[비엔티안],’ ‘占城[참파],’ ‘萬象[루앙프라방]’이 포함된다. 『大南正編列傳二集』(1909.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81), 第三十一卷. 한국과 일본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국은 실록 곳곳에 ‘邦交’의 대상으로 따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하는 ‘동북아’란 개념이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베트남은 물론이려니와 동남아시아 제국에게 한국과 일본 정도는 동북아시아란 범주로 쉽게 이해되나 중국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동북아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다. 서쪽으로 티베트, 위구르까지 확대되어 인도와 접한 중국은 이미 한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도대(經度帶)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한·중·일·대만을 포괄하여 ‘동아(Dong A)’(베트남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동북아(Dong Buc A)’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하나의 지역 단위로서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다.

이 때문인지 이 글의 고찰 대상이 되는 역사교과서에 ‘동북아’라는 용어와 개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동아’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베트남에게 한·중·일은 개별 국가일 뿐이다. 교과서에서는 분명 서유럽, 미주,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 보편적 지역 개념을 매우 자주 각 장·절 제목이나 내용 서술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한·중·일은 하나의 단위로 묶이는 지역이 아닌 개별 국가들일 뿐이다.

필자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10, 11, 12학년 즉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단계의 역사교과서로서 2006년 교육부·교육출판사(Hanoi) 간행본이다. 베트남의 역사교과서는 각 학년 한 권의 책에 세계사·베트남사가 함께 들어가 있으며 세계사·베트남사 공히 원시, 고대, 중대, 근대, 그리고 현대로 나누고 있다. 대체로 보아 10학년에는 원시·고대·중대가, 11학년에는 근대, 그리고 12학년에는 현대사를 배우고 있다. 단지 12학년 책은 1, 2집으로 나누어 1집은 세계사, 2집은 베트남사를 담고 있다.

제2절에서는 동북아 관련 역사가 각 권에 어느 정도 분량씩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제3절에서는 한·중·일 역사에 대한 서술 내용에서 보이는 특이성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베트남에서 한·중·일 3국의 역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³⁾

3) 그동안 국내 각 기관에서 외국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왔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외국 교과서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 때문에 베트남 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한·중·일의 서술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려 한다면,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해야 할 것이며 내용 또한 방대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II. 세계사 속의 한국 · 중국 · 일본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외국사 서술에서 쉽게 파악되는 원칙 하나는 ‘세계사성’이다. 단순한 외국사 소개가 아니라 ‘세계사’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지역적 · 국가적 안배는 거의 무시된다. 해당 국가의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을 가질 때에만 서술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특수성은 인류사적 가치를 지닐 때, 또는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만 소개 대상이 된다.

이쯤에 쉽게 예상되는 바이겠지만,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가 설 자리는 매우 좁다. 반면 중국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일관해서 세계사의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고 일본에 대한 소개는 근대 이후부터 급속히 많아진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되는 중국의 역사에 대한 서술 비중을 보기 위해서 우선 세 역사 교과서의 목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소개되는 목차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본고의 서술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10학년

제1부 원시, 고대, 중대 세계 역사

- 제1장 원시사회(인류의 출현과 원시인, 원시사회)
- 제2장 고대사회(동양의 고대국가, 서양의 고대국가)
- 제3장 봉건시대의 중국
- 제4장 봉건시대의 인도
- 제5장 봉건시대의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 제 왕국의 형성과 발전, 캄보디아 왕국과 라오 왕국)
- 제6장 중세의 서유럽

필자는 본고의 역할을 ‘동북아’에 대한 베트남의 인식을 살펴보는 시론적 연구로 한정하려 한다. 아울러 역사교과서라는 1차 사료만을 집중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을 일러두는 바이다.

제2부 베트남의 역사 - 기원~19세기 중반

제3부 근대 세계 역사

제1장 자본가 혁명(16세기 중반~18세기 말)

제2장 구미 각국(19세기 초~20세기 초)

제3장 노동자 혁명(19세기 초~20세기 초)

여기까지가 10학년 교과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제3부 ‘근대 세계 역사’는 3장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1학년 교과서의 제1부로 이어져 같은 제목 ‘근대 세계 역사’ 하에 ‘제1장 아시아 각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두어져 그 아래 ‘제1절 일본,’ ‘제2절 인도,’ ‘제3절 중국,’ ‘제4절 동남아 각국(19세기 말~20세기 초),’ ‘제5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근대시기 문화적 성취’가 설명되면서 10학년과 11학년 초에 걸치는 ‘근대 세계 역사’가 종결된다.

이상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 원시사회 시기에서 근대까지의 서술에서 중국은 세계사에서 빠지지 않는 역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베이징원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황하 문명권에 대한 소개, 고대국가 출현과 발전을 거쳐 근대 시기까지 중국은 항상 독립된 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제2부에서도 중국은 매우 비중 큰 조연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원전 2세기부터 베트남은 천여 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에도 중국에서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중국의 ‘실지 회복’ 의지에⁴⁾ 맞서 베트남의 격렬한 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역사에서 중국은 피할 수 없는 언급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총 16개 절 중에서 3개의 절이 중국의 침략과 항전에 할애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는 세계사는 물론 베트남 역사에서도 전 시기를 거쳐 언급되고 있다.

11학년 교과서 제2부와 제3부는 각각 현대사와 베트남 근현대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12학년의 역사서에는 현대의 세계사가 이어진다. 우선 11학년 제

4) 이에 대해서는 최병욱, 「중국 역대 왕조의 베트남 인식 - '25사'를 통해 살펴봄」, 『북방사논총』 참고.

2부부터의 목차를 보도록 하자.

11학년

제2부 현대의 세계 역사 (1917~1945)

제1장 1917년 러시아혁명과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1921~1941)

제2장 양차 대전 사이의 자본주의 국가들(1918~1939) (독
일·미국·일본)

제3장 아시아 각국 (중국과 인도·동남아시아 각국)

제3부 베트남 역사 (1858~1918)

12학년

제1장 소련과 동유럽 각국

제2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중국,
동남아 각국, 인도·조선·중동, 아프리카 각국, 라틴아메리
카)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일본, 서유럽 (미국, 일본, 서유럽)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관계

제5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

11학년 교과서의 주된 내용인 제2부 ‘현대의 세계 역사’는 3개의 특징적인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은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며 제2장은 자
본주의, 제3장은 아시아 각국의 반식민지·혁명운동이다. 20세기 전반의 역
사를 사회주의·자본주의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두 체제가 경쟁하던 아시아
의 반식민지·혁명운동을 추가한 방식이 흥미로운데, 여기서 중국의 상황은
제3장의 ‘중국·인도에서의 혁명운동’에서 비교적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12학년은 1945년 이후의 형편을 소련·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제3세계
권, 자본주의 체제 순으로 기술하고 이들 3개의 세계 권역 간의 국제 교류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소개로 세계사 서술을 마감하고 있다. 이런 구성에
서 중국은 제3세계권의 대표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11학년 교과서에서 중

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이어 세 번째 장으로 두어진 데 비해 12학년 교과서에서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보다 앞에 두어지고, 제1장의 소련, 제3장의 미국과 더불어 제3세계의 제일 첫머리에 서술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다루는 방법을 보면, 현 베트남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세계사' 서술 원칙에 충실한지 알 수 있다. 세계의 현대사에서 일본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전통시대 일본 역사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은 매몰차리만치 엄격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근대 세계의 전개와 더불어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중국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11학년 교과서의 제2부 '현대의 세계 역사'에서는 제2장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원으로 독일, 미국, 일본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이 장에서 중국이 제3장 '아시아 각국' 하의 한 절에서 인도와 함께 기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현대사에서 일본의 비중이 중국을 앞질렀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역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서술 비중은 매우 크다. 11학년 교과서의 '자본주의 국가들'이란 장에서 독일, 미국 등 구미국들과 나란히 대접받았듯이 12학년 교과서에서도 일본은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일본, 서유럽'에서 서술되고 있다. 역사 서술의 중요 기준인 '지역'은 세계사적 중요성 앞에서 철저히 무시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 장에서 일본은 미국(제1절)에 이어 두 번째 절(제2절)에 서유럽(제3, 4절)보다 앞서 소개되고 있다. 이보다 한 장 전인 제2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이 제1절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니, 현대사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은 제3세계를 대표하는 첫자리에, 일본은 자본주의권에서 미국 다음 자리에 독립된 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서술은 매우 소략하다. 우선, 남북한 간의 중립성을 고려해서 인지 국명은 '조선(Trieu Tien)'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Han Quoc)'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등장한다. 중국이 원시시대부터, 일본이 근대 시기부터 교과서에 언급되는 데 비한다면 매우 늦다. 12학년 교과서의 제2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조선'이란 항목이 나타난다. 이 장의 제1절에 중국, 제2절과 제3절에 걸쳐 동남아시아 각국이 소개되고 제4절에서 인도와 중동 지역과 함께 채 두 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그것도 '조선반도(Ban dao Trieu Tien)'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기술되고 있다.

1945년 12월 신탁통치안 가결부터 '조선반도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북한에 대한 것일 뿐 '한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남한에 대한 역사는 다음의 내용이 전부이다. "한국에서는 약 30여 년 동안 경제와 과학·기술에서 매우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발전이 더딘 농업국가로부터 현재 한국은 신공업국가로 변화했다. 한국은 현재 전자, 조선, 철강 등 분야의 생산과 판매에서 세계 선두 지위에 서 있다." (Lich Su 12 : 45) 그나마도 이 기술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附記)가 있다. "2003년 한국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임." 이전에는 북조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갔던 듯하다.

독립된 장·절만으로 계산하자면, 총 341쪽에 이르는 세계사 서술 중 중국사는 24쪽, 일본사는 16쪽, 한국사는 2쪽이 할애되고 있다.

이쯤에서 베트남의 역사 서술이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얼마나 충실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0학년 교과서 제1부에 소개된 봉건시대 각국 서술에서 중국은 1개 절인 데 비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2개 절을 두어 각국사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따로 독립된 절(제9절)을 두어 특별히 취급하고 있음이 흥미로운데 이 두 국가는 베트남과 더불어 인도차이나반도 3국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캄보디아의 역사는 번영하던 앙코르제국 시기 때문에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데 이를 달 이유가 없지만, 14세기 이후에나 출현했고,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조차도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던 라오스를 '특별대우'함은 '세계사적 의의'라는 원칙까지 무시하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베트남에게 '인도차이나 공동체 의식'은 '세계사적 의의'보다 중요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10학년 교과서의 제3부와 11학년 교과서의 제1부에서 다루고 있는 근대사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제1장 '아시아 각국' 아래 1. 일본, 2. 인도, 3. 중국에 이

어 제4절을 차지하고 있다. 제2부 ‘현대의 세계 역사 중 제3장 ‘아시아 각국’에서는 중국·인도가 제1절, ‘동남아시아 각국’이 제2절로 편성되어 있다. 여타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소개는 없다. 제12학년 교과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제2절에서 ‘동남아 각국’이 나온다.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동남아시아는 10, 11, 12 학년 즉 전통시대, 근대, 현대에서 빠짐없이 기술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로 묶이지 않은 채 개별 국가로 소개되는 데 비해 줄곧 ‘동남아시아’라는 집합체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면서 북쪽의 한·중·일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베트남을 뺀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한 서술은 총 40쪽이다.

Ⅲ. 한국·중국·일본의 이미지

1_ 한국 - 의외성(unexpectedness)

베트남 학생들이 3년 동안 현행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형성될 한국 역사에 대한 이미지는 ‘의외성(unexpectedness)’이라 할 수 있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한국 대사관의 자료 제공’으로 갖다 붙인 마지막 다섯 줄 때문일 것이다. 원래의 ‘조선반도’에 대한 기술에서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 신탁통치 결정, 신탁통치 내용 설명, 남한과 미국의 신탁통치안 비준수, 남북 정권 성립(*전쟁에 대한 기술은 없다)으로 끝을 맺었다. 여기까지라면 한국의 역사는 매우 논리적이어 보인다. 왜냐하면 베트남 학생에게 조선반도에 의 열강 개입과 조선의 수동성은 조선의 고유한 특성으로까지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통과 근대 시기 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조선은 중국사와 일본사 서술에서 두세 번 등장하니, 예를 들어 기원전 3세기

와 기원후 13세기 각각 중국과 몽골이 베트남과 조선(Trieu Tien)을 침략했다 든가(Lich Su 10 : 30-31),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것(Lich Su 11 : 7) 등이다. 즉 조선은 전통 시대 중국과 일본의 침략 대상으로만 언급될 뿐이니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조선은 늘 피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당연해 보이는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한국이 20세기 중에 빠르게 발전한 공업 선진국으로 소개되는가 말이다. 이 의외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더 있다. 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종종 지역으로만 이해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의 역사가 비로소 소개되는 20세기 현대사에서도 소제목을 한국 또는 조선이 아닌 '조선반도'라 뽑은 것도 그러려니와 역사교과서 내의 각 지도에서도 '조선'의 영역은 명확히 표시되는 적이 없다. 예를 들어 19~20세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도를 보면, '조선'이라는 명칭 없이[* '한성 Han Thanh' 표기는 되어 있음] 그냥 '조선반도'만이 있을 뿐이다(Lich Su 11 : 7). 만약 漢代·元代의 '조선 침략'을 기억한다면 이때 없어진 뒤 중국 땅으로 편입된 조선반도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조선반도가 모스크바 회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따로 떼어져서 독립하되 남북이 미소의 신탁통치에 위임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미국의 사주로 남조선이 신탁통치안을 거부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조선이 독자적 정권을 수립한 것도 당연한 결정 같아 보인다.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만들어내는 조선의 '수동성'은 연속적인 것이며, 논리적이기까지 한 것이었는데, 말미에 '한국'이 30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전자, 조선, 철강 분야의 산업에서 세계 선두 그룹에 속한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 대사관의 제공 자료에 따른 것이라니 선전 자료라고 치부할 수 있겠으나 베트남 학생들이 현재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상을 각종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바일 터이니 대사관 제공 자료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전통의 수동성과 현재의 역동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생긴 '의외성'은 베트남 역사교과서 편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역사에서 특히 역사교과서

에서 '의외성'이란 피해야 하는 요소임은 베트남 역사교과서 편찬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덧붙여 지적할 것은, 한국 역사는 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제국 및 중국의 사례 모두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조선의 경우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교과서 필진의 무지인지 조선의 민족,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위상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건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역사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위정척사운동, 의병활동과 삼일운동 등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의 신해혁명이나, 필리핀에서 호세 리잘이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에 비해 세계사적 의미가 크게 평가되지 않았던 것 같다.

2_ 중국-문명국과 침략자로서의 두 면모(Janus-facedness)

인류의 출현에서 시작되는 중국의 문명 내지는 역사에 대한 베트남 교과서의 기술은 자세하고도 간략하다. 이웃국의 역사이자 세계사예의 공헌을 고려하여 자세하긴 하되, 세계사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사건과 시대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전통 왕조만 소개될 뿐이고 세계사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왕조는 무시된다. 진·한을 소개한 이후에 삼국·위진남북조는 생략되고 바로 당(唐)으로 넘어가며 5대 10국이나 송·원은 건너뛰고 명대와 청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문화에 대한 소개란을 따로 두어 유교, 불교, 역사학, 문학, 산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 주제 속에 정치사에서 빠진 왕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전의 번역 사업을 언급하면서 북송의 성립과 더불어 다양한 불교 사원이 건설되고 불교 경전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Lich Su 10 : 33).

중국사 서술에서는 중국 특유의 중국중심관에 빠짐을 경계하고 있음은 흥

미롭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불교 발전에 대한 기술을 보자. 교과서에서 당대 불교 발전을 서술하면서 현장(玄奘)이나 의정(義淨)의 인도 기행을 언급함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가져오는 뜻밖의 오해는 불교 발전에 중국의 적극적 수입 의지만 강조된다는 것이다.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들 중국 승려의 활동과 더불어 인도, 동남아시아 승려들의 공헌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장, 의정 등 여러 승려들은 인도로 가서 불교의 교리를 배웠으며, 인도, 푸난⁵⁾의 수많은 승려도 전도를 위해 중국에 갔다.” (Lich Su 10 : 33)

봉건시대 중국의 문화 발전에 대한 서술에서도 중국의 세계사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각별해 보인다. 사마천의 역사학이라든가 「삼국지」, 「수호지」 등의 문학작품과 의학, 농업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각처에서도 두루 읽히며 각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의 중국 역사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혁명이 기본 주제이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반외세운동과 혁명 속에서 베트남과는 동향(同向)의 역사 주체로 인식되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20세기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중국공산당의 활동에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많은 지면이 할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 내 중국 혁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손문을 중심으로 한 신해혁명이다. 중국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보자면 유일하게 개인의 이력이 사진과 더불어 소개된 경우가 손문이다. 그의 활동과 더불어 신해혁명의 결과는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며, 비록 미완의 혁명이란 단서가 붙긴 하지만 “신해혁명은 자산민주혁명으로서, 만청(滿淸) 조정을 무너뜨리고, 중국에서 오랜 세월 존속하던 전제군주제도를 종결시켰으며,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Lich Su 11 : 17)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또 하나의 중국상은 ‘침략자’ 이

5) 1~6세기 인도차이나반도 남부에서 번영하던 고대국가. 이후 캄보디아로 흡수됨.

다. 이 이미지는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중국의 역사 기술에서만 적용됨이 매우 흥미롭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의 반영일 터이다. 교과서는 중국의 베트남 침략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시대별로 제공하면서 중국의 침략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제국 진나라의 각 제도 중 군사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한 예로 들겠다. “황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각 반란을 진압하며, 외부에로의 침략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역량을 보유했다.” (Lich Su 10 : 29)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수습한 이후 오령(五嶺) 이남의 백월 지역을 경략해 군현체제로 개편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만 떠올린다면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시황이 북방으로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흉노 방어용이었으니, 진시황의 군대 용처가 대외적으로 ‘침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진나라 시대 기술에는 만리장성 건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대신 만리장성은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봉건 시대 중국의 문화’라는 소재목하의 ‘건축’ 분야에 소개되고 있다(Lich Su 10 : 35).

필자는 앞에서 베트남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이 자세하면서도 간략하다고 했다. 아시아의 고대제국 성립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진에 대한 기술은 자세하다. 그러나 진의 뒤를 이은 한에 대해서는 3개의 단락 총 6줄로 정리했을 뿐이다. 이 간략한 3개 단락 중 그나마 4줄로 가장 긴 3번째 단락은 한대의 영토 팽창과 주변국 침략 사실로 채워져 있다. “황하 중류에 있던 중화의 근거지에서 진·한 조는 즐곧 황하 상류[감숙(甘肅)]를 장악하고, 장강 유역, 주강 유역까지 차지했으며 천산 동쪽에까지 이르렀고, 조선과 고대 월인의 땅까지 침입했다.” (Lich Su 10 : 30)

그 뒤를 이은 제2절 ‘당대 봉건제도의 발전’에서도 “당대 각 황제들은 침략 정책을 계속 수행하여 영토를 확대했다. 당조는 군대를 동원해 내몽골 지역을 점령했고, 서역을 정복했으며, 조선반도를 침략했고 안남(베트남 영토의 당시 명칭)에서 도호제도를 공고히 했으며 서장을 복속시켰다”(Lich Su 10 : 31)고 비판하고 있다.

제3절 '명청 시대의 중국'에서는 '침략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베트남이 15세기 초 명에게 20여 년간 식민지배를 받았고, 18세기 말에는 청나라 50만 대군의 베트남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명청 시대를 그냥 넘어감이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동일한 11학년 교과서 중반부에 이어지는 '베트남 역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0~15세기 외침에 대한 항전'이란 제목의 제19절에서 '명의 침략군에 대한 투쟁'이란 제목의 소절을 두어 낱날이 전후의 시말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원대의 베트남 침략도 '송의 침략군에 대한 저항'과 '몽·원 침략에 대한 항전'으로 소절 제목하에서 다루고 있다. 이 19절의 제목이 '10~15세기 외침에 대한 항전'이기는 하지만 이 절을 구성하는 세 개의 소절 모두 기실 송·원·명 등 중국의 침략과 항전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청나라의 침입에 대해서는 제23절 '18세기 말 떠이 썬 운동과 국토 통일, 조국 수호 사업'에서 언급하고 있다.

중월전쟁(1979)을 치렀던 베트남이 현대사 서술에서 중국의 침략성을 놓칠 리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보이던 침략적 면모를 베트남 교과서는 중국, 베트남이 도저히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믿기 힘들 정도의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1959년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혁명과 세계 혁명에 불리한 길을 선택했으니, 인도 및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각종 무력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 인도차이나 3국에 대해서 1972년의 <상해통고>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3국 인민의 혁명 사업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제정책과 변법을 시행했다." (Lich Su 12 : 28)

중국이 1972년 이후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입힌 손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서 얘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응당 호기심이 자극될 것이다. 이 장 말미의 '질문' 부분에서 "1959~1978년(이해에 중앙당 회의에서 개혁·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사이 중국의 상황을 얘기해 보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으니 인도차이나의 혁명운동에 손실을 안겨준 중국의 행위는 교사의 추가 설명이나 학생들의 조사 발표를 통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교실에서는 중월 사이의 국경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크메르루즈 지원, 화교 문제를 둘러싼 중월 분쟁 등등이 소개될 것이다.

3_ 일본-역동성(dynamics)

11학년 교과서의 제1장 첫머리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역사는 1868년에 단행된 명치유신을 꺾은 명치 천황의 당당한 사진 소개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도약의 역사적 배경으로 200여 년의 도쿠가와막부 시대가 소개된다.

일본 역사의 역동적 면모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중심 주제는 적극적인 근대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이다. 명치 천황의 뒤를 이어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을 사진의 내용은 화려한 유럽식 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최초의 기관차 진수식이며 그 뒤를 이어 일본 → 조선반도 → 중국 동부로 이어지는 일본의 영토 팽창 지도가 나온다. 이에 더해 1901년의 사회당 창당과 철도 노동자 투쟁은 일본의 근대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형성에 충분히 일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14절에 '양차 대전 사이의 일본'에서는 일본의 경제공황, 쌀 폭동, 군벌화, 만주국 건설 등 숨가쁘게 진행되던 일본 현대사가 서술되고 있다. 이 시기의 역사 서술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배경 설명으로 이해되어도 좋을 것이다.

'태평양전쟁의 발발'에서 11학년 교과서는 일본의 놀라운 성취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진주만 습격전 승리 이후, 일본은 동남아 각국 공약을 확대했고 전쟁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단 6개월(1941. 12~1942. 5) 만에 일본군은 타일랜드, 말레이, 싱가포르,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와 태평양의 많은 섬을 포함하는 드넓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1942년에 이르러 일본 군벌은 동아(Dong A), 동남아(Dong Nam A), 태평양에서 인구 5억, 800만 km²의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 (Lich Su 12 : 97)

일본의 항복에 대한 기술 역시 일본의 역량을 과시하기에 족하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8만 명이 사망했다.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에 있던 관동군 70만 명을 공격했다. 8월 9일 미국은 나가사키에 두 번째의 원폭을 투하해 2만 명이 사망했다.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였다." (Lich Su : 101) 설사 전쟁의 재화를 불러일으킨 국가이고, 제2차 세계대전 패국이 된 일본이지만 이 기술을 읽으

면서 형성하는 일본상(日本像)은 호불호를 떠나 '역동적'이었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다. 패전 직전까지 만주에만 70만의 정규군이 주재했고, 강력한 원자폭탄으로 순식간에 8만 명이 사망을 하고도 버티는 일본이었다. 8월 15일의 최후 장면도 '무조건 항복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항복[요구]을 받아들였다'로 기술되고 있음도 흥미롭다 할 것이다.

일본의 역동적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역사에도 이어진다.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일본, 서유럽'의 제2절 '일본'의 화려한 부활은 '경제, 과학·기술' 및 '정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등 세계의 소절 제목하에 소상하게 기술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력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는 '경제제국' 일본을 떠받쳐 주는 중요한 기초임이 강조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전개되는 동남아시아-일본 관계 때문에라도 일본의 중요성은 중시되는 것 같다. 역시 일본은 역동적인 나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IV. 맺음말

베트남 교과서에서 그려내는 한·중·일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한자와 대승불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베트남은 이들 3개 국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각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 역사책에서 '동북아'라고 하는 집체적 지역 개념은 없다.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동, 서유럽, 미주 등 다양한 지역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동북아 삼국은 각각 별개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을 보편성이 부족해 보이고,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삼국의 역사적 발전 정도와 발전 방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은 역사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적어도 한·중·일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베트남 역사교과서는 '세계사성'에 매우 충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인류의 출현에서 현대의 공산혁명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역사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고, 일본의 역사는 19세기 중반부터 대단히 많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역사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한 것이라 미·소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수동적 역사상만이 부각될 뿐이다.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소개가 있긴 하지만 한국 대사관의 노력에 힘입은 다섯 줄의 정보가 전부이다. 그나마도 구체적 정보가 아니라 화려한 발전상에 대한 개괄적 소개일 뿐이어서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홍보문에 가깝다.

필자는 한·중·일에 대한 역사 서술의 특징적 면모를 각각 의외성, 양면성, 역동성으로 표현하였다. 전통시대는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기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던 한국 역사가 갑자기 등장하고 전통시대나 근현대에서 모두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 대상으로나 묘사되던 조선반도의 한국이 세계 경제의 선두 그룹군의 일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의 공헌과 침략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중국에게 늘 시달리던 베트남으로서 중국의 침략성을 강조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적어도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 베트남은 매우 자국중심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동적인 일본상은 명치유신 - 중국 진출 - 태평양전쟁 - 경제 발전 등 19~20세기 세계사 속 일본의 역할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집요하게 적용하던 '침략성'은 일본 역사 서술에서도 발견되지만 짧은 시간에 조선반도, 중국,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여 패한 이후에도 다시 곧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는 일본의 폭발적 성장 능력에 의해 가려진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아는 일은 동북아-동남아 관계, 한국-동남아 관계, 한국-베트남 관계를 이해하고 정립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전제 작업이다. 역사교과서에 보

이는 동북아 삼국 역사에 대한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입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역사에 대한 태도는 상당 부분 예상하던 바이지만 한국 역사에 대한 서술의 내용과 분량은 필자의 조사 시작 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담한 수준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는 그동안 한국-동남아시아와 한국-베트남 관계 및 우리의 동남아·베트남에 대한 관심 수준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에 대한 내용과 분량이 빈약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동남아시아·베트남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북아시아 삼국 중 북한·한국은 가장 영세국이며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자면, 동북아시아 입장인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를 볼 때 베트남이 가장 비중 있는 국가이기에 이 나라에 대한 역사 서술은 비교적 자세할 수 있되 예를 들어 버마나 라오스 역사도 베트남 역사만큼의 수준으로 서술하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베트남과 한국은 나라의 크기나 역사적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 할지라도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은 대국이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소국이기에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사를 서술할 때 베트남은 비중이 높지만, 베트남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바라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접촉의 경험 또한 매우 적은 국가였다. 전근대 시대에 이들 국가는 중국·중국인과 조공 관계와 통상 관계로 얽혀 있었고, 일본·일본인과의 교류도 활발했거니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동남아시아 연구 및 진출·투자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이다.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교류·투자의 볼륨을 생각한다면 일본 역사 대 한국 역사 서술 비중은 오히려 후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고, 역사 속에서의 강조점 또한 양국 역사학계가 다르니 이를 정리하고 배려하는 수고로움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베트남의 역사교과서 집필자들로 하여금 한국 역사 소개에 소극적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사·일본사 전공자는 많은데 비해 한국사 전공자가 전무한 실정도 현실적 이유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사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베트남·동남아시아 - 한국 간의 교류 증가와 상호 관심 및 필요성 증대, 그리고 베트남·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한국인의 지속적 투자 등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의 한국 역사 서술 또한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트남 측에게 한국 역사 쓰기 방법을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는 베트남의 한국 역사 전문가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베트남에서 한국 역사 전문가들이 출현하고 이들이 영향력 있는 연구자 집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 각 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사 위상이 변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사의 '세계사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학년당 150~200쪽 남짓의 교과서에 다양한 세계 각국사와 베트남사를 함께 집어넣어 가르치는 분량적 특성상 외국사 서술에서의 '세계사성'은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한국 사람에게조차도 복잡다기하기 그지없는 한국 역사책을 던져 주고 알아서 찾아 정리해 주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한국사,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국사를 정리하고 그런 연구 주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학계에 던져지는 과제이다.

〈참고자료〉

- 김한규 외 역, 1994,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大南正編列傳二集』(1909), 1981,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Bo Gia Duc va Dao Tao, *Lich Su*(역사) 10, Nxb Giao Duc, Hanoi.
 Bo Gia Duc va Dao Tao, *Lich Su*(역사) 11, Nxb Giao Duc, Hanoi.
 Bo Gia Duc va Dao Tao, *Lich Su*(역사) 12 (제1집), Nxb Giao Duc, Hanoi.
 Fairbank et al., 1989,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ition*, Houghton Mifflin, Boston.

[ABSTRACT]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History Textbooks of
the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Choi, Byungwook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textbooks for the highschool students of Vietnam in order to understand the way of descriptions and discourses on the histories of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rom the viewpoints of Vietnam.

The main body of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chapters. One is the comparative volumes of the descriptions on the histories of the three countries. As expected, the volume of Chinese history is the biggest while that of Korea is the smallest. Interesting feature is that the history of Korea in the textbooks is far much smaller than expected. The history of Korea starts only from 1945 when the Second World War finished though Korea claims that she has long history of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The other chapter discusses the expected images of the Vietnamese students on the three histor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author creates three terms 'Janus-facedness' for the image of Chinese history, 'dynamics' for that of Japanese history, and 'unexpectedness' for Korean history respectively. The history textbooks of Vietnam deliberately emphasize both the contribution of Chinese history on the civilization of mankind and the aggressive tendency of China in history. The Japanese history that starts to be introduced

mainly from the time of Meiji Restoration is fully filled with energetic changes of Japan. Korean history that abruptly appears from 1945 without any mention of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country shows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a quick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 decades.

In the conclusion part, author discusses the fact that the history textbooks of Vietnam deal the history of a foreign country in the context of a world history.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a country is mentioned not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a country itself, but to understand how the history of a country had a role in the world history to make a textbook of 'world history', not the textbook of 'histories of foreign countries.' Author additionally raises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expectedness' of Korean history in the textbooks of Vietnam. First is to invest to the future historians who like to be the specialists on the history of Korea. Second suggestion goes to the academic circle of history in Korea : the work to arrange the Korean history in the context of the world history.

Keywords

Vietnam, history textbook, Northeast Asia, Southeast Asia, East Asia, Chinese history, Japanese history, Korean history

몽골 역사교육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

- 중등 『몽골사』 교과서의 대외관계 서술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장구 | 동국대학교 사학과

I. 머리말

몽골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었다.¹⁾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지만, 몽골은 한국에게 가까운 나라가 되었고, 몽골에게 한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서 배워야 할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일부는 아직도 13세기 ‘칭기스 칸’ 시대의 몽골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며, 일부 몽골인들은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 오늘날 양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단편적이고 기우뚱한 인식은,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 잡힌

1) 권영순, 1999, 「한·몽 수교의 배경,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 『몽골연구』 1, 몽골학회, 21~28쪽.

2) 이평래, 2007, 「한국에 온 노동자들을 품어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12월 1일자, K 11면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이해를 도와야 할 두 나라의 연구자와 지식인, 그리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이 담론을 흥미 위주로 이끌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런 예를 한국 측에서 한 가지만 들어보자. 칭기스 칸은 파란 몽고반점을 가진 ‘몽골로이드’이며, 바로 우리와 같은 황인종인 그가 유라시아를 정복해서 서양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영웅’이라고 선전하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칭기스 칸의 기개를 배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이면에는 그런 강대했던 ‘몽골’이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과, 결국에는 중국 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야만’은 어쩔 수 없다는 이중적인 심리구조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몽골의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 즉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⁴⁾ 사실 몽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양적’이지 않다. 몽골은 아시아에, 그중에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동양사’ 교육에서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⁵⁾ 첫째, 한자문화권이 아니고 둘째, 쌀농사를 짓지 않으며 셋째, 유교문화권도 아니다. 굳이 범위를 설정하라고 하면 넓게 ‘중앙유라시아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위를 좁혀서 보면 종교와 정신문화적으로 ‘인도-티베트-몽골권’이라고 엮을 수 있을

3) 이평래, 1999, 「한·몽 문화 교류를 보는 시각」, 국제한국학회 학회지 제4권,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소나무, 123~160쪽 ; 이필영, 1999, 「한·몽 민속문화의 비교 관점」,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경기도박물관, 130~135쪽.

4) 몽골의 세계사교육에서 동아시아 인식에 대해서는 몽골학자의 개론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J. 게렐바드라흐 슘, 김장구 옮김, 2007, 「몽골의 역사교육 :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워크숍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118~129쪽.

5) 대표적인 개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존 K. 페어뱅크·에드윈 O. 라이샤워·앨버트 M. 크레이그, 김한규·전용만·윤병남 옮김, 1991,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 신채식, 1993, 『동양사개론』, 삼영사. ‘동아시아의 개념과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오. 오병수, 2001, 「‘동아시아’인식과 세계사교육의 내용구조」, 尹世哲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 2-『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서울, 303~328쪽 ; 김성수, 2007, 「동아시아론의 전개와 역사 텍스트 속의 동아시아」, 『歷史教育』 102, 歷史教育研究會, 127~161쪽.

정도이다.⁶⁾ 그러나 이제 몽골이 동아시아의 일원이 되려 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는 몽골 역사상 전례 없이 활발하며, 동아시아 삼국도 그런 몽골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중화세계는 유목민들에게 거대한 위협이었다. 기마문화가 군사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중국은 항상 '강자'였다. 유목민이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는 존재,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서도 유목민을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몽골 유목민들은 중국에 대항하여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제3세력과 손을 잡았다. 몽골제국 시대에는 색목인, 16세기 말 이후에는 티베트, 20세기 초에는 제정 러시아(이후 소비에트 연방)⁷⁾ 그리고 20세기 말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교과서에서 중국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서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측 기록은 이미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배운 대로, 유목민을 '야만'으로 낙인찍어 버렸다. 이렇게 정주민과 유목민은 서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제부터라도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타자'를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⁸⁾

6)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역,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78~308쪽 ; 김장구, 2006, 「람스테트(G. J. Ramstedt)의 유목민족사 이해와 그 한계」, 『중아시아연구』 11, 중아시아학회, 29~50쪽.

7) 한정숙, 2007, 「멀고도 가까운 러시아」, 『경향신문』 12월 8일자, K 11면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8) 중국의 몽골사 연구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장구 외, 2006,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 윤영인, 2005, 「중국의 몽골-한족관계 연구 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고구려연구재단, 17~44쪽 ; 노기식,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북방민족사 서술」,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57~89쪽 ; 오 바트사이한, 이평래 역, 2004,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고구려연구재단 제1회 국제학술회의 『한국사속의 고구려의 위상』, 고구려연구재단, 399~413쪽 ; Sh. Bira · N. Ishjamts · Sh. Sandag, 1981, *The Maoist Falsification of the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and the Historical Truth*, State Publishing House, Ulan Bator.

몽골의 중등 국사교과서 『몽골사』에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서술이 아주 적다. 일본에 대해서는 쿠빌라이 칸의 일본 정벌과 '만주국'을 통해 몽골 동쪽 국경으로 일본군이 침략한 '할하 강의 전쟁'과 오늘날 몽골과 선진국들과의 국제 관계 등 모두 해야 세 번 언급되었을 뿐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오늘날 몽골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 발전의 교훈을 배운다는 서술에서 한번 언급되었다. 심지어 몽골(元)제국과 高麗의 관계조차 서술하지 않고 있다.⁹⁾ 따라서 이 논문의 주제에 맞게 쓴다면, 몽골과 중국과의 관계만을 단면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시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을 언급해 두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II. 고대 유목국가 시기의 대외관계

유목민의 역사에서 고대 유목국가 시기라고 하면, 흉노에서 거란까지를 가리킨다. 『몽골사』 교과서에서는 고대 유목국가 중에서 흉노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흉노의 대외관계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 ① 몽골의 고대국가들은 사신 파견, 외국사절의 접대, 문서교환, 조약 체결, 적대관계와 우호관계 문제를 결정하는 독자적인 제도가 있었다. 외국과는 사신을 통해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중시했다. 따라서 몽골에서 대외관계를 말할 때는 사신관계라고도 했던 것이다.¹⁰⁾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으로 이하 모두 같다)

9) 현대 몽골 역사학자들의 고려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s. 체렝도르지, 2007, 「현대 몽골 역사학자들의 高麗에 대한 인식」, 제1회 주니어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한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55~67쪽.

10) Gantulga Ts. 외, 2005, 몽골교육문화과학부 검정 11학년제 일반교육학교 8학년

이 인용문은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에 대해 다수가 갖고 있는 견해, 즉 침략과 약탈을 일삼은 무리였다는 선입견과 다른 견해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정주민은 유목민의 침략을 받았을 때마다 부정적인 기록을 ‘재생산’했던 것이다.¹¹⁾

②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은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몽골의 매우 건조하고 한랭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사는 발달하지 못했다. [몽골의]¹²⁾ 고대 국가들은 곡식과 옷감 등을 중국과 중앙아시아¹³⁾ 여러 나라에서 구입하였고, 그 대신 가죽, 털, 가죽, 모피 등을 제공하였다. 천연자원은 거의 팔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유목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해 약화시켜 지배하기 위해, 유목민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았다. 유목민의 침략을 받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판매하였다. 중앙아시아 각국들과의 교역 또한 안정적이지 못했다. 결국 비단길의 북방 노선[초원길]을 장악했을 때에만 동서 각국들과 교역을 통해 일용 필수품과 일부 사치품들을 중개무역[대상]을 통해 매매하여 이익을 얻곤 했다. 부렉항가의 흉노 귀족 무덤에서 발굴된 금박은 그러한 교역관계의 증거이다.¹⁴⁾

이 서술을 읽어 보면 몽골의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초원의 유목민과 오아시스 도시의 농경민(일부는 상인)과 정주 농경민 사이의 삼각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주 농경민은 교역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유목민과 오

용 『몽골사』 II, Ulaanbaatar, Admon, 51쪽 (이하 『몽골사』 II로 표기함). 이 『몽골사』 II(고중세사)·III(근현대사) 교재를 선택한 것은 교과서 저자들이 대부분 몽골국립사범대학교 몽골사학과 교수들이며, 내용면에서도 충실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술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1) 니콜라 디 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사와다 이사오 지음, 김숙경 옮김, 2007, 『흉노』, 아이필드.
- 12) 인용문에 () 로 표기한 것은 인용한 원문의 것이며, 문맥상 필요한 단어를 필자가 추가한 것은 [] 로 표기한다.
- 13) 몽골 역사학계에서는 러시아 학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중앙아시아’와 ‘중부아시아’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모두 ‘중앙아시아’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 14) 『몽골사』 II, 54~55쪽.

아시스의 주민들은 교역을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목국가는 항상 대상교역로인 비단길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유라시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오직 ‘정주농경민’의 역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두 구성 요소인 ‘초원의 유목민’과 ‘오아시스의 정주민’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¹⁵⁾

③ 기원전 198년 흉노는 漢 왕조와 조약을 체결하고, 한 왕조는 흉노를 대등한 강국으로 인정하였다. 조약에 따라 양국의 국경은 만리장성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흉노는 영토와 국경이 완전한 독립국가임을 한 왕조가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 왕조는 흉노의 복속국 상태가 되어 공납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흉노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 중국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몽골 고대국가들의 대외정책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 관계를 맺고, 독립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또한 그들과 교역을 통해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여 필요를 충족하였다. 유목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밀가루, 곡물, 차, 옷감 등은 항상 부족하여 그것을 외부세계, 특히 이웃 중국에서 구입하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정책으로 양국의 무역이 중단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흉노인들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사신교환 및 교역을 하고, 때로는 복속국으로 삼아 공납을 받는 등 다양하게 교류하였다. 흉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방의 각국들, 심지어 그리스·로마 제국과도 교류를 가졌다. 흉노 이후에 성립된 국가들도 역시 상업과 교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22년에 선비의 군주 軻比能¹⁶⁾이 7만여 두의 말과 소를 몰고 가서 중국과 교역을 한 기록이 있다. 유연은 428~532년에 拓跋魏[北魏]에 41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교역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구르도 비단길을 장악하고 국제교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대 유목국가들은 인도, 티베트,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종교, 문화교류를 유지하였다. 흉노제국 시대부터 영토 내 서남지역에서 불교가

15) 우리말로 된 간결한 글로는 다음을 보시오. 민병훈, 2005,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중앙아시아』, 국립중앙박물관.

성행하였고, 선비와 유연 시기에는 더욱 확산되었다. 위구르는 소그드로부터 문자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고대국가들은 외국과 사신왕래와 더불어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교류를 지속하였다. 사신 파견, 접대, 외교문서 작성 등에도 엄격한 제도와 형식이 존재하였다.¹⁶⁾

- ④ 중국인들은 흉노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열두 동물 달력[十二支]을 배워서 사용하였다. 몽골초원에 흉노라는 대제국이 성립되어 당시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흉노는] 중국의 북방 영토 확장 정책을 막아내어 중지시켰다. 그리하여 투르크, 만주, 투구스, 페르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중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흉노인들은 중앙아시아, 서북 인도, 동유럽까지 진출하여 몇몇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역사를 갖고 있다.¹⁷⁾

중앙유라시아 서부에서 최초의 유목국가가 스키타이라면, 동부에서 성립된 최초의 유목국가는 흉노였다. 특히 기원전에는 강대한 군사력과 다양한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秦漢 왕조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 기록에는 ‘약탈’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 ②와 ③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유목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빌미로 유목민을 복속시키려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목민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곡식(특히 밀가루)과 옷감 두 가지였다. 이 외에 일용품이나 사치품들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유목민은 이러한 물품을 중국에서 얻지 못하면, 곧바로 오아시스 농경지대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마저도 방해하기 위해 군사식민을 해서라도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장악하려 하였다. 한 무제가 파견한 장건의 西域使行과 뒤이은 河西四郡의 설치로 인한 서역 36국의 정복은 흉노의 ‘오른팔’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흉노와 중국의 관계는 군사 경제적인 모습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16) 『몽골사』 II, 58~59쪽.

17) 『몽골사』 II, 60~61쪽.

그러나 흉노는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국들, 심지어 그리스·로마 제국과도 직간접적으로 교류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중앙유라시아의 제국’이었다.¹⁸⁾ 유목국가는 교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비단길을 오가는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따라서 초원에 강력한 유목국가가 성립되면 오아시스 농경지대 출신의 상인들은 안전하게 동서를 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목국가가 멸망하거나, 세력이 약화되면 정주 농경국가(예를 들면 중국의 왕조)들은 유목민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복속시키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 중국 왕조들은 지속적으로 ‘以夷制夷’ 정책을 시도하여 유목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인용문 ④에서 중국이 열두 동물 달력을 흉노에게서 배웠다는 내용이다.¹⁹⁾ 그리고 중국 기록에는 유목민의 침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편견이 가득한 것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유목민의 역사무대가 확장되었는지 정주국가의 영토가 확장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중화의 팽창’이라는 측면은 지나치기 일쑤이다.²⁰⁾ 만리장성의 건설과 수축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측에서는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초원 깊숙이 들어와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흉노 이후, 선비, 유연, 투르크(돌궐), 위구르(회궐), 키르기스, 거란 시기에 도 유목민과 정주민의 관계는, 국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동소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흉노와 중국 관계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8) 니콜라 디 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2005, 앞의 책 ; 사와다 이사오 지음, 김숙경 옮김, 2007, 앞의 책 ; 국립중앙박물관, 2007, 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초원의 대제국, 흉노』, 국립중앙박물관.

19) 십이지의 몽골어 명칭에 대해서는 칭걸테, 1997, 「거란어와 몽골어의 十二支」, 『알타이학보』 7, 한국알타이학회, 153~160쪽을 참조.

20) 李成珪,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역사학회, 87~133쪽.

21) Arthur N. Waldron, 1983, “The Problem of the Great Wall of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3, No. 2, pp. 643~663.

III. 몽골제국 시대 서술에 나타난 대외 인식

몽골제국은 유목민의 역사에서 흉노와 투르크(突厥)에 이은 세 번째 거대 제국이었다. 칭기스 칸의 몽골제국도 처음에는 흉노와 투르크처럼 유목제국을 지향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점차 정주지역까지 몽골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시작하였다. 몽골제국 시기에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이하 중요한 인용문을 제시한다.

- ① 몽골인들이 통일정권을 성립하려고 노력하던 당시, 중국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남쪽에는 宋朝가 있었고, 북쪽에는 金朝가 北京을 중심으로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몽골의 서남방면에는 西夏, 즉 탕구트, 서쪽에는 호레즘 제국이 각각 성립해 있었다. 호레즘 제국은 내부의 종교분쟁으로 항상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톨릭의 수장인 로마교황은 '異教徒'인 투르크인들에 대항해서 성전을 일으키자고 호소했다. 그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투쟁을 격화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꾀했다. 유럽에서는 로마제국이 붕괴되어 이탈리아가 독립하고, 독일은 분열되면서 오랫동안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은 점차 기반을 공고하게 하면서 강력해졌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전쟁도 불사하였다. 바꿔 말하면, 당시 세계는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불안한 시대였다. 바로 그때 몽골도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먼저 성립하기 위한 경쟁이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그러한 경쟁의 결과 몽골인들은 통합된 강력한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²²⁾

몽골의 등장과 유목세계의 통합, 더 나아가 세계정복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몽골인들의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칭기

22) 『몽골사』 II, 83~84쪽.

스 칸의 개인적인 능력과 몽골의 군사적인 정복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몽골은 군사적인 우위와 함께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항상 강조하였다. 일부 약탈과 파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많다.²³⁾ 그렇기 때문에 몽골제국의 성립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신, 학자, 상인 등이 안전하게 서로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인용문 ②~④는 그 상황을 잘 보여준다.

② [몽골은] 대외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몽골인들의 교역에 대해 金朝는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유목민에게 전쟁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중앙아시아와 교역을 발전시키고, 몽골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대외교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증거이다.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비단길을 장악하고, 교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대외교역은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몽골 대칸에게서 재정후원을 받아, 그들을 대신해서 교역을 하던 중앙아시아의 오르톡[ortoy : 翰脱]이라는 상인들도 많이 증가하였다.²⁴⁾

③ 대몽골국[yeke mongyol ulus]의 주변에는 사회 발전단계상 서로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칭기스 칸은 대몽골국을 건립하고, 인접국들과 평등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 그들이 대몽골국을 인정하고 상호 자유무역을 발전시키는 등 대외적으로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기 위해 금조와 탕구트, 호레즘 등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금조의 통치자들은 대몽골국을 인정하기는커녕 공납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 호레즘 샤는 사신과 상인들을 죽이고 물품을 강탈하였다. …… 탕구트에게 매년 공납을 바치고, 전쟁에 군사를 차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탕구트를 정복

23) 스키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 1999,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50~51쪽.

24) 『몽골사』 II, 93쪽.

함으로써 처음으로 정주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금조는 몽골인들이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목민들이 연합하여 강력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²⁵⁾

- ④ 호레즘은 중국-지중해, 인도-러시아 간의 교역의 십자로와 서 투르크스탄의 아무다리야 강의 하류에 위치한 반정주 국가였다.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전되고 경제력은 강대하였다. …… 칭기스 칸은 호레즘 사에게 친서를 보내 교역을 위해 사절을 보냈음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양측에서 교역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였다. 대상단이 오토라르에 도착하자 성주 이날축은 그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 그리하여 칭기스 칸이 호레즘을 정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서방에서 몽골군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²⁶⁾

칭기스 칸의 뒤를 이어 칸위에 오른 우구데이도 정복전을 지속하였는데, 특히 속적이었던 금조를 멸망시키고 서방원정을 실행하여 몽골제국의 판도를 더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역참제의 정비와 상인 후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역을 발전시켰다.²⁷⁾ 인용문 ⑤와 ⑥의 서술을 보도록 하겠다.

- ⑤ 우구데이 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몽골제국의 구성원으로는 북중국, 동 투르크스탄, 중앙아시아, 이르티시 강에서 볼가 강에 이르는 초원, 그리고 몽골 지배가 공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카프카스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다. …… 체계적인 조직과 안정된 식량보급, 국가가 보호하는 驛站을 조직함으로써 동서양의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게 되고, 문화와 과학의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당시 역참제는 광대한 영토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25) 『몽골사』 II, 94~95쪽.

26) 『몽골사』 II, 96쪽.

27) 翁獨健, 1941, 「鞏脫雜考」, 『燕京學報』 29, 201~218쪽; 宇野伸浩, 1989, 「オゴデイ・ハント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 70, 71~104쪽; 김찬영, 2007, 「元代 中賣寶貨의 意味와 그 特性」, 『중앙아시아연구』 12, 중앙아시아학회, 23~46쪽; E. Endicott-West, 1989, "Merchant Associations in Yüan China: The Ortoy," *Asia Major* (3rd Series), Vol. 2-2, pp. 127~154.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다. 따라서 역참제는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²⁸⁾

⑥ 우구데이 칸은 칭기스 칸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1234년에 금조를 멸망시켰다. 1228년과 1235년 쿠릴타이에서는 서방의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치의 아들 바투를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왕자들을 그의 지휘하에 참가하도록 결정하였다. 경험이 많은 수베데이 장군을 그의 보좌역으로 임명하였다. …… 바투가 이끄는 군대는 티사 강변에서 헝가리 군대의 주력부대와 싸워 궤멸시켰다. 바투와 수베데이의 군대는 벨라 IV세를 찾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까지 진격하였다. 몽골군의 위협에 유럽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다.²⁹⁾

⑦ 구육은 칸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에 개입하여 혼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였다. 투레게네 카툰의 명령으로 관직에서 쫓겨났던 친가이 승상, 마수드 벅, 마흐무드 알라바치 등을 원래의 자리에 복직시켰다. …… 1247년 겨울, 구육 칸은 대군을 이끌고 치료차 서쪽 예밀 지방으로 향했다. …… 1248년 봄 구육 칸은 갑자기 사망하였다. …… 1251년에 몽케를 칸위에 앉히기 위한 쿠릴타이가 군대의 삼엄한 보호하에 열렸다. …… 몽케 칸의 대외정책은 이전에 대칸들의 정책을 이어받아 양 방향으로 정복전쟁을 계속하였다. 몽케 칸은 동생 쿠빌라이에게 북중국을 모두 정복하고, 나아가 南宋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아래 동생 흘레구에게는 군사를 주어 이슬람 제국과 바그다드의 칼리프를 정복하도록 서방으로 파견하였다. 흘레구는 대칸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1256년에 이슬람 제국, 1258년에 바그다드를 각각 정복하고 일 칸국을 건립하였다.³⁰⁾

⑧ 그들 각 울루스는 몽골제국의 서부에 위치하였고, 그 지역으로 역참과 중요한 교역로들이 통과하였으며 동서문화가 전파되고 상업과

28) 『몽골사』 II, 102쪽.

29) 『몽골사』 II, 104쪽.

30) 『몽골사』 II, 105~106쪽.

경제발전의 중요한 교량이 되었다. 각 울루스들은 발전의 특징이 서로 달랐다.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은 무역과 경제가 발전하였고, 일 칸국은 학문과 학자 후원 방면에서 유명하였다. 당시 학문의 여러 방면 중에서 특히 역사학과 의학이 발전하였으며, 아타 말릭 주베이니(1226~1283)의 『세계정복자사』, 라시드 앳딘의 『집사』 등 유명한 역사서들이 저술되었다. 차가타이 칸국과 킵차크 칸국은 도시 건설이 크게 발달하여 어떤 역사서에는 도시들의 나라라고도 기록하였다. 요즘, 킵차크 칸국의 영토에서 몽골 권력자들인 칸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섬세하게 세공된 금은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수공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³¹⁾

⑨ 쿠빌라이 칸 시대에 많은 사신과 상인이 [몽골제국으로] 와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대간의 신임을 얻어 몽골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불교를 국교로 삼고 티베트의 승려 파스파를 국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는 정교일치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을 동등하게 인정한 것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몽골인들이 중국인과 섞여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몽골인이 중국인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중국 의복을 입고 중국의 예법을 따르는 것 등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대에는 약 20여 나라와 정치·교역 관계를 맺었다. 쿠빌라이는 이전 칸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영토 확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남중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더 나아가 버마, 캄보디아, 安南(베트남)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여 복속국으로 만들었다. 쿠빌라이는 日本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1274~1296년에 정벌을 시도했으나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³²⁾

⑩ 13세기에 오랫동안 지속된 십자군전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도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셀주크 투르크는 그리스와 서로 소아시아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시리아를 점령하기

31) 『몽골사』 II, 111쪽.

32) 『몽골사』 II, 114~115쪽.

위해 전쟁을 벌이는 등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 몽골제국이 성립되자 세계 각국은 다양하게 반응하였다. 몽골 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정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몽골 대간의 정책을 파악하고, 다시 정복전을 시행할지 안할지, 군사 무기와 그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계를 맺어 후원을 얻거나, 가능하다면 대간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로마교황과 프랑스의 왕은 플라노 드 카르피니와 기욤 드 루브루크를 파견하여 몽골 대간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고, 개종시키지 못한다 해도 기독교와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³³⁾

- ⑪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몽골제국이 성립되자 세계 자유교역시대가 형성되었다. …… 당시 세계 각국의 주민들은 교류를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배우고 알게 되었다. …… 야율초제, 라시드 앳딘, 마흐무드 알라바치, 마르코 폴로, 마수드 벡 등 수많은 학자와 현인이 몽골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국을 통치하였다.³⁴⁾

세계사적으로 10~12세기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였다. 몽골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했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배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³⁵⁾ 몽골의 대외교역에 대해 금조는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다. 금조는 몽골고원에서 통합된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타타르’를 앞잡이로 초원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칭기스 칸은 이러한 당시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금조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탕구트 원정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호레즘에 사절단을 파견한 것도 안정적으로 물자를 교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호레즘의 한 지방장관이 사절단을 모두 살해하면서 칭기스 칸은 갑자기 정복전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몽골이 평화로운 자유교역을 원했던 것은, 제국 성립 이후 ‘비단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33) 『몽골사』 Ⅱ, 116~117쪽.

34) 『몽골사』 Ⅱ, 118~119쪽.

35) 스기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 1999, 앞의 책, 30~40쪽.

동서교역을 발전시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여 상업 활동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우구데이 칸도 마찬가지로 역참제도를 정비하여 교역과 왕래를 촉진시켰다. 우구데이 칸은 마침내 금조를 멸망시키고, 바투를 서방원정 총사령관으로 삼아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정복하였다.³⁶⁾

⑦~⑨의 인용문에서는 구육부터 쿠빌라이 시기의 대외관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구육 칸도 정복전을 지속하려 했지만 재위기간이 너무 짧았다. 뒤를 이어 칸위에 오른 몽케도 동생인 쿠빌라이와 훌레구를 각각 북중국과 이란 방면으로 출정시키는 등 정복전을 실시하였다. 몽골제국의 구성원인 각 칸국 [울루스]들은 정복지 지배를 위해 현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쿠빌라이[元 世祖]는 칸위에 올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방면에 치중하였다. 특히 이때부터 티베트와 몽골 사이에 정치·종교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대항해시대 이전 ‘몽골시대’에 이미 전 세계는 일체화하였던 것이다.³⁷⁾

IV. 14~17세기 몽골의 대외관계와 인식³⁸⁾

몽골제국이 해체된 이후 중앙유라시아는 다시 분열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

36) Th, T. Allsen, 1983, "Prelude to the Western Campaign : Mongol Military Operations in the Volga-Ural Region, 1217~1237,"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3, pp. 5~24.

37) 비록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유럽인들은 몽골[元]을 통해 고려에 대해 인식하였다. M. Underdown, 1997, "European Knowledge of Korea during the Yüan Dynasty," *Études Mongoles et Sibéiennes* 27(1996), pp. 385~404.

38)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시기를 ‘明代蒙古’ 시기라고 칭한다. 이는 역시 중국 중심의 사고와 관점이다. 어떤 학자는 ‘明代蒙古史’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라고 주장하

었다. 몽골도 동서로 분열되어 내분에 휩싸이게 되면서 약화되었다. 몽골은 명조를 압박하여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교역을 시도하였지만, 명은 장성을 수축하여 몽골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했다.³⁹⁾ 아래에 인용문을 몇 개 제시하겠다.

① 당시 몽골의 정책방향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정치의 분열을 막기 위해, 경제 산업을 복원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외교정책으로는 몽골과 중국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몽골인들은 잃어버린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은 몽골을 정복해서 지배하기 위해 서로 투쟁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 明朝는 몽골인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였고, 몽골의 권력자들은 서로 분열하여 투구스 테무르 칸 이후 1388년부터 1400년 사이에 재위했던 다섯 명의 칸들은 모두 제명에 죽지 못했다. …… 이렇게 명조의 분열정책으로 인해 몽골의 권력자들은 내분에 휩싸여 약화됨으로써 대칸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몽골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몽골은 정치권력의 통합이 약화되어 동·서 몽골인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타서, 명조는 고의적으로 교역관계를 끊고, 몽골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실로 몽골인들을 지배하려고 시도했다.⁴⁰⁾

② 에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위기가 안정되자, 몽골의 세력은 조금씩 회복되어 잠시 동안이나마 평화 상태가 유지되었다. 에센은 몇 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내 경제적 교역관계를 맺을 것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1449년에 중국을 공격하였다. 명의 英宗은 이에 맞서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했지만 도리어 몽골에게 포로가 되

고, 명과 몽골을 남북국으로 인식하고 서술하기도 한다. 薄音湖, 1994, 「北元與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1, 9~12쪽. 이 시기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馬楚堅, 1994, 「近十年來中國研究明代蒙古史之回顧」, 『明清邊政與治亂』, 天津人民出版社, 485~513쪽.

39) H. Serruys, 1959,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 1368~1398*, Brussels, l'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40) 『몽골사』 II, 137~138쪽.

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그 지명을 따라 '土木堡의 變'이라 한다. 포로가 된 황제를 인질로 삼아, 예센은 중국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교역의 재개를 요구하였지만, 명조는 새로운 황제를 앉히고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로잡았던 황제를 조건부로 돌려준 다음 잠시 동안 양측의 관계는 안정되었다.⁴¹⁾

③ 16세기 초 다시 분열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서부 몽골의 통치자로 지농 [직책에 있던], 다얀 칸의 손자 알탄 칸(1517~1582)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알탄 칸이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서 오이라트와 쿠쿠 노르[青海]를 점령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알탄 칸의 위력이 증대되자 명조는 그를 주시하며, 그가 중국과 교역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1541년에는 알탄 칸의 首級을 베어 오는 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몽골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지만, 중국 명조의 침략행위를 잘 방어하여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한 보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였다.⁴²⁾

④ 이렇게, 16세기 후반 몽골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黃敎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 몽골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불교가 흥성하면서 인도와 티베트 문화의 영향이 몽골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몽골인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고 흥성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의 깃발 아래 정신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염원과 관련된 것이다.⁴³⁾

⑤ 북쪽에 인접한 러시아는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강력해져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국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러시아인들이 '검은 땅'이라고 부르던 시베리아와 극동의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자 노력하였다. 17세기 초, 러시아인들은 서부 시베리아를 대부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알타이, 바이칼, 아무르, 동

41) 『몽골사』 Ⅱ, 139쪽.

42) 『몽골사』 Ⅱ, 140~141쪽.

43) 『몽골사』 Ⅱ, 144쪽.

부 시베리아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으로 당시 몽골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그들의 영향과 간섭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몽골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당시 아시아의 각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커다란 변혁은 여진[통구스] 계통의 만주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강력해지자 곧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몽골의 통치를 벗어나 건립된 중국의 명조는 세력은 약해졌지만 중앙아시아의 정치 상황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하였다. 그들은 '以夷制夷'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함께 살던 티베트인들은 17세기 초, 종교와 정치적인 분파들 사이에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었다. 특히 불교의 두 종파, 紅敎와 黃敎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몽골의 서남과 서쪽 방면에는 무굴제국과 부하라, 카자흐, 키르기스 등이 있었다. 그들의 내부 상황은 안정되지 못하고, 게다가 강력한 중앙집권력이 존재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야르칸드와 투르판의 통치자들 사이에 東투르키스탄을 서로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다.⁴⁴⁾

①~④의 인용문에서는 14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고, 외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몽골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명조의 쇠국과 분열정책에 기인한 것이다.⁴⁵⁾ 이렇게 몽골은 분열되면서 주변의 정세에 어두워졌고, 만주족이 흥기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16세기 말이 되자 몽골에는 티베트 불교가 들어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⁴⁶⁾

44) 『몽골사』 II, 151~152쪽.

45) 이 시기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 Serruys, 1967,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 和田清, 1959, 『東亞史研究(蒙古篇)』, 東洋文庫 ; 萩原淳平, 1980, 『明代蒙古史研究』, 同朋舍.

46) H. Serruys, 1963, "Early Lamaism in Mongolia," *Oriens Extremus* 10(2), pp. 181~216 ; 이평래, 2006, 「16세기 말 이후 몽골 불교의 확산과 전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 230~274쪽 ; 김성수, 2002, 「17世紀 할하(Qalq-a) 中心論의 形成과 티벳佛敎」, 『중앙아시아연구』 7, 중앙아시아학회, 27~57쪽.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지극히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러시아의 발전이다.⁴⁷⁾ 17~18세기가 되면 청조와 국경을 맞대고 지속적으로 청조를 압박하여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몽골은 더 이상 청과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국력이 아니었다. 이러한 몽골의 상황은 1911년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된다.

V. 만주 청조의 지배 시기 몽골의 대외관계와 인식

결국 만주 청조는 중국을 정복하고 내몽골, 외몽골, 서몽골을 차례로 점령하여 몽골제국의 뒤를 이어 '동부 중앙유라시아'의 신흥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청은 만주, 중국, 몽골, 티베트, 동투르크스탄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이 시기 몽골의 대외인식을 살필 수 있는 인용문을 몇 개 제시한다.

- ① 1636년에 내몽골의 16 아이막[盟], 49 호쇼[旗]의 왕공들의 회맹이 목텐[瀋陽]에서 열리고, [만주의] 아바하이를 몽골의 대칸으로 인정함으로써 내몽골은 만주의 지배영역이 되었다. …… 초기에는 만주 청조가 칼카 몽골[外蒙古]을 공격할 위험이 없었지만, 1644년에 명조를 정복한 다음 곧이어 위험이 닥쳐왔다.⁴⁸⁾
- ② 갈단의 공격과 만주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칼카의 왕공들은 1688년 9월에 아르 엘스테이라는 곳에서 회맹을 갖고, 칼카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를 논의하여 만주 청조에 복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47) 이완중, 2005,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북방사논총』 4호, 고구려연구재단, 161~213쪽 ; 고마즈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역, 2005, 앞의 책, 310~322쪽.

48) 『몽골사』 II, 155~156쪽.

만주의 강희제는 1691년 5월에 돌노르트에서 칼카의 550여 왕공과 타이지들, 내몽골의 49 호쇼의 영향력 있는 왕공들을 포함한 회맹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회맹에서 칼카 몽골이 만주 청조에 복속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칼카 몽골인들은 만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⁴⁹⁾

③ 에르덴바야르 흉타이지가 죽은 다음, 그의 자식들 중에 칸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10여 년 동안 티베트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훌륭한 승려가 되었던 아들 갈단이 계율을 파기하고 돌아와, 1671년에 칸위에 앉았다. 그는 1676년에 오이라트 몽골인들을 모두 통합하고 준가르 칸국을 통일된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갈단은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 갈단은 전력을 가다듬고 끈질기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만주의 대군에 패배하여 1697년 3월 13일 아츠 암트테이라는 곳에서 적에게 사로잡힐 위협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만주인들은 갈단을 진압한 다음, 준가르 칸국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⁵⁰⁾

④ 오래 지나지 않아 1755년 7월, 다와치를 사로잡아 북경으로 송환함으로써 준가르의 영토는 만주의 군대가 장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몽골은 모두 만주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 건륭제는 준가르 칸국을 정복하여 준가르 군대를 해산시키고, 1755년 9~10월에 돌노르트에서 준가르가 만주제국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다.⁵¹⁾

⑤ 몽골 인민들은 조국의 영토와 자유 그리고 독립을 되찾기 위해 만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 노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예는 1755~1758년에 발생한 무장봉기였다. 이 무장봉기는 오이라트의 아마르사나, 칼카(호트고이드)의 칭군잡 등이 조직하여 지도하였다.

49) 『몽골사』 Ⅱ, 158쪽.

50) 『몽골사』 Ⅱ, 160~161쪽.

51) 『몽골사』 Ⅱ, 163쪽.

또한 내몽골의 셉텐발지르 등 일부 왕공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그러나 만주 조정은 첩자들과 일부 배신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고 반란세력을 진압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 그렇게 1755~1758년에 아마르사나와 칭군잡 등이 이끄는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가 진압되었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나라를 잃은 서글픔과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기개를 몽골 역사에서는 되새겨왔던 것이다. [몽골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노래, 작품 등이 있다.⁵²⁾

중앙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를 보면, 정주민의 공격으로 멸망하거나 약화된 예는 없다. 유목민의 약화는 내부의 분열과, 중국의 ‘이이제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을 몽골에 대해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이 바로 만주 청조였다.

⑥ 만주 청조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중국[漢族] 상인들이 몽골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 중국 상인들은 물건과 돈을 몽골인에게 연 36%의 이자로 빌려주고 3년 안에 빚을 다 갚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그 기간에 늘어난 이자를 더해 기간을 다시 3년 동안 연장하였다. 이렇게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고리대금업이었다. 그 당시에 민중들 사이에는 ‘양 한 마리에는 가죽 세 장이 있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까지 이흐 후레 [오늘의 울란바타르]에 중국 상인들의 수는 스무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세기 초가 되면 몽골 땅에 중국 상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었다.⁵³⁾

⑦ 러시아는 여러 차례 만주 청조와 조약을 맺고 국경에서 교역할 권리와 기타 권리들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1861년에 이흐 후레에 러시아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외몽골에는 러시아의 상업 활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비이스크, 카흐타를

52) 『몽골사』 II, 164~166쪽.

53) 『몽골사』 II, 175쪽.

통해 몽골에 들어왔다. 러시아 상품들은 중국 것보다 품질이 매우 좋았다. 1861년 러시아·몽골 간의 교역량은 10만 루블 정도였는데, 1900년에는 1,690만 루블까지 증가하였다. 외몽골에서 러시아의 상업은 주로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몽골, 내몽골에는 러시아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20여 개의 상점과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외국 상인들의 활동은 몽골인들의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⁵⁴⁾

인용문 ①~⑥에서는 1636년에 내몽골, 1688년에 외몽골, 1755년에 서몽골의 준가르 칸국까지 차례로 청조에 복속됨으로써, 몽골이 모두 청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결국 몽골은 강력하게 등장한 청조 앞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사분오열하여 차례로 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명조와 청조는 몽골 유목민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분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아주 성공적이었다. 물론 만주의 지배하에서도 몇 차례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漢人 상인들은 몽골 땅 어디에서나 경제적으로 몽골인들을 수탈하였다. 인용문 ⑦은 18세기 말에 러시아 상인들이 몽골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뒤를 이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과 일본까지 뒤를 이어 들어오는 상황을 적고 있다. 17~19세기는 몽골이 만주 청조에게 정복당한 식민지 상황이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몽골은 독립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VI. 20세기 사회주의 몽골의 대외관계

만주의 지배하에서도 꾸준히 독립을 염원하던 몽골인들은, 1911년 청조가

54) 『몽골사』 Ⅱ, 176쪽.

멸망하자 독립을 선언하였다. 몽골제국 시대가 몽골 역사에서 최전성기라면, 20세기 몽골 역사는 부흥을 이룩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1924년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몽골이 독립을 되찾았을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렸고, 100여 년에 걸친 몽골(원)제국과 ‘부마국’ 고려의 밀접한 관계 이후 직접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 그 기회는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찾아오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이 서로에 대해 단편적이며 부정확하게 이해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 20세기 몽골의 대외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20세기 초에 몽골은 만주의 통치지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변경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몽골인들은 독립을 되찾을 방법을 강구하면서 강력히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 中華民國과 帝政러시아는 몽골에게 강압적으로 비합법적인 조약을 맺게 하여 외몽골을 중화민국에 예속된 자치국가로 통치하게 하였고, 내몽골을 중화민국의 한 지방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중화민국은, 1919년에 몽골의 자치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군사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그렇지만 몽골인들은 중국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투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 최초의 정당이 결성되고, 아울러 억압에 저항하는 민족의 민주혁명이 확산되어, 1921년 7월에 독립을 다시 선포하였다.⁵⁵⁾

② 20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약소민족들을 나누어 식민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 만주 청조의 경제·정치력이 쇠약해지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저항과 투쟁이 강력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압박과 요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55) Gantulga Ts. 외, 2006, 몽골교육문화과학부 검정 11학년제 일반교육학교 9학년 용 『몽골사』 Ⅲ, Ulaanbaatar, Admon, 13쪽 (이하 『몽골사』 Ⅲ으로 표기함).

제정러시아, 일본 등은 만주 청조의 영토를 나누어 갖고 각각의 통치 하에 두었다. 해양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몽골은 1850년대 까지 식민제국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국 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될 위험이 닥쳐왔다. 몽골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적극적으로 경쟁하였다. 1907, 1910년에 양측은 협정을 맺어 러시아제국은 외몽골에, 일본은 내몽골에 대해 권리를 갖기로 합의하였다.⁵⁶⁾

20세기 초 몽골의 대외정세는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선의 상황보다 객관적으로 나을 게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독립을 이룩한 것은 '몽골인'이라는 일체감과 그들의 세계 인식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1911년 독립선언 당시 상황과 대외관계에 관한 인용문을 살펴보자.

- ③ 몽골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만주의 억압에 저항하는 투쟁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몽골의 귀족들도 만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쥘춘담바 호타트는 1895년에 러시아에 기대어 몽골의 독립을 되찾을 의지를 표명하고,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는 공식문서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 보내 도움을 청할 대표사절로는 친왕 한드도르지, 다람 채명치메드, 고관 하이산 등을 선임하였다. 그들은 제8대 복드칸 쥘춘담바 호타트와 칼카의 네 아이막의 칸들의 이름을 함께 적은 문서를 가지고, 이흐 후레에서 비밀리에 출발하여 1911년 8월 15일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몽골인들의 독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는 문서 이외에도, 만주 청조와 중국인들의 압박과 몽골 내부사정에 대한 21가지 설명문을 제정러시아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 러시아의 위정자들은 몽골 대표단에게, 몽골은 아직 청조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기회는 없지만, 몽골에 시행하고 있는 '新政'을 폐지하도록 북경[淸朝]에 압박을 가하겠다고만 약속하였다.⁵⁷⁾

56) 『몽골사』 Ⅲ, 15~16쪽.

57) 『몽골사』 Ⅲ, 19~21쪽.

- ④ 날짜를 정해서 압박을 가해, 산도 압박을 1911년 12월 4일 이흐 후레에서 쫓아냄으로써 만주의 [몽골]지배는 무너졌다. 1911년 12월 29일 접춘담바 호타트를 몽골국의 정교 일체를 책임진 칸으로 추대하는 의식이 이흐 후레에서 열렸다. 복드칸의 칙령에 따라 몽골국의 정부는 다섯 개의 부처로 조직되었다.⁵⁸⁾
- ⑤ 카흐타 삼국협정 이후에 몽골의 대외정세는 더욱 불안해졌다. …… 일본은 바이칼 호 동쪽의 부리아트, 치타, 몽골과 바르가를 통합하여 '범몽골국'을 만들어 낼 의도를 갖고 몽골 전역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범몽골국을 건립하기 위한 회의를 1919년 2월에 치타 지역의 다고르[다우리아]에서 개최하여, 내몽골의 네이스 계젠[活佛]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몽골 정부는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침략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세운 이 '나라'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⁵⁹⁾
- ⑥ 중화민국 총통은 1919년 11월 22일, 외몽골의 자치정부를 철폐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徐樹錚은 몽골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기를 몰수하였으며, 다섯 部處를 없애고 官印을 몰수하고 복드칸과 고관대작들을 중국 총통의 사진 아래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였으며, 몽골의 자치권을 철폐하는 장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혼란한 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몽골의 독립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 중국 군대의 잔악한 통치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⁶⁰⁾
- ⑦ 1921년의 혁명은 내용과 성격으로 보면 '민족·민주혁명'이었다. 혁명에는 몽골의 모든 사회조직과 계층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혁명의 결과 인민주권제 王政이 성립하였다. 1921년 민족·민주혁명에서 승리함으로써 몽골민족의 부흥을 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

58) 『몽골사』 Ⅲ, 22쪽.

59) 『몽골사』 Ⅲ, 34~35쪽.

60) 『몽골사』 Ⅲ, 36쪽.

되었다.⁶¹⁾

몽골은 1911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중화민국 정부가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치'를 인정했으며, 러시아도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⁶²⁾ 1919년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몽골의 '자치'마저 철폐하고 정부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몽골의 독립투쟁과 러시아의 후원을 통해 1921년 다시 독립을 찾게 되었다.⁶³⁾

⑧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몽골인민공화국의 대내외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할하 강의 전쟁[노몬한 전쟁]이 발발하여 몽골과 소련 연합군은 일본의 진출을 궤멸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몽골과 소련은 연합국 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조국의 독립과 완전한 주권 상황을 강대국들이 승인하게 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을 오랫동안 세계무대에 설 수 없게 가로막고 있던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몽골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은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⁶⁴⁾

⑨ 1939년이 되자 일본이 만주국을 통해 몽골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5~6월에는 몽골 영토 깊숙한 곳까지 침략하여 일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 몽골과 소련군 지휘부는 일본의 강력한 저항을 분쇄한 다음, 1939년 8월 20일에 [일본군을] 포위하여 섬멸할 것을 결정하였다. 몽골과 소련 연합군 부대는 8월 31일에 일본 제6부대를 공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조국의 영토에서 몰아내 버렸다.⁶⁵⁾

61) 『몽골사』 Ⅲ, 55쪽.

62) 孫賢淑, 1984, 「外蒙에 관한 三國協定の 분석」, 『釜山女大史學』 2, 39~86쪽.

63) 몽골의 독립과 몽골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준희, 2005, 『칭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인민공화국의 건국』, 제이앤씨.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학문적인 비판과 객관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고. 이평래, 2005, 「1911년 외몽골 독립에 대한 중국 연구자들의 시각」, 『북방사논총』 3호, 고구려연구재단.

64) 『몽골사』 Ⅲ, 101쪽.

인용문 ⑧~⑨ 는 조선과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마침내 몽골을 장악하려 한 시도를 서술하였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를 겪었던 러시아는, 몽골과 연합하여 일본의 대륙 진출의 예봉을 꺾을 수 있었다. 스탈린 시대부터 몽골은 철저하게 소련의 위성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몽골인, 특히 지식인과 승려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숙청을 단행하였다.

⑩ 1961년 10월 25일,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몽골과 모리타니아 두 나라를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시키는 의제를 상정해 9개국이 찬성하고 1개국이 기권하였으며, 장개석이 보낸 대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 국제연합에서 몽골이 법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서구 각국과 몽골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⁶⁵⁾

⑪ 냉전시기에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은 소비에트연방과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과도 평화적인 공존을 도모하면서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조직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도 소련과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⁶⁷⁾

사회주의 몽골은 소련과 동유럽, 쿠바 등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1960년대 중소 국경분쟁에서 소련 측의 손을 들어, 이때부터 몽골과 중국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다.⁶⁸⁾ 1961년에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영국을 시작

65) 『몽골사』 Ⅲ, 105쪽.

66) 『몽골사』 Ⅲ, 112쪽.

67) 『몽골사』 Ⅲ, 140쪽.

68) R. Rupen, 1958, "Russian-Mongol-Chinese Conferenc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I, No. 3, pp. 537~541. 이 회의에서 러시아·몽골·중국 삼국의 학자는 1965년까지 몽골인민공화국 통사를 세 권으로 공동집필하기로 협의하였다. 물론 이 작업은 중소 국경분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으로 서구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일본과는 1972년에, 미국과는 1987년에, 한국과는 1990년에 각각 수교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관계 무대에 서기 시작하였다.

Ⅷ. 오늘날 몽골의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인식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련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예속 상태에 있던 몽골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혈 폭동이나 급격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몽골인들은 낮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 인내해야만 했다. 이제 20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미국 등 강대국과도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과도 안정적인 대외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 터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오늘날 국제관계에 대한 몽골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 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이념, 경제, 사회적인 심각한 위기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가 단기간에 붕괴하였다. 몽골에서는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강력하게 확산되었고, 사회생활 전반을 변혁시킬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로 가는 길이 급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행된 것은 몽골국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이 되어 남았다.⁶⁹⁾
- ②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경

69) 『몽골사』 Ⅲ, 157쪽.

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는 소련을 필두로 하는 동유럽 사회주의 각국의 생활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의 급격한 붕괴에서 시작된 것이다.⁷⁰⁾

- ③ 몽골국은 몇 가지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나,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은 두 강대국,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어느 한쪽만을 중요시하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둘, 미국, 일본, 독일 등 동서양의 선진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 셋, 아시아 대륙에서 [몽골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이 지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 각국(ASEAN), 그중에서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교훈으로 삼아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하는 데 중요하다. 대한민국과 맺은 관계와 공동협력은 더욱 확대발전하고 있다. 넷, 국제연합과 산하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재정경제기관들과 협조하는 것이다. …… 다섯, 구 사회주의 체제였던 동유럽 각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 여섯,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여 강대국들의 경제무역압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서로 이해하고 후원하며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원하는 협력을 하는 것이다. …… 몽골의 대외정책은 전체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모두가 인정한 기준을 존중하며 실행하는 민주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⁷¹⁾

70) 『몽골사』 Ⅲ, 159쪽.

71) 『몽골사』 Ⅲ, 192~195쪽.

VIII. 맺음말을 대신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기로 하겠다. 하나, 고대 유목국가 시기에는 동아시아(그중에서 중국)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각 지역과 균형잡힌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치·문화교류를 유지하였다. 10~12세기에는 혼란과 분열의 시기로 유라시아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어 몽골제국 시기에는 유목민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교류를 하였으며, 몽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몽골제국이 멸망한 다음, 14~17세기에는 주로 중국의 명조와의 관계에 치중하였다. 이어서 등장한 만주 청조는 중국을 정복하고 나서 내몽골과 외몽골을 차례로 정복하고 ‘최후의 유목제국’인 서몽골의 준가르 칸국을 멸망시킴으로써 몽골은 모두 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몽골은 만주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몽골이라는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독립을 위해 저항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 이후 소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가 흔들리게 되면서 몽골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후 몽골은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외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몽골의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상호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몽골은 동아시아보다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예를 들면 동투르크스탄의 오아시스 국가들, 티베트 정권,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계, 중앙아시아 각국, 그중에서도 터키와 몽골은 마치 형제국가처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 중국 그리고 타이완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역사교과서에 동아시아에 관한 서술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꾸어 보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도 몽골과 유목민에 관한 서술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편견과 오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⁷²⁾ 앞으로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의 몽골과 중앙아시아 연구 현황과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은 몽골과 유목민을 자국사의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있다.⁷³⁾ 따라서 유목민의 역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왜곡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대륙 진출을 위해 명백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두 나라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비교적 늦게 출발하였고 연구자의 수도 많지 않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더욱 개관적이고, 중앙유라시아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부터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던, 유럽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비록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관심은 점차 퇴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연구는 미국과 동아시아 삼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⁴⁾

72) 정재훈, 2005,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세계사 서술 속의 '타자' 읽기: 북아시아사 서술의 분석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93, 歷史教育研究會, 1~31쪽; 이평래, 2007, 「잃어버린 역사」,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 잡기』, 삼인, 56~76쪽.

73) 윤영인, 2005, 「중국의 몽골-한족관계 연구 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고구려연구재단, 17~44쪽; 노기식,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북방 민족사 서술」,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57~89쪽; 鄭夏賢, 2001, 「中國의 역사교육에 있어서 少數民族 이해」, 尹世哲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 2-『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329~355쪽; 王柯 지음, 金貞姬 번역, 2005,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 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고구려연구재단; 김장구 외, 2006,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74) 한국에는 전문학술지로 『알타이학보』, 『중앙아시아연구』, 『몽골학』, 『동북아역사논총』(『북방사논총』도 포함) 등이 있는데, 이들 학술지에는 매년 한두 차례 중앙아시아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ABSTRACT]

An Analysis of understanding to East Asia in historical
education of Mongolia

- Focusing the description of foreign relations through the textbook
History of Mongolia -

Kim, Janggoo

This essay brings into the focus of description of foreign relations through the *History of Mongolia* as textbook of secondary education, thereby it analyzes historical education of Mongolia and the understanding to East Asia. As the result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cognizance about the Mongolia were as follows.

The period of ancient nomadic nation continued maintaining cultural and political exchange between East Asia(especially, China), Central Asia and West Asia. 10th~12th centuries were periods of disorder and disruption that the Eurasian Continent was unstable geo-politically. When the Hunnu, Hsien-pi, Turks, Uighurs, Khirghis, and the Kitans were thriving, relations between the nomadic tribes and the sedentary people continued maintaining cultural and political exchange each other as mentioned above. The period of Mongol Empire was the most exchangeable era on nomadic history extensively and the Mongolia played a important role in a variety of exchange. After collapse of the Mogol Empire, 14th~17th century was era of foreign relations which give undue emphasis to the Ming Dynasty in China. The Mongols not only oppressed the Ming Dynasty

but also tried to trade with the Ming in order to obtain supplies and materials. But the Ming Dynasty built the great wall and controlled the Mongolia economically. And then the Ching Dynasty which the Manchurian tribe established, conquered the China proper as well as Inner and Outer Mongolia, Zunghar in turn. Accordingly the Mongolia was under the rule of the Ching Dynasty. On the one hand, contemporarily the Mongolia was subjected to the Manchu rule,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resisted against the latter in order to achieve independence and maintained a sense of belongs that Mongolia should unite one. Under the control of the Manchurian tribe, the Mongols who wished independence declared the Mongolia's independence in 1911, when the collapse of the Ching Dynasty broke out. After the Mongolia achieved the independence and established socialist state system, it was placed under the power of Soviet's influence and was closely connected with some of socialist states. As socialist Mongolia was intimately associated with socialist states such as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Cuba, and North Korea. The Mongolia keep on having friendly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impaired relations in 1960s when boundary disput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ok place. Because the Mongolia was on the side of the Soviet Union on the border dispute. With the Mongolia joining the United Nations in 1961, the Mongolia begu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 with Great Britain for the first time, and had diplomatic ties with countries in Western Europe. The Mongolia begu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972,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87, and South Korea in 1990 and thereby made one's appearance on the stage of international stages. Since the end of 1980s socialism was on the ebb

throughout the world, the Mongolia attempted to convert into democratic and free market economy. After that time the Mongolia have cooperated in foreign affairs as family member within the community of nations.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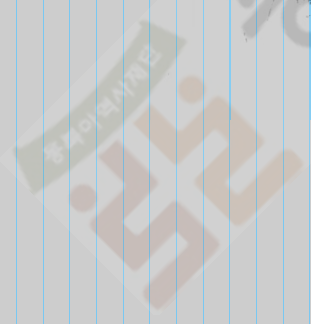
Mongolia history textbook, understanding to East Asia, Central Asia, nomads and the sedentary world, socialist Mongoli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1



‘王建의 중국 출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갑동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중국은 최근 소위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 이하 약칭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오고 있다.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그 근거는 주로 책봉체제에 근거하고 있다. 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왕씨 고려는 고씨 고구려의 후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왕씨 고려 왕족도 고구려의 고씨 왕족과는 전혀 별개의 족속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 측의 일부 학자는 고려 태조 왕건도 중국 출신일 것이라는 설을 내세운 바 있다. 왕건의 성씨가 중국에 흔히 있는 왕씨인데, 중국의 왕씨는 이미 西漢 樂浪郡 당시의 명문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건도 낙랑군의 漢人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 바 있다.¹⁾ 그러다가 최근에는

1) 楊保隆, 2001, 「高氏高麗與王氏高麗無前後相承關係辨識」, 『古代中國高句麗歷史總

왕건이 확실한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사료를 들어 주장하여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史長樂이라는 중국 학자는 고려의 건국자인 왕건이 중국 출신이라는 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즉 후당의 명종이 고려에 보낸 조서에 따르면 왕건은 반도의 토착 신라인의 후손이 아니고 중국 淮河 유역에서 온 漢人 후예라 하고 있다.²⁾

이 설은 주로 『고려사』에 나오는 후당 명종이 보낸 조서에 근거한 것인데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또 일부분은 사료를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내세우는 ‘왕건의 중국 출신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점별로 파악해 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 당시 중국의 고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후당 명종의 책봉 조서와 ‘長淮茂族’의 의미

史長樂은 우선 後唐 明宗이 왕건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한 조서에 “卿長淮茂族, 漲海雄蕃”³⁾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서 長淮라는 지명이 고려 이전의 각종 「地志」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장회가 신라나 백제일 수는 없다. 결국 장회는 중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문헌을 조사해 보면 장회는 중국 淮河 유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왕건의 선조는 회하 유역의 명문집안이고 왕건 본인

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32~134쪽.

2) 史長樂, 2007, 「唐明宗披露了高麗太祖王建的族籍」, 『東北史地』.

3) 『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 3월조.

은 회하 유역 漢族의 후예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⁴⁾

그럼 우선 원문을 검토해 보자.

A. 又詔曰 ① 卿長淮茂族 漲海雄蕃 以文武之才 控茲土宇 以忠孝之節 來夔化風 貞規既篆於旗 常寵數 是覃於簡冊 如綸如綍 已成虎穴之榮 宜室宜家 ② 足顯鵲巢之美 俾頒湯沐 以慶絲蘿 永光輔佐之功 式協優 隆之命 諒卿誠素知我渥恩 卿妻柳氏 今封河東郡夫人. (『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 3월조)

여기서 ①의 밑줄친 부분에 대해 어느 번역서에는 “당신은 동방의 대족이요 해외의 강국”이라 해석하고 있다.⁵⁾ 그러나 다른 번역서에는 ‘長淮茂族’은 “長流하는 淮水 지방의 名門巨族이란 뜻이다. 淮水는 河南省 桐柳山으로 東流하여 安徽省境에 들어간다. 이 지역에는 옛날 淮夷들이 살았으므로 淮水라 하게 되었는데, 회이는 동이족 중에 저명한 족속이다. 그러므로 長淮茂族이란 말은 곧 고려 왕실이 동이족 중의 명문거족이란 말이다”라고 되어 있다.⁶⁾ 또 ‘漲海雄蕃’에 대해서는 “南海의 웅변이란 뜻으로, 고려 왕실을 장희의 무족이라 함과 같이 고려국을 남해의 웅변이라 함은 실지와 부합되지 않은 표현이나 長淮와 漲海는 모두 수식으로 쓴 것임”이라 하고 있다.⁷⁾ 장희는 잘 알 수 없지만 창해는 字典에도 ‘南海의 별칭’으로 되어 있다.⁸⁾

문제는 왜 후당에서 고려 왕실을 장희무족이라 했는가 하는 것이다. 단순한 수식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당시 중국에서 장희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료를 보자.

4)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2~13쪽.

5) 고전연구실 편찬, 1991, 『北譯 高麗史』 1, 신서원, 104쪽.

6)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7, 『역주 고려사』 제1 세가 1, 태학사, 52쪽 주 1).

7)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7, 위의 책, 52쪽 주 2).

8) 『漢韓大字典』, 1991, 민중서림, 746쪽.

- B-1. 九年 徐州戍兵龐勛自桂州擅還 七月至浙西 沿江自白沙入濁河 剽奪舟船而進 絢聞勛至 遣使慰撫 供給芻米 都押衙李湘白勛曰 徐兵擅還 必無好意 雖無詔命除討 權變制在藩方 昨其黨來投 言其數不踰二千 而虛張舟航旗幟 恐人見其實 涉境已來 心頗憂懼 計其水路 須出高郵縣界 河岸斗峻而水深狹 若出奇兵邀之 俾荻船縱火於前 勁兵奮擊於後 敗走必矣 若不於此誅鋤 俟濟淮泗合徐人負怨之徒 不下十萬 則禍亂非細也 絢性懦緩 又以不奉詔命 謂湘曰 長淮已南 他不爲暴 從他過去 餘非吾事也. (『舊唐書』 卷172 列傳 122 令狐楚 附 絢傳)
2. 廣明元年夏 黃巢之黨自嶺表北趨江淮 由采石渡江 張璠勒兵天長 欲擊之 駢怨朝議有不附己者 欲賊從橫河洛 令朝廷聳振 則從而誅之 大將畢師鐸曰 妖賊百萬 所經鎮戍若蹈無人之境 今朝廷所恃者都統 破賊要害之地 唯江淮爲首 彼衆我寡 若不據津要以擊之 俾北渡長淮 何以扼束 中原陷覆必矣 駢駭然曰 君言是也 卽令出軍 有愛將呂用之者 以左道媚駢 頗煩用其言 用之懼師鐸等立功 卽奪己權 從容謂駢曰 相公勲業高矣 妖賊未殄 朝廷已有間言 賊若盪平 則威望震主 功居不賞 公安稅駕耶 爲公良畫 莫若觀勢 自求多福. (『舊唐書』 卷182 列傳 132 高駢傳)
3. 卿又云 若欲俯念舊勳 佇觀後效 何不以王鐸權位 與臣主持 必能糾率諸侯 誅鋤群盜者 朕緣久付卿兵柄 不能翦滅元兇 自天長漏網過淮 不出一兵襲逐 奄殘京國 首尾三年 廣陵之師 未離封部 忠臣積望 勇士興譏 所以擢用元臣 誅夷巨寇 心期貔武 便掃欃槍 卿初委張璠 請放却諸道兵士 辛勤召置 容易放還 璠果敗亡 巢益顛越 卿前年初夏 逞發神機 與京中朝貴書 題云 得靈仙教導 芒種之後 賊必蕩平 尋聞圍逼天長 必謂死在卿手 豈知魚跳鼎釜 狐脫網羅 遽過長淮 竟爲大慙 都統旣不能禦遏 諸將更何以枝梧 果致連犯關河 繼傾都邑 從來倚仗之意 一旦控告無門 凝睇東南 惟增悽惻 及朕蒙塵入蜀 宗廟污於賊庭 天下人心 無不雪涕 旣知曆數猶在 謳謠未移 則懷忠拗怒之臣 貯救難除姦之志 便須果決 安可因循 況恩厚者其報深 位重者其心急 此際天下義舉 皆望淮海率先 豈知近輔儒臣 先爲首唱 而窮邊勇將 誓志不弔 關東寂寥 不見干羽 泊乎初秋覽表 方云仲夏發兵 便詔軍前 并移汶上 喜聞兵勢 渴見旌幢 尋稱宣潤阻艱 難從天討 謝玄破苻堅於淝水 裴度平元濟於淮

西 未必儒臣不如武將.(『舊唐書』 권182 列傳 132 高駢傳)

4. 時巢蔡合從 太祖每遣偵邏 必率先獨往 巢敗走 思安領所部百餘人追賊 殺戮掩奪 衆莫敢當 尋領軍襲蔡寇於鄭 都將李唐賓馬躡而墜 思安援梁刺追者 唐賓復其騎而還 又嘗與蔡人 當陣生擒賊將柳行實 其後渡長淮 下天長高郵二邑 又拒孫儒 迫濠州 皆有奇績 累遷爲諸軍都指揮使 奏官至檢校左僕射 尋拜亳州刺史 練兵禦寇 邊境肅然 思安爲性勇悍 每統戎臨敵 不大勝 必大敗.(『舊五代史』 권19 梁書 권19 列傳 9 李思安傳)
5. 朕自類禍出師 麾旄問罪 絕長淮而電擊 指建業以鷹揚 旦夕之間 克捷相繼 至若兵興之所自 霧起之所來 勝負之端倪 戎甲之次第 不勞盡論 必想具知.(『舊五代史』 권116 周書 권7 世宗本紀 3 顯德 3年)
6. 景 本名璟 及將臣於周 以犯廟諱 故改之 昇之長子也 昇卒 乃襲爲位 改元爲保大 以仲弟遂爲皇太弟 季弟達爲齊王 仍於父柩前設盟約 兄弟相繼 景僭號之後 屬中原多事 北土亂離 雄據一方 行餘一紀 其地東暨衢婺 南及五嶺 西至湖湘 北據長淮 凡三十餘州 廣袤數千里 盡爲其所有 近代僭竊之地 最爲強盛 又嘗遣使私賂北戎 俾爲中國之患 自固偷安之計 案南唐書云 契丹遣二使來告曰 晉少主逆命背約 自貽廢黜 吾主欲與唐繼先世之好 將册君爲中原主 嗣主曰 孤守江淮 社稷已固 與梁宋阻隔 若爾主不忘先好 惠賜行人 受賜多矣 其他不敢拜命之辱.(『舊五代史』 권134 僭偽列傳 1 李昇 附 景傳)
7. 初 周師南征 無水戰之具 已而屢敗景兵 獲水戰卒 乃造戰艦數百艘 使降卒教之水戰 命王環將以下淮景之水軍多敗 長淮之舟 皆爲周師所得 又造齊雲船數百艘 世宗至楚州北神堰 齊雲舟大 不能過 乃開老鶴河以通之 遂至大江 景初自恃水戰 以周兵非敵 且未能至江 及奉率使見舟師列于江次甚盛 以爲自天而下 乃請曰 臣願還國取景表 盡獻江北諸州 如約 世宗許之 始賜景書曰 皇帝恭問江南國主 勞其良苦而已 是時揚泰滌和壽濠泗楚光海等州 已爲周得 景遂獻廬舒蘄黃 畫江以爲界 五月 景下令去帝號 稱國主 奉周正朔 時顯德五年也.(『新五代史』 世家 권62 南唐世家 2 李昇 附 景傳)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당말 오대 당시의 '장회'는 분명 중국의 한 지명으로 쓰였음에 틀림없다. B-1의 “長淮已南”이라든가 B-3의 “갑자기 장회를 지났다(遞過長淮)”, B-6의 “북쪽으로는 장회에 웅거하였다(北據長淮)”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준다. 특히 B-2, 4에 “장회를 건넜다(渡長淮)”는 표현을 보면 장회가 강이나 하천임을 나타내준다. B-7의 “장회의 배가 모두 주나라 군대에게 빼앗긴 바가 되었다(長淮之舟, 皆爲周師所得)”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회는 큰 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장회는 지금의 회수를 가리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시 장회는 淮河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B-4의 자료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그 후에 장회를 건너 천장과 고우의 두 읍을 함락하였다(其後渡長淮, 下天長, 高郵二邑)”라고 되어 있다. 또 B-1, 2에서도 高郵縣과 天長이란 지명이 나오고 있다.

천장과 고우의 두 읍의 위치는 어디인가. 두 읍은 회하의 남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唐나라 때 제정된 10도 중 淮南道에 속해 있었다. 회남도 중에도 揚州 廣陵郡에 속해 있는 7개 현 중의 하나였다. 즉 江都, 江陽, 六合, 海陵, 高郵, 揚子, 天長 등의 7현이 양주에 속해 있었다.⁹⁾ 특히 고우는 南宋대에 淮南 東路에 속한 州治의 하나로, 회하 바로 남쪽에 있던 읍이었다. 元나라 때에도 조정에 직접 예속된 부의 치소[直隸府治]였다.¹⁰⁾ 천장은 고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회하는 그 하류에 오면 몇 개의 호수를 거쳐 長江[양자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 호수 중 高郵湖가 있고 그 호수의 북쪽에는 淮安이,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天長市, 高郵市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의 선대가 이 회하 지역에서 번성하였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장회의 무족이라 했는가? 이는 중국의 고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고구려나 부여·옥저·동예·삼한 등을

9) 『新唐書』 권41 지31 지리5 회남도조.

10) 중화학술원 편, 1980, 『중국역사지도』(상책), 중국문화학원출판부, 61~64쪽.

東夷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이의 한 일파는 회하 유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를 淮夷라 하였다.

다음 기록을 보자.

C. 王制云 東方曰夷 …… 昔堯命羲仲宅嵎夷 曰暘谷 蓋日之所出也 夏后氏太康失德 夷人始畔 自少康已後 世服王化 遂賓於王門 獻其樂舞 桀爲暴虐 諸夷內侵 殷湯革命 伐而定之 至于仲丁 藍夷作寇 自是 或服或畔 三百餘年 武乙衰敝 東夷復盛 遂分遷淮·岱 漸居中土。(『後漢書』 권85 東夷列傳 제75)

이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동방을 夷라 불렀다 하였다. 이 東夷는 해가 뜬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중국의 천자가 덕을 잃으면 가끔씩 침략해 왔다. 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桀이 포악해지자 또 이들 동이가 침략해 왔으나 殷나라의 湯왕이 혁명을 하고 난 후 이들을 평정하였다. 그 후에도 3백여 년간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반하였다. 그러다가 은나라의 27대 왕 武乙에 이르러 은이 쇠약해지자 동이가 점점 강성해져 드디어 淮水와 岱山[泰山]에 나누어 옮겨오더니 점차 中原 땅에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태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둥반도 일대에 있던 동이는 徐夷라 부르게 되고 회수 유역에 살던 동이는 淮夷라 하였다. 기록을 보자.

D. 及武王滅紂 肅慎來獻石弩楛矢 管蔡畔周 乃招誘夷狄 周公征之 遂征東夷 康王之時 肅慎復至 後徐夷僭號 乃率九夷 以伐宗周 西至河上 穆王畏其方熾 乃分東方諸侯 命徐偃王主之 …… 穆王後得騏驎之乘 乃使造父御以告楚 令伐徐 一日而至 於是 楚文王大舉兵滅之 …… 厲王無道 淮夷入寇 王命虢仲征之 不克 宣王復命召公 伐而平之 及幽王淫亂 四夷交侵 王齊桓修霸 攘而卻焉 及楚靈會申 亦來豫盟 後越遷琅琊 與共征戰 遂陵暴諸夏 侵滅小邦 秦并六國 其淮泗夷 皆散爲民戶 陳涉起兵 天下崩潰 燕人衛滿 避地朝鮮 因王其國 百有餘歲 武帝滅之 於是 東夷始通上京 王莽篡位 貊人寇邊 建武之初 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彤威震(?)北方 聲行海表 於是 滅·貊·倭·韓 萬里朝獻。(『後漢

『書』 권85 東夷列傳 제75)

즉 주나라 때 管叔과 蔡叔이 주나라를 배반하고 夷狄을 초유하자 주공이 東夷를 정벌하여 평정하였다. 그 후 徐夷가 王號를 칭하고 周나라를 치자 주나라의 5대 왕 穆王이 초나라에 알려 徐夷의 국가, 즉 서국을 멸망케 하였다. 그러다가 주나라의 10대왕 厲王이 무도하여 정치가 혼란해지자 이번에는 淮夷가 쳐들어 왔다. 왕은 귀족에게 명하여 정벌케 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1대 왕인 宣王이 다시 召公에게 명하여 정벌케 함으로써 겨우 평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淮夷와 泗夷가 다 흩어져 진나라의 민호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사이는 앞의 서이와 동일한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수 유역의 夷를 淮夷라 한 것처럼 泗水 유역의 夷를 泗夷라 하였기 때문이다. 사수는 공자의 고향인 曲阜 일대를 흐르는 강으로 그 중 한 줄기는 태산에서 발원하여 황하로 흘러들어간다. 따라서 泗夷는 태산에서 사수에 걸쳐 존재했던 東夷라 하겠다. 이는 또한 서이와 실체가 같은 존재라 하겠다. 서이는 서주 일대에 있는 夷라는 뜻으로 徐戎과 같은 뜻이라 하겠는데, 서융은 바로 '徐州之戎'¹¹⁾이었기 때문이다. 서주는 사수보다는 약간 아래 쪽에 있지만 크게 보면 사수 일대에 포함된다 하겠다. 앞의 사료에서 동이가 회수와 岱山[泰山] 일대에 나누어 살았다는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비록 서이의 국가, 즉 서국이 멸망했다 하지만 그 잔존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동이는 이렇듯 크게 보아 徐夷[泗夷]와 淮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좀 떨어진 고조선이나 숙신·예·맥·한 등도 동이의 한 갈래였다. 그것은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나라 말기 燕人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으나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자 비로소 동이가 처음으로 중국과 통하게 되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요동태수 제융의 위엄

11) 『尙書』 僞孔傳.

이 북방에 떨치자 예·맥·왜·한 등이 만 리 밖에서 조공을 바쳐 왔다는 기술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後漢書』나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부여·고구려·동옥저·예·韓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¹²⁾ 이후 한반도 일대에서 삼국시대가 전개되면서 「동이전」에는 고구려·백제·신라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동이 계열의 종족은 본래 중국의 북쪽 변경을 거쳐 동으로 발해만에 이르러 두 코스로 이동하였으니 하나는 다시 동으로 진출하여 동남 만주와 한반도 방면으로 분포되고 다른 한 코스는 산동 방면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산동 일대 내지 淮·泗 유역에 이동 분포된 동이족과 한반도 만주·일대에 분포된 동이족은 漢族으로부터 모두 東夷라는 명칭으로 불리었을 뿐 아니라 종족에서도 실로 같은 원류에서 분파된 것이라 하겠다.¹³⁾

요컨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이족은 자신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따라서 현 중국 동북 지방과 한반도에 있었던 부족국가들은 물론 산동반도 일대에 있었던 徐夷, 泗夷, 淮夷 등도 같은 동이족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려의 왕건 가문을 ‘長淮茂族’이라 한 것은 동이족 중의 변성한 족속이라는 뜻이지 史長樂의 주장처럼 회수 유역 출신이란 뜻이 아닌 것이다.

III. 중국의 고려 인식

그런데 중국 학자들 중 일부는 고구려와 고려가 아무런 계승성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중국인들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를 고

12) 『後漢書』 권115 東夷列傳과 『三國志』 魏書 권30 東夷傳.

13) 金庠基, 1954·1955, 「東夷와 淮夷·西戎에 對하여」, 『東方學志』 1·2; 金庠基,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출판부, 384·424쪽.

고려와 동일시하였다.¹⁴⁾ 다음 기록을 보자.

- E-1. 高麗本扶餘之別種 其國都平壤城 卽漢樂浪郡之故地 在京師東四千餘里 東渡海至于新羅 西北渡遼水至于營州 南渡海至于百濟 北至靺鞨 東西三千一百里 南北二千里 其官大者號大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 唐貞觀末 太宗伐之 不能下 至總章初 高宗命李勣率軍征之 遂拔其城 分其地爲郡縣 及唐之末年 中原多事 其國遂自立君長 前王姓高氏 唐同光天成中 累遣使朝貢 周顯德六年 高麗遣使 貢紫白水晶二千顆.(『舊五代史』 권138 外國列傳 高麗)
2. 高麗本扶餘之別種也 其國地君世見於唐 比佗夷狄有姓氏 而其官號略可曉其義 當唐之末 其王姓高氏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郎韓申一·副使春部少卿朴巖來 而其國王姓名 史失不紀 至長興三年 權知國事王建遣使者來 明宗乃拜建玄菟州都督 充大儀軍使 封高麗國王 建高麗大族也 開運二年 建卒 子武立 乾祐四年 武卒 子昭立 王氏三世 終五代常來朝貢 其立也 必請命中國 中國常優答之.(『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 高麗)
3. 高麗 本高句驪 禹別九州 屬冀州之地 周爲箕子之國 漢之玄菟郡也 在遼東 蓋扶餘之別種 以平壤城爲國邑 漢魏以來 通常職貢 亦屢爲邊寇 隋煬帝再舉兵 唐太宗親駕伐之 皆不克 高宗命李勣征之 遂拔其城 分其地爲郡縣 唐末 中原多事 遂自立君長 後唐同光天成中 其主高氏累奉職貢 長興中 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 遣使朝貢 以建爲玄菟州都督 充大儀軍使 封高麗國王 晉天福中 復來朝貢 開運二年 建死 子武襲位 漢乾祐末 武死 子昭權知國事 周廣順元年 遣使朝貢.(『宋史』 권487 外國列傳 3 高麗)

14) 이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최규성, 2004, 「중국의 東北工程의 실체와 高句麗繼承意識」, 『白山學報』 70 ;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 박용운, 2006a,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동북아 사람들의 이해」, 『북방사론총』 9 ; 박용운, 2006b,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E-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라 하면서 제일 높은 관직이 大對盧임을 밝히고 있다. 또 당 태종이 정벌하다 실패하였으며 당 고종 때 겨우 평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뒤이어 당 나라 말년에 중원에 일이 많아 그 국가가 드디어 스스로 君長[임금]을 세웠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왕건의 고려 건국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를 고구려의 후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뒤이어 그 이전의 왕은 고씨였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여기서 前王이라 함은 왕건의 전왕, 즉 궁예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를 高氏라 한 것은 그가 내세운 명분, 흥기한 지역, 국호까지도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그의 성씨도 당연히 고씨였으리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¹⁵⁾

한편 생각하면 궁예는 왕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고구려의 왕족인 고씨였다고 자칭했는지도 알 수 없다. 사실 그는 갓난아이 시절에 시골로 도망해 살았고 세달사에서 지내면서 성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왕족 출신이란 것을 전혀 실감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901년 그가 “옛날에 신라가 당에 청병하여 고구려를 파하였기 때문에 평양 옛 서울이 황폐하여 풀만 무성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하면서¹⁶⁾ 고구려 부흥을 표방할 때 고씨를 표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들은 바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2도 고려가 扶餘의 別種임을 말하면서 다른 오랑캐에 비해 성씨도 있으며 관직의 이름도 뜻을 대략 알 수 있는 것들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에 그 왕성이 고씨라 한 것은 앞서 본 대로 궁예를 고씨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고려에서 중국에 보낸 사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동광 원년(923)에 韓申一과 朴巖이 후당에 왔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왕의 성명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왕은 틀림없는 왕건이다. 이는 분명 후백제나 신라가 아닌 고려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인

15) 박용운, 2006b, 위의 책, 113쪽.

16) 『三國史記』 권50 弓裔傳 天復 원년조.

물들이 『고려사』의 기록에서 찾아지기도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한 해 후백제 견훤이 閔郃이란 인물을 보내 왕위 즉위를 축하하자 왕건은 廣評侍郎 한 신일을 보내 사절을 맞이하게 한 적이 있다.¹⁷⁾ 또 박암은 고려 태조 6년(923) 오월국에서 귀순해온 문사였다.¹⁸⁾

또 장흥 3년(932)에도 왕건이 사신을 보냈음을 전하고 있다. 이는 『고려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로 왕건은 태조 15년(932) 大相 王仲儒를 후당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¹⁹⁾ 그러자 후당 명종은 그 이듬해인 933년(후당 명종 4, 고려 태조 16) 王瓊, 楊昭業 등을 고려에 보내와 왕건을 權知國事に 봉했던 것이다.²⁰⁾ 그러면서 왕건은 고려의 大族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왕건의 선조가 고구려의 유민 계통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기술한 왕건의 후대 왕 이름도 정확하다. 따라서 E-2의 기록도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이며 왕건 가문이 고구려의 유민 중 대족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3의 기록은 이를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서두에서부터 고려의 본래 이름은 고구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여의 별종으로 평양성에 도읍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수양제와 당 태종이 이를 멸하려 하였다가 실패하고 당 고종 때 멸망하였다 하였다. 그러다가 당나라 말기에 고려가 마침내 스스로 군장을 세웠음을 전하고 있다. 이는 물론 고려의 건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당 시대에 그 임금 고씨가 여러 번 조공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려의 왕은 왕건이었음에도 이를 삼국시대 고구려의 고씨라 적어 놓고 있다. E-2에서는 국왕의 성명을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여기서는 고씨라 잘못 적어 놓고 있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고려를 고구려와 혼동하고 있었으며 고려를 고구려의 후신이라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 이후 고려의 왕위계승을 같은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17) 『高麗史』 권1 태조세가 원년 8월조.

18) 『高麗史』 권1 태조세가 6년 6월조.

19) 『高麗史』 권2 태조세가 15년조.

20) 『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 3월조.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고려에 보낸 조서에서도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 기록을 보자.

F-1. 春三月辛巳 唐遣王瓊楊昭業來册王 詔曰 ……權知高麗國王事建
身資雄勇 智達機鈴 冠邊城以挺 生負壯圖 而開出山河 有授基址克豐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宣乃惠和 俗厚知書 故能
導之以禮義 風驍尙武 故能肅之以威嚴.(『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
3월조)

2. 四年春 降制曰 “古先哲后 奄宅中區 曷嘗不同文軌於萬方 覃聲教於
四海 顧子涼德 猥被鴻名 爰致賓王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
州都督·充大義軍使·高麗國王昭 日邊鍾粹 遼左推雄 襲箕子之餘
風 撫朱蒙之舊俗 而能占云候海 奉贊充庭 言念傾輸 實深嘉尚.(『宋
史』 권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傳)

우선 F-1에서 후당 명종은 왕건이 주몽 영토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기자가蕃臣이 된 자취를 밟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²¹⁾ 그런데 그들이 같이 가지고 온 조서인 A 자료에서 왕건의 가문을 중국 출신이라 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A의 ‘장회무족’이란 표현은 고조선이나 고구려, 나아가 고려를 동이의 후손으로 본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F-2의 『宋史』에서도 왕건이 요수의 좌측에서 영웅으로 추대받았기자의 유풍을 계승하고 주몽의 옛 습속을 鎮撫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역시 당시 중국에서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 기록에서 더 극명히 보이고 있다.

G-1. 高麗之先 蓋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寔子姓也 歷周秦 至漢高祖
十二年 燕人衛滿亡命 聚黨椎結 服役蠻夷 浸有朝鮮之地而王之 自子

21) 안병우, 2004, 앞의 논문, 129쪽.

姓有國 八百餘年 而爲衛氏 衛氏有國 八十餘年 先是 夫餘王得河神之
 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爲朱蒙 因以名之 夫餘人
 以其生異 謂之不祥 請除之 朱蒙懼逃焉 遇大水無梁 勢不能渡 因持弓
 擊水而呪之 魚鼈竝浮 因乘以濟 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驪 因以
 高爲氏 而以高麗爲國 凡有五部 曰消奴部 曰絕奴部 曰順奴部 曰灌奴
 部 曰桂婁部 漢武帝滅朝鮮 以高麗爲縣 屬玄菟郡 其君長賜之鼓吹伎
 人 常從君受朝服衣幘 縣令主其名籍 後稍驕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
 歲時受之 因名幘溝濃 溝濃者 高麗名城也 於是 始稱王焉 王莽發其兵
 以誅匈奴 不至降 王爲侯 而麗人益寇邊 光武中興罷 遣邊吏 建武八年
 遣使來朝 因復王號 列爲外蕃 安帝以後 部衆滋熾 雖少鈔暴旋 卽安服
 初消奴爲王 其衰而桂婁伐之 至王宮 生而開目能視 國人惡之 及長壯
 勇 和帝時 頻掠遼東 傳至王伯固 伯固死 有二子 長曰拔奇者不肖 次
 曰伊夷模 國人立焉 漢末公孫康 擊破伊夷模 於其國九都山下 國人共
 立其子位宮 位亦力有勇力 好鞍馬 以其祖宮 生於能視 今王亦然 句驪
 謂相似位 故名曰位宮 魏將毌丘儉屠之 追至肅 刻石紀功而還 位宮五
 世孫劉 晉永嘉中 與遼西鮮卑慕容廆鄰 廆不能制 康帝建元初 廆子皝
 帥師伐之大敗 後爲百濟所滅 其後慕容寶 以其王高安 爲平州牧 安孫
 璉 義熙中 遣長史孫翼 獻楮白馬 以爲榮州牧 高麗王樂浪郡公 璉七世
 孫元 隋文帝時 率靺鞨寇遼東 唐太宗時 其東部大人蓋蘇文 賊虐不道
 帝親征之 威震遼海 高宗又命李勣 往平之 俘其王高藏 裂地而爲郡縣
 建安東都護府於平壤城 以兵鎮守 後武后遣將 擊殺其王乞昆羽 而立
 其王乞仲象 亦病死 仲象子祚榮立 因有其衆四十萬 據于挹婁 臣于唐
 中宗時 乃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渤海郡王 其後遂號渤海 初藏之俘
 也 其酋長有劍牟岑者 立藏外孫舜爲王 又命高弔(人+品)討平之 都護
 府旣屢遷 舊城頗入新羅 遺民山奔突厥靺鞨 高氏旣絕 久而稍復 至唐
 末 遂王其國 後唐同光元年 遣使來朝 國王姓氏 史失不載 長興二年
 王建權知國事 遣使入貢 遂受爵以有國云。(『高麗圖經』 卷1 建國 始封)

- 2.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 後唐
 長興三年 遂自稱權知國事 請命于明宗 乃拜建元州都督充大義軍使
 封高麗王 晉開運二年建卒 子武立 漢乾祐末 武卒 子昭立 至皇朝建隆
 三年 太祖皇帝御極 奄有萬國 昭遣使來朝 賜以功臣之號 仍加食
 邑。(『高麗圖經』 卷2 世次 王氏)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G-1은 고려의 선조를 기자에다 붙이고 있다. 이는 물론 믿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조선이 고구려와 같은 동이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또 위만이 무리를 모아 북상투를 하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고조선을 침략하여 왕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홀승골성에 웅거하여 스스로 고구려라 했는데 고씨로써 성을 삼고 고려를 국호로 하였다(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 而以高麗爲國)”라 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도 고구려를 고려로 인식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후 한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고구려를 縣으로 삼아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그 君長에게 鼓吹와 伎人을 내려주었다. 고려는 늘 현도군에 가서 朝服·衣服·幘을 받아왔고, 縣令이 名籍[장부]을 맡아 보았다. 뒤에는 점점 교만해져 다시 현도군에 나아가지 아니하니, 군에서 동쪽 경계에 자그마한 성을 쌓고 歲時에 받아가게 하였다. 따라서 그 성을 ‘幘溝瀆’라고 이름하였는데, 高麗 말로 성을 ‘溝瀆’라 한다. 그리고 이때에 와서 비로소 왕이라 일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측 입장에서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고구려를 여기서는 ‘고려’라고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역시 중국 측에서는 고구려와 고려를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城을 ‘幘溝瀆’라고 이름하였는데, 고려 말로 성을 ‘溝瀆’라 한다”는 부분은 원래 『삼국지』에 있는 내용이다.²²⁾ 『삼국지』는 물론이고 『漢書』나 『後漢書』에도 고구려를 ‘句麗’라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이 ‘句麗’는 성을 뜻하는 고구려 말인 ‘溝瀆’와 그 발음이 비슷하다. 따라서 ‘句麗’는 ‘溝瀆’에서 온 국호라는 견해도 있다. 즉 ‘句麗’ 집단은 성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이루고 있던 집단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²³⁾

22)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23) 李丙燾, 1956, 「高句麗國號考」, 『서울대논문집』 3;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62~363쪽.

이후 王莽이 고려 군사를 출동시켜 흉노를 치려고 했으나 가지 아니하며 왕을 낮추어 侯로 삼으니, 이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더욱 그의 국경을 침범했다. 光武 연간에 東漢의 시조 劉秀가 중흥하여 변방에 관원 보내는 것을 폐지하며, 建武 8년(32)에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여 왔다. 따라서 王號를 복구시켜 주고 外藩의 班列에 끼워 주었다. 後漢 제6대 임금 安帝 이후에는 5부의 민중이 변성하여 비록 다소 포약함이 있었으나, 곧 되돌아서 賓服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고구려가 중국의 한 변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우해 주지 않을 때는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며 고구려와의 국경 지대에 파견하였던 관원까지도 폐지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후의 내용은 고구려의 내부 사정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消奴部 출신이 왕이 되었는데 쇠약하여지매, 桂婁部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왕 궁에까지 이르렀는데, 궁은 태어나서 바로 눈을 뜨고 능히 봤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미워했다. 궁은 장성하여 매우 건장하고 용맹스러워, 和帝(東漢 제5대 임금) 때에 자주 遼東을 침략했다. 그리하여 伯固왕까지 전하여 갔고 백고가 죽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인 拔奇는 不肖했기 때문에 동생인 伊夷模를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 漢나라 말기에 공손강(요동 태수 公孫道の 아들)이 伊夷模를 그 나라 丸都山 아래에서 격파하니, 나라 사람들이 그 아들 位宮을 세웠는데, 위궁 또한 勇力이 있어 말타기를 좋아했다. 그의 선조 宮이 출생하면서 눈을 뜨고 능히 보았는데, 지금 왕도 역시 그러했다. 고구려에서는 서로 같은 것을 일러 ‘位’라고 하므로, 이름을 위궁이라고 한 것이다. 뒤에 魏나라 장수 관구검이 쳐들어와 무찌르고 肅愼까지 추격해 가서 공로를 돌에 새겨 기록하고 돌아갔다. 위궁의 5대손 劉가 쯤나라 永嘉(懷帝의 연호, 307~321) 연간에 遼西의 선비족인 모용외와 이웃하였는데, 모용외도 억제하지 못하였다. 康帝 建元 초에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 크게 격파시켰는데, 뒤에 백제에게 멸망되었다. 그 뒤에 慕容寶가 고구려 왕 高安으로 平州牧을 삼았다. 안의 손자 璉이 義熙(東晉 安帝의 연호, 405~418) 연간에 長史 孫翼을 보내어 赭白馬를 바치니, 榮州牧高麗王樂浪郡公을 삼았다. 璉의 7대손 元이, 隨 文帝 때에 靺鞨을 거느리고 요동을 침범했

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동진 왕이 고구려 왕에게 준 벼슬도 ‘고구려왕’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고려왕’이라 하였음이 주목된다.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국호를 가진 그 후신이었음을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⁴⁾

또 연개소문 때에 당 태종이 이를 정벌하였고 당 고종이 이적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멸하고 안동도호부를 두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특이한 것은 당의 측천무후 때 활약했던 대조영과 발해를 언급하고 있다. 즉 乞仲象의 아들 대조영이 처음에는 도독발해군왕에 임명되었다가 발해를 건국하였음을 기술하였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서로 연결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후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져 돌궐이나 말갈로 갔음도 언급하였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사실에 근접한 기술이라 하겠다.

그러나 왕족인 고씨가 끊겼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회복되어 당나라 말기에 다시 왕 노릇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을 말하는 것으로 앞의 E-1, 2, 3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후당 때에 사절을 보낸 국왕의 성명은 알지 못하겠다 한 것은 E-2의 자료와 같은 표현이다. 그 후 장흥 2년 왕건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흥 3년의 잘못이다.

G-2에서는 왕씨의 선조가 고려의 大族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의 사료 E-2를 이은 것으로 왕건 가문이 고구려의 유민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고씨의 정사가 쇠미해짐에 국민들이 왕건을 어질다 하여 왕으로 추대하였다 한 것은 궁예를 고씨로 착각한 외에는 정확한 기술이다. 뒤이어 왕건이 중국에 사신을 보낸 것이 장흥 3년이라 한 것은 확인되는 사실로 G-1의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24) 고려와 고구려의 국호 문제에 대해서는 박용운, 2004, 「국호 高句麗·高麗에 대한 일고찰」, 『북방사논총』 창간호 ; 박용운, 2006b, 앞의 책 참조.

25) 박용운, 2004, 위의 논문, 125쪽.

요컨대 중국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 국가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에 있는 삼국은 물론 고려도 東夷族의 후예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며 중국에 동화된 淮夷나 徐夷와 같은 일파라 생각하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왕건을 장희의 무족이라 한 것은 왕건 가문이 고구려 유민 계통의 대족임과 동시에 淮夷族, 즉 동이족의 번성한 족속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결코 중국 출신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IV. 기타 중국의 주장과 그 비판

1_ “鵲巢之美”의 의미

다음은 사료 A의 ②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史長樂은 같은 조서 중의 “足顯鵲巢之美” 구절이 “비둘기가 집을 짓지 않고 까치의 집을 차지하였다. 즉 어떤 사람이 타인의 거처를 강제로 차지함(鵲巢鳩占)”을 비유한 것이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왕건이 한반도 밖에서 와서 한반도를 차지했음을 뜻하므로, 왕건은 신라인의 후예가 아니라 漢族의 후예라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이 문구는 중국 측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왕건의 처유씨부인을 河東郡夫人에 책봉하는 조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태조 왕건이 밖으로는 통일 사업을 하는 등 정치적 업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가정도 잘 다스렸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직역하면 “족히 까치가 집을 짓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로 해석해야 한다. 즉 까치가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물어다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왕건이 외부적인 정치뿐 아니라 가정 내의 일도 튼튼하고 화목하게 이룩했다는 뜻이다.

26)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3쪽.

사전적 해석으로 鵲巢는 ‘남편의 집 또는 지위’, ‘세 들거나 빌려 사는 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²⁷⁾ ‘巢’의 원래 의미는 ‘새의 집(보금자리)’, ‘깃들이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등이다. 『禮記』에도 “鵲始巢”라 하여 “까치가 처음으로 보금자리를 만들다”는 문구가 있다.²⁸⁾ 따라서 여기서의 “足顯鵲巢之美”는 “족히 남편의 지위로 보금자리를 잘 만든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는 뜻이다.

앞 문장의 ‘虎穴’은 말 그대로 ‘호랑이가 사는 굴’이라는 뜻이지만 ‘그와 같이 아주 위험한 장소, 위험한 일’을 말한다. 따라서 “已成虎穴之榮”은 “이미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여 후삼국 통일의 영광을 이룩했다”는 뜻이다. 그 앞의 綸綍(윤발: 낚시줄 윤, 굵은 줄 발)은 詔書를 말한다. ‘土宇’는 ‘나라 또는 국가’를 말한다. ‘湯沐’은 목욕 비유에 충당하기 위한 땅이란 뜻으로 湯沐地 또는 湯沐邑을 말한다. 즉 천자나 제후의 領地를 말한다. ‘絲蘿’는 菟絲와 女蘿를 말하는 것으로 둘 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식물이다. 즉 토사는 한해살이 기생 식물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물이다. 여라는 이끼류에 속하는 식물로 역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소나무에 기생하여 산다. 따라서 ‘사라’는 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결혼’을 뜻하거나 ‘그와 같은 정’을 말한다. ‘旗常’이라 함은 깃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복에 熊虎文을 그린 것을 ‘旗’라 하고 日月文을 그린 것을 ‘常’이라 한다.

그렇다면 A자료를 완전한 우리 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경은 동이족 중에서 번성한 족속이며 해외의 웅대한 울타리이다. 문무의 재주로써 나라를 통제하고 충효의 절개로써 와서 교화와 풍속을 받으니 곧은 규범은 깃발에 새겨지고 은총은 簡冊에 올랐도다. 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위험을 무릅쓴 영광을 이루었고 집안에서는 족히 보금자리를 잘 이루었도다. 이에 領地를 나누어 주어 혼인을 경축하노니 길이 보좌의 공을 빛내어 삼가 우대하고 높이는 명령에 부합하도록 하라. 경은 평소애 진실로 나의 깊은 은혜를 알고 있음을 헤아려 경의 처

27) 1979,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407쪽.

28) 위의 책, 398~399쪽.

柳氏를 이제 하동군부인에 봉하노라.(卿長淮茂族 漲海雄蕃 以文武之才 控茲土宇 以忠孝之節 來弊化風 貞規既鑒於旗常 寵數是覃於簡冊 如綸如綉 已成虎穴之榮 宜室宜家 足顯鵲巢之美 俾頒湯沐 以慶絲蘿 永光輔佐之功 式協優隆之命 諒卿誠素知我渥恩 卿妻柳氏 今封河東郡夫人.)

그런데 여기서 “조서에 있는 바와 같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는 그해에 보낸 다른 조서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태조 16년에는 후당에서 총 4통의 조서를 보내왔다. 왕을 책봉하는 조서가 2통이고 다른 하나는 왕건의 부인을 책봉하는 조서이다. 그리고 또 다른 조서는 장교나 군사들에게 보낸 조서이다.²⁹⁾ A 조서를 제외한 다른 3개의 조서 내용을 보자.

H-1. 十六年 春三月 辛巳 唐遣王瓊楊昭業來冊王 詔曰 王者法天而有兆 庶體地而安八紘 允執大中 式彰無外 斗極正而衆星咸拱 溟渤廣而百谷皆宗 所以居戴履之倫 窮照臨之境 弘道修德 恭己虛懷 歸心者 瞻爲王人 嚮化者 被以風教 由是舉封崇之命 稽旌賞之文 垂於古先 罔敢失墜 其有地稱平壤 師擅兼材 統五族之強宗 控三韓之奧壤 務權鎮靜 志奉聲明 爰協彝章 是加寵數 咨爾權知高麗國王事建 身資雄勇 智達機鈴 冠邊城以挺生 負壯圖而開出 山河有授 基址克豐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宣乃惠和 俗厚知書 故能導之以禮義 風驍尚武 故能肅之以威嚴 提封 於是 謐寧生聚 以之完輯 而復行及唇齒 分篤皮毛 忿黠虜之挺祚 恤隣邦而救患 矧以披肝效順 秉節納忠 慕仁壽以康時 識文思之撫運 航深梯險 輸驢貢琛 繼陳述職之儀 茂著勤王之業 夫推至誠而享豐報 道之常也 奠眞封而顯列國 禮之大也 勞有所至 朕無愛焉 今遣使太僕卿王瓊使副大府少卿兼通事舍人楊昭業等持節備禮 冊命爾 爲高麗國王 於戲 作善天降之祥 守正神祚之福 干戈慎於危事 文軌資於遠謀 永爲唐臣 世服王爵 往踐厥位 汝惟欽哉。(『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조)

29) 이처럼 국왕 책봉과 함께 왕비를 책봉하고 三軍將吏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은 고려 일대를 통해 이것이 유일한 사례이다(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56~57쪽).

2. 又詔曰 卿珠樹分輝 金鉤協兆 領日邊之分野 冠海外之英雄 士心同感於撫循 民意咸歌於惠養 而又誠堅事大 志在恤隣 抹馬利兵 挫甄蓋之黨 分衣減食 濟忽汗之人 繼航海以拜章 每充庭而致貢 金石之誠明貫日 風雲之梗槩凌空 名播一時 美流四裔 忠規若此 賞典寧忘 特議疏封 仍升峻秩 剪桐圭而錫命 日極蓬山 瞻桃野以傾思 心隨濟水 勉祇異禮 永保崇勛 今授卿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 仍封高麗國王 今差使太僕卿王瓊使副大府少卿楊昭業等往彼備 禮冊命 兼賜國信銀器匹段等 具如別錄 至當領也。(『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조)
3. 又賜三軍將吏等詔曰 朕以王建 星雲燦秀 金石輪誠 信義着於睦隣 忠孝彰於事大 領三韓之樂土 每奉周正越萬里之洪波 常陳禹貢 勳名已顯 爵秩未崇 宜寵錫以桐圭 俾真封於桃野 今封授高麗國王 差使往彼備禮冊命 便令慰諭 想宜知悉。(『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조)

먼저 H-1은 책봉 체제하에서 황제와 제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황제는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 만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못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도 중국의 황제와 중국을 祖宗으로 삼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자에게는 책봉을 하고 표창을 내리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태조 왕건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즉 왕건은 용맹하고 지혜가 있으며 예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봉토를 가지고 백성을 안정시키며 재부를 축적하였다 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고려의 관계는 입술과 이빨[脣齒]의 관계, 가죽과 털[皮毛]의 관계처럼 밀접하다 하였다. 이 때문에 왕건을 제후인 고려국왕으로 책봉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결국 책봉 체제하에서의 천자와 제후왕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즉 고려는 후당의 제후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H-2는 왕건에게 관직과 물품을 주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왕건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장병들을 잘 위무하고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또 예의를 다하여 중국을 섬겼으며 서신과 공물을 바쳐오고 있다. 군사들을 정예롭게 하여 건훤의 세력을 좌절시켰다. 따라서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

上柱國充大義軍使'라는 관직을 주고 '高麗國王'에 봉하며 아울러 은그릇과 비단 등의 물품을 하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왕건이 후당의 신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H-3은 3軍의 將吏³⁰⁾들에게 보내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왕건은 별과 구름과 같은 정기를 타고 태어났으며 쇠나 돌을 뚫을 만한 정성이 있는 인물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화목하고 충성을 다하여 중국의 正朔을 시행하며 공물을 바쳐오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고려국왕을 봉했으니 그렇게 알려 하였다. 후당 명종은 자신이 왕건을 제후로 책봉한 사실을 고려의 군인과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이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이 말대로 후당은 이들 조서와 함께 曆書를 보내왔으며 고려는 독자적인 天授 연호를 버리고 후당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³¹⁾ 왕건은 후당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인정과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A자료의 “足顯鵲巢之美”는 앞의 “已成虎穴之榮”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족히 가정을 잘 꾸린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는 뜻을 알 수 있다. 이들 문구를 꾸며주는 “如綸如緯”과 “宜室宜家”도 對句이다. 가정 밖에서 용맹을 과시하여 견훤의 세력을 좌절시키고 중국을 섬겼다는 내용은 이미 조서에 있는 바와 같고 ‘마땅히 방안과 집안에 있어서도’ 잘하였다는 뜻이다.

2_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의 의미

史長樂에 따르면 고려 성종 4년(985) 송 태종이 고려 성종을 檢校太傅에 加封

30) 여기서의 三軍將吏는 통일전쟁 과정에서 성장한 무인세력을 가리키며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경세력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왕건은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이들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金仁圭, 1996, 『高麗 太祖代의 對外政策』,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07쪽).

31) 又賜曆日 自是 除天授年號 行後唐年號(『高麗史』 권2 태조세가 16년조).

하면서 내린 조서에도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라는 구절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백제는 ‘고려’를 가리키며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왕씨의 祖孫이 고려 백성을 영구히安居樂業하게 했고 長淮(왕건 선조의 출신 지역)의 종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번영하고 창성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즉 왕건 선조의 출신 지역이 중국 회하 유역이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하고 있다.³²⁾

이는 다음 사료에 근거한 것이다.

- I. 宋遣太常卿王著秘書監呂文仲來加冊王詔曰 朕居域中之大 以天下爲家 萬國來庭 適協觀賓之象 三韓舊地素爲禮讓之邦 玉靈交卜於剛辰 金印宜加於寵命 用旌世德 光我朝恩 大順軍使 光祿大夫 檢校太保 使持節玄菟州都督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二千戶王治溟渤炳靈 蓬壺誕秀 紹弓裘於先正 斯謂象賢慕聲教於華風 彌觀亮節而自瞻雲北闕 燾土東藩化行而 海不揚波 惠合而人皆受賜 加以航琛作貢 書契同文 衣冠襲鄒魯之容 帶礪保山河之誓 屹爲外屏 僉曰賢臣 是宜均灑澤以疇庸 遣皇華而錫命 尊爲漢傳 進彼侯封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高麗史』 권3 성종세가 4년 5월)

이는 宋 太宗이 고려 成宗을 책봉하는 조서이다. 여기서도 성종이 개인적으로 선왕들의 위업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의와 예의를 다해 송을 섬기고 있으므로 성종에게 관작을 주고 고려국왕으로 봉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백제’가 혹 ‘고려’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백제’를 뜻하는 것이다.

다음 사료를 보면 좀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32)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3쪽.

J. 宋遣大中大夫光祿少卿李巨原 朝議大夫將作少監孔維來冊王 詔曰 王者闢四海以爲家 一六合而光宅 揆文教而奮武衛 式固鴻基 立萬國 而親諸侯 咸遵茂典 其有三韓舊域 百濟遺封 地控鯨津 誠尊象闕 屬英王之捐館 位固難虛 聞令季以撫封 才堪厥任 言念承宗之美 宜頒命德之文.(『高麗史』 권3 성종세가 2년 3월)

이는 사료 I보다 2년 전에 송에서 보낸 책봉 조서로 성격이 동일하다. 여기서는 성종이 경종의 뒤를 이은 것을 승인하고 책봉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종이 소유한 땅을 ‘三韓舊域’과 ‘百濟遺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삼한구역’은 후삼국을 통일한 땅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요 ‘백제유봉’은 ‘후백제’의 견훤이 차지했던 땅을 말하는 것이다. 즉 ‘百濟遺封’은 고려의 시조인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오랫동안 영토를 다투다가 승리하여 그 땅을 소유하였음을 강조한 말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후백제’를 왜 ‘백제’라 표현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후백제의 국호는 ‘백제’였던 것 같다. 다만 史家들이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후백제’란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³³⁾ 실제 한국 측 사서에는 후백제에 대해 단순히 ‘백제’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진성여왕대에 그의 막내 아들 良貝가 당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백제’의 해적들이 津島에서 길을 막는다는 소식을 듣고 활 잘 쏘는 사람 50명을 뽑아 따르게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다.³⁴⁾ 진성여왕은 877년에서 897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삼국유사』에는 후백제가 892년 광주에 도움을 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따라서 이는 삼국시대의 백제일 수 없으며 후백제를 지칭한다 하겠다.

또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 경애왕 4년(927, 고려 태조 10) 정월에

33) 신호철도 견훤이 칭한 국호의 정식 명칭은 ‘後百濟’가 아닌 ‘百濟’였으며 ‘後百濟’는 『三國史記』의 찬자 등 후대의 史家들이 三國期の 百濟와 구별하기 위해 ‘後’자를 붙인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 정권 연구』, 일조각, 25쪽, 주 1 참조).

34) 『三國遺事』 권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陞知조.

35) 『三國遺事』 권1 王曆 1.

태조가 친히 ‘백제’를 정벌했다는 기사도 보인다.³⁶⁾ 여기서의 백제가 삼국시대의 백제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당연히 후백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광 3년(925, 고려 태조 8) 견훤이 후당에 사신을 보내 신하를 칭하자 후당에서는 그에게 관작을 내려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그 관작은 ‘持節都督 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海東四面都統 指揮兵馬制置等事 百濟王 食邑二千五百戶’였다.³⁷⁾ 중국에서도 후백제를 ‘백제’라 하였던 것이다.

사료 J가 있는 『고려사』에도 후백제를 ‘백제’라고 한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다음 기록을 보자.

K-1. 遣征西大將軍庾黔弼 攻百濟.(『高麗史』 권1 태조세가 8년 10월조)

2. 親伐百濟龍州 降之.(『高麗史』 권1 태조세가 10년 정월조)

3. 百濟將軍龔直來降.(『高麗史』 권1 태조세가 15년 6월조)

4. 興達爲甄萱高思葛伊城主 太祖徇康州 行過其城 興達遣其子歸款 於是 百濟所置軍吏皆降附.(『高麗史』 권92 興達傳)

5. 龔直燕山味谷人 自幼有勇略 新羅末爲本邑將軍 時方亂離 遂事百濟 爲甄萱腹心 以長子直達 次子金舒及一女 質于百濟 直嘗朝百濟 …… 太祖十五年 直與其子英舒來朝言曰 臣在弊邑 久聞風化 雖無助天之力 願竭爲臣之節 太祖喜拜大相 賜白城郡祿 廐馬三匹彩帛 拜其子咸舒爲佐尹 又以貴戚正朝俊行女妻英舒曰 卿灼見理亂存亡之機 來歸於我 朕甚嘉之 聯姻公族 用示厚意 卿其益竭心力 鎮撫邊境 藩屏我家 直謝因言曰 百濟一牟山郡 境接弊邑 以臣歸化 常加侵掠 民不安業 臣願往攻取 使弊邑之民 不被寇竊 專務農桑 益堅歸化之誠 太祖許之 萱聞直降 怒甚囚直達金舒及其女 烙斷股筋 直達死 百濟滅後 羅州以俘

36)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景哀王 4년 정월조.

37) 『三國史記』 권50 甄萱傳 東光 3년조.

囚百濟將軍具道子端舒換金舒 還於父母. (『高麗史』 권92 龔直傳)

위의 K-1, 2, 3, 4, 5는 모두 고려 태조대의 사실을 적은 것이다. 당시는 삼국시대의 백제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모두 '후백제'를 가리킨다. 특히 K-5의 사료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공직은 연산 매곡의 장군이었는데 일찍이 '백제'를 섬겨 견훤의 심복이 되어 두 아들과 한 딸을 인질로 '백제'에 보냈으며 자신도 직접 '백제'에 조빙하였다. 그러나 견훤이 무도함을 보고 왕건에게 귀순하여 '백제'의 일모산군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견훤은 공직의 큰아들 직달을 죽였는데 '백제'가 멸한 후에 둘째 아들 금서가 부모의 품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즉 '백제'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의 '백제'가 결코 삼국시대의 백제일 수는 없으며 '후백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서에 나오는 '백제'를 고려로 본 것은 잘못이며 이는 '후백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常安百濟之民”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아직도 후백제의 백성들이 반기를 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후백제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뜻이다. 태조 왕건도 죽으면서 남긴 훈요 10조에서 “공주강 박, 차현 이남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³⁸⁾고 하였다. 이는 차현 이남, 노령 이북 즉 공주·전주 등지의 후백제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뜻이다.³⁹⁾ 태조가 개태사의 석불을 우람하게 조성한 것도 불력의 힘을 빌려 후백제의 잔존세력을 제압해 보고자 함이었다.⁴⁰⁾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려 현종이 거란의 침략으로 경기도 廣州를 거쳐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간 일이 있다. 그런데 전라도 三禮驛(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이르자 전주절도사 趙容謙이 전주에 들릴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朴暉이 만류하면서 “전주는 백제의 옛 땅이라 聖祖(太祖)를 말함께서도 역시 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러하니 청컨대 왕께서는 이곳에 행

38) 『高麗史』 권2 태조세가 26년 4월조.

39) 김갑동, 2002a, 「왕건의 '훈요 10조' 재해석」, 『역사비평』 60, 262~265쪽.

40) 김갑동, 2002b, 「후백제의 멸망과 견훤」, 『한국사학보』 12, 85~87쪽.

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현종은 이 말에 따라 전주로 가지 않고 長谷驛에 유숙하였다. 이에 양심을 품은 조용겸은 무리들을 모아 왕의 행궁을 습격하기도 하였다.⁴¹⁾ 고려 왕실이 후백제 잔존세력을 격정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다. “永茂長淮之族”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의 번역은 “항상 후백제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동이의 족속을 영원히 번성케 하라”는 뜻이다. 史長樂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3_ 龔彥規 · 朴巖의 귀부 문제

史長樂은 당조 말기 淮海 일대에서 흥기한 지방세력인 吳越國의 龔彥規 · 朴巖이 고려에 귀의했다는 것은 이들과 왕건 사이에 同鄉의 우의가 작용하였고 이들과 왕건 조상 사이의 연계가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⁴²⁾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 2년 9월 吳越國의 文士인 龔彥規가 고려에 來投해 왔고⁴³⁾ 태조 6년 6월에도 오월국의 문사인 朴巖이 고려에 來投해 온 것은⁴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왕건과 동향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고려에 귀부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아마 왕건의 문신우대정책을 듣고⁴⁵⁾ 귀화한 것이거나 오월국 내부의 사정 때문으로 추측된다.

신라의 문사였던 최연위나 궁에 정권에서 떠났던 문사 박유 등도 왕건 정권이 탄생하자 여기에 합류하였다. 그 상황을 보자.

41) 『高麗史』 권94 智蔡文傳.

42)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3쪽.

43) 『高麗史』 권1 태조세가 2년 9월조.

44) 『高麗史』 권1 태조세가 6년 6월조.

45) 왕건은 중앙의 文士뿐 아니라 지방 출신의 많은 문사도 기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왕건 휘하에서 정치 참모, 정부 조직의 행정 관료, 문장가, 외교가로서 활동하였으며 관료 조직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편 직접 통일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全基雄, 1990, 『羅末麗初 地方出身 文士層과 그 역할』, 『釜山史學』 18; 全基雄, 1996,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해안).

L-1. 崔彥搆初名慎之 慶州人 性寬厚 自少能文 新羅末年 十八游學入唐 禮部侍郎薛廷珪下及第 時淳海宰相烏炤度子光贊 同年及第 炤度朝唐 見其子名在彥搆下 表請曰 臣昔年入朝登第 名在李同之上 今臣子光贊 宜升彥搆之上 以彥搆才學 優贍不許 年四十二 始還新羅 拜執事省 侍郎瑞書院學士 及太祖開國 挈家而來 命爲太子師傅 委以文翰之任 宮院落號皆所撰定 一時貴遊皆師事之.(『高麗史』 권92 崔彥搆傳)

2. 王儒本姓名朴儒 字文行 光海州人 性質直 通經史 初仕弓裔 爲員外 遷至東宮記室 見裔政亂 乃出家隱於山谷間 聞太祖即位 來見太祖 以禮待之 謂曰 致理之道 惟在求賢 今卿之來 如得傅巖涓濱之士 仍賜冠帶 令管機要 有功 遂賜姓王.(『高麗史』 권92 王儒傳)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최언위는 신라 사람으로 당에 가서 유학하여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것은 왕건이 덕이 있으며 문사들을 우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코 최언위가 왕건과 동향이었던 때문이 아니다.

박유도 마찬가지로였다. 박유는 광해주(춘천) 사람으로 왕건과 결코 동향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궁에 정권하에서 산골짜기에 은거하였다가 왕건이 즉위하자 찾아와 의탁하였다. 그러자 왕건은 좋은 정치를 하려면 어진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박유를 얻은 것은殷나라 高宗(武丁)이 傅巖에서 현명한 재상 說을 얻고 周나라 文王이 渭수가에서 太公望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왕건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문사들을 구하고 우대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 당시 오월국이 있던 위치와 왕건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오월국이 있던 위치는 지금의 杭州 일대, 즉 浙江省 일대이다. 그러나 사장락이 주장하는 왕건의 고향인 회수 일대는 지금의 江蘇省 북쪽으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향 의식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한편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태조 4년에 來投한 흑수말갈의 高子羅나 阿

於開,⁴⁶⁾ 태조 8년부터 귀부하기 시작한 발해 장군 申德을 비롯한 일련의 발해 인물들이⁴⁷⁾ 모두 왕건과 동향이였기 때문에 귀부한 것이 된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고려 후기 고려에 귀화한 서역 출신의 張舜龍(본명은 三哥)이나 몽고 출신의 印侯⁴⁸⁾ 등도 고려 왕실과 동향이이기 때문에 고려에 귀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견해임에 틀림없다.

4_ 왕건의 先祖 문제

왕건은 건국 후 祖廟를 세우거나 祖陵에 배알하는 祭尊儀式을 거행하지 않았고 3대祖의 諡號를 추존하였지만 3대조의 名諱와 行狀이 없으며, 어머니의 성씨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왕건의 조상은 신라의 후손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성종과 후대 왕들이 태묘에 神主를 세울 때에도 태조를 시조로 하고 懿祖와 世祖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왕건 이전 선조들의 실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는 당시가 혼란기였으므로 종묘를 세워 제사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승로도 시무 28조의 서두에서 왕건 집권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M. 以創業之初 致平日淺 宗廟社稷 且未光崇 禮樂文物 猶多闕乏 凡百官司之品式及諸內外之規儀 未及修定 忽遺弓劍 盖國人之不幸 寔天道之難諶 深可惜也。(『高麗史』 권93 崔承老傳)

즉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예악이나 문물, 규정과 의식이 미처 제정되지 못

46) 『高麗史』 권1 태조세가 4년 2·4월조.

47) 『高麗史』 권1 태조세가 8·9·10년조.

48) 『高麗史』 권123 印侯·張舜龍傳.

49)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3쪽.

하였을 뿐 아니라 종묘 사직도 아직 빛나고 높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태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고 있다.

또 왕건은 집권 초기에는 유교보다도 불교나 풍수지리설에 더 심취해 있었다. 그것은 다음 기록이 뒷받침해 준다.

N. 太祖當干戈草創之際 留意陰陽浮屠 參謀崔凝諫云 傳曰當亂修文 以得人心 王者雖當軍旅之時 必修文德 未聞依浮屠陰陽 以得天下者 太祖曰 斯言朕豈不知之 然我國山水靈奇 介在荒僻 土性好佛神 欲資福利 方今兵革未息 安危未決 旦夕心+西惶 不知所措 唯思佛神陰助 山水靈應 儻有效於姑息耳.(崔滋, 『補閑集』 上)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학자였던 최응은 왕건이 불교와 풍수지리설에 뜻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왕건은 전쟁기에 민심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 대답하고 있다. 난이 평정되면 유학으로 교화시킬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유학에 따른 제도 정비를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성종 이전의 왕들도 대개 풍수지리설과 불교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유교적 군왕인 성종대에 와서 太廟가 설립되고 五廟制가 정비되었다. 즉 성종 7년에 五廟制가 실시되고⁵⁰⁾ 성종 8년(989)에 와서야 비로소 太廟를 짓기 시작하여 성종 11년에 완성되자 친히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⁵¹⁾

또 『고려사』 고려세계에 따르면 왕건의 어머니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며 처음에는 성씨도 없어 꿈에 본 여인이라 하여 ‘夢夫人’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후에 三韓의 어머니라 하여 성을 韓氏라 하였음을 전하고 있다.⁵²⁾ 그러나 이는 설화 같은 이야기지만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길에서

50) 『高麗史』 권3 성종세가 7년조.

51) 『高麗史』 권3 성종세가 8년 4월조.

52) 『高麗史』 高麗世系.

여인을 만나 혼인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6두 품 이하의 姓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이 없다 하여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중국에서 왔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한편 史長樂은 한치윤의 『海東繹史』에 “왕건의 선대는 대대로 신라에 벼슬하였다(世仕新羅)”라고 되어 있고 『新五代史』에는 왕건이 “고려의 대족이었다(高麗大族也)”라고 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사료에서 찾을 수 없다 하고 있다. 즉 왕건의 아버지인 世祖(龍建)가 松嶽郡 沙梁이었다는 것이 대대로 신라에 벼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왕건에게는 친형제가 없었으며 사촌동생으로서 王式廉·王信·王萬歲 등이 보일 뿐이어서 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⁵³⁾

그러나 한치윤은 태조의 선대가 지방의 실력자로서 신라 정부에서 관등을 수여받은 것을 신라에 벼슬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표현이다. 또 왕건에게 형제가 없었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世祖의 長子’로 되어 있다.⁵⁴⁾ ‘장자’라 한 것은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밝히어 쓴 것이다. 다만 그의 형제들이 사료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결국 史長樂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秦이 망하고 漢이 일어나는 난리에 중국인이 많이 海東으로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의 先祖가 혹시 옛 聖人の 後裔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고려사』를 편찬한 鄭麟趾조차도 “高麗之先 史闕未詳”이라 한 점을 들어 왕건이 중국 출신일 것이라 결론짓고 있다. 즉 왕건이 한족의 후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료(後唐 明宗과 宋 太宗의 고려왕 冊封 詔書 내용)는 정인지가 지은 『고려사』의 「太祖世家」편과 「成宗世家」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국의 역대 史家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채 “고려의 조상에 관한 사실은 역사서에 빠져서 자세히 알 수 없다(高麗之先 史闕未詳)”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왕건 조상의 뿌리가 알려질 경우 정권에 해로울까봐 두려워 비밀에 부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것은 고구려와 발

53)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4쪽.

54) 『高麗史』 권1 태조세가.

해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는 조선왕조의 욕망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김부식은 金庾信碑와 三郎寺碑文에 신라인은 少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金氏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旣書』에 고구려가 高辛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高氏라 했다는 것을 들어⁵⁶⁾ 자신의 짝막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결코 논증에 따른 단정적인 말이 아니다. 또 삼국의 시조에 한한 말이지 고려 태조 왕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정인지 역시 유학자였으므로 金寬毅가 편찬한 『編年通錄』의 기록을 신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신화 같았으므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왕건 선대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많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왕건의 선대가 고위 귀족이 아니며 왕건도 전쟁터를 전전하다 선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까닭이다. 이는 왕건의 잘못이 아니며 그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학자 史長樂이 주장하는 후당 명종의 책봉조서에 나오는 ‘長淮茂族’이란 용어에서 장회는 분명 중국의 淮水를 가리킨다. 그러나 왕건이 중국의 회수 출신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옛부터 東夷族의 한 일파인 淮夷를 자신들과는 다른 족속으로 보았다. 나아가 현 중국의 동북쪽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도 같은 동이족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도 동이족으

55) 史長樂, 2007, 앞의 논문, 14~15쪽.

56) 『三國史記』 권28 백제본기 義慈王 末尾.

로 보았기 때문에 장희무족이라 한 것이다. 이는 즉 ‘동방의 무성한 족속’이란 일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高麗’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에 있는 삼국은 물론 고려도 동이족의 후예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려도 중국에 동화된 淮夷나 徐夷와 같은 족속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왕건을 장희의 무족이라 한 것은 그 가문이 회이, 즉 동이족의 번성한 족속이라는 뜻이었다. 결코 중국 출신이라는 뜻이 아니다.

“鵲巢之美”의 의미도 “외국에 와서 남의 땅을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고 “남편의 지위로 가정을 잘 꾸렸다”는 의미이다.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도 史長樂의 주장처럼 “항상 고려 백성을 안정시켜 장희의 족속을 무성케 하라”고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의 ‘백제’는 결코 고려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백제를 뜻하는 것이다. 즉 이 표현은 “항상 후백제의 잔존세력을 안정시켜 영원히 동방의 족속을 번성케 하라”는 뜻이다. 또 이를 근거로 고려 왕실이 중국 출신이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龔彥規·朴巖의 고려 귀부도 그들이 왕건과 동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왕건의 文士 우대정책 때문이다. 왕건이 宗廟를 세우지 않았고 그 어머니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하여 그를 중국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논리에 맞지 않는다. 왕건의 친족에 대한 자세한 역사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가 대족이 아니며 신라 출신이 아니라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史長樂이 주장하는 ‘왕건의 중국 출신설’은 왕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수사적으로 쓴 일부 자구에 국한한 연구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ABSTRACT]

The comment on the insistence that the birthplace of
WangGun is China

Kim, Gapdong

Later Tang(後唐) is the one dynasty of ancient China. The sentence, WangGun(王建) is ChangHoeMuJok(長淮茂族), is found in the royal edict of later Tang MyungJong(明宗) emperor. WangGun(王建) is the founder of Korea ancient dynasty, Koryo(高麗). The meaning of this word, 'ChangHoeMuJok(長淮茂族)' is vigorous clan in ChangHoe(長淮) district. Chinese historian, Shi ChangRe(史長樂) explained that ChangHoe(長淮) is Chinese HoeSoo(淮水) river. Therefore He insisted that the birthplace of WangGun(王建) i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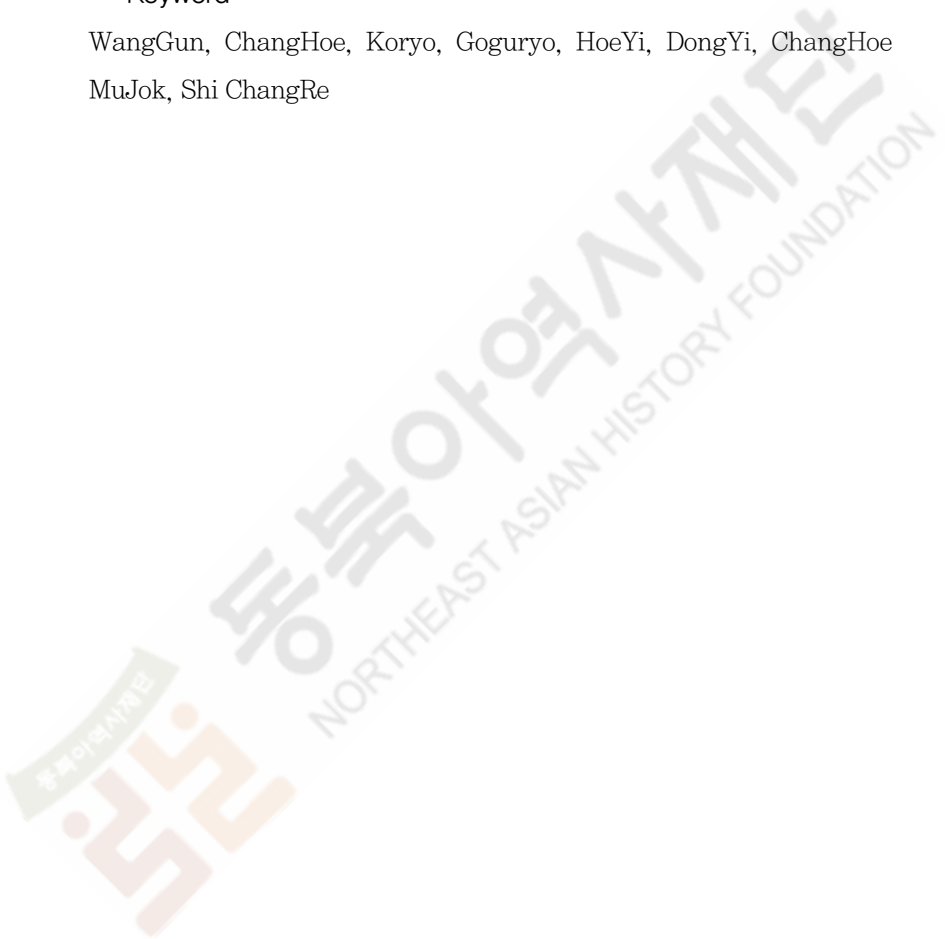
The explanation that ChangHoe(長淮) is Chinese HoeSoo(淮水) river is right. But he misinterpreted. Because Chinese HanJok(漢族) tribe did not live in ancient HoeSoo(淮水) district. In that district HoeYi(淮夷) tribe that is different from Chinese tribe lived. HoeYi(淮夷) tribe is the one branch of DongYi(東夷) tribe. The tribe of Korea ancient three kingdom, Goguryo(高句麗), Baekje(百濟), Shilla(新羅) are too DongYi(東夷) tribe. The ancient Chinese people considered that Koryo(高麗) dynasty is the later state of Goguryo(高句麗) kingdom. After all HoeYi(淮夷) and DongYi(東夷), Goguryo(高句麗), Koryo(高麗) were all the same in tribe.

Therefore The sentence, WangGun(王建) is ChangHoeMuJok(長淮茂族), mean that the clan of WangGun(王建) is vigorous clan of

DongYi(東夷) tribe. The insistence that the birthplace of WangGun(王建) is China, is incorrect. He obviously was born in ancient Koea area.

Keyword

WangGun, ChangHoe, Koryo, Goguryo, HoeYi, DongYi, ChangHoe
MuJok, Shi ChangRe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 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한철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明治維新 후 일본 정계 내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바로 조선 문제였다.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된 이래 일본은 대내적으로 근대식 부국강병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식민지 전략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가를 침략하려고 하였다. 특히 유신 직후 일본정부는 서계 문제를 비롯해서 정한론·강화도사건과 조일수호조규에서 국권강탈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대한 침략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의 관리들은 조선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조선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실무자로 활약하였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 조선의 전반적인 사정을 담은 저서를 집필하거나 현재 양국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인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여하면서 중요한 발언이나 문서를 남겨둔 인물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조선 정책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나아가 현재의 독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데에도 관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전후한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 1831~1915]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외무성 관리들로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깊이 관계되어 있는 인물로는 다나베를 비롯해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먼저 사다는 1870년 2월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사이토 사카에[齋藤榮] 등과 함께 메이지유신 후 일본 외무성의 관리로는 최초로 한국에 파견되어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1873년 일본의 정계를 풍미했던 '征韓論'의 효시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세와키는 외무성에서 파견했던 블라디보스토크항 주재 무역사무관으로서 1876년 齋藤七郎兵衛의 청원을 받아 '松島開拓願'을 자신의 초록과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의 원서 등과 함께 외무경 테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상신하였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외무성 내에서는 '松島'의 실체와 위치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당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公信局長 다나베와 記録局長 와타나베였다.

이들 외무성 관리 가운데 한국 학계에서 사다와 세와키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다나베와 와타나베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남겼는데도 제대로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¹⁾ 특히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의 조선 혹은 독도 인식을 새롭게 고찰할 경우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다나베이다. 그는 1876~1877년간 외무성 내에서 '松島' 개척안에 관해 논의

1) 이들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심기재, 1997, 『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심기재, 1998, 『근대 일본인의 조선 인식—佐田白茅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40; 심기재, 2000, 『久留米藩士佐田白茅と對朝鮮政策』, 佐佐木克 編, 『それぞれの明治維新—變革期の生き方』, 吉川弘文館; 琴秉洞, 2006, 『佐田白茅—草の根征韓論の狂熱煽る』, 『日本人の朝鮮觀—その光と影』, 明石書店; 구량근, 1997a,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と 外國人顧問 金麟昇』, 『한일관계사연구』 7; 구량근, 1997b, 『中日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 관념 연구—奉直戰爭과 일본 외무성 고문 김인승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59; 구량근 역,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자료), 『한일관계사연구』 9; 毛利敏彦, 1975, 『明治初期外交の朝鮮觀』, 『國際政治』 51; 尾辻紀子, 2006, 『幕末外國奉行田辺太一』, 新人物往來社; 渡辺進, 1973, 『夢渡辺洪基伝』, 浦和; 文殊谷康之, 2006, 『渡辺洪基伝—明治國家のプランナー』, ルネッサンスブックス.

가 벌어졌을 때, “松島는 우리나라[일본] 사람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라고 한다”면서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를 순시하는 것은 남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웃의 지경을 침범함과 같은 것에 있어서라”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배경과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나베는 1861년과 1875년 두 차례에 걸쳐 小笠原島 開拓再開의 調査·巡檢 및 回收에 나섰던 장본인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가 1863년 일본의 幕府정권이 小笠原島 개척을 중지하고 일본인 관리와 이주민을 퇴거시킨 小笠原島 ‘空島’ 정책에 관해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으로 말미암아 점차 일본 영토로 편입되고 있던 섬을 ‘放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점이다. 이는 조선이 오랫동안 울릉도·독도에 대해 ‘공도’[搜討]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空地’로 내버려진 ‘無主地’ 혹은 ‘無人島’를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영토로 공식 편입시켰다는 일본의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²⁾ 그럼에도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수토’ 정책을 논의할 경우, 小笠原島에 대한 일본의 ‘공도’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해서는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³⁾

2) 독도는 조선정부의 ‘공도’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인도화되었으므로 일본인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도 小笠原島에 ‘공도’ 정책을 펼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 확실하게 반박한 논리는 국제한국연구원의 최서면 원장이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일본의 ‘공도’ 정책은 오히려 자국의 영토에 대해 취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선의 독도 ‘수토’[‘공도’] 정책과 일본의 小笠原島 ‘공도’ 정책을 치밀하게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 글은 최서면 원장의 논리에 크게 시사받아 집필된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31일자, 「한·일 ‘독도 영유권’ 대담/최서면 원장-나이트 교수」.

3) 일본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小笠原島 ‘회수’라는 표현은 田保橋潔에서 비롯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自民黨 調査役으로 근무하면서 북방영토문제에 관해서도 집필했던 大熊良一은 고래의 松島(독도)가 당연히 일본에 속했다는 와타나베의 발언을 진실로 ‘명확한 단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독도와 小笠原島를 동시에 거론하였다. ‘회수’는 小笠原島가 원래 일본 영토였다는 전제 아래 의도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더욱이 다나베는 조선에 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1898년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저술했던 『幕末外交談』에는 '小笠原島の巡視와 遣韓使節의 議란 항목이 들어 있고, 1906년에는 「幕府時代外交實歷談」이란 대담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나베는 단순히 울릉도·독도뿐만 아니라 조선에 관련해서 중요한 기록들을 남겼는데도 그의 조선 인식을 본격적으로 밝힌 글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나베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그의 조선 인식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독도에 대해 언급했던 맥락과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나베의 생애와 외교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외교문서의 정리·작성에 정통했으며 국경문제 처리에 대한 실무능력과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둘째, 다나베의 小笠原島 調査巡檢 및 회수활동과 空島정책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울릉도·독도와와의 관련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셋째, '松島開拓之儀'를 의논·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신했던 다나베의 견해와 그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II. 田邊太一の 생애와 외교활동

田邊太一은 1831년 9월 16일 막부 儒臣 다나베 가이스케[田邊海輔]의 둘째 아

생각되며, 이러한 논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田保橋潔, 1922, 「小笠原諸島の回收(一)」, 『歴史地理』 39-5; 大熊良一, 1966, 『歴史の語る小笠原島』, 南方同胞援護會; 大熊良一, 1968, 『竹島史稿: 竹島(獨島)と鬱陵島の文獻史的考察』, 原書房. 小笠原島에 대해서는 제3장의 각주 및 石原俊, 2007, 『近代日本と小笠原諸島: 移動民の島々と帝國』, 平凡社 참조.

들로 태어났다. 초명은 定輔이고 후에 太一로 바꾸었으며, 호는 蓮舟이다. 그의 부친 誨輔는 靜岡 출신으로 원래 村瀬라는 성을 가졌으나 막신 大番頭與力 太夫 田邊次郎에게 입양했으며, 昌平黌 教授出役으로서 甲府 徵典館의 學頭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던 다나베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研鑽해서 1848년 昌平坂學問所 甲科에 급제했고, 甲府 徵典館의 교수가 되었다.⁴⁾

다나베의 삶은 1859년 外國方에 기용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1853년 페리의 내항 후 1858년 일본은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와도 수호통상조약(安政 5개국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사재판권, 개항·개시장 내 거주·무역권, 거류지 설정, 협정관세권 등 기본적인 불평등조약 체계에 편입되었다.⁵⁾ 그 결과 1859년 神奈川(橫濱)·長崎·箱館 등이 개항되는 상황 속에서 다나베는 外國方에 임명되어 외교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그가 맡은 직임은 書物方出役으로서 橫濱 개항에 관한 議案의 淨書와 대화의 필기 등이었는데, 후세에 막말 3걸의 한 명으로 불렸던 외국봉행 미즈노 다다노리(水野忠徳)에게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그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861년 미즈노가 遣歐使節의 부사로 선발되자 그도 수행원으로 발탁되었지만, 주일 영국 공사 올콕(R. Alcock)의 항의로 미즈노의 임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려던 그의 희망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해 말 미즈노가 小笠原島開拓使에 임명됨에 따라 그도 外國奉行支配 調役並으로 1861년 12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小笠原島를 調査·巡檢하였다.⁶⁾ 이는 1875년 小笠原島를 회수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재발탁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4) 坂田精一, 1966, 『解説』, 田辺太一, 『幕末外交談』 1, 平凡社, 251~259쪽; 坂田精一, 1979, 『田辺太一』,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編, 『日本外交史辭典』, 大藏省印刷局, 522쪽. 이후 다나베의 생애에 관해 별도로 주를 달지 않은 부분은 坂田精一의 글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5) 일본의 불평등조약 체결 과정과 그 성격에 관해서는 한철호, 2005,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학보』 21, 183~193쪽 참조.

6) 田保橋潔, 1922, 앞의 논문, 17~20쪽.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63년 11월 그는 外國奉行支配 調役並에서 調役을 거치지 않고 파격적으로 組頭로 발탁되어 橫濱鎖港談判使節 이케다 나가오키(池田長發)를 수행하여 프랑스에 갔다. 이때 그는 개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절단에 합류하기를 꺼려했지만,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외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미즈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지에서 이케다도 쇄항을 고집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깨닫고 해외에서 國辱을 초래하기보다 조정에 쇄항의 잘못을 호소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한 뒤 무단으로 귀국하였다. 이로 인해 이케다는 知行[봉토]을 박탈당하고 면직된 뒤 칩거에 들어갔고, 다나베도 면직과 100일간 閉門의 처분을 받았다.⁷⁾ 그 후 다나베는 막부의 규정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채 간신히 出役의 명의로 외국봉행에 속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65년 그는 書翰取調之御用重立取扱으로 재직하면서 개국 후인 1859~1860년간 막부와 외국사절 사이에 교환되었던 서한 등 각종 외교문서를 정리해서 최초의 外交史料集인 『通信全覽』의 편찬을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한편⁸⁾ 관세 개정담판의 교섭사무를 총괄해서 1866년 組頭勤方으로 다시 관직에 올랐다.⁹⁾

1867년 1월 프랑스주재 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된 다나베는 民部大輔 도쿠가와 아키타케(德川昭武) 遣歐使節團을 수행하여 파리박람회(萬國博覽會)에 참석하였다. 두 번째 프랑스행이었다. 이곳에서 막부와 사쓰마(薩摩)세력이 대립하자 그는 막부의 면목을 세우는 데 진력했는데도 상대방의 중상모략으로 오히려 막부로부터 면직당해 귀국길에 오르고 말았다. 그러나 귀국 후 때마침 막부가 와해됨

7) 尾辻紀子, 2006, 앞의 책, 128~162쪽.

8) 그는 1865년부터 거의 혼자 힘으로 『통신전람』을 편찬하다가 나중에 書翰掛 등과 협력했으며, 1867년 프랑스로 떠남에 따라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 長尾正憲, 1988, 「『通信全覽』と田辺太一」, *PINUS* 24, 24~26쪽; 田中正弘, 1989, 「解説 正續『通信全覽』の概要と編纂の沿革」, 『通信全覽總目錄・解説』, 雄松堂出版, 551쪽; 保谷(熊澤)徹, 2000, 「『通信全覽・續通信全覽』—永く秘匿されていた日本最初の幕末外交史料集」, 『歴史讀本』 731, 218~219쪽.

9) 田中正弘, 1988, 「田辺太一」, 『國史大辭典』 9, 吉川弘文館, 262쪽; 田中正弘, 1998, 『近代日本と幕末外交文書編纂の研究』, 思文閣出版 등 참조.

에 따라 1868년 3월 종전 처리책으로 目付에 임명되었다가 곧 면직당했다. 이후 그는 잠시 상업에 종사했으며, 徳川宗家が 靜岡로 이봉된 뒤에 1869년 5월 沼津에 兵學校가 설치되자 교수로 초빙되었다.

메이지유신으로 1869년 7월 외무성이 설치된 뒤 1870년 1월 그는 신정부의 간청을 고사하였다가 결국 外務少丞에 임명되어 각국왕복서한 및 편집취조 주임을 맡았다. 1871년 5월 24일 참의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樺太境界 문제를 담판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로 출장가게 되었을 때, 다나베는 수행원으로 발탁되었다.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잡거하고 있던 樺太 지역에서는 양국인 간에 각종 분쟁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소에지마는 이 섬을 양분하는 '島上分界'를 목표로 삼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양국 중 한 나라가 영유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선발대로 먼저 파견되었던 다나베는 러시아 영사 오랄로프스키(A. S. Oralofsky)와 담판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 실무를 맡아 활약했으나 이 담판은 러시아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¹⁰⁾ 하지만 다나베가 小笠原島 개척에 이어 樺太境界 담판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은 그가 국경 혹은 영토문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871년 8월 외무성의 기구개편으로 막부시대 외교문서의 기록·편집뿐 아니라 당시 미해결 문제의 원인 조사와 그 기록의 편집 및 일지 작성 등을 주 업무로 하는 編輯課가 신설되자 다나베는 그 총책임자인 議判에 취임하였다.¹¹⁾ 곧이어 그해 10월 그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건의사절에 일등 書記官長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두 차례나 프랑스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조약문을 프랑스어·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능통했던 다나베에게 사절단의 여정과 조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진다.¹²⁾ 잘 알려져 있듯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관세자

10) 丸山幹治, 1936, 『副島種臣伯』, みすず書房, 169~176쪽; 安岡昭男, 「樺太千島交換條約」, 『日本外交史辭典』, 182쪽.

11) 田中正弘, 1998, 앞의 글, 552~553쪽.

12) 尾辻紀子, 2006, 앞의 책, 220~222쪽. 또한 그는 일찍이 일본학은 물론 한학과

주권의 방기와 영사재판권의 허용 등 幕末期 일본이 구미제국과 체결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예비 교섭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廢藩置縣의 단행 등으로 개혁을 둘러싸고 메이지정권의 정치적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절단에는 특명전권대사 이와쿠라를 비롯해서 부사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야마구치 나오요시[山口尚芳] 등 신정부의 실력자들이 대거 발탁되었으며, 총원은 그들의 수행원과 여러 省의 理事官, 그리고 구미 유학생 등을 포함해서 100여 명에 달하였다. 비록 사절단은 일본의 근대화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주목적인 조약개정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구미국가들의 발전상을 직접 목도·체험할 수 있었다.¹³⁾

그런데 1873년 9월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하자마자 일본 정계는 정한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다나베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870년 2월 조선에 대한 외교와 무역 일원화정책 방침 아래 조선의 정세를 정탐하기 위해 유신 후 최초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의 관리 사다 하쿠보가 귀국한 뒤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출병론을 제시했을 때, 외무성 내에서 다나베는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한 非정한론자였다.¹⁴⁾ 또한 이와쿠라 사절단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귀국 후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지식 등을 바탕으로 '內治優先'이란 국내 근대화 노선을 채택·추진했고,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 정부 내부에서 주장되었던 정한론을 무마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미국과 유럽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국제정세에 더욱 해박한 식견과 경험을 지녔던 그 역시 정한론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874년 4월 외무성이 대폭적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종래 弁事局 소속의 한

양학에도 정통했다고 한다. 安藤太郎, 1915, 「余の識れる蓮舟翁」, 『日本及日本人』 667, 103쪽.

13) 田中彰, 2002, 『岩倉使節團の歴史的研究』, 岩波書店.

14) 심기재, 1988, 앞의 글, 259~260쪽; 「佐田白茅君朝鮮國交際事件實歷 附二十四話」, 36쪽.

기관에 불과했던 기록편집과를 승격·확충해서 기록국을 새로 만들었을 때, 다나베는 초대 기록국장 心得으로 취임함으로써 외무성의 수뇌부로 부상하였다. 그가 막부 外國方の調役·組頭 등을 역임했으며 스스로 『통신전람』을 편찬하고 編輯課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외교서류의 편집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데다가 외교문서 정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록국의 수장으로서 외교에 관계된 외무성 내외의 중요 문서에 대한 정리·편찬뿐 아니라 분류·보존과 공간 등의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통신전람』에 이어 『속통신전람』을 편찬하는 데 기반을 닦아 놓았다.¹⁵⁾

이처럼 외교기록을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던 중, 그는 타이완 침공을 수습하는 임무를 띠고 청국에 파견되었다. 1874년 4월 말 일본은 정한론의 무산으로 초래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타이완을 침공했고, 이를 주도했던 오쿠보는 청국과의 전쟁위기로 궁지에 몰리자 몸소 전권대신으로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오쿠보가 청국으로 건너가기 전인 7월 16일 다나베는 주청공사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에게 對淸 강경방침이 담긴 훈령서와 답판 요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국으로 떠났다. 이후 12월 말까지 그는 오쿠보를 보좌하되 교섭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전쟁을 벌이지 말자는 '非戰論'의 입장을 취하면서 청국 측과 절충을 벌인 끝에 화의를 성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¹⁶⁾

1877년 1월 다나베는 외무대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公信局長 재직시 울릉도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松島 개척 논의에 관여하였다. 이어 그는 1879년 청국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파견되었는데, 1881년 1월 20일부터 1882년 8월 12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청국 임시대리공사로도 근무하였다.¹⁷⁾ 귀국 후 외무대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1883년 8월 칙임관으로 승진했으며, 9월에는 원

15)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會 編, 1969, 『外務省の百年』 下, 原書房, 1280쪽; 田中正弘, 1989, 앞의 글, 595~597쪽.

16) 清澤洵, 1942, 『外政家としての大久保利通』, 中央公論社, 103~106, 151~153, 198~201쪽.

17) 『日本外交史辭典』 부록, 362쪽.

로원 의관이 되었고, 1890년에 원로원이 폐지되고 국회가 개설되자 귀족원 勅選議員으로 선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다나베의 외교 경력을 요약해 보면 첫째,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에 파견되어 개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구미 각국을 견문하였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근대적 학문에 밝은 인물이었다. 아울러 그는 타이완 침공을 수습하는 데 관여하거나 주청공사관 서기관·임시대리공사를 역임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수신사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金綺秀도 그에 대해 “외국의 학문을 잘 알고 세계에 가보지 않은 데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¹⁸⁾

둘째, 다나베는 일찍부터 문장력이 뛰어나서 각종 외교문서를 정리·작성하는 데 탁월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갖춘 외교관이었다. 그가 최초로 外國方の 관직에 나아가 맡았던 직임은 書物方出役으로서 橫濱 개항에 관한 議案을 淨書하고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 시절 외국사절을 응접할 때, 그가 작성한 답판필기만큼은 유일하게 따로 첨삭이나 수정을 가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老中이 열람해도 좋을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질 정도였다.¹⁹⁾ 또한 그는 막부의 외교문서격인 『통신전람』의 편찬을 주도하였고, 유신 후 첫 관직도 각국왕복서한 및 편집취조주임이었으며, 편집과와 기록국의 초대 총책임자로서 외교기록을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12년 그가 維新資料編纂委員이 된 것도 ‘幕末史의 살아 있는 逸史記’로 불릴 만큼 해박한 외교지식과 더불어 외교문서의 정리·작성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다.²⁰⁾

셋째, 다나베는 일본의 국경문제 처리에 대한 실무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1861년 小笠原島를 調査·巡檢한 데 이어 1875년 재차 이 섬

18) 金綺秀, 『日東記游』 2(이재호 역, 1977, 『해행총재』 1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結識」, 399쪽.

19) 이로 말미암아 그는 파격적으로 승진했다고 전해진다. 山内堤雲, 1915, 「田邊蓮舟先生五十年前の追憶」, 『日本及日本人』 667, 101쪽; 安藤太郎, 1915, 앞의 글, 103쪽.

20) 田中正弘, 1979, 앞의 글, 262쪽.

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활약하였으며, 그 사이 1871년 樺太境界 문제를 담판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小笠原島 문제는 막말 유신 초에 걸친 일본의 ‘공도’ 정책과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영국 등과 치열한 논쟁과 절차를 밟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따라서 그 직후인 1876~1877년간 ‘松島’ 개척안에 관해 논의가 벌어졌을 때, 다나베는 松島[독도]와 울릉도를 구별하면서 울릉도 순시를 이웃 나라에 대한 국경 침범으로 판단하여 반대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Ⅲ. 田辺太一の 小笠原島 調査·巡檢 및 回收 활동과 空島정책 비판

1_ 小笠原島 調査·巡檢과 回收 활동

막부는 1675년경 小笠原島를 순검한 이래 더 이상 개척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1830년 영국인과 하와이인으로 구성된 개척단이 이 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1846년 항로상의 요지인 이 섬에 외국인이 거주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훗날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長崎주재 네덜란드 상관장인 비크(Pieter A. Bik)의 충고 역시 막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853년 페리 내항 후 미국은 小笠原島에 석탄과 식수 저장소를 설치하려 했고, 영국 역시 小笠原島를 자국의 영유라고 주장한 데 이어 1859년에 江戸·長崎 간의 선편을 증가하기 위해 석탄 급여를 요구하거나 일본의 영유권 여부에 관해 조회하는 등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小笠原島에 대한 막부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1860년 막부는 견미사절단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돌아올 때 小笠原島에 기항해서 실정을 시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이 시도는 선박 사정 등으로 실패했지만, 사절단은 영·미 양국

이 小笠原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귀국 후 막부에 보고하였다.²¹⁾

이를 계기로 막부는 마침내 小笠原島를 조사·순검하기로 결정하고, 外國奉行 미즈노, 外國奉行支配 調役並 다나베, 定役元締佐 오바나 사쿠노스케[小花作之助] 등을 발탁하기에 이르렀다. 1861년 12월 4일(양력 1862. 1. 3) 총 107명에 달한 미즈노 일행은 간린마루[咸臨丸]를 타고 小笠原島로 출발하여 1862년 3월 27일 에도로 돌아왔다. 이 기간 동안 미즈노 등은 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불러모아 일본의 정령을 준수하도록 서약케 한 다음 지권을 교부하고 '小笠原島新墾碑'를 세웠으며, 출장소를 설치해 오바나를 주재시켰고, 小笠原島取締規則과 港則을 정하는 등 일본의 屬島로 삼는 조치를 취하였다.²²⁾

한편 미즈노 일행이 출발하기 전인 11월 16일 막부는 老中 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 信睦: 信行]·구제 히로슈[久世廣周] 등의 명의로 영·미 양국 공사에게 小笠原島開拓再興 사실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공사 해리스(T. Harris)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국 이주민의 기득권 존중과 유지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 반면 영국 영사 올콕은 “일본인이 최초의 발견자라 하더라도, 그후 관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구미의 법률에 따르면 일본의 소유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영·미·리의 事蹟도 불완전하므로 이 섬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小笠原島를 각국의 共有地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는 일본의 개척에는 반대

21) 安岡昭男, 1960, 「幕末の小笠原諸島をめぐる國際關係」,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日本外交史研究(幕末・維新時代)』, 有斐閣, 78~79쪽; 田中弘之, 1973, 「文久度の小笠原島回收をめぐる外交」, 『駒澤史學』 20, 35~36쪽; 田中弘之, 1997, 『幕末の小笠原一歐米の捕鯨船で築えた緑の島』, 中央公論社, 24~50, 64~118쪽; 栗林忠南, 1990, 「小笠原」, 國際法事例研究會 編, 『日本の國際法事例研究(3) 領土』, 慶應通信株式會社, 138~139쪽.

22) 田辺太一, 앞의 책 1, 224~226쪽; 安岡昭男, 1979, 「小笠原島と江戸幕府の施策」, 岩生成一 編, 『近世の洋學と海外交渉』, 巖南堂書店, 316~321쪽;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116~119, 136~179쪽.

하지 않고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정박과 보호를 요구하였다. 6월 11일부로 막부는 울록의 주장에 대해 반박함과 동시에 小笠原島の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했지만, 영국 측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경계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바람에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²³⁾

막부는 미즈노의 보고에 기초해서 八丈島에서 30명의 이주자를 모집했고, 8월 21일에 그들은 小笠原島로 출발하였다. 이어 개척의 일환으로 근해의 포경사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포경선은 딱 한번 출어했을 뿐이었고, 1863년 5월 초 막부는 일본인 전원을 小笠原島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모처럼만에 재개된 小笠原島 개척은 이주가 시작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막을 내리고 말았다.²⁴⁾

이처럼 1863년 5월 9일 막부가 小笠原島の 관리와 일본 주민을 퇴거시킨 이유에 대해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文久 3년(1863) 계해 2월 영국의 군함 수척이 橫濱에 정박하였다. 이때 高輪 東禪寺 주재 영국 공사가 書牘을 閣老에게 보냈다. 공사관 중의 자객사건과 지난해 生麥사건 두 가지의 배상금을 독촉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장군 家茂는 上洛해서 留守였으므로 모든 일이 불편하여 그가 歸府할 때까지 승낙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시에 兵端을 열려는 기세를 보였다. 이처럼 내지의 이변을 맞이해서 외국인이 살고 있는 孤島에 관리를 두고서 사람을 방기하여 돌보지 않는 것은 빨리 迎船을 보내 불러들이는 것만 못하였다. 이에 앞서 安藤信行 각로를 파면하였는데, 재직 중에 취한 처치가 지당함을 잃은 바가 많다고 크게 견책을 받음으로써 그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사건은 매우 불가하다고 제창하는 시세였으므로, 小笠原島開拓再興도 재정비용이 수천을 들이더라도 도모하기 어렵고, 사업을 온전히 벌이더라도 도서의 산물이 후일의 유익함을 얻을

23) 安岡昭男, 1960, 앞의 글, 80쪽; 田中弘之, 1973, 앞의 글, 37~39, 43~44쪽;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121~122쪽.

24) 田保橋潔, 1922, 「小笠原諸島の回収(二)」, 『歴史地理』 39-6, 8~19쪽.

가망이 없을 것 같았다. 지금 외국교제의 단서로 말미암아 정부의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서 정부의 창고가 이미 바닥이 나버리게 되었다. 이처럼 國用이 결핍한 때를 맞이해서 초미의 급선무는 은밀히 迂遠의 개척에 재정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빈번하게 信行의 재판을 비방하였다. 이때 水野 和泉守 忠精, 坂倉 周防守 勝靜과 小笠原 壹岐守 長行은 將軍을 수종해서 京師에 있었다. 江戶 본성의 유수는 宋平 豊前守 信義, 井上 河內守 正直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정부의 의론도 충분치 않았다. 목전에서 영국의 책임 추궁에 간담이 서늘해서 억지로 후년의 성패를 염려할 틈도 없었다. 특히 근래 개척은 손해보고 이익이 없었다는 설에 선동되었다. 小笠原島에 근무한 관리는 물론 그곳에 이주한 八丈의 도민들까지 일시 되거시켰다. 이로부터 攘夷의 朝令도 심해지고 막부도 그 처치에 고심하였다. 심지어 長防征討 사건도 일어나 자못 多事했기 때문에 마침내 小笠原島 개척을 再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채 慶應 3년(1867) 정묘 10월 15일 大政返上의 일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증단에 이른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요컨대 막부에서 小笠原島 개척을 중지시킨 이유는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구별된다. 먼저, 대외적으로 小笠原島를 개척하기 위해 관리와 이주민을 보냈던 1862년 8월 21일에 橫濱의 근교 生麥에서 薩摩의 무사들이 번주 시마즈[島津茂久]의 행렬을 방해했던 영국인들을 살해한 生麥사건으로 1863년 2월 이후 영국 군함이 橫濱에 머물면서 배상금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 그보다 앞선 1862년 2월 高輪 東禪寺에 있는 영국 공사관 습격사건에 대해 영국이 역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왔다. 이처럼 攘夷운동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목전에서 영국의 책임 추궁에 위축되어 장래를 염려할 틈도 없었던 막부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외딴 섬에 만약 이변 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자국의 관리를 두고서도 사람을 방기하기보다 철수하는 편이 득책이라는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25) 外務省[原] 編纂, 通信全覽編集委員會 編, 1987,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 『續通信全覽』 53, 雄松堂出版, 401~402쪽.

다음, 대내적으로 정국 담당자가 교체되는 내홍을 겪고 있었다. 小笠原島 개척은 의견이 분분해서 묘의에서도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安藤(信行)이 결단을 내려 미즈노를 파견했던 것이다. 그런데 1862년 2월 그는 坂下門外の變으로 부상을 당하여 老中에서 파면당했고, 12월에는 칩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安藤가 老中 재직시 취했던 조치는 대부분 지당함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개항으로 재정이 더욱 궁핍해진 상황에서 小笠原島 개척 역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도서의 산물이 후일의 유익함을 얻을 가망이 없을 것 같았다”든가 “개척은 손해보고 이익이 없었다”는 목전의 재정적 견지에서 중지되어 버렸다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막부는 小笠原島의 일본인 관리와 이주민 전원을 철수시키는 ‘空島’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막부의 小笠原島 ‘공도’ 정책은 메이지유신 후인 1875년 말까지 약 12년 넘게 지속되었다. 메이지유신 후 신 정부는 국내외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小笠原島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1869년 오바나의 건의를 받은 미야모토 고이치가 小笠原島의 재회수계획을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宣嘉]에게 올리고, 그 후 민간인 다니 요케이[谷陽卿]와 이구치 나오스케[井口直助] 등이 小笠原島 개척안 및 현지조사안을 각각 太政官과 民部省에 제출하는 등 여러 차례 재회수 및 개척안이 건의되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태정관과 민부성에서 1861년도의 회수 조치가 국제법상 유효한지를 외무성에 문의했을 때, 외무성은 小笠原島가 일본의 영토이지만 개척하는 데 거액의 경비가 필요한 데다가 별다른 실효도 없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소극적인 小笠原島 방치 입장은 1873년 초 이 섬이 국내에 속할 경우 개항장이 아닌 섬이므로 외국선박의 寄港과 收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을 때,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隔海

26) 安岡昭男, 1960, 앞의 글, 80~81쪽.

27)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37~239쪽.

의 小島여서 장래 물산이 증식하거나 유익한 전망도 없으므로 우선 개의치 않고 내버려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올린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⁸⁾ 이에 대해 대장성 사무총재 오쿠마는 小笠原島가 개항장이 아니어서 조약상 불편을 초래하므로 긴급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²⁹⁾ 이어 외무경대리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도 小笠原島를 “지금 도의시할 경우 외국선박이 그 도서로 출범하기를 원하거나 그곳에서 물산을 운반하더라도, 이를 默許해서 수출·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불쾌할 뿐 아니라, 장래의 有爲에 관계되니” 당장 葦山縣 관할로 삼아 출장소를 설치하라고 건의하였다.³⁰⁾ 또한 소에지마 외무경도 小笠原島를 해군성에서 관리하고, 1년에 한두 번 선박을 시운전으로 왕복하며 이민자를 보내는 등 개척안을 제시하였다.³¹⁾ 하지만 이러한 건의들은 정한논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뒷전으로 밀려났다.³²⁾

한편 일본주재 각국 외교관들도 小笠原島의 불투명한 소속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872년 3월 독일 공사 브란트(M. A. S. von Brandt)는 소에지마 외무경 등에게 영국의 해군성 수로국이 발행한 『中國水路誌(The China Pilot)』에 小笠原島가 영국령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소속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소에지마는 1853년 上海에서 발행된 『地理全誌』를 근거로 일본령이라고 답하였지만, 막부의 회수수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후일의 조사를 약속했던 것뿐이라면서 확답을 주지 못했다.³³⁾

또한 1873년 4월 小笠原島 거주 미국인 피스는 미국 공사 데롱(Charles

28) 外務省 編纂, 1955, 『日本外交文書』 6, 日本外交史文書頒布會, 392쪽, #180 부속서 1, 1870년 谷陽卿이 민부성에 제출했던 「無人島實見言上書」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細川龜市, 1941, 「明治初年における小笠原島の歸屬問題(一)」, 『公法雜誌』 7-12, 10~14쪽 참조.

29) 『일본외교문서』 6, 401쪽, #182 부속서 1.

30) 『일본외교문서』 6, 402쪽, #183.

31) 『일본외교문서』 6, 403~404쪽, #184.

32) 鹿島守之助, 1979, 『日本外交史 3: 近隣諸國及び領土問題』, 鹿島研究所出版會, 352~353쪽.

33) 『일본외교문서』 6, 398쪽, #181 부기 1, ;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40~241쪽; 田保橋潔, 1923, 「小笠原諸島の回收(三)」, 『歴史地理』 40-2, 15~16쪽.

E. De Long)에게 페리 제독의 사적을 근거로 이 섬이 미국령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데롱은 이를 본국 국무부에 의뢰해서 그 섬의 점령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지 미국인이 특별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훈령을 받았다. 이에 小笠原島の 영국령화를 우려하고 있던 데롱은 소에지마에게 빨리 小笠原島の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였다. 소에지마는 이를 이와쿠라 우대신에게 보고했지만, 정한론으로 말미암아 소에지마가 하야하는 등 정부 내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³⁴⁾

小笠原島の 영유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지닌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다. 1873년 5월 13일 영국 공사 파크스(Harry S. Parkes)는 외무경대리 우에노에게 1863년 小笠原島로부터 “구정부 관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을 보면, 귀국에서는 이미 이를 방기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⁵⁾ 이어 1875년 6월 8일 그는 “10여 년 전, 우리 관원을 파견해서 일단 단속하는 수속을 밟았다”면서 小笠原島가 일본의 ‘屬地’라는 데라지마 외무경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이미 旗章도 세워두었고, 그 후 미국도 그랬으며, 또 러시아도 그랬다”고 반박한 다음 “인구도 점차 늘어났으므로 그렇다면 無人島가 아니라 無政府島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집요하게 그 섬의 일본 소속 여부를 추궁했던 것이다.³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가(佐賀)의 난 진압과 타이완 침공 및 千島·樺太交換條約 체결 등 국내외의 중요 문제를 해결한 일본정부는 1875년 9월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왔던 해군·외무·내무·대장성 등 4성 합의안에 따라 小笠原島에 관리를 파견하되, 그들의 파견 날짜가 결정된 뒤 각국 공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1일 4성에서 선발된 외무성 4등출사 다나베를 비롯해서 대장성 조세권조 하야시(林正明), 해군대위 네즈(根津勢吉), 내무성 지리료 7등출사 오바나 등의 회수위원 일행은 小笠原島로 출

34) 『일본외교문서』 6, 398~400쪽, #181 부기 2, ;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41~242쪽.

35) 『일본외교문서』 6, 397~398쪽, #181.

36) 『일본외교문서』 8, 354~355쪽, #151 부속서.

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회수위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다나베와 오바나는 1861년 순검·조사시에도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11월 24일 父島에 도착한 다나베는 거주 외국인들에게 1861년의 小笠原島 회수에 따라 통치를 재흥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일본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받아냈다. 이어 다나베 등은 거주민들로부터 성명·인구·원적에 관한 조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도내를 순시한 뒤 12월 16일 橫濱로 돌아왔고, 19일에 복명하였다.³⁷⁾

이에 앞서 11월 초 회수위원의 파견을 통보받은 영국 공사 파크스는 데라지마 외무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국도 橫濱 주재 영사를 小笠原島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재차 일본이 小笠原島를 ‘속지’로 상정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데라지마가 “지금까지의 수속도 있고, 또 近島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로 정했다”고 답하자 파크스는 “近島라는 이유로 속지로 정한다는 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遠近으로 屬否를 정한다면, 琉球島는 中國의 屬地라고 말해도 괜찮은가?”고 반박하였다. 이어 “중전부터의 수속도 있고, 또 10년 전에는 우리 관리를 파견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는 데라지마의 발언에 관해서도 그는 “관리를 파견한 것은 귀국뿐만 아니라 미·러, 그리고 우리나라도 파견하였다”고 응수하였다. 그럼에도 파크스는 열강 간의 상황을 고려했는지 “귀국이 관할로 삼는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조치를 승인하는 듯한 의향을 내비쳤다.³⁸⁾

이처럼 파크스가 “近島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로 정했다”는 데라지마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일본정부의 관리들은 아직 외교 교섭에 능숙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영·미·러 3국이 관리를 小笠原島에 파견했지만, 모두 영유를 목적으로 정부가 파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파크스의 노회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답에서 파크스는 일본정부의 小笠原島 영유에 이의를 제

37) 『일본외교문서』 9, 481~484, 488~489, 496~500쪽, #166 및 부속서 1, 4, 11 등.

38) 『일본외교문서』 8, 362~362쪽, #158.

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섬이 되었다. 그 다음 해 일본정부는 小笠原島를 내무성의 소관으로 정하고, 10월에는 외국에게도 이 섬에 대한 통치의 재흥을 통고하기에 이르렀다.³⁹⁾

2_ 공도정책 비판과 그 의의

일본의 小笠原島 영토 편입은 일본 역사상 근대적 영토정책의 시발점을 이룰 뿐 아니라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타국과 분쟁 혹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국에게 자국의 영유권 소유 절차와 활동을 통보해 준다는 귀중한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일본이 小笠原島에 거주하는 관리와 이주민을 전원 철수시킨 ‘공도’ 정책은 한국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수토’ 정책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로 미뤄볼 때, 1861년과 1875년 두 차례에 걸쳐 小笠原島 開拓再開의 調査·巡檢 및 回收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다나베는 당시 외무성 관리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無人島’ 혹은 ‘無主地’ 영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훗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둔 『막말회고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정부가 취했던 小笠原島 공도정책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졌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다나베는 小笠原島에서 일본인 관리와 이민들을 ‘突然’히 ‘退去’시킨 직접적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당시 도내에 살고 있던 미국인 호튼이라는 자가 酒亂을 벌인 데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것을 그 섬에 있는 관리가 체포해서 감금하였던 바, 미국 공사가 이를 불법이라고 해서 배상을 지불하라고 이치에 어긋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때에 이미 安藤 각로는 파면되어 있었고, 당국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

39)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44~245, 248쪽.

법적인 요구를 받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은 채, 이 섬에서 개간 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가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小笠原島를 放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수많은 재산과 시일을 들이고 사람을 힘들게 해서 점차 그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가? 비록 그것이 고무총알이나 얼굴의 점과 같이 매우 좁은 토지라 할지라도, 점차 일본의 영토로 거두어들였던 것을 이처럼 瑣細한 사건의 처리를 꺼려해서 흠덩이처럼 버려버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는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인가? 우리들은 역사를 논하는 학자에게 그때의 집정자 성명을 알리고자 한다. 그것은 실은 越前の老侯 마쓰다이라 순가쿠[松平春嶽]가 政事總裁의 직임에 있었던 때이며, 그 시정의 제1착수가 이것이었다고.

그리하여 세상에 賣國者라고 비방받고 國賊이라고 불리던 安藤 각로는 오히려 小笠原島 개척의 발기인이었다. 關國百里라고 칭찬받아야 할 영광은 오히려 國賊 安藤 그 사람에게 있으며, 蹙國百里라고 한탄해야 할 치욕은 당시 여망을 업고 조정의 평판도 좋았던 老侯 春嶽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기괴한 일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樺太의 境界談判에서도 러시아정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것을 버려버렸던 부득이한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春嶽가 政事總裁에 있었던 때였던 것이다.⁴⁰⁾

먼저, 그는 小笠原島 개척을 추진했던 안토 각로가 파면된 뒤 막부 당국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쇄세한’ 호튼(George Horton)사건에 대해 미국 공사가 배상을 청구하자 “小笠原島를 방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다나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호튼사건이 외교문제로 부상했던 시기가 小笠原島에서 일본인을 퇴거시킨 이후였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호튼사건은 1863년 4월 22일 포경선 一番丸의 일본인 선장 나가하마[中浜万次郎]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미국인 스미스가 호튼과 함께 배에 몰래 들어가

40) 田辺太一, 앞의 책 1, 227~228쪽.

물건을 훔쳤다가 체포되어 구금된 뒤, 5월 11일 横浜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인도된 사건이다.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8월 20일에야 미국 공사는 호튼을 무죄로 처리했다는 뜻을 막부에 통고하면서 일본 측이 언제 그를 小笠原島로 귀환시킬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막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12월 21일부로 미국 공사는 다른 사건과 함께 호튼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양국 간에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1864년 2월 호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호튼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전인 1863년 5월 9일 小笠原島의 일본인을 퇴거시키기 시작했던 만큼, 양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⁴¹⁾

또한 다나베가 小笠原島에 대한 공도정책의 책임을 마쓰다이아라 슌가쿠에게 돌린 것도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받기도 한다. 마쓰다이아라가 政事總裁에 취임했던 1863년 7월부터 개척민을 보냈으며, 그 다음 해에는 포경사업이 시행되는 등 小笠原島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나베가 사실을 잘못 기록한 이유로서는 메이지 시대의 舊幕臣, 특히 구막부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遺老’들이 공통적으로 개국 직후 막정을 혼란에 빠트려 막부의 권위를 쇠퇴시켰던 마쓰다이아라에 대한 한 맺힌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⁴²⁾

물론 다나베가 小笠原島에 대한 공도정책이 실시된 지 약 35년 정도가 지난 1898년경에 회고담을 집필하기 시작한 탓에 그 정확한 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마쓰다이아라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小笠原島 공도정책에 관한 다나베의 기록은 적어도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첫째, 다나베가 小笠原島의 일본인을 퇴거시키고 공도정책을 펼친 막부 당

41) 田中弘之, 1976, 「幕末の一小笠原島民をめぐる領事裁判—いわゆるホートン事件について」, 『駒澤史學』 23 ;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09, 212~230쪽.

42) 田中弘之, 1997, 앞의 책, 208~212쪽.

국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을 취하고 있던 막부 당국이 호톤사건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자 그 탓을 小笠原島 개척에 돌리고 ‘방기’한 데 분격하였다. 수많은 재산과 시간을 들이고 이주민을 보내 힘들게 小笠原島를 개척하여 점차 그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도 별로 중요치 않은 호톤사건을 처리하기 꺼려해서 매우 작더라도 점차 일본 영토로 편입되던 小笠原島를 ‘흙덩이’처럼 내버렸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다나베의 신랄한 비판은 단지 그가 小笠原島 개척과 회수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토 확장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小笠原島 개척의 발기인’인 안토에게 ‘나라를 개척한 백리(關國百里)’라고 칭찬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린 반면, 小笠原島 개척을 중지시킨 장본인으로 지목했던 마쓰다이라에게 ‘나라를 축소시킨 백리(蹙國百里)’라고 한탄해야 할 ‘치욕’의 불명예를 덮어씌운 그의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셋째, 그가 小笠原島에 대한 공도정책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상실할 뻔했던 유사한 사례로 樺太의 境界談判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마쓰다이라가 政事總裁에 있었던 1861년 11월 막부는 건구사절 다케우치 야스노리[竹内保徳]에게 북위 50도선으로 러시아와 경계를 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해 다케우치는 48도선을 내세운 러시아와 교섭했지만 樺太境界의 획정을 향후의 교섭사항으로 한다는 각서에 조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1871년 5월 다나베는 樺太境界 문제 답판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도 그 상황에 정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막말회고담』의 ‘小笠原島의 巡視’ 항목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樺太境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단순히 마쓰다이라의 失政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小笠原島의 공도정책과 동일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1906년 11월 26일 그가 史談會에서 小笠原島에서 관리를 ‘볼러 되돌아오게 하고’ ‘이민’을 ‘철수’해버린 뒤 1875년 “내가 외무성 근무 중에 전부터 [小笠原島에] 관계가 있어서 명을 받아 처치하여 먼저 원

래대로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정했습니다만, 만일 그런 까닭으로 [小笠原島를] 팽겨쳐 두었다면 외국인이 취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며, 이는 마치 樺太가 러시아인에게 넘어가버린 것과 동일한 모양인 것입니다”고 대담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³⁾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누구보다도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던 다나베가 막부의 小笠原島 공도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와 동일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울릉도·독도가 아니라 樺太境界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뒷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다나베가 小笠原島의 회수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직후인 1876~1877년간 외무성 내에서 ‘松島’ 개척안에 관해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고, 당시 공신국장 다나베 역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표명했을 뿐 아니라 이견을 정리·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는 조·일 간의 영토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었던 울릉도·독도 개척 혹은 영유 논쟁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小笠原島의 개척과 회수문제는 樺太境界 문제보다 울릉도·독도 개척 혹은 영유문제와 더욱더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小笠原島와 울릉도·독도 문제에 모두 관여했던 다나베가 모를 리가 없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다나베가 小笠原島의 개척과 회수문제를 회고하면서 울릉도·독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뒤에 서술하듯이, 그 이유는 그가 ‘松島’ 개척안 논의 당시 “松島[독도]는 우리나라[일본] 사람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라고 한다. ……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를] 순시하는 것은 남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웃의 지경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취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고무총알이나 얼굴의 점과 같이 매우 좁은 토

43) 田邊太一, 1907, 「幕府時代外交實歷談」, 『史談會速記録』 167, 史談會, 20~21쪽(영인본 1973, 『史談會速記録』 46, 原書房, 550~551쪽).

지”인 小笠原島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데 진력했던 다나베가 남의 나라 영토인 울릉도·독도 문제를 자국과 관련된 영토 영유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나베와는 달리 대외관계의 분규를 회피하려 했던 막부의 영토정책—공도정책—의 전례로서 막부의 竹島[울릉도]정책을 꼽는 견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續通信全覽』의 類輯之部 雜門에 실려 있는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을 들 수 있다. 『속통신전람』의 편찬은 1874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먼저 編年之部 全505冊이 1879년 완성되었는데, 이 사업에서 국학자였던 外務大錄 사카타 모로토오[坂田諸遠]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類輯之部の 편찬경위는 상세치 않지만, 1875년 9월 미야모토를 통해 막말 사정에 정통한 히라야마[平山省齋]에게 조회했고, 그 후 사카타도 히라야마를 직접 면회해서 옛 사정을 청취했다고 한다. 類輯之部는 禮典·修好·貿易·租稅·雜 등 27門의 항목으로 나누어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1886년 太政官制度의 폐지와 더불어 완성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거나 혹은 1888년경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⁴⁴⁾ 따라서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1880년경 전후의 시기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에는 小笠原島에서 관리와 도민을 되거시킴으로써 일본의 영토로 확실하게 처치할 방법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이미 竹島의 覆轍이 있다”고 지적한 뒤 본문의 반 크기 글자로 한 행에 두 줄씩 각주를 다는 형식으로 무려 8쪽이나 그 이유와 내력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⁴⁵⁾ 그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44) 今井庄次, 1962, 「『續通信全覽』と坂田諸遠」, 『日本歴史』, 173, 79~80쪽;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會 編, 1969, 앞의 책, 1284~1285쪽; 田中正弘, 1989, 앞의 글, 598~608쪽; 保谷(熊澤)徹, 2000, 앞의 글, 288~219쪽.

45) 그런데도 야스오카는 이 문서에 “10여 행에 불과하지만, 붓을 할애해 竹島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고 썼는데, 왜 분량을 적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安岡昭男, 앞의 글(1960), 81쪽.

竹島는 옛 隱岐國의 管内로 同國 福浦에서 북서[戊亥] 방향으로 40리쯤 떨어져 있는 松島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조선에 가까운 것은 琉球의 八重山에서 대만 福州의 땅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伊藤長胤의 『輻軒小錄』에는 隱州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磯竹島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隱州視聽合記』를 보니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松島가 있고, 또 하루 정도 거리에 竹島가 있다(속칭 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 어류, 해조가 많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없는 땅[無人之地]으로 [여기에서] 高麗를 보는 것이 雲州에서 隱州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북서는 이 주를 경계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어서 이토 도가이[伊藤東涯: 長胤]의 『輻軒小錄』·『隱州視聽合記』·『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등의 관련 기록을 실었고, 1600년부터 시작된 '竹島渡海'에 관한 경과를 서술했으며, 1696년 1월 28일 막부의 竹島 '渡海禁止令' 전문을 게재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⁴⁷⁾

그 섬은 저 나라[조선] 강원도 울진현의 屬島 울릉도로서 皇國의 版圖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隱岐와 竹島의 거리와, 竹島와 조선의 거리로써 도서의 위치를 논하면 오키의 소속이 됨은 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조선이 통교는 宗家가 그 목전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 이것이라도 적당하다는 摸稜의 주선이 있었으므로 서로 그 實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오직 無事를 專要로 삼아 일시의 처치로 장래를 深念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偷安으로 흘러버려서 마침내 이와 같은 不體裁에 이르고 말았다. …… 『草廬雜談』에 죽도를 조선에게 與給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에게 주었던 것도 아니다. 여기에 소유한다고 다시 설명하지도 않았다. 오직 皇國人이 이르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을 報知한 것이다. 그러면 특별히 그에게 與奪하는 것은 아니다. 『通航一覽』을 보고서

46) 첫 부분을 일부러 인용한 이유는 그 내용이 '松島' 개척 논의가 한창 벌어지던 1877년 8월 6일 외무성 기록국의 사카타가 내놓은 의견서 「松島異見」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다음 내용도 비슷하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바로 『속통신편람』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IV절 참조.

47)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 『續通信全覽』 54, 403~404쪽.

그때의 왕복을 살펴보아야 한다. 竹島의 지리는 松浦弘의 『竹島誌』에 상세하므로 생략해서 여기에 쓸데없이 덧붙이지 않았다. 필경 元緣 시기 조선인이 와서 집을 지어 살고 어업을 멋대로 했지만, 원래는 1년에 한번 요나고[米子]에서 건너가는 것 외에는 전혀 皇國人이 가는 일도 없고 거주하는 자도 없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조선인은 그 사정을 듣자 바로 來住해서 영유히 소유하는 策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지금 또 小笠原島에 외국인이 來住하는 것과 相同하므로 覆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첫째, 竹島[울릉도]는 각각 오키와 조선과의 거리로 보면 당연히 오키 소속이며 둘째, 막부가 현실적으로 조선과의 통교를 중요시 여겨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일본 영토로 관철시키지 못했고 셋째, 『草廬雜談』 등에 竹島를 조선에게 주었다고 기록한 것은 잘못된 뿐 아니라 그나마 일본인이 가는 것을 금지시킨 사실을 알려주었을 따름이므로 竹島를 되찾는 것이 빼앗는 것이 아니며 넷째, 막부의 ‘도해금지’로 말미암아 조선이 竹島를 소유한 사례는 小笠原島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과 相同한 覆轍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공도정책으로 조선인의 울릉도 진출을 초래하였듯이 小笠原島에 대한 공도정책도 그 잘못되고 실패한 전철을 밝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顛末提要」의 내용은 현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심지어 현재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학자 혹은 운동가들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순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리지와 지도—『隱州視聽合記』·『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등—도 동일하다.⁴⁸⁾ 따라서 「顛末提要」의 울릉도 관계 서술과 논리는 현재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근원이 메이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역으로 이때 제기되었던 논리와 근거가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

48) 최서면, 2005, 「한·일간의 역사문제—독도문제를 중심으로」, 『일본학』(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4, 13~23쪽.

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小笠原島에 대한 일본의 개척·회수 및 공도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은 한국이 '공도' 정책으로 독도를 방치함으로써 '무인도' 혹은 '무주지'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가 아닐 뿐 아니라 1905년 일본이 '무주지선점'이라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일본 영토로 삼았다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小笠原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영 등 외국과 충돌 혹은 마찰을 빚었을 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대국에게 영토편입 사실을 통보해준 관례가 독도의 경우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선례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에는 오히려 일본의 小笠原島 공도정책으로 이 섬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覆轍'로 '竹島'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요'는 특정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여 그 요체와 사실관계 및 그 전체상을 쉽고도 간편하게 파악함으로써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던 만큼, 작성 당시 외무성의 입장과 견해가 담겨져 있었다. 「顛末提要」의 작성 시기가 분명치 않은 만큼, 다나베가 이 문서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그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제요의 작성자 또는 당시 외무성 관리들의 견해와는 달리, 다나베가 일본정부의 小笠原島 퇴거 혹은 공도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失政이 '竹島'와 똑같은 '覆轍'을 밟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田邊太一の '松島開拓之儀' 처리과정과 울릉도·독도 인식

메이지유신 후에도 일본 내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인식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876~1877년간 해외 항해의 봄을 타고 물산이 풍부한 松島[울릉도] 개척원을 정부에 제출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이 松島開拓之儀는 외무성 관리 기타자와[北澤正誠]가 편찬한 『竹島考證』 하권에 그 전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松島開拓之儀는 현재 한·일 양국 모두 독도를 거론할 때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빠짐없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다나베의 조선 인식을 전반적으로 조감하면서 그의 발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小笠原島에 대한 다나베의 인식을 토대로 그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입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876년 千葉縣 佐倉의 무역상 齋藤七郎兵衛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商用으로 왕복하는 항해 도중에 松島에 기항해서 이 섬에 良材가 많고 어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섬의 개발허가를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그의 송도 개척 청원은 당시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주재하고 있던 외무성 파견 무역사무관 세와키에게 제출해서 본성에 청원했던 것이다. 세와키는 자신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중 초록과 무토[武藤平學]의 원서를 함께 첨부해서 당시 외무경 테라지마에게 松島 개척을 상신하였다. “皇國의 屬島인 松島는”으로 시작되는 이 상신서에서 松島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이는 그가 松島를 울릉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다나베는 “松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우리 판도에 속해 있지 않으니, 齋藤某의 願意는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⁴⁹⁾

이처럼 다나베가 松島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울릉도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개척원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했는데도, 1877

49) 北澤正誠, 1881, 『竹島考證』 下(2006, 『독도자료집 2-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376~397쪽. 이하 바른역사정립기획단 간행의 번역을 참조하되, 문장을 수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인용한다.

년 5~6월에 무토와 세와키는 “공도개척은 그 양국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국산품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위 일거양득할 수 있는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간절히 허락해달라는 ‘松島開拓一件’을 재차 제출하였다.⁵⁰⁾

그러나 이번에도 다나베는 다음과 같이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재천명한 뒤 그들의 개척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해 버렸다.

松島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는 섬이 아니다. 文化 시대에 이미 그에 대한 서신을 조선정부와 주고받았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간에 착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또 돌아올 때 상륙하여 항구 등을 살펴본다고 하였는데 어떤 배를 고용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해군의 선함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三菱의 기선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가능성 없는 일이다. 하물며 上海에 가서 직접 판매하는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볼 때 섬에 나무가 있다고는 하나 잘라서 내온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그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할 수 있겠는가.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뒷일에 대한 처분은 [물어보는] 의견서의 취지에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平學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⁵¹⁾

단지 위에서 언급한 ‘文化’ 시대는 1804년부터 1817년에 해당되는데, 울릉도에 대해 조선정부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1688~1703년간인 ‘元祿’ 시대일 가능성도 크다고 여겨진다. 다나베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울릉도 개척을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그는 세와키 등이 귀로에 海軍의 군함 혹은 三菱의 기선을 고용해서 ‘松島’를 조사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으며, 松島의 나무를 上海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문

50)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18~453쪽.

51)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52~457쪽.

제의 발단을 일으킨 무토가 어떠한 인물인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 후 외무성 내에서는 여전히 ‘松島’의 실체를 둘러싼 논의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관리들에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다. 그 가운데 앞장에서 언급했던 사카타는 1877년 8월 6일 『隱州視聽合記』를 비롯하여 각종 일본 자료와 일본 및 서양 지도 등을 인용한 끝에 “松島와 竹島 두 섬이 있는 것은 물론이므로 굳이 松島를 竹島の 別號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면서 두 섬을 별개의 것으로 정확히 파악한 견해를 내놓았다.⁵²⁾

그런데도 당시 일본 외무성은 竹島와 松島에 대해 매우 모호하고 혼란된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었던 탓에 결론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7년 8월에 長崎人 시타무라[下村輪人郎]가 다시 사이토와 연명으로 ‘松島開拓願’을 세와키에게 제출하자 외무성 내에서 다시 논의가 일어났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나베는 ‘松島’ 巡視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甲은 말하기를, 개항은 다른 날 그 여부를 결정하고 오늘은 시찰의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다. 듣건대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이 명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舊정부 당시에 한차례 갈등을 일으켜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 영구히 증거로 삼되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약속했으며 그것은 양국의 역사에 실려 있다.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은 남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웃의 지경[隣境]을 침범함과 같은 것에 있어서랴. 우리와 한국의 교류가 겨우 시작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싫어하고 의심함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일거에 다시 틈을 만드는 것은 교제하려는 자들이 꺼리는 바일 것이다. 하물며 영국, 혹은 러시아의 배를 빌려, 그곳에 가는 것은 또한 더욱 저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가령 그 섬을 韓籍에 속하지 않게 한다 해도 남쪽의 무인도를 열어 琉球를 藩으로 삼는 것에 대해 식자들은 혹 그것이 분명히

52)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60~469쪽.

잘못임을 논한다. 현재, 힘써야 할 일은 國脈을 靜養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조선을 애태우게 하여 이를 어지럽혀서는 얻을 것이 없다. 松島는 결코 개척할 수 없고 또 개척해서도 안 된다. 그 不能·不可를 알면서 이것을 순시하는 것이 어찌 무익하지 않은가. 허물며 훗날 害를 만들 것임에야.

乙은 말하기를, 개척 여부의 대략은 시찰한 후가 아니라면 정할 수 없다. 版圖의 논의는 지금 그 실상을 볼 때 다만 별레 먹은 종이 상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라면 이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이 섬은 물론이고 이른바 竹島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순시하여 그것의 지금의 상태를 상세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순시는 필요한 바이다. …… 또 이번을 놓치면 다시 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西南 전쟁이 진정된 후 해군도 일이 없이 한가한 때가 되면 그때 측량과 제도 등에 숙달된 해군 사관과, 생산 開物에 밝은 관리를 파견하여 이를 살펴보게 한 이후에 이를 晝圖에 비추어보고 문서에도 비추어보아 비로소 松島가 울릉도의 일부인지 또는 과연 于山인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별도의 주인 없는 땅인지도 결정될 것이며 장차, 개간 후 이익의 유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시한 후가 아니면 개항이 불가한지의 논의를 정할 수 없으니 松島는 반드시 순시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도 瀬脇씨의 논의 같은 것은 감히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반드시 장차 다른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丙은 말하기를, 영국 신문에 러시아가 東路를 예방하고자 하여 이미 태평해 북부에 하나의 해군 둔참의 땅을 필요로 한다는 논의가 있다. 松島 등과 같은 것은 혹 저들이 주목하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지금의 책략은 甲과 乙이 논한 것처럼 개척 여부의 논의에 관계하지 말고 이 섬의 현상을 아는 것을 급선무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땅을 순시해야 한다고 희망하는 자가 어떤 배로든지 그 근방을 향해하여 정박하려 한다면 이를 허가하고 이를 고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얻는 것이 다만 앞에 서술한 것에 그친다면 계산상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것에 약간의 대가가 있을 것임을 계산하여 약간의 돈을 瀬脇씨에게 주어 이 액수 내에서 이 일을 치르어야 함을 명하면 계획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배에 타고 韓地에 이르면 韓 정부의 싫어하고 의심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나친 염려

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섬에 있는 韓民(비록 官吏라도)이 일본 사람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눈이 없으므로 단연 交隣의 도리에 있어서는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⁵³⁾

갑·을·병 3유형 중 다나베의 의견은 갑에 해당된다. 다음에 곧 살펴보겠지만, 갑의 첫 부분인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이 명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다”라는 그의 입장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 입각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별개의 섬이자 독도[우산]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두 섬 모두 조선의 영토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은 남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웃의 지경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함으로써 순시조차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더욱이 강화도사건에 이어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직후의 상황을 반영하듯이, “우리와 한국의 교류가 겨우 시작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싫어하고 의심함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일거에 다시 틈을 만드는 것은 교제하려는 자들이 꺼리는 바일 것이다”라고 하여 양국의 평화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을 애태우게 하여 이를 어지럽혀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松島는 결코 개척할 수 없고 또 개척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처럼 “그 不能·不可를 알면서 이것을 순시하는 것이 어찌 무익”할 뿐 아니라 “훗날害를 만들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을은 松島 개척 여부는 순시 조사한 후가 아니면 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을은 막부의 명백한 도해금지령 따위의 옛 문서나 약속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간주하면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竹島를 순시·조사한 뒤 松島가 조선의 鬱陵島의 일부이며, 于山島가 주인 없는 땅(무주지)인가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선점’론의 이론적 선구로서 주목되는데, 이는 와타나베의 견해였다. 병은 松島를 개척하기보다 당장 순시·조사하되, 세와키 등에게 원

53)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76~491쪽.

조·시행하자는 것이다.⁵⁴⁾

송도 순시에 대한 위의 3유형에 대해 와타나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곳에 가는 것은 좋은 항구 같은 것은 있는지, 수목·어패 등의 것은 어떤 것인지, 와서 거주하는 자는 조선인인지,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주하는지, 治政의 道는 다소간 서 있는지, 이 섬이 울릉도라고 불리는지, 無人島인지를 알기에 좋은 기회이다. 이를 위해 작은 돈은 소비해도 괜찮을 것이다. 또 혹은 울릉도와 竹島는 같은 섬의 다른 이름[同島異名]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松島 역시 竹島와 같은 섬의 다른 이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屬島인 것 같다. 위의 竹島 외에 松島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으므로 이미 竹島에 일본인이 가서 갈등을 일으킨 것을 보면, 그 섬에서 가까운 松島에는 반드시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竹島와 다른 것이라면 이나비[因]·오키[隱]·이와미[石] 등의 國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縣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縣들에 물어보아 松島의 屬島인지의 여부, 竹島와 松島가 같은 섬인지 다른 섬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더욱 松島가 순전한 일본의 屬島인지 또는 竹島, 혹은 그 작은 屬島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종래의 경위를 합하여 그 올바른 위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竹島’와 ‘松島’를 개별의 섬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松島가 순전한 일본의 屬島인지 또는 竹島, 혹은 그 작은 屬島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 외무성 내에서 대세를 이루었던 갑안, 즉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 영토이므로 순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나베 역시 다음과 같이 재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54) 梶村秀樹, 1978, 「竹島=獨島問題とはなにか」, 『朝鮮研究』 182, 21~22쪽;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03~105쪽 등 참조.

55)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76~491쪽.

듣건대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라고 한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舊정부당시에 한 차례 갈등을 일으켜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 영구히 증거로 삼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약속했으며 그것은 양국의 역사서에 실려 있다.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웃의 지경(隣境)을 침범함과 같은 것에 있어서라. 이제 우리와 한국의 교류가 겨우 시작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싫어하고 의심함은 오히려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일거에 다시 한 틈을 만드는 것은 외교 담당자(交際家)가 꺼리는 바일 것이다. 지금 과연 개척하려고 한다면 단연코 松島를 개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松島가 아직 다른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소속이 애매하다면, 우리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海軍省으로부터 배한 칙을 내어 그곳에 보내어 측량 제도가와 생산 개물에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른바 주인 없는 땅[無主地]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익의 유무도 고려한 후 임지에 가서 점차 기회를 보아 비록 하나의 작은 섬이라도 우리 北門의 關防을 放擲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한 뒤에 그곳을 개척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瀾協씨의 建言을 채택할 수 없다.⁵⁶⁾

즉, 다나베는 역사적으로 ‘松島’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于山(독도)’이며 두 섬 모두 조선의 영토이므로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를 개척하는 일은 “이웃의 지경을 침범함과 같은 것”이므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재강조하면서 “단연 松島를 개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재천명했던 것이다. 이처럼 확고부동한 입장을 전제로 한 뒤, 그는 만약 “松島가 아직 다른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소속이 애매하다면” 해군 군함을 파견하여 ‘무주지’임을 밝혀내고, 상황을 고려하여 개척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松島’가 울릉도·독도가 아니라 영유 소속이 애매한 제3의 섬일 경우, 조사를 통해 ‘무주지’ 여부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단서를 달은 이유는 ‘松島’를 순시해야 한다는 와

56)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96~501쪽.

타나베 등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다나베의 입장에 대해서는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는 松島가 무주지임을 밝혀내고 기회를 엿보아 개발하자는 것으로 파악한 뒤, ‘버려진 땅 [空地]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기타자와의 논리와 그대로 연결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의 논리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하여 시마네현 의회 고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논리로 구체화되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죽도고증』에 실린 기타자와와 다나베의 ‘공도제’와 ‘무주지’ 이론을 접한 외무성 관리들은 1905년 독도 침탈의 ‘무주지선점론’을 개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도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정책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첫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이므로 순시해서는 안 된다는 다나베의 확고 부동한 입장을 간과하였다는 점, 둘째 “松島가 아직 다른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소속이 **애매하다면**”이란 전제 조건을 “松島가 아직 다른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소속이 **애매하므로**”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가 ‘松島’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다나베는 역사서를 통해 ‘松島’=독도, ‘竹島’=울릉도란 사실과 두 섬이 모두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시조차 반대했지만, 만약 ‘松島’ 개척원 제출자들이 거명했던 ‘松島’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닌 미지의 섬이어서 소속이 애매하다면 균함을 파견하여 그 소속을 밝혀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물론 다나베는 “비록 하나의 작은 섬이라도 우리 北門의 關防을 放擲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한 뒤에 그곳을 개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에 쓸 정도로 영토의 편입 혹은 확장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57)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6~7쪽. 또한 ‘송도개척지원’에 대한 일본 측의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한철호, 2007, 『明治시기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사학보』 28, 323~331쪽 참조.

그가 小笠原島 공도정책에 대해 ‘매우 좁은 토지’이지만 “일본의 영토로 거두어 들었던 것”을 “흙덩이처럼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그 부속섬인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더라도 ‘北門의 關防’에 중요한 두 섬을 순시하거나 개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다나베가 조일수호조규로 겨우 교류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남아 있던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松島’ 순시 혹은 개척을 반대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1861년 이전에 막부가 공도정책으로 방치해두었던 小笠原島를 기껏 회수했더니 또다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을 취해서 이 섬을 방치했다고 비판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만약 그가 ‘松島’에 대해 막부가 일본의 영토임에도 공도정책을 펼쳤다고 인식했다면, 단지 조선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松島’를 방치 혹은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외국과의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나베가 ‘松島’는 울릉도의 부속섬인 ‘于山(독도)’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막부가 두 섬에 공도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北門의 關防’인 울릉도와 독도의 순시조차 반대하였다. 스스로 “舊정부 당시에 한 차례 갈등을 일으켜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 영구히 증거로 삼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약속했으며 그것은 양국의 역사서에 실려 있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조선과 일본의 역사서를 면밀하게 읽고 검토한 끝에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다나베는 1877년 3월 20일 최고 국가기관인 太政官이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에 대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천명한 지령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76년 10월 지도 편제작업을 하기 위해 島根縣 관할지역에 竹島와 松島를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내무성은 5개월간에 걸쳐 17세기 이래 조·일 양국 간의 왕복 관련문서를 조사·검토한 뒤 두 섬이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내무성은 영토문제

가 중대 사항이므로 태정관의 최종 확인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를 문의하였고, 태정관은 지령을 통해 ‘竹島外一島之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나무성에 하달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천명한 적이 있었다. 그 시기는 바로 외무성에서 ‘松島’ 개척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 벌어질 때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외교문서에 정통했던 다나베가 태정관지령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된 뒤에도, 외무성은 여러 논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순시 의견 역시 실행되지 않다가 1880년 9월에야 비로소 天城艦을 파견해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松島’는 古來의 울릉도이며, 북방의 작은 섬을 ‘竹島’라고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때 ‘竹島’는 독도가 아니라 현재의 ‘죽서도’에 해당한다. 결국 도명의 혼란한 상황하에 울릉도는 ‘죽도’가 아닌 ‘송도’로, ‘죽도’는 ‘죽서도’로 단정했던 것이다. 전자는 다나베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을 확증한 셈이고, 후자는 그가 지적했던 ‘독도’가 아니라 ‘죽서도’를 잘못 파악한 셈이다. 이처럼 기타자와뿐만 아니라 독도의 일본 영유를 주장하는 현재의 일본인 학자들도 울릉도·독도에 대한 다나베의 정확한 사실 인식을 수용하지 않은 채 天城艦 순시를 통해 ‘竹島’를 ‘기죽도’로 잘못 단정지음으로써 향후 독도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8) 태정관지령에 따르면, ‘竹島外一島’의 일도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는 최근 태정관이 일본의 版圖外로 포고했던 ‘竹島外一島’의 지도가 공개됨으로써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그 지도에는 울릉도인 ‘竹島’는 磯竹島로, 독도에 해당되는 ‘外一島’는 ‘松島’로 각각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松島에서 기죽도까지의 거리는 乾位 40里許”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에 대한 일본 측의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한철호, 2007, 앞의 글, 333~339쪽 참조.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전후한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들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다나베 다이치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해 조선에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남겼는데도 한국 학계에서는 거의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나베가 1861년과 1875년 두 차례에 걸쳐 小笠原島 開拓再開의 조사·순검과 회수에 나섰던 장본인이었다는 점은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첫째, 다나베는 외교사절단으로서 구미 각국을 견문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근대적 학문에 밝았으며, 타이완 침공을 수습하는 데 관여하거나 주청공사관 서기관·임시대리공사를 역임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문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통신전람』의 편찬을 홀로 시작할 정도로 외교문서를 작성·정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며, '幕末史의 살아 있는 逸史記'로 불릴 만큼 외교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국경문제 처리에 대한 실무능력과 경험을 소유하였다. 따라서 당시 외무성 내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외교관계와 그 영유권에 관해 가장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다나베는 외국과 교섭을 기피하는 정략을 취하고 있던 막부 당국이 小笠原島の 일본인을 퇴거시키고 공동정책을 펼친 것에 관해 일본 영토를 '흙덩이'처럼 내버렸다고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신랄한 비판은 그가 두 차례나 小笠原島 개척과 회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측면보다는 일본의 영토 편입과 확장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다나베가 小笠原島에 대한 공동정책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상실

할 뻔했던 유사한 사례로써 울릉도·독도가 아니라 樺太의 境界談判을 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막부의 공도정책에 관한 전례로써 竹島[울릉도]정책을 꼽는 『續通信全覽』 類輯之部 雜門의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와는 전혀 다르다. 다나베가 이 문서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그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가 小笠原島 개척·회수와 그 의미에 관해 가장 정통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제요」의 작성자 또는 그 당시 외무성 관리들의 견해와는 달리, 다나베가 일본의 小笠原島 공도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失政이 ‘竹島’와 똑같은 ‘覆轍’을 밟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다나베가 ‘竹島’를 공도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막부의 小笠原島 공도정책은 그 섬이 일본 영토라는 전제 아래 개척·회수가 이뤄졌으며 관련 당사국에게 그 과정을 통고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현재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울릉도·독도에 대해 ‘공도’[수토]정책을 펼친 결과 ‘무주지’ 혹은 ‘무인도’가 된 독도를 ‘무주지선점’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영토로 공식 편입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인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독도 편입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시마네현 고시만으로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일본의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외무성 내에서 ‘松島’ 개척안을 논의할 때, 다나베는 과거 양국의 역사적 자료에 입각해서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이 명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松島’로 부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라는 그의 견해는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은 남의 보물을 조사하는 것”이며, ‘松島’개척을 “이웃의 지경을 범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했으며,

나아가 “그 不能·不可를 알면서 이것을 순시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훗날 害를 만들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다나베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전제 아래, 만약 ‘松島’가 울릉도·독도가 아니라 영유 소속이 애매한 제3의 섬이라면 해군 군함을 파견하여 ‘무주지’임을 밝혀내고 상황을 고려하여 개척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가 이러한 단서를 붙인 이유는 ‘松島’를 순시해야 한다는 외무성 내 와타나베 등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록 하나의 작은 섬이라도 우리 北門의 關防을 방척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영토 편입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松島’가 조선의 영토가 아닌 소속 불명의 섬일 경우에만 실행해야 할 성격의 일이었다. 바꿔 말하면, 다나베는 비록 일본의 북쪽 관문에 해당되는 중요한 섬일지라도, 그 섬이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 혹은 그 부속섬인 독도라면 결코 순시하거나 개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했던 것이다.

[ABSTRAC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fficial Tanabe
Taichi's Conception of Ulungdo and Dokdo in the early
Meiji Period

Han, Cheolh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know about Tanabe Taichi's Uleungdo and Dokdo recognition. He was deeply connected in the problem of Dokdo dominium. He was the person responsible who investigated, patrolled and got back Ogasawara in 1861 and 1875. He also left the important speaking about Uleungdo, Dokdo and Korea. But very few know him in Korea academic.

First of all, Tanabe was the expert on modern academic, on world and the current of East Asia situation because he worked in the Embassy to China. He was a natural writer, also an expert on writing and keeping in order diplomatic documents and issues. He had wide experiences on the settlement of Japanese boundary issue. Therefore he can be valued an expert on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 and dominium about Ueungdo and Dokdo.

Secondly, Tanabe criticized strong that Bakuhu made Japanes evacuated from Ogasawara and dumped it as 'a clod.' In his critique, I noticed that Tanabe didn't choose Ulungdo or Dokdo but Karahuto as a dominium parley which Japan was nearly plundered its domain because of the Policy 'empty the island' whi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fficials in Bakuhu indicated Takeshima.

Tanabe didn't treat Takeshima as a target of Policy 'empty the island' because he recognized perfectly that Ulengdo and Dokdo belonged to Korea. And the Policy 'empty the island' of Bakuhu came into effect that this island is based on Japan's domain, therefore Bakuhu notified the relevant government of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collection of the island and asked for the relevant government consent. That point leaves us the important suggestions.

Japan government took up the position that Dokdo and Ulungdo belonged to Japa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Korea government evacuated people from two islands and that only the notice of Shimane-Ken was sufficient not to notify the relevant government, Korea. This point is conclusive base that Japan's insistence was wrong.

Finally, Tanabe understood perfectly with the historical records that Matsushima belonged to Ulungdo of Korea while he discussed this problem. At that time, considering that Japan referred to Dokdo as Matsushima, Tanabe's view which Ulungdo and Dokdo belonged to Korea historically is very correct. And naturally he was against to develop Matsushima as the same thing like a unlawful occupation.

Tanabe offered, if Matsushima is not Ulungdo and Dokdo but third island without possessor, that Japan government send a warship and makes clear that Matsushima was the islands without possessor and after develop carefully the island. He stood his ground that although Ulungdo and Dokdo were important islands as a north gateway of Japan, if these islands belonged to Korea, Japan government didn't have to make a tour of inspection or develop.

Keywords

Tanabe Taiichi, Watanabe Kouki, Uleungdo, Dokdo, Ogasawara, Karahuto, Takeshima, Matsushima, Policy 'empty the island'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 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최철영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I. 머리말

일본의 전시 조선인 강제동원을 통한 국제범죄행위는 첫째, 불법점거한 조선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동원, 둘째, 강제동원되어 일본 체류 중 원폭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거부, 셋째, 강제동원 이후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에 대한 귀환의무불이행, 넷째, 일본정부와 군 당국이 납치 또는 사술에 의한 기망, 강제연행 등의 방식으로 조선인 부녀자에게 행한 군대에 의한 성적 노예제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와 전쟁수행과정의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완전한 전후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 강점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에서 저지른 일본의 강제동원관련 국제범죄행위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의 법정에 직접소송을 통해 피해의 구제를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빈번히 좌절되어 왔다.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은 전시 군인·군속의 보상청구,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피해자에 의한 미지급 노동임금 지불 및 불

법행위에 대한 보상청구, 일본 군대에 의한 성적노예제 피해자들에 의한 사죄·명예회복과 보상청구, 포로 및 민간억류자에 의한 보상청구 등 일본이 행한 국제범죄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법정에 제기된 이들 소송은 배경과 청구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외교적 보호권 및 개인보상청구권의 소멸문제, 일본이 체결한 조약의 전쟁 중 효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국제조약의 국제강행규범성 및 국제관습법형성 여부,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피해자의 국적문제, 국제법상 시효문제 등 국제법적 문제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제범죄행위에 대응하여 한국인에 의하여 제기된 일본 내 전후보상소송과 관련하여 제2절에서 강제동원관련 소송의 분석을 위한 전제로서 강제동원관련 개념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일본재판소에 제기된 대일전후보상소송을 강제위안부피해자 소송, 강제노동피해자 소송, 그리고 사할린강제이주피해자 소송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유형의 전형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개요, 당해 소송의 국제법적 쟁점, 그리고 당해 소송 관할 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한국인 전쟁범죄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일본의 기업을 피고로 하여 일본 재판소에 제기한 전후보상소송의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철저한 전쟁책임의 해제를 위한 법 논리를 제시하여 일본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배상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강제동원의 개념과 전후보상소송

1_ 강제동원의 개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강제동원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강제동원 개념의 내용이나 범위가 설정되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강제동원 소송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에의 도항은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언급될 수도 있고, 동원과정에서의 개별적인 가혹행위의 폭력성¹⁾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의한 폭력적 조선인 노동자 동원만을 강제동원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고 일본인을 포함해서 법적 강제력에 의해 전쟁에 동원된 경우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강제동원이란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었다’라는 서술적 용어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동원은 강제성, 연행, 일정한 목적에의 이용 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²⁾ 실질적 개념의 측면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동원 당시의 명칭, 명목이 어떠하였던 간에 사회구조적 강제력의 존재를 기초로 순수한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³⁾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

1) 西成田豊, 2002, 『中國人強制連行』, 東京大學出版會, 6쪽.

2) 예컨대 지원병이라고 하여도 당시의 조선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 속에서 ‘강제에 의한 지원’이고 모집도 조선총독부의 절대적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할당된 모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英達, 2003, 『朝鮮人強制連行研究』, 明石書店, 45쪽.

3) 2004년 법률 제7174호로 제정, 2007년 법률 제8311호로 개정.

산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우리 법률상 강제동원은 시기적으로 만주 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의 기간, 동원의 목적으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에 종사, 행위의 주체와 객체로서 일본정부와 조선주민을 강제동원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성의 해석은 사실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 법률은 조선인의 단순한 도항이 아닌 전시동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동을 포괄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및 동원에 대하여 침략전쟁시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직접적이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관리통제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즉 노동능력이 있는 일정한 나이에 이른 모든 사람들의 취직과 업종, 근무지의 이동과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력 배치가 국가의 통제와 법률적 규제에 따라 진행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제정된 법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적인 관리통제제도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조선인 강제동원의 법적 근거로서 일제가 제정한 ‘국가총동원법’⁵⁾을 비롯한 징용법⁶⁾을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현대판 노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제의 징용법은 첫째, 노동력의 동원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력의 약탈을 성문화한 노예법이었다. 징용법은 조선 사람의 노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들의 노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자유는 박탈되고 그들에게는 오직 일제의 노복으로서의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둘째, 징용법은 노역 ‘동원’에서 개별적 사람들의 노동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였다. 즉 노동력의 ‘동원목적’이나 ‘동원장소’, ‘동원기간’ 등에 대하여 어떤 개인적인 의사나 선택의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5, 『조선에서 일제가 감행한 인적자원약탈만행』, 61쪽.

5) ‘국가총동원법’(총 50개조항)은 1938년 4월 1일 법률 제55호로 공포되었다(1941년에 일부 개정).

6)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관련법들 가운데는 ‘종업원고입제한령’(1939. 5)과 ‘종업원이동방지령’(1940. 11), 그리고 이 두 법을 일체화시킨 ‘칙령’ 제1063호, ‘노무조정령’(1941. 12)이 있다.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⁷⁾ 셋째, 징용법에 의한 강제동원의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질적 보수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는 노동의 '보수'와 노임의 지불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으나 조선 사람은 일본인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적은 노임을 받았으며 그것마저도 '국방헌금', '각종 공제'와 빈종이장에 불과한 '국채'의 발급 등으로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강탈하였음을⁸⁾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의 조선인 동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강제연행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⁹⁾ 이러한 시각에서 ILO 강제근로금지협약은 강제노동을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체의 작업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동원은 물리적인 강제성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본이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주민을 무력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전시 조선인의 동원을 위해 노력동원을 법적 강제사항으로 정하는 각종 징용 및 동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전쟁과 무관한 조선인을 일본의 전시체제에 편입시켜 동원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제동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93년 내각 관방장관담화에서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관하여 강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또 관헌 등의 직접, 간접의 관여에 대

7) 강제노동장소인 감옥과 같은 '함바'들의 벽돌에 오늘까지 남아 있는 “어머니 배고파요”, “집으로 돌아가고파”라고 쓴 피눈물나는 글들은 일제의 강제징용법의 죄악성과 악랄성을 여실히 드러낸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5, 앞의 책, 65쪽.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5, 앞의 책, 65쪽.

9) 한혜인, 2007. 11. 30, 「조선인 노동력동원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일제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 한국근현대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세미나 자료집, 199쪽.

10) 강제근로금지협약 제2조 1항. 강제근로금지협약은 근로조건의 보장뿐만 아니라 노예제와 유사한 근로형태를 폐지하여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협약의 규율대상은 특별한 선언이 없는 한 비본토지역을 포함한 비준국의 관할이 미치는 전체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과해지는 강제근로이다.

해서도 인정하였다. 당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강제' 행위는 징집시의 강제로서 작업의 내용을 속이는 등의 사기,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군의 간접적인 위압에 의한 강압, 그리고 관리시의 강제로서 자유행동에 대한 제한 등이다.¹¹⁾ 이렇게 자행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첫째, 납치라고 하는 폭력적인 동원(강제연행), 둘째, 감시와 압박하에서 감금하의 노동(강제노동), 셋째, 황민화의 강요, 차별적 처우, 학대(타민족 학대)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강제동원의 개념을 이렇게 전제할 때 강제동원의 피해는 강제동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규모의 가족이산, 비인간적 처우를 통한 인권침해, 사망, 부상, 행방불명, 미귀환, 유골방치, 임금·저축의 미지급 등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_ 전후책임과 전후보상

일본의 전후책임이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이 행한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 군사점령,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의 역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말한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야기된 국가주권의 침해, 생명신체상의 피해,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의무를 말한다.¹²⁾

일본은 국가 자신의 책임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피해국가와 지역의 주민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일본의 기업, 단체, 개인의 책임을 포괄하는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의 전후책임은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이 전쟁피해를 주고 무력통치하에서 희생을 강요한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일본에게 요구되는 전후처리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시정,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전후보상), 그리고 식민지 지배 피해국가

11) 이승욱, 2003, 「ILO 강제근로금지협약에 비추어 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적법성」, 『법과사회』 제24호, 337쪽.

12) 金英達, 2003, 앞의 책, 50쪽.

들과 공유하는 평화 및 우호선린관계의 구축 등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은 전후배상책임을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조선인 전시 강제동원문제는 일본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크고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 전후배상책임이다.¹³⁾

일본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 의거하여 각국 정부가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외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전후보상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¹⁴⁾ 왜냐하면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은 전범국가로서 일본과 전승국으로서 연합국 간의 전쟁종료와 관련된 법적 합의로서 전쟁의 일방적 피해자로서 한국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과 협정체결의 기본배경이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군대 위안부피해에 대하여도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전후보상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국제조약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정의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협정이었기 때문에 청구권협상 당시 전혀 고려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한일 간의 전후보상문제를 종결하는 협정이 될 수 없다.

3_ 전후보상책임과 전후보상소송

1) 전후보상책임

일본에서 전후보상문제가 언제부터 논의되었는가는 분명치 않지만 1952년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 제정되고 난 후 재일한국인상이군회가 결성되

13) 金英達, 2003, 앞의 책, 51쪽.

14) 오카다 마사노리, 2003, 「전후보상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 지명관 외 편저, 김영필 옮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118쪽.

고 결국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으로¹⁵⁾ 연결되었다. 또한 조총련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1970년 초부터 오키나와, 홋카이도, 규슈 등에서 강제동원의 사실조사를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28일과 30일에는 일본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강제연행 및 종군위안부에 관한 조사문제가 제기되었고,¹⁶⁾ 같은 해 6월 6일에는 광산에의 조선인연행이 언급되어 강제연행의 실태해명이 요구되었으며, 강제연행자 중의 일부가 종군위안부의 형태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답변을 한바 있다.¹⁷⁾

한국에서는 1990년 7월 정신대연구회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91년 8월 김학순여사가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것이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학순여사는 1991년 12월 6일 동경지방법판소에 제소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전후보상재판이 제기되었다.

국제연합에서는 1993년 7월에 반 보벤 보고서,¹⁸⁾ 1996년 1월에 쿠와라스와미 보고서,¹⁹⁾ 그리고 1998년에는 맥두갈 보고서가²⁰⁾ 제출되었다. 또한 1994년 8월 31일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으며, 1994년 9월 2일에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조사보고서가 일본정부 및 관계국가에 송부되었다.

15) 1991년 1월 31일 정상근사건이 일본 오사카지방법판소에 제소되었다. 「元日本軍遺族在日韓國人援護去障害年金請求却下處分取消訴訟」, 『訟務月報』 42卷 8号, 157쪽.

16) 平成 2年 5月 28・30日, 「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4号・16号.

17) 이때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간의 업자가 종군위안부를 군부대에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였으며, 그러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다는 답변을 하였다. 平成 2年 6月 6日, 「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号.

18) E/CN. 4/sub. 2/1993/8.

19) E/CN. 4/1996/53/Add.1.

20)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유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 E/CN. 4/sub. 2/1998/13.

2) 전후보상소송

전쟁피해자인 외국인 개인이 일본의 국내재판소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본에서 전후보상소송은 전쟁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문제로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전후보상소송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정부나 군당국, 또는 일본기업이 범한 국내법 및 국제법위반에 근거하여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 받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전후에 일본의 재판소에 그 보상청구가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²¹⁾ 보다 넓게는 전후의 일본이 취한 조치, 예컨대 피해자원호법, 유기가스의 방치 등이 문제된 사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²²⁾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된 전후보상소송은 소송의 배경과 논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²³⁾

21) 藤田久一, 2004, 「戰後補償の論理問題」, 『國際人權』 5号, 2쪽.

22) 전후보상재판의 정의에 관해서는 오카다 마사노리, 2003, 「전후보상재판의 동향과 입법적 해결」, 앞의 책, 155쪽 주(1) 참조.

23) 五十嵐正博, 2006, 「日本の戰後補償裁判と國際法」, 『國際法外交雜誌』 105卷 1号, 1쪽.

Ⅲ.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분석

1.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경과

1) 강제노동 소송의 분류

2007년 2월 현재 일본 내에 제기된 전후보상재판은 81건이며 이 중 40건의 소송당사자가 한국인 피해자이다.²⁴⁾ 전후보상을 내용으로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전시 군인·군속의 보상청구, 강제연행, 강제노동피해자에 의한 노동임금 지불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청구,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한 사죄·명예회복과 보상청구, 포로 및 민간인류 피해자에 의한 보상청구, 예전의 일본군점령지역 주민들에 의한 전시피해의 배상청구나 유기불발탄의 처리 및 원상회복 청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소송을 청구의 목적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면 차별시정형의 소송과 피해구제형의 소송을 나눌 수 있다.²⁵⁾

2) 강제노동 소송의 연혁

1990년대 이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국내재판소에 대일과거

24)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 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5호, 333쪽.

25) 김창록, 2007, 위의 논문. 오카다 마사노리의 경우 전후보상재판을 구 식민지출신자에 의한 전후보상입법의 적용청구,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에 관한 배상보상의 청구, 전 일본군위안부에 의한 배상보상청구, 전 포로역류자에 의한 배상보상의 청구, 전쟁행위침략행위 등에 관한 배상보상의 청구, 그 외의 청구 등으로 구분한다. 오카다 마사노리, 2003, 「전후보상재판의 입법적 해결」, 앞의 책, 158~161쪽. 이에 비교하여 藍谷邦雄은 피해 종류에 따라 원호법의 비적용을 묻는 것, 강제연행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 강제연행을 주선한 기업이 책임을 묻는 것, 국가에 의한 학살 등의 책임을 묻는 것, 중군위안부 등으로 구분한다. 藍谷邦雄, 1993, 「戰後補償裁

청산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광복 이후 혼란한 사회상황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복구 등으로 피해자인 한국인들이 소송을 포함한 법적 책임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여유를 갖기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대일과거청산소송은 1952년 6월 14일 당시 스가모[巢鴨]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한국인 B, C급 전범 29명이 대만인 B, C급 전범 1명과 함께 동경 지방재판소에 인신보호청구의 소를²⁶⁾ 제기한 것이다. 대일과거청산소송으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된 것은 1972년의 손진두 피폭수첩 신청각하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원고인 손진두가 1심과 2심은 물론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제소 후 일본최고재판소(이하 최고재라 한다)의 판결까지 6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일본사회에 한일 간의 과거청산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일과거청산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선두에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여성 성노예제(이하 일본군 강제위안부라 한다)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1972년부터 2007년까지 35년 사이에 한국인들에 의해 제기된 대일과거청산소송 40건 중 절반인 20건이 1990년대 초반 5년 동안에 제기되었고 20건의 소송 중 70%에 해당하는 14건이 1991년 8월 14일 위안부피해자인 김학순의 회견 이후 1992년 말까지의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실망스런 것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제기된 한국인들의 대일전후보상소송에 대하여 내려진 29건의 판결 중 원고승소판결은 부산위안부근로정신대 소송의 1심판결²⁸⁾뿐이었으며, 김경석 일본동관(銅管)

判とその争点, 『法學七ミナ』 10, No. 466, 59쪽.

26) 이들은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신들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전범으로서 형이 부과된 당시에 일본국민이었으며, 대일강화조약 발효 후의 국적 상실 또는 변경은 형집행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김창록, 2007, 앞의 논문, 342쪽.

27) 김창록, 2007, 앞의 논문, 343쪽.

28) 山口支裁 下關支部, 98. 4. 27, 平成 4年(ワ)349号 등.

소송과 신일철(新日鐵) 징용손해배상 및 유골반환소송은 피고 기업과의 화해를 통하여 해결되는 데 그쳤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각되었다.²⁹⁾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원폭피해자 관련 소송 중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폭소송, 광기훈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 이강령 건강관리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소송, 이재석 피폭자지위 확인소송, 최수철 피폭자 건강관리수당 인정신청각하처분 취소소송, 최수철 피폭자 장제료지급각하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승소판결이 이어졌다. 2000년대에 새로 제기된 소송은 9건으로 이 중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광기훈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과 원폭피해자 관련 소송 4건을 제외하면 군인·군속피해자 야스쿠니합사 취소, 유골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새로운 소송은 5건이다.

2_ 일본군 강제위안부 소송³⁰⁾ - 송신도(宋神道) 소송

1) 소송의 개요

원고 송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7년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서 일본 군인에 의해 폭행, 강간 등의 피해를 입어 피고 일본에 대해 국제법 및 민법에 기초하여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소송은 1993년 4월 5일 동경지방법판소에 제기되어 1990년 10월 1일 1심판결에서 패소한 이래, 2000년

29) 2007년 2월 현재까지 화해가 성립된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00년 7월 11일의 후지코시[不二越]소송을 포함하여 총 3건이다. 김창록, 2007, 앞의 논문, 347쪽.

30) 위안부소송과 관련하여 1998년 4월 27일의 '시모노세키 판결'은 지금까지 일본의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 중 유일하게 원고인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지만 받아들인 판결로 일본의 재판소가 내놓은 최대한의 판결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김창록, 2003, 「일본군위안부소송과 일본재판소의 과제」, 지명관 외 편저, 김영필 옮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185~186쪽. 동 판결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이지만 2001년 3월 19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원심이 번복되었으며 2003년 3월 25일의 최고재판소에서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11월 30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하였으며, 그리고 2003년 3월 28일 최고재판소의 원심확정판결로 종료되었다.³¹⁾

2) 국제법적 쟁점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쟁점은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문제, 강행규범문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가의 문제, 국제조약이 국내적으로 자동집행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시효의 문제였다.³²⁾

송신도 소송에서 원고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국가에게는 국제불법행위로서 국가책임이 발생하며, 그 의무위반에 의해 생긴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진다. 특히 의무위반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강행적 성격을 갖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해국은 피해자인 개인에 대하여 직접 피해회복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속국의 외교적 보호권에 의하지 않고서도 권한 있는 국내 재판소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있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 1926년 노예조약과 그 관습법, 강제노동에 관한 ILO조약, 인도에 관한 범죄 및 전쟁범죄금지의 국제관습법,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헤이그 육전조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노예제도금지 및 강제노동금지 등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고 하였다.³³⁾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어느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가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국가책임을

31) 朱秀子, 2005, 「“在日元從軍慰安婦”謝罪・補償請求事件裁判の成果と課題」, 『季刊戰爭責任研究』 第47号, 2쪽.

32) 최봉태, 2001,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재판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212~229쪽.

33) 小澤弘子, 2001, 「在日元“慰安婦”謝罪・補償請求事件控訴審判決について」, 『季刊戰爭責任研究』 第31号, 49쪽.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원칙상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한다는 입장에서 국제법위반행위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개인이며,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보호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조약 자체가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절차에 따라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외국인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³⁴⁾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조약은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 대하여 피해회복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국제관습법 역시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청구함을 인정하는 국제관습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헤이그 육전협약도 인도에 대한 죄의 위반에 대해 배상책임을 실체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³⁵⁾

3) 재판부의 판단

이 소송에 대하여 일본의 재판소는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의무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국적국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국가에 대하여 그 개인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 직접 개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특별한 국제법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조약이 당연히 개인에게 직접 국제법상의 권리의 주체성과 청구권을 부여

34) 小澤弘子, 2001, 위의 논문, 44쪽.

35) 최봉태, 2001, 앞의 논문, 215쪽.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피해회복의무의 존재 및 그 이행에 관한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관습법에 기초한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³⁶⁾ ILO 강제노동조약 및 추업금지조약에 근거한 청구에 대하여도 조약의 특정 규정이 국내법으로서 직접 적용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에 관하여 조약의 성립과정상 개인의 권리의무를 정하여 직접 국내재판소에 집행가능한 내용의 것으로 한다는 체약국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과 개인의 권리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완전하면서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국내입법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집행가능하다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지만 위의 두 조약은 이를 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⁷⁾

3_ 강제노동 피해자 소송 - 후지코시[不二越] 소송

1) 소송의 개요

한국인 전 여자정신대원 이종숙, 최복년, 고덕환 등 3명은 도야마[富山]의 공작기계제작회사인 후지코시를 피고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에 대한 미불임금의 지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1928년에 설립되었으며 전시하에서 군수공장으로서 그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의 이름을 빌려 일본관헌의 지시, 협력 아래 조선으로부터 여자는 12세의 소학교 소녀 중에서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로, 남자는 지방별로 할당을 받아 징용영장의 교부도 없이 일본으로 강제연행했다. 후지코시 사사(社史)에 따르면 공장종업원은 1945년 5월 말 현재 총원 36,253명이었으며, 이 중 조선인 여자정신대원은 1,089명, 조선인 남자강제연행노동자는 535명이었다. 피고는 이들 조선인 강제연행노동자를 열악한 환경과 가

36) 小澤弘子, 2001, 앞의 논문, 48~49쪽.

37) 최봉태, 2001, 앞의 논문, 217쪽.

혹한 노동조건 아래 혹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 소송은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된 대일과거청산 소송 중 강제노동피해자 소송의 한 사례로서 1992년 9월 30일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제소되어 1996년 7월 24일 1심판결이 내려지고, 1998년 12월 2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의 항소심판결을 거쳐 2000년 7월 11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원고 전원 및 이해관계인 6명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³⁸⁾

2) 국제법적 쟁점

원고들은 소장에서 일본은 1931년 이래의 이른바 15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병력, 노동력, 물자의 동원을 단행하여 침략전쟁의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식민지조선으로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조선인을 동원하여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소위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강제동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의 노동에 대한 미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노예제도금지, 공서양속으로서 인도에 대한 죄, 강제노동에 관한 ILO 조약, 당시의 일본 국내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의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주체적으로 협력 및 관여하였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피고 등의 기업에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설령 원고들에게 미불임금채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38) 소송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창록, 2005. 4,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기록 1」,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4, vii~xxvii쪽 참조.

2조 3항과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되는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재판소의 판결

1심재판소인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1996년 7월 2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4_ 사할린 강제이주 피해자 소송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들이 비교적 관심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가 사할린역류피해자문제이다. 사할린으로 강제연행당했거나 생계를 위해 이주한 한인노동자 중 일본당국에 의하여 일본 본토로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사람들 중 강제연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와 강제연행의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나 전후 러시아군대의 사할린 진주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학살당한 한인들의 명부작성, 추모사업 및 보상요구 등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³⁹⁾

1) 소송의 개요

1975년 12월 1일 동경지방법판소에 사할린 잔류자 귀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사할린 한인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연행된 이후 1944년 8월 11일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다시 징용되어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

39) 김승일, 2006, 「사할린 한인 미귀환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8집, 가을호, 187쪽.

내지의 규슈 지역 및 동경 부근의 이바라키현 탄광으로 연행된 사람들을 말한다.⁴⁰⁾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의 사망 또는 귀환의 개인적 실현 등으로 소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없이 종결되었다.

1975년 사할린 한인소송이 무위로 끝나게 되자 대한변호사협회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의 후원으로 1990년 8월 29일 사할린 한인 진기상 등 21인을 원고로 하고 일본정부를 피고로 하여 동경지방법판소에 '사할린잔류 한국조선인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강제노동, 사할린한인의 귀국처해 및 방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소송 또한 1995년 7월 14일 취하되었다.

2) 국제법적 쟁점

사할린 잔류자 귀환청구소송에서 사할린 한인의 국적문제와 대일청구권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인 1948년 5월 11일 남조선 과도정부는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공포하면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며,⁴¹⁾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 8월 9일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⁴²⁾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할린 한인이 일본국적을 포기했다면 적어도 1948년 8월 9일부터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12월 30일 제정한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해외동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대한민국 성립당시 사할린 한인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한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다.⁴³⁾ 결국 사할린

40) 김승일, 2006, 위의 논문, 194쪽.

4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42)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

43) 최계수, 2006,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7집, 여름호, 41쪽.

한인은 1948년의 국적법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1952년 4월 19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라는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을 통하여 조선인 및 대만인에 대한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최고재판소는 1961년 4월 5일의 판결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에 속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한국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재일한인을 포함하는 모든 한인의 일본국적이 상실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영토에 관한 조약이며, 국적선택권문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인의 국적변경을 선언할 수는 없다.⁴⁴⁾ 더 나아가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전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세계인권선언의 제15조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사할린 한인에 대한 국적박탈조치는 합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법무성 민사국장의 민사통달에 의한 통첩형식의 일방적 통고로서 국적 상실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통달형식을 빌려 법률규정 사항인 국적 상실문제를 처리한 일방적 조치는 일본헌법 제10조의 위반행위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⁴⁵⁾ 또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여 사할린 한인들의 일본국적 보유의 근거가 상실되었고, 그 이후 일본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호적의 이탈이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도 되지 못한 소극적 국적의 충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사할린 한인은 어떠한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

44) 노영돈, 1992,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2호, 136~137쪽.

45) 지정일, 1988, 12, 「사할린 거주 한인의 귀환」, 『해외동포』, 16쪽.

았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의한 “양 체약국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당연히 이들의 대일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책임의 근거가 된다.⁴⁶⁾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으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할린 한인의 대일 전후보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한국인 개인의 권리에 관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포기였으며,⁴⁷⁾ 개인의 청구권포기라고 할 수 없다. 일본정부도 청구권협정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⁸⁾

3) 소송의 종결

사할린 잔류자 귀환청구소송은 1989년 6월 15일 총 64회의 구두변론이 행해지는 등 15년간을 끌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망 또는 귀환의 개인적 실현 등으로 소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없이 종결되었다.⁴⁹⁾ 이 소송의 재

46) 홍석조, 1988. 1, 「사할린잔류한인귀환에 관련된 제문제점 및 대책」, 『통일한국』, 62~63쪽.

47) 김창록, 2005, 「한일청구권협정 관련문서 공개의 의미」, 『역사비평』 통권 70호, 25~26쪽.

48) 「1965年 11月 5日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會會議錄」第10号, 16쪽.

49) 노영민, 1994. 3, 「한국청구권협정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북한』, 114쪽.

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이 1952년 4월 19일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달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의 귀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사할린잔류자귀환소송에서 사할린 한인 귀환문제는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책임하에 진행되어 일본정부는 이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1946년 11월 17일 연합군총사령부 대표와 소련군 대표 간에 '소련지구 귀환 미소잠정협정'이 체결되고, 1946년 12월 19일에는 연합군총사령부와 소련 간에 '소련지구 귀환 미소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사할린 거주 일본인의 귀환이 1946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949년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귀환대상자는 일본인 포로, 일반 일본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할린 한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일본정부는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귀환을 미소연합국에게 건의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떠한 건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⁵⁰⁾ 이는 1975년 12월 1일 동경지방법 재판소에 제기된 사할린잔류자귀환청구소송의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이는 일본정부가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서 사할린 한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며, 인종차별적 탄압행위인 것이다.⁵¹⁾

50) 최계수, 2006,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7집, 여름호, 38쪽.

51) 최계수, 2006, 위의 논문, 39쪽.

IV.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강제동원 관련 소송

1_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배상청구권

일본의 재판소는 국제법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은 비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당해 국제법에 있어서의 개인의 권리 및 출소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9일 동경지방법재판소는 필리핀종군위안부소송에서 국제법은 국가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제법상의 범주체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국제법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속하는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타 국가에 대하여 그 개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의 의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그 소속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권리침해에 의한 피해회복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국제법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⁵²⁾

또한 1998년 11월 26일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쟁 포로 및 민간인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법상 개인의 범주체성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개인의 범주체성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첫째, 국제법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관계 또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은 국가 간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제법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당해 위반행위

52) 『訟務月報』 45卷 9号, 1쪽.

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가해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의 소속국가이며, 국가가 외교보호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가 도모된다. 셋째, 개인은 국제법에 의해 개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행하도록 국제법상의 절차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체성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⁵³⁾

이는 최근의 판결에서도 거의 일관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인 731부대피해자 소송에서 일본재판소는 국제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자신의 국적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받은 전쟁피해에 대하여는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의 행사에 의해 당해 국가 간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헤이그 육전협약에는 국가가 전후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⁵⁴⁾

하지만 일본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개인이 재판에서 국제법규범을 원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유무를 문제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재판소에서 국제법을 직접 원용하여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해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국내법질서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위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검토하려는 주장은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고전적인 모델에 근거해서 정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개인의 법주체성을 부정하는 전통적 정의에 기초하여 개인은 재판에서 국제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⁵⁵⁾ 국제기관 기타의 특별한 국제제도에 의해 개인이 직접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 일본의 재판소에서 국제법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 재판실무의 실재이다.⁵⁶⁾

53) 『判例タイムズ』 998号, 92쪽.

54) 五十嵐正博, 2006, 「日本の戦後補償裁判と國際法」, 『國際法外交雜誌』 105卷 1号, 14쪽.

55) 松井芳朗他, 2002, 『國際法』, 有斐閣, 60쪽.

56) 阿部浩己, 1998, 『人權の國際化』, 現代人文社, 260~263쪽.

중요한 것은 개인은 국제법의 수범자로서 국제법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개인의 조약상의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피해자 개인이 국내재판소에서 통상의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법의 주체의 정의에 관련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국제법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그 침해에 대해 국내재판소를 통한 구제절차가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⁵⁷⁾

2. 국제관습법상 개인의 배상청구권

1) 국제관습법에 관한 일본재판소의 판단

최근 일본재판소의 판례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위안부 2차 소송에서 2002년 3월 29일 동경지방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의 존부에 대하여 헤이그 육전협약⁵⁸⁾ 제3조의 국가실행 사례를 검토하면 교전상대국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교전상대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당수의 국가실행 사례의 축적에 의한 국제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베르사유 평화조약과 같은 개별의 조약 이행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상당수의 국가실행 사례의 축적에 의한 국제관행이 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들 주장의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⁹⁾

헤이그 조약 제3조의 적용이 중심적 쟁점이 된 최초의 사례로 간주되는 가미시카(上敷香)사건에서 동경지방법재판소는 1995년 7월 27일에 국제법에 근거한 직접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에 대해 국

57) 廣瀬善男, 2005, 『戦争損害に關する個人の賠償請求權』, 明石書店, 106~114쪽.

58)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은 1907년 개최된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되고 1910년부터 발효한 것으로 일본은 1912년에 비준했다.

59) 『判例時報』 1804号, 50쪽.

제사법법원규정 제38조를 언급하며,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 쌍방의 존재필요성을 지적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에 의한 국제인권법이나 인도법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국가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는 일반관행은 아직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적 확신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⁶⁰⁾

한편 송신도(宋神道)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2000년 11월 30일 공소인이 주장하는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노예조약과 노예조약의 국제관습법적 성격 문제를 검토하면서 국제사법법원규정 제38조 1항(b)를 언급하고 일정한 국제관행의 성립에 법적 확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다음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비준하지 않았던 노예조약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가 이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라는 확신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예조약이 발효한 후에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⁶¹⁾

2) 국제관습법으로서 헤이그 육전협약

하지만 헤이그 육전협약은 전문에서 “체약국은 그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 간에 수립된 관행으로부터, 그리고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나오는 국제법원칙의 보호 및 지배 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규정하여, 체약국으로 하여금 인류의 복리와 문명의 요구, 문명국 간에 존재하는 관행과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소로부터 오는 국제법의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⁶²⁾ 또한 동 협약부

60) 『判例タイムズ』 894号, 197쪽.

61) 『判例時報』 1741号, 40쪽.

62) 김명기, 1993, 『정신대와 국제법』, 110쪽.

속서인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은 제46조에서, 교전국에 대해 점령지에서 “가족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시에서의 강간이나 강제매음으로부터 여성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 조선인 여성에게 일본군의 위안부를 강제한 행위가 위 협약의 전문에서 요구하는 원칙들과 위 규칙 제46조의 가치들을 침해한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이 협약 및 부속문서는 전시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일본이 하나 이상의 중군위안부 피해자 소속 국가와 전쟁상태에 있었을 것이 필요하다. 육전협약은 모든 교전자가 이 협약의 가맹국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참가입 조항(*general participation clause*)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이 협약에 규정된 규칙들은 1939년 까지 모든 문명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쟁법과 관습의 선언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고⁶³⁾ 동경극동군사재판소도 “협약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될 관습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허용할 수 있는 증거와 같이 재판소에 의해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다.⁶⁴⁾ 결국 이 협약은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었던 까닭에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이 군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는 이 협약 위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_ 강행규범(*Jus Cogens*)과 개인의 배상청구권

1) 송신도사건과 강행규범

송신도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있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 1926년 노예조약과 그 관습법, 강제노동에 관

63)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1946,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 65 ; 김명기, 1993, 위의 책, 111쪽 재인용.

64) United Nations War Crime Commission, 1949,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 15, p. 13 ; 김명기, 앞의 책, 111쪽 재인용.

한 ILO조약, 인도에 관한 범죄 및 전쟁범죄금지의 국제관습법,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헤이그 육전조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였으며 노예제도금지 및 강제노동금지 등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고 하였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란 “그 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인간의 법들 혹은 국제법의 명령적 규범들”⁶⁵⁾로서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법적 확신에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법질서로서 국제법의 존립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며, 그 준수가 국제적인 공동체의 전 구성원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53조는 “조약은 그 체결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저촉하면 무효”라고 규정하여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으로서 그로부터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국제법의 사후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강행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노사이드, 노예제, 노예매매, 고문, 연장된 자의적 구금, 또는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하거나, 장려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강행규범의 위반이 된다.⁶⁶⁾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는 침략전쟁, 당해 전쟁과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그리고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박해, 민간인에 대한 살해, 노예화 또는 추방 등을 국제적 범죄로 분류하였다.⁶⁷⁾ 강행규범의 본질적 특징은 개별국가의 의지가 강행규범과 충돌할 경우 강행규범은 당해 국가에게 강행규범에 묵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과 강행규범을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⁶⁸⁾

65) 이러한 개념정의는 이미 19세기에 Blunschli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대순, 2006, 『국제법론』, 87쪽.

66) American Law Institute, 1986, *Restatement (Third) of Foreign Relations Law*, §702.

67) Darcie Christopher, 2000, “Jus Cogens, Reparation Agreements, and Holocaust Slave Labor Litiga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1, p. 1234.

68) R. St. J. Macdonald, 1987, “Fundamental Norms in Contemporary

그러한 강행규범의 구속력은 유효한 국제조약의 실질을 한정하고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협정을 무효로 만든다. 즉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어떠한 조약·기준, 법적 명령, 행정명령이나 입법행위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2) 강행규범과 한일청구권협정

노예제의 금지, 국제법상의 범죄,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해도 이들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물론 그 침해의 결과 발생한 개인이 갖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가령 조약에서 포기되어도 그 조약은 무효이다. 만약 강행규범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의 포기는 금지되지만 그 위반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 강행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의미를 잃게 되며 강행규범은 역설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 더욱이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의 제정법으로서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 간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다. 더욱이 일본의 패전에 임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살해된 경우조차 있었던 점에 주목한다면 집단학살이라고 볼 가능성조차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면 동 협정은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군대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다고 할 경우 이는 일본재판소의 형식적 법논리를 그대로 추수하여 국제법이 추구하는 기본원리로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간과하는 국가주의적 법논리라고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Law”,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5, p. 131 ; 김대순, 2006, 앞의 책, 97쪽 재인용.

그런데도 일본의 재판소는 첫째, 배상을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여러 국가와 체결된 평화조약에 의해 포기되었다. 둘째,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직접 행사될 수 없고 외교적 보호의 전통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를 재판권의 행사를 막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의 인도법 위반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모두 만족할 그리고 국제적으로 구속하는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국가가 모든 청구를 임의로 포기하고 어떠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자유일 수는 없는 것이고,⁶⁹⁾ 강행규범에 속하는 인도적 규칙의 위반을 상호간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서 개인의 청구는 역시 국제법에서 그 기초가 애매하지만 국가를 국제법에 따른 해결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유익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⁷⁰⁾

3) 사적 당사자에 의한 강행규범 위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질서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법정은 현재 광범위하게 승인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국제법은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⁷¹⁾ 이러한 이론은 국제적 영역에서 공정성(fairness)의 원리에 의하여 지지된다. 국제법에서 공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또한 특히 제노사이드,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등을 범하지 않을 의무 등 국제법에 의하여 부과

69)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25쪽.

70) A. Gattini, 2003, "To What Extent are State Immunity and Non-Justiciability Major Hurdles to Individuals' Claims for War Damag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 pp. 364~365.

71) Tzeutchler는 "일정한 국제법위반 행위의 경우 개인 또는 기업, 공적 또는 사적, 그리고 영리 및 비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상가능한 모든 행위자들을 구속한다"고 한다. Gregory G. A. Tzeutchler, 1999, "Corporate Violator : The Alien Tort Li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Human Rights Abuses Abroad",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 30, Spring, p. 393.

된 의무에도 종속된다는 것이다.⁷²⁾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확장된 강행규범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멀리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개인들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적 개인의 구제청구권이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소송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⁷³⁾ 그러나 독일의 나치정권에 의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인권위반에 대하여만 강행규범의 적용에 근거한 예외가 인정되면 공정성의 문제 또한 제기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겪은 박해는 일본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들을 포함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에게도 행해졌기 때문이다.

4_ 국제조약상 배상청구권의 국내적 수용

1) 국제법적 권리와 국내법적 구제의 관계

일본의 재판소에 의한 판례를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고 설사 당해 행위의 국제법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이로부터 개인의 국내재판소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승소판결의 경우 국제법위반행위와는 관계없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찾아왔다.

일본 측의 논리는 당해 국제법상의 권리가 일본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거나 또는 국내법화된 권리라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국내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⁷⁴⁾ 국제법상의 권리에 근거하여 이를 실시하는 국제적 절차의 존부는

72) Darcie Christopher, 2000, 앞의 논문, p. 1235.

73) Darcie Christopher, 2000, 앞의 논문, p. 1239.

74)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19쪽.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국내적 차원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 또는 강제노동금지조약 제14조로부터 국내법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법원에서 직접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과 별개로 평정산(平頂山)사건에서⁷⁵⁾ 동경고재판결이 서술한 수용의 의미가 헤이그 육전조약이나 그 전제가 되는 헤이그 육전규칙이 국내법의 규범적 내용으로 된다고 하는 의미라면 이는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이나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헌법체제에서는 일본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위반은 국내법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국내재판소는 강제노동조약이나 헤이그 육전규칙위반은 국내법상의 불법행위로서 취급하면 된다.⁷⁶⁾

2) 국제법의 직접적용가능성

강제동원관련 일본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의 직접적용가능성(direct applicability) 내지 자동집행력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직접적용가능성의 개념은 원래 국제적 평면에서의 문제이고 국내재판소에서 문제가 되어야 할 자동집행성의 개념과는 구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이란 조약규정이 국내이행입법의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하여 개인에게 국내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⁷⁷⁾ 충족 곤란한 주관적·객관적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직접적용가능성의 개념이 자동집행력의 개념에 합일화되는 것에 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⁷⁸⁾

75) 1932년 9월 관동군에 의한 중국 평정산 촌민 학살사건관련 소송. 東京地裁, 2000. 6. 28, 平成 9年(ワ) 15770号.

76)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19쪽.

77) 김대순, 2006, 앞의 책, 168~169쪽.

78) 阿部浩己, 2003, 『國際法の地平』, 現代人文社, 82쪽.

조약의 자동집행성의 유무는 국내헌법체제에서 수용제도와 변형제도를 취하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일본과 같이 수용제도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자동집행성은 직접적용가능성을 의미하고, 영국과 같이 변형제도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자동집행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용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면 조약의 자동집행성과 직접적용가능성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⁷⁹⁾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직접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세이 후지(Sei Fujii)사건에⁸⁰⁾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집행성(self executing)이라는 용어는 유럽 제국이나 일본 등에서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갖는 국가에서 이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직접적용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이나 국내적 서열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재판소 판결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송신도사건의 1심에서 원고는 조약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국내에서 법규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국내법과 같이 직접적용가능한 자동집행력을 갖는다는 것이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자동집행력)의 요건이 되는 주관적 요건은 이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요건으로서 충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객관적 요건은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 것, 조약의 집행에 필요한 기관 및 절차가 정해져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이들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소의 판결은 강제노동조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79)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17쪽.

80) 김대순, 2006, 앞의 책, 193쪽.

대하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약은 공포에 의하여 당연히 국내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⁸¹⁾ 이것으로 재판소가 그대로 조약을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용해서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별도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어 조약규정이 그대로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용가능할 것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과 관련된 조약의 성립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가 규정되고 국내재판소에서 직접집행가능한 규정으로 승인하는 체결국의 의사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 이른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게 상세히 규정되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국내입법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국내적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하는 이른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증거에 의해서는 상기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⁸²⁾

그런데 최근의 판결에는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의 주장에 직접 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위안부 2차 소송 동경지재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헤이그 육전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해 설사 동 조약이 일본에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헤이그 육전협약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13일의 평정산(平頂山)사건 동경지재판결도 공소인들의 청구가 국내법으로서 수용된 국제법에 근거하여 어떤 주장에 대해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 자체가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직접 상대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일본이 조약에 대하여 수용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공소인이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공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⁸³⁾ 그렇지만 동 판결은 계속해서 공소인들이 주장하

81) 日本憲法 제7조 1호, 제98조 2항 참조.

82) 『訟務月報』 48卷 3号, 718쪽.

83)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18쪽.

는 수용의 의미가 헤이그 육전협약이나 그 전제가 되는 헤이그 육전규칙이 국내법의 규범적 내용이 된다고 하는 의미라면 이는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과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의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청구의 근거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이나 민법 제709조이며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였다.

V. 맺음말

국제법의 구조전환은 지금까지 국가 간의 이해조절을 중심으로 하던 국제법규범이 이제 사람의 차원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한다.⁸⁴⁾ 일본의 조선인강제연행관련 전후보상재판도 이 과정에 있다. 전쟁 중 강제연행의 피해자가 보유하는 개인적 청구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행 국제법하에서는 국제인도법의 위반으로 인한 개별 피해자들이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⁸⁵⁾ 이는 2005년 4월 19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의 위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보상

84) 石本泰雄, 1998, 『國際法の構造轉換』, 有信堂, 28쪽.

85) F. Kalshoven, 1991,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Armed Forc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0, p. 827 ; C. Greenwood, 2000,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F. Kalshoven(ed.), *The Centennial of the Fir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p. 161 ; L. Zegveld, 2003, “Remedies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5, p. 497 ; S. H. Bong, 2005, “Compensation for Victims of Wartime Atroc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3, p. 187.

청구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에도⁸⁶⁾ 반영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재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경향의 발전을 재촉하는 계기의 하나를 제공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⁸⁷⁾ 특히 일본의 재판소는 국가의 위법한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범죄재판권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일본의 지방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약간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⁸⁸⁾ 예컨대 과거 포로생활을 했던 중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강제노동에 대하여 일본에 배상을 청구한 몇몇 소송에서 일본재판소는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법 규범으로서 헤이그 조약 제3조는 외국정부로부터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2002년 4월에 15인의 중국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탄광노동에 동원되기 위하여 일본에 강제연행된 것을 이유로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소는 미쓰이광업에 대하여 128만 미국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⁸⁹⁾

국제사법법원(ICJ) 또한 2004년 7월 9일 '피점령 팔레스타인 영역의 장벽에 대한 법적 결과' 사건의⁹⁰⁾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비록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이스라엘은 문제된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배상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의 승인을 묵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⁹¹⁾

86)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UN Doc. E/CN. 4/2005/L. 48.

87)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27쪽.

88) A. Cassese, 2005, *International Law*(2nd ed.), Oxford Univ. Press, pp. 307~308.

89) 五十嵐正博, 2006, 앞의 논문, 24쪽.

90) *Legal Consequences of a Wall in Occupied Palestine Territory*, ICJ Reports 2004.

91) Rainer Hofmann, 2006, "Compensation for victims of War—German

1947년과 1948년의 *Alfried Krupp and others* 사건에서도 강행규범의 법리에 근거하여 독일 병기생산에 프랑스 전쟁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은 비시(Vichy)정부가 베를린 주재 프랑스 대사를 통해 독일과 체결한 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독일의 재판부는 그러한 협정이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하였다.⁹²⁾ 또한 *Iwanowa*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강제노동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사적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강제노동이라는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를 허용하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⁹³⁾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재판소의 전후배상재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국제법을 직접적용해서 강제동원의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재판소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판례는 국제법의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Practice after 1949 and Current Developments”, 『國際法外交雜誌』第105卷第1号, 45~46쪽.

92) Egon Schwelb, 1967, “Some Aspects of International Jus Cogens as Formula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J.I.L.*, Vol. 61, pp. 950~951; 김대순, 2006, 앞의 책, 91쪽 재인용.

93) *Iwanowa v. Ford Motor Co.*, 67 F. Supp. 2d 424, 455(D.N.J. 1999).

[ABSTRACT]

Legal Analysis of the Korean Court Actions concerning
Forced Mobilization

-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Rights of Reparation Claim -

Choi, Cheolyoung

International war crim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 First, forced labour toward Koreans. Second, refusal of compensation toward the victims and their heirs of atomic bomb who had lived in Japan because of forced movement. Third, non-fulfillment of repatriation toward Korean who compelled movement and left in Sakhalin after the World War II. Fourth, act of sexual slavery toward Korean women by Japanese army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comfort woman”).

This Article, in regard to the reparation litigation filed by Koreans for imperial Japan’s international war crimes, defined the forced mobilization as a dispersed situation which is compelled by social structure of colonial Korea whatever Japanese government justified and titled in Chapter Two. It categorizes the types of litigation such as litigation of sexual slave victims, litigation of slave labour, and litigation of detained victims in Sakhalin and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the litigations in Chapter Three. The litigations deal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ommon such as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existence of diplomatic protection and the individual right of compensation, the effectiveness of trea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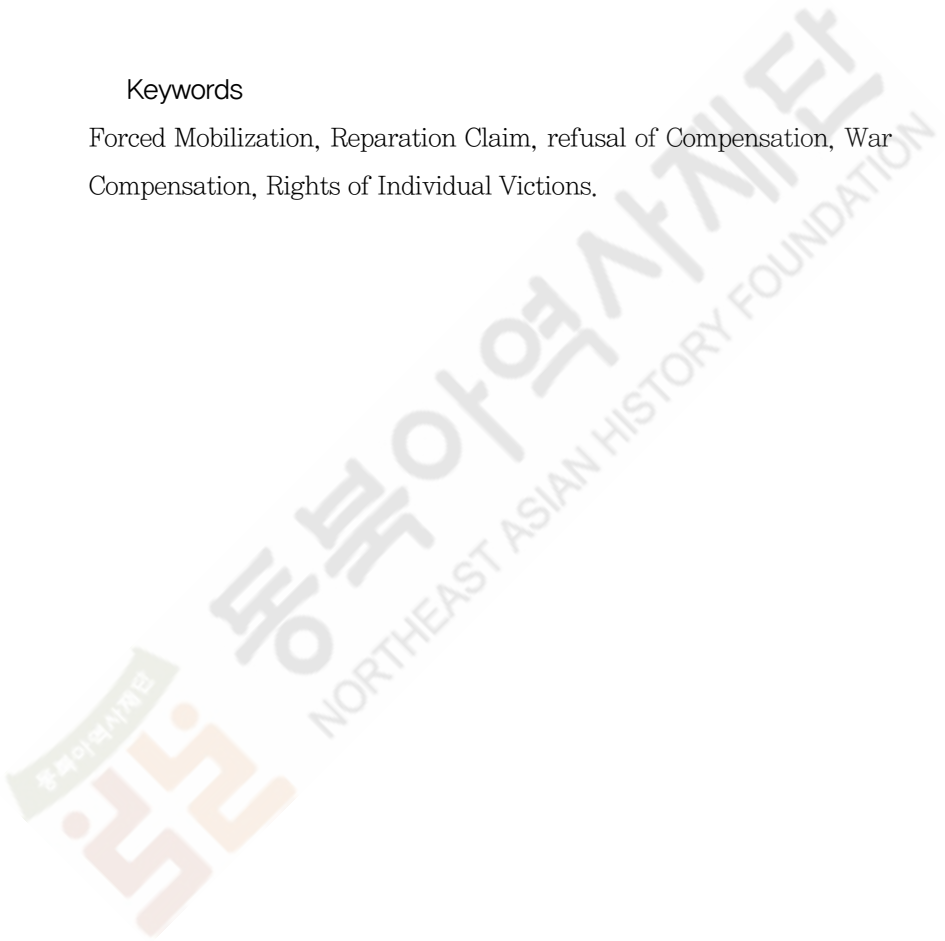
during wartimes, *Jus Cogens*, the re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e nationality of Korean victims, and the matter of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In Chapter Four, it discusses the legal issues and concludes as follows : In regards to the litigation of WW II reparations, Japanese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providing of compensation for wartime injuries is simply a matter of policy for the legislature to decide. The Court held that Koreans' reparation claim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extinguished as a result of the measur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ea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it addres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and to what extent Japanese courts continue to refuse the existence of legally enforceable rights to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individual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itarian law, both under currently applicable international and domestic Japanese law. Whereas such an individual right did not exist under international law as applicable during World War II, there is currently a strongly increasing tendency to accept the existence of such an individual right as forming part of present international law.

Japan is under legal obligation to pay reparations and make compensation – a position which clearly does not exclude a moral obligation to do so. Since several year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among international lawyers to accept the existence, under present international law, of a legally enforceable right of individual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financial compensation as also reflected in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dopted in 2005 by the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Japanes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right of individual victims and make apology toward the victims of imperial Japan's war crime. It will contribute to realize international justice and peace.

Keywords

Forced Mobilization, Reparation Claim, refusal of Compensation, War Compensation, Rights of Individual Victims.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9호(2008. 3)

초판 1쇄 인쇄 2008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3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